

제3판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제3판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오늘날 금융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구조의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금융시장의 구조와 우리의 삶을 비가역적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금융의 발달에는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충족, 편의성 증대 등 긍정적 측면과 함께 상품의 복잡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신종금융사기 및 관련 범죄 등 부정적인 측면도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금융소비자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금융소비자가 금융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장기적으로 금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사회구조 변화와 기술발달이 불러올 미래 금융환경에 가장 잘 준비되어야 할 세대는 예비사회인인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의 기초적인 금융지식 및 금융역량 함양을 위해 대학 내 정규 교육 과정 프로그램인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를 개발하고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대학생 금융교육의 기본서로서 2015년 12월 최초 발간 및 2017년 12월 개정판 발간을 거쳐 많은 대학생이 실용금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로운 금융제도의 도입과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개정 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다양한 금융상품, 재무설계, 금융소비자보호, 핀테크 등 여러 핵심 주제를 기초로 금융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일반 대학생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금융 전공서적과 달리, 금융의 기초 이론과 더불어 금융소비자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소비자보호 관련 중요 제도 및 유의사항을 융합하여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금융지식 습득에만 그치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각종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권리와 책무를 인식하고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보탬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대학생 여러분의 금융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고, 이것이 향후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개정판 출간을 위하여 수고하신 집필진 및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2월

금융감독원 원장

윤석현



머 리 말

다양한 금융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능력인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20대 때 금융역량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20대의 금융역량 또는 금융이해력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금융이해력은 100점 만점에 64.7점으로, 70대의 고령층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대보다 저조하다. 아마도 이는 청·장년층에 비해 실제 금융거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중추로 성장해나갈 동 세대에게는 그 어떤 세대보다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체계적인 정규 금융교육 과정을 통해 대학생이 실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동 강좌를 교양과목 등으로 개설하는 대학에 금융교육교수, 교재, 각종 교육용 자료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국의 다수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의 기본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에 최초로 집필·발간되었고, 2017년 말 제2판 발간 이후 금융시장과 관련 제도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금번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금번 개정판에는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골고루 다루었으며,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각 주제별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각 단원별 '생각열기'에서는 해당 단원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단원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최근 언론 기사 및 생각해볼 사항 등을 제공하였고, 본문에서는 주요 개념 및 필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본문에서 확장된 개념이나 주요 사례 등은 '확대보기'로 묶어 편재하였고, '금융꿀팁'을 별도로 신설하여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을 핵심정보 형태로 보기 쉽게 수록하였다. 아울러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금융서비스를 소개하는 '적용하기'를 신설하여, 관련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금융 관련 서비스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원별 '예시문제'를 확대하여 서술형 문항과 함께 빈칸 채우기 문항, O·X문항 및 모범답안을 추가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단순히 금융이론 습득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용금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국가 경제 내 금융의 역할과 금융상품,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였다. 제3장은 자산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득·소비 관리 및 저축을 설명하였으며,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할 사항과 예금자보험제도 등을 다루었다. 제4장은 금융투자상품의 성격과 종류, 주식 및 채권투자,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증권분석 등 자산형성에 중요한 수단인 금융투자의 기초를 설명하였다. 또한 제5장은 펀드, 선물·옵션 등 기초 파생상품, 구조화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주요 특징을 소개하였으며, 자기책임원칙, 분산투자,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다. 제6장과 제7장은 신용 및 부채관리를 주제로 현대 사회에서의 신용·부채의 의미 및 관리방법을 기술하였다.

제8장은 삶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험상품 활용방법 및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하였다. 제9장은 고령화에 따른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각종 연금상품을 다루었으며, 제10장은 재무설계의 기초 및 20대부터 시작하는 자산관리방법을 담았다. 또한 제11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202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등을 설명하였으며,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개인정보보호, 금융사기 피해예방 등 주요 주제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2장은 핀테크의 개념과 주요 핵심 기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유형 및 실제 사례와 더불어 이로 인한 생활의 변화 등 미래의 금융발전 트렌드를 설명하였다.

모쪼록 많은 대학생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금융역량을 갖추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금융소비자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1년 2월

저 자 일 동

차 례 Contents

CHAPTER 0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1 경제의 순환과 금융	4
2 경제활동과 금융거래	6
3 금융의 기능	8
4 주요 금융지표	11
1 금리(이자율) · 11	
2 환율 · 16	
3 추가 · 19	
4 변동성지수 · 22	

CHAPTER 02

금융상품,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1 금융상품	30
2 금융시장	33
1 금융시장 · 33	
2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 34	
3 금융시장의 종류 · 35	
3 금융회사	37
1 금융회사의 종류 · 37	
2 은행 · 38	
3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 40	
4 보험회사 · 41	
5 금융투자회사 · 41	
6 기타 금융회사 · 43	
4 금융유관기관	44
1 금융감독원 · 44	
2 한국은행 · 45	
3 예금보험공사 · 47	
4 한국거래소 · 48	
5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 48	
6 금융업권별 협회 · 49	

CHAPTER
03

저축의 이해

1 소득, 소비, 저축	58
1 소득 · 58	
2 소비 · 61	
3 저축 · 65	
2 저축의 가치	66
1 저축과 이자 · 66	
2 저축과 인플레이션 · 70	
3 저축과 세금 · 71	
3 저축상품	72
1 저축상품의 개요 · 72	
2 요구불예금 · 73	
3 저축성예금 · 74	
4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과 예금자보호제도	79
1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 · 79	
2 예금자보호제도 · 82	

CHAPTER
04

금융투자의 이해

1 투자의 기초	92
1 투자의 개념 · 92	
2 투자 수익률 · 93	
3 투자의 위험(risk) · 95	
2 금융투자상품	99
1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 99	
2 금융투자상품 투자 과정 · 100	
3 주식 투자	104
1 주식의 개념 · 104	
2 주식의 발행과 유통 · 106	
3 주식 거래 방법 · 108	

4 채권 투자	111
1 채권의 개념 · 111	
2 특수한 형태의 채권 · 114	
5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117
1 재무제표 · 117	
2 감사보고서 · 120	
6 증권분석	123
1 증권의 투자가치 분석 · 123	
2 기업정보 · 124	
3 재무비율 분석 · 127	
4 주가배수 평가 · 130	

CHAPTER
05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1 펀드	140
1 펀드의 개념 · 140	
2 펀드의 유형 · 143	
3 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 · 148	
2 파생상품	150
1 선물계약 · 151	
2 옵션계약 · 155	
3 스왑계약 · 158	
3 구조화 상품	158
1 구조화 상품의 개념과 특징 · 158	
2 대표적인 구조화 상품 · 159	
4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164
1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 164	
2 불공정거래에 빠지지 않기 · 166	
3 손실과 손해는 다름을 이해하기 · 167	

CHAPTER
06

신용관리

- 1 신용의 개념과 신용관리의 중요성** 176
 - 1 신용의 개념 · 176
 - 2 신용관리의 중요성 · 176

- 2 개인신용정보와 신용평가** 177
 - 1 개인신용정보 · 177
 -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관리 · 179
 - 3 개인신용평가 · 181

- 3 신용관리 및 연체 시 대처방법** 183
 - 1 신용관리방법 · 183
 - 2 연체 시 대처방법 · 185
 - 3 채무조정제도 · 186
 - 4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 188

- 4 신용카드 활용법** 190
 - 1 신용카드에 대한 이해 · 190
 - 2 신용카드의 종류 · 191
 - 3 신용카드의 주요 서비스 · 192
 - 4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 196
 - 5 신용카드 피해 예방 및 구제 · 197

CHAPTER
07

부채관리

- 1 부채의 개념과 영향** 206
 - 1 부채의 개념 · 206
 - 2 부채 발생 요인 · 207
 - 3 부채의 영향 · 209

- 2 대출의 활용** 210
 - 1 대출 시 고려사항 · 210
 - 2 대출기관 · 211
 - 3 대출상품 종류 · 211
 - 4 대출금리 및 대출상환방식 · 213
 - 5 대출제도 · 216

3 부채관리와 대출상환	218
1 부채현황 파악하기 · 218	
2 부채상환계획 수립하기 · 219	
3 부채상환원칙 · 220	
4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221

CHAPTER
08

리스크관리와 보험

1 리스크의 이해	228
1 리스크의 개념과 구분 · 228	
2 보험대상리스크의 요건 · 229	
3 생활 속의 보험대상리스크 · 229	
4 보험대상리스크의 측정 · 232	
2 리스크의 관리	233
1 리스크관리 방법 · 233	
2 리스크관리 절차 · 235	
3 보험의 이해	236
1 보험의 기본 원리 · 236	
2 보험의 기능 · 237	
4 보험의 주요 요소	238
1 보험료의 구성과 해지환급금 · 238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 239	
3 보험금 · 240	
4 보험기간 · 240	
5 생활과 보험	242
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 242	
2 사회보험의 종류 · 242	
3 민영보험의 종류 · 245	
4 생명보험 · 247	
5 손해보험 · 249	
6 제3보험 · 252	
7 보험가입채널 · 258	
8 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 260	

CHAPTER
09

노후와 연금

1 고령사회	270
1 고령화 · 270	
2 기대수명, 건강수명, 행복수명 · 272	
2 노후에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위험	274
1 질병위험 · 274	
2 경제적 위험 · 275	
3 노후준비와 연금	276
1 다층연금제도 · 276	
2 은퇴 연금설계 · 284	
3 간병보험의 활용 · 287	

CHAPTER
10

재무설계의 기초

1 재무설계의 개념과 필요성	296
1 재무설계의 개념 · 296	
2 재무설계의 필요성 · 296	
2 재무설계의 과정	298
1 재무목표의 설정 · 298	
2 재무상태의 분석 · 299	
3 재무설계안의 작성 · 302	
4 재무설계안의 실행 · 303	
5 재무생활의 평가와 수정 · 303	
3 20대의 재무설계	304
1 20대의 재무목표 · 304	
2 20대의 자산관리원칙 · 306	



금융소비자보호

1 금융소비자보호의 개요	314
1 금융소비자보호법 · 314	2 금융소비자의 권리 · 315
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316
1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 317	2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 321
3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제고	324
1 금융교육 · 324	2 금융정보의 제공 · 327
4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328
1 개인정보보호 · 328	2 금융사기 피해예방 · 333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1 핀테크의 개념	346
1 핀테크의 개념 · 346	2 핀테크의 성장배경 · 347
2 핀테크 관련 주요 기술	350
1 인공지능 · 351	2 블록체인 · 351
3 클라우드 · 353	4 빅데이터 · 354
3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355
1 인터넷전문은행 · 356	2 간편결제·송금 · 357
3 자금조달 및 대출 · 358	4 웰스테크 · 360
5 인슈어테크 · 361	
4 핀테크의 발전과 생활의 변화	363
1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기대효과 · 363	2 핀테크 발전에 따른 위험요소 · 364

표·그림 차례

표 2-1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현황	37
표 2-2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종류	42
표 3-1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소득 현황	60
표 3-2	이자율에 따라 30년 후 5억원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월 저축액(원)	69
표 3-3	이자율에 따라 5억원을 20년간 매월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원)	70
표 3-4	MMDA, MMF, CMA 비교	74
표 3-5	주택청약종합저축 약정 이율	76
표 3-6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거주지역/전용면적별)	77
표 3-7	예금자보호 금융상품과 비보호 금융상품 (2020. 09. 기준)	83
표 4-1	거래소 주식 매매거래 시간	108
표 4-2	주식과 채권의 비교	114
표 4-3	특수한 형태의 채권의 비교	116
표 4-4	감사인의 감사의견	121
표 5-1	펀드의 유형	143
표 5-2	투자대상에 따른 펀드의 유형	144
표 5-3	펀드 클래스의 유형	145
표 5-4	개별 주식과 다양한 인덱스 추종 금융상품의 비교	150
표 5-5	ELS의 유형과 손익구조	162
표 5-6	불공정 거래의 유형	167
표 6-1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178
표 6-2	개인신용정보 관리	179
표 6-3	채무조정제도 종류	187
표 7-1	은행 대출 시 사용하는 주요 기준금리	214
표 7-2	대출 상환방식에 따른 상환총액의 차이	215
표 7-3	부채현황	218
표 8-1	2019년 10대 사망원인	230
표 8-2	리스크 속성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법	234
표 8-3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주요 차이점	243
표 8-4	보험업별 보험종목	246
표 8-5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250

표 8-6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장내용	251
표 8-7	보험업종별 특성 비교	252
표 8-8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 비교	253
표 8-9	표준형(상해, 질병)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254
표 8-10	암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	256
표 8-11	갱신형보험상품과 비갱신형보험상품의 비교	257
표 9-1	기대수명 추계 결과(2017~2067년)	273
표 9-2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77
표 9-3	노령연금 수급가능연령	278
표 9-4	연금저축상품 관련 세액공제	280
표 9-5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특성	281
표 9-6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연금설계(예시)	284
표 10-1	인생주기별 재무목표	299
표 10-2	소득지출표의 예시 (202X. 1월~202X. 12월 기준)	300
표 10-3	자산부채상태표의 예시(202X년 12월 31일 기준)	301
표 11-1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	318
표 11-2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6대 판매원칙)의 주요 내용	320
표 11-3	2020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325
표 12-1	유형별 크라우드펀딩의 비교	359
그림 1-1	국민경제의 순환	5
그림 1-2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의 차이	7
그림 1-3	금리 결정	11
그림 1-4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변동 추이	14
그림 1-5	주가지수 추이와 경기변동	20
그림 1-6	주가지수와 변동성지수	23
그림 2-1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31
그림 2-2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34
그림 2-3	물가안정목표 및 대상물가지표 상승률	46

그림 2-4	예금보험의 운영구조	47
그림 3-1	우리나라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 비중	62
그림 3-2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구매단계별 전략	62
그림 3-3	저축기간에 따른 단리와 복리 효과 비교(100만원을 연이자율 4%로 저축)	68
그림 3-4	이자율에 따른 단리와 복리 효과 비교(100만원을 30년 저축)	68
그림 4-1	분산투자자와 투자위험	97
그림 4-2	금융투자상품의 세부 분류	100
그림 4-3	표준투자권유준칙상의 프로세스	102
그림 4-4	재무상태표 양식	118
그림 4-5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119
그림 5-1	계약형펀드의 운용구조	141
그림 5-2	선물의 손익구조	154
그림 5-3	콜옵션의 손익구조	157
그림 5-4	풋옵션의 손익구조	157
그림 5-5	원금보장 Knock-Out형 ELS의 수익구조	161
그림 5-6	주식투자의 손익구조, 원금비보장 Step-Down형 ELS의 손익구조	161
그림 5-7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S 예시	163
그림 6-1	개인신용평가점수 평가요소	182
그림 6-2	채무조정프로그램	186
그림 7-1	가계부채 증가 추이	207
그림 8-1	보험계약의 이해관계자	240
그림 8-2	변액보험상품의 보험료 흐름	248
그림 8-3	공사연계 건강보험체계	258
그림 9-1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71
그림 9-2	연령별 인구구조	271
그림 9-3	기대수명과 기대여명	272
그림 9-4	성별 기대수명 및 남녀 차이 추이	273
그림 9-5	퇴직연금제도	280
그림 9-6	주택연금의 상품구조	284
그림 9-7	연금상품 선택절차	286

그림 10-1	인생주기에 따른 소득과 지출의 변화	297
그림 10-2	재무설계의 과정	298
그림 11-1	금융회사 권역별 민원 건수와 비중(2020년 상반기)	322
그림 11-2	금융분쟁조정 절차	323
그림 11-3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	332
그림 12-1	산업혁명의 단계적 특징	348
그림 12-2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	353
그림 12-3	주요 핀테크 분야별 다양한 서비스	355
그림 12-4	P2P 대출의 구조	358
그림 12-5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적용분야	362

0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Section 01

경제의 순환과 금융

Section 02

경제활동과 금융거래

Section 03

금융의 기능

Section 04

주요 금융지표



0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 학습개요

경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순환하는지 살펴보고, 경제활동과 금융거래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금융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금리, 주가, 환율, 변동성 지수 등 주요 금융지표에 대해 학습한다.

📌 학습목표

- 실물경제와 금융의 연관성을 통해 금융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한다.
- 금리, 환율, 주가, 변동성 지수 등의 금융변수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생각열기

美 금융위기 후폭풍...실물경제 침체 확산

앵커: 미국은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 침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가는 가전제품 유통업체가 사실상 파산했고,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감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양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유통하는 미국 2위의 업체 서킷시티가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1천 5백 개 가까운 매장을 갖고 있는 서킷시티는 다른 유통업체와의 경쟁이 심해진 데다 최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서킷시티의 자산은 34억 달러, 채무는 23억 달러이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납품 대금도 포함돼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업계는 앞으로도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매유통업체의 파산과 폐업이 잇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비관적 전망도 확산되면서 GM의 목표주가 휴지조각과 다름없는 '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실물경제 타격이 확산되자 독일의 도이체 포스트가 소유한 택배회사 DHL은 미국 내 배달망을 없애고 대규모 감원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아펠(도이체 포스트 대표) “우선 5천 5백 명을 감원하기로 했고, 9천 명 정도를 추가로 감원할 예정입니다.”

리포트: 미국 최대 통신장비회사인 노르텔이 1천 3백 명을 줄이기로 했고, 이미 15만 명을 감원한 월가에서는 내년까지 7만 명이 더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무더기 감원에 나서면서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14년만에 최고치인 6.5%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위축이 대량 감원사태를 불러오고 소득감소가 다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

[출처: KBS 뉴스, 2008. 11. 11.]

-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여주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금융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SECTION
01

경제의 순환과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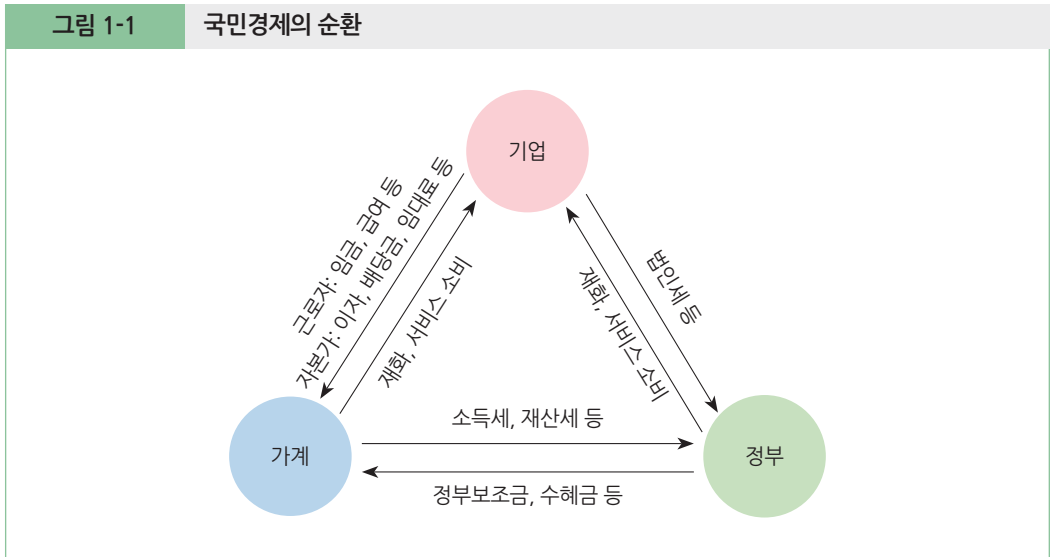
한 나라의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으며, 다시 그 소득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국민경제의 순환이라고 한다. 경제주체는 다양하지만 크게 가계, 기업, 정부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한다. 재화는 의복, 식료품, 주택 등 물질적 형태를 가진 상품이며, 서비스는 교육, 문화, 관광 등과 같이 형태가 없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행위이다. 서비스에는 도소매, 운수, 통신 등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된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 기술혁신, 신시장 개척, 설비투자 등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결국 이러한 활동이 경제성장을 이끌게 된다. 특히 장기성장은 기업의 혁신활동에 의해 주도되므로 기업의 역할은 국민경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다가오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이 중요하다.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가 필요하다. 이를 투입하기 위해 기업은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가계에 배분하는데, 근로자에게는 임금, 급여 등의 형태로 배분하고, 자본가에게는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의 형태로 배분한다. 또한 법인세 등의 형태로 정부에 납부하기도 한다. 기업으로부터 임금이나 급여를 받은 가계는 소득세와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정부에 낸다. 각종 세금의 형태로 정부에 이전된 자금 중 일부는 정부보조금, 수혜금의 형태로 가계에 흘러가기도 한다. 이렇게 경제 내에서 생산된 소득은 가계, 기업, 정부 상호간에 순환된다.

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가계와 정부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한 지출활동을 한다. 가계는 임금, 배당, 이자 등 소득을 이용하여 자동차, 가구, 주택 등 내구재 또는 음식, 의복 등 비내구재에 대해 지출한다. 또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서비스를 구매하기도 한다. 정부는 세금을 이용하여 행정, 국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공공인프라 건설 및 유지에 지출한다.

이렇게 국민경제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분배로, 분배에서 지출로, 지출에서 생산으로 이어지며 순환을 하게 된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에 대한 충분한 소비 수요가 있어야 하고, 가게와 정부가 상품 등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위한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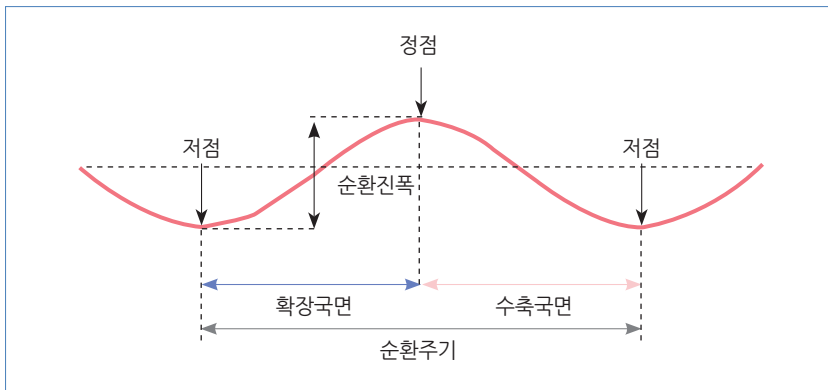
한편 국민경제의 순환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는 생산, 분배, 지출 활동에 있어서 해외부문의 역할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석유, 식량, 원자재 같은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그리고 선박과 같은 상품들은 우리 기업이 생산하였지만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것보다 외국에 수출하는 양이 더 많다. 외국에서 인력이나 자본이 유입되기도 하는데, 중소기업, 건설업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경영 등의 분야에 외국인력이 상당수 종사하고 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은 물론 직접투자의 형태로 외국자본이 유입되기도 한다. 이러한 자본의 유입규모는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확대보기

경기순환

경기는 확장과 수축을 거치면서 순환을 하게 된다. 경기순환은 저점에서 확장국면을 지속하다가 고점을 거친 후 수축국면에 들어간 다음 저점에 이르면 한 번의 경기순환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계청은 1972년부터 경기 저점과 정점을 기록한 월(기준순환일)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0번의 순환을 거쳤고 지금은 2013년 3월에 시작하여 2017년 9월 정점을 기록한 제11순환기에 있다. 1972년 이래 평균 순환주기는 49개월, 평균 확장국면은 31개월, 평균 수축국면은 18개월이었다. 경기확장은 완만하고 길게 진행되는 반면, 수축국면의 기간은 짧은 경향이 있다. 가장 긴 확장기는 54개월 지속한 제11순환기였으며, 가장 긴 수축기 역시 잠정 설정된 2017년 9월의 정점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제11순환기이다.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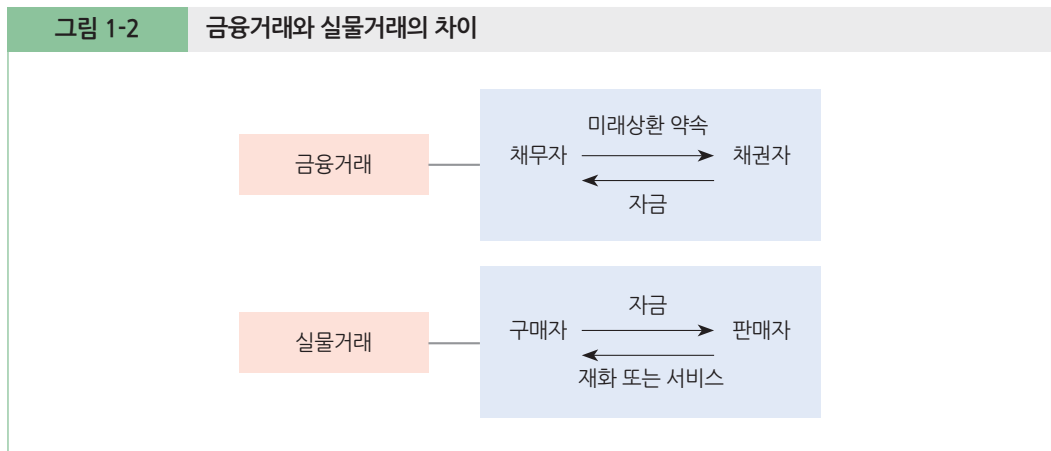
02

경제활동과 금융거래

생산·분배·지출과 같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 간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잘 작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화폐의 양이 충분하고 화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흐름도 원활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생산물의 규모도 크지만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금융시장도 잘 발달되어 있는데 비해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성도 낮고 금융시장도 낙후되어 있다.

경제활동은 자금의 유통, 즉 금융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구입하고 인력을 고용하며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이러한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부족한 자금을 은행 등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발행을 통하여 조달해야 한다. 기업이 가계와 정부에 소득을 분배하고 가계가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금융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경제발전 단계가 낮고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현금거래만으로도 거래가 완료될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거래나 지급·결제에 금융을 통하지 않으면 완료될 수 없다.

이 문제를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실물거래의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자금의 이전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금융거래의 경우 차입자 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미래의 회수를 전제하여 자금이 일방적으로 이전된다. 이때 금융거래가 성사되려면 차입자 또는 투자대상이 채무를 상환하거나 투자수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차입자나 투자대상의 능력이나 의지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차입자·투자대상이 금융계약을 하고 난 뒤에 자금공급자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위험하게 운영하거나 경영을 게을리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차입자·투자대상에 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채무상환이나 투자수익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시스템에서 정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금융의 기능은 금융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로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 첫째, 거래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 교환을 원활하게 한다. 둘째, 자금의 중개 기능을 수행하며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정보 흐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넷째,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내의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한다.

재화와 서비스 교환의 원활화

먼 옛날에는 물물교환을 하기도 했지만 현대사회의 수많은 거래는 금융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인터넷 बैं킹이나 모바일 बैं킹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것도, 자동이체 서비스로 매달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 것도 모두 금융을 통한 거래 행위이다. 이제는 멀리 떨어진 사람과의 거래,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거래, 사용하는 화폐가 서로 다른 거래에 대한 결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현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자상거래, 가상통화와 같이 수많은 결제수단이 등장하였다. 금융은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가계는 실직 등으로 고용상태가 변할 수 있으며 임금상승률도 매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기상황에 따른 매출의 증감이 상당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변동성이 더 높다. 이러한 소득의 변동성은 소비나 교육 등의 지출 행위를 크게 제약할 수 있는데, 개인이나 가계는 금융을 통해 소득과 지출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 지출에 비해 소득이 많을 때에는 저축 등을 이용하고,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을 때에는 대출 등을 이용함으로써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¹ Greenbaum, Thakor and Boot, *Contemporary Financial Intermediation*, 4th Edition, Academic Press, 2019.

자금 중개

금융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중개기능을 수행한다. 사람들이 금융회사에 저축을 하면, 금융회사는 이 돈을 모아서 돈이 필요한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에 빌려주고, 대출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을 예금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전형적인 자금의 중개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서 채권이나 주식을 통한 금융 중개도 활발하다. 정부나 기업이 국채나 회사채를 발행하면 금융회사가 이런 채권을 인수하여 예금자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데 이 경우도 흑자 주체로부터 적자 주체로 자금을 이동을 중개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자금 중개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기도 하고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서 가격(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한다. 또 자금의 만기나 크기를 재조정하여 자금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한다. 따라서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은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의 중개 및 배분 과정에서 원활한 정보의 생성 및 공급이 필요하다.

위험관리 수단 제공

금융시장은 투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관리수단을 제공한다. 경제학에서 위험(risk)은 경제현상이나 결과가 예상이나 기대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금융이 잘 작동하면 불확실성이나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시장에 판매되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하거나 옵션이나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을 위험관리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경제 주체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투자기회 제공

금융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소액 예금자들의 돈을 모아서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거나 단기간 저축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장기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돈을 공급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금융시장은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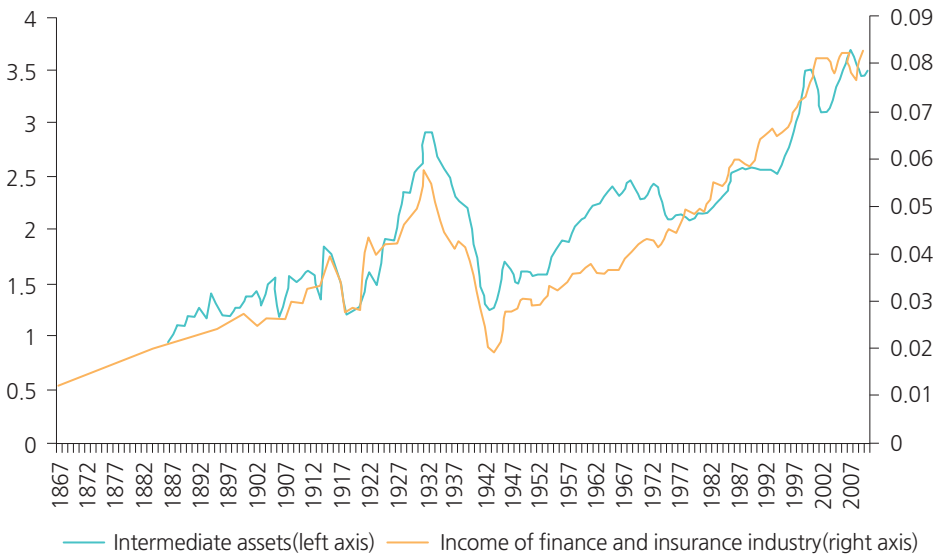
확대보기

금융과잉(Too much Finance)

금융의 주요 기능이 경제활동이나 대규모 투자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므로 금융부문의 발전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견해였다. 여러 학자들은 『금융발전 →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과잉이 경제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즉, 금융부문이 지나치게 팽창하는 경우 경제 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2008년 금융위기까지 GDP 대비 미국의 금융 중개자산 및 금융산업 이익 등 금융분야의 현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금융의 과잉성장이 이뤄진다면, 우수인력이 금융분야에만 집중되는 등 경제자원의 과도한 금융집중이 일어나 다른 분야의 성장을 억제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금융자산의 가격이 실질가치를 초과하는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중개 자산 및 금융산업 소득의 GDP 대비 비율 추이〉



출처: Greenbaum, Thakor and Boot, *Contemporary Financial Intermediation*, 4th Edition, Academic Press, 2019.

SECTION
04

주요 금융지표

1 금리(이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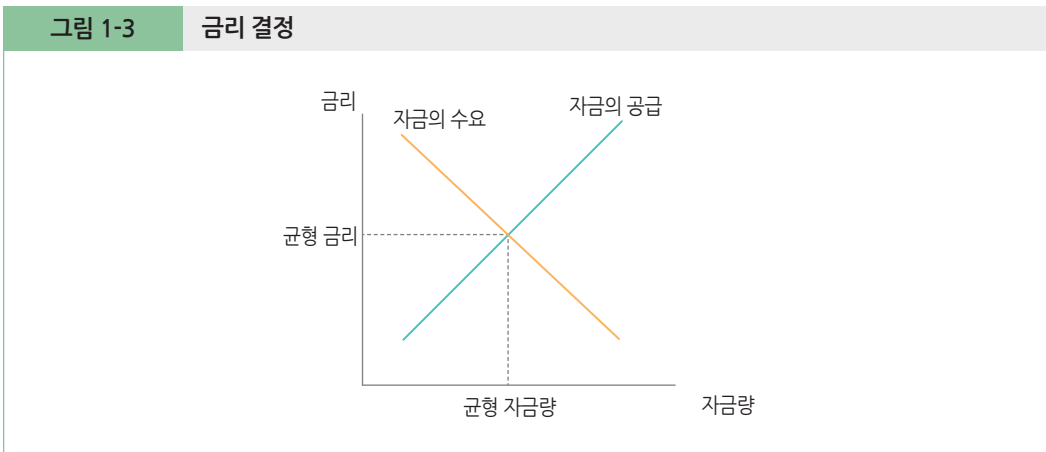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유자금을 금융회사에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반대로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받기도 한다. 이때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기간 돈을 사용한 대가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것을 이자라고 하며, 기간당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한다. 이자의 크기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자율을 표시할 때는 기간을 명시하게 되는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 5%로 1년간 100만원을 대출 받는다고 하면, 돈을 빌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금리의 결정

상품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금리도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자금을 대한 수요는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에 영향을 받고 자금의 공급은 가계의 저축행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금을 대한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금리가 변동하게 된다. 즉, 자금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는 상승하고 반대로 자금공급이 늘어나면 금리가 하락한다. 예를 들면, 경기가 상승하면 기업들은 생산과 고용을 늘리고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림 1-3

금리 결정



이때 자금의 공급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으면 더 높은 금리를 주어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반면에 가계와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하락한다.

금리의 결정요인에는 물가변동률도 포함된다.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공시하는 예금 및 대출 금리와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국고채 및 회사채 금리는 이러한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금리이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가 실질금리이다. 실제로 가계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명목금리만을 감안하여 예금을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리 1.5%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했으나 물가상승률이 연 2%인 경우, 실질금리는 대략 -0.5%가 되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다.

신용도 역시 금리에 영향을 준다. 개인 또는 기업마다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데에 따른 위험이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신용위험을 감안하여 금융회사는 같은 금액을 빌려주더라도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에는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금리의 영향

금리의 변동은 가계 소비, 기업 투자 및 물가수준, 국가 간 자본이동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가계는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소비하거나 저축하는데, 이때 얼마나 소비하고 저축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금리이다. 금리가 오르면 저축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증가하므로 가계는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다. 반면 금리가 하락하면 미래 소비를 줄이고 현재 소비는 늘리기 위해 저축을 줄이게 된다. 주택, 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을 위해 큰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가계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얼마나 대출을 받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금리이다.

금리는 기업의 투자활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자금을 빌리는 입장에서 볼 때 금리는 자금조달의 비용이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금리는 물가와도 영향을 주고 받는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을 위한 자금조달비용이 늘어나 상품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위축으로 인해 경제의 전체적인 물품수요가 감소하여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개방경제 하에서 금리는 국가 간 자금흐름에도 영향을 준다. 국내 금리보다 외국 금리가 높

을 경우, 국내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외국자금의 유입이 줄어든다. 반대로 국내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이 줄어들거나 외국자금의 국내유입이 늘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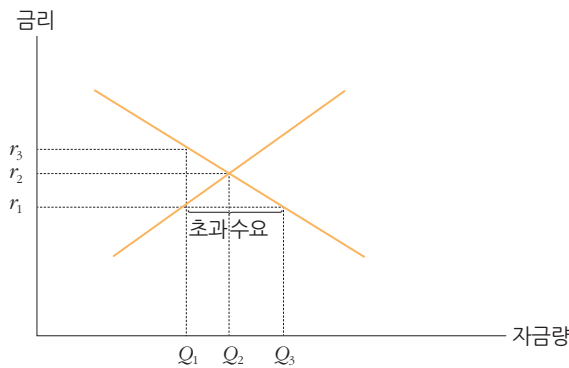
이처럼 금리는 가계소비, 기업투자, 물가 등 실물부문뿐만 아니라 국가 간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시장금리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전체의 흐름을 안정화시킨다.

확대보기

신용할당과 금리

앞에서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신용할당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금리가 균형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자문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아래 그림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자금시장의 수요·공급과 신용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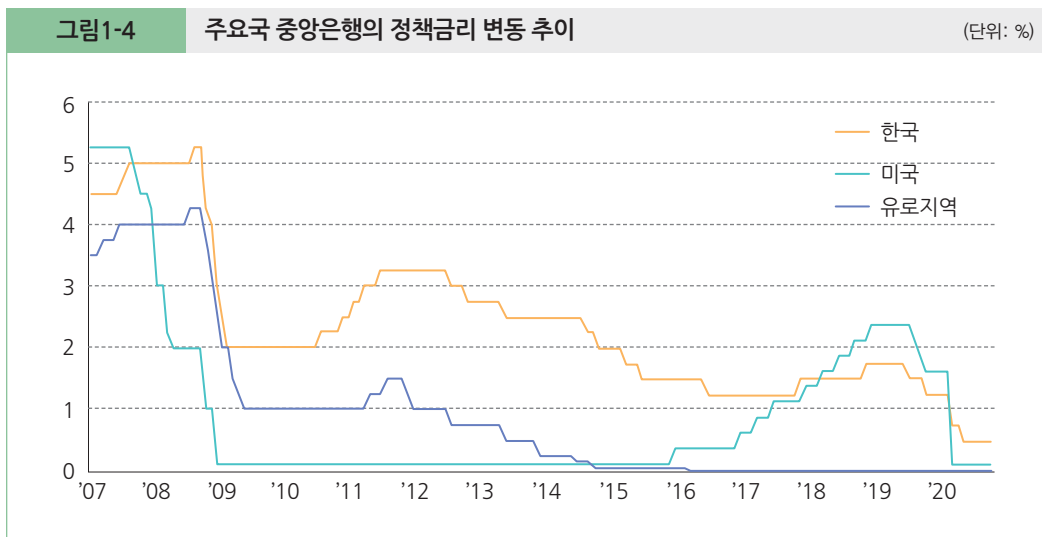


위 그림에서 자금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금리와 자금량은 (r_2, Q_2) 이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차입자들의 신용위험 차이가 나타나 있지 않다. 현실의 차입자들은 신용위험이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문제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차입자(대출신청자)의 신용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만일 은행이 대출금리를 r_2 로 정한다면 신용위험이 높은 차입자들이 주로 신청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차입자들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불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출금리가 r_1 으로 낮아지면 신용위험이 높은 차입자들과 신용위험이 낮은 차입자들이 모두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 규모는 Q_3 로 늘어난다. 은행은 금리가 r_1 이라면 대출을 Q_1 만큼만 공급하기 때문에 결국 $Q_3 - Q_1$ 크기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중요한 점은 대출을 받아간 차입자들 중에는 신용위험이 높거나 낮은 차입자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r_1, Q_1) 은 금리도 낮고 자금량도 작아서 은행의 수익이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r_2, Q_2) 규모의 대출보다 신용위험이 낮은 수요자를 선별하여 대출할 수 있으므로 신용위험관리 측면에서 은행에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신용위험을 감안하여 은행들이 (r_1, Q_1) 을 선택하는 현상을 자발적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라고 한다. 신용할당 현상은 실증적으로도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

금리의 종류

①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국내 물가, 경기 및 금융·외환시장 상황, 세계경제의 흐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정책금리이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하는 과열양상을 보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반대로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는 침체양상을 보이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경제 전반에 다양한 경로로 그 영향이 파급된다. 이러한 파급경로는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경이 실물경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준금리 변동은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을 주거나, 주식, 채권, 부동산, 외환 등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에 영향을 주어 실물경제 및 물가를 변동시킨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확대보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12개의 지역연준, 연준이사회 및 공개시장위원회로 구성된 다. 이 중 공개시장위원회는 7명의 연준이사회 위원, 뉴욕연준 의장 및 투표권이 있는 4개의 지역연준 의장으로

구성되는데, 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는 미 연준 기준금리(Fed fund rate) 목표수준을 결정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는 공개시장조작을 명령하여 미 연준 기준금리가 목표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들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받게 된다. 신흥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신흥국 금융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외화자금이 신흥국에서 이탈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신흥국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본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실물부문에서 수출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경제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② 시장금리

시장금리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말한다.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리와 장기금리로 나눌 수 있다.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나 거래금액이 크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단기금리이다. 단기금리의 예로는 금융회사 간에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콜금리, 판매자가 다시 사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 거래인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ing agreement)과 무기명 예금증서인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의 수익률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장기금리는 1년 이상 금융상품의 수익률이다. 1년 이상의 국공채, 회사채 그리고 금융채 등의 수익률이 대표적인 예이다.

장기금리는 현재 및 미래의 단기금리,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 등에 따라 결정된다. 즉,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의 합성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물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것을 다섯 번 반복하면 5년물 국채에 투자하는 것과 흡사하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장기 투자는 단기 투자를 반복하는 것보다 불확실성이나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단기금리가 앞으로 똑같은 수준에서 유지되더라도 장기금리는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여신금리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예금 및 대출 금리는 1980년대 말까지 대부분 정부의 규제를 받아왔으나 1990년대 들어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각 금융회사가 시중자금사정, 고객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할 때 적용하는 여신금리는 코픽스(Cost of Funds Index)나 CD 유통수익률과 같은 준거금리를 기준으로 차입자의 신용상태, 차입기간, 담보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한편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수신금리는 예금의 특성, 규모, 만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환율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하여 우리 국민들도 외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많이 여행을 온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석유 등의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 등 상품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과의 거래에서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로는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로 결제해야 한다.

국가 간 화폐의 교환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 화폐 1단위에 상응하는 원화 가격을 환율로 표시하는 자국통화표시법을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라는 것은 1달러를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이 1,000원이라는 것이고 유로(euro) 환율이 1,300원이라는 것은 1유로의 가격이 1,300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 돈을 외국 상품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환율은 다른 상품의 가격처럼 외국 돈 한 단위의 가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100달러를 환전하는 것, 즉 100달러를 구입하는 것은 개당 1,000원인 상품을 100개 구입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환율을 표시할 때는 외국 돈 1단위당 원화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환율의 단위는 ₩/\$, ₩/€와 같은 것이 된다(예: 1,000원/달러, 1,300원/유로).

환율의 결정과 변동

환율은 우리나라 원화와 다른 통화 간의 교환비율로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결정된다. 외화의 수요는 상품 및 서비스 수입, 자본유출, 내국인의 해외투자, 내국인의 해외여행 등에 의해 발생하고, 외화 공급은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자본유입, 외국인의 국내투자, 외국인의 국내여행 등에 의해 발생한다.

먼저 외화의 공급 측면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금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상승하면 금융자산의 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입된다. 반대로 외국 금리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외국으로 자본이 유출된다. 가령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빠져나가면 외화의

공급 감소로 인하여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반면 수출이 늘어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12년 이후 크게 늘어났는데,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 변동에 대한 원인을 외화의 수요 쪽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수입 증가, 국민들의 외국여행 증가 그리고 자본의 유출이 일어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화폐, 즉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환율 상승을 '원화 약세'라고 하고 환율 하락을 '원화 강세'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따라서 원화가치 하락, 원화 약세, 원화 절하는 모두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면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외화의 가치는 올라간 것을 말한다. 외화의 입장에서 보면 외화가치 상승과 환율 상승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확대보기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

환율정책은 나라마다 그 결정방식이 다른데, 크게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고정환율제도보다 빠르게 조정된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많은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시장에 의한 환율 결정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참가하여 환율의 변동 속도를 조정(smoothing operation)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환율의 영향

환율 변화는 경제주체들의 외화수요 또는 공급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따라서 환율 상승은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이나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흔히 불경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통화정책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국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환율정책을 사용하기도 한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제 시장에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우리 경제에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자재 및 부품 등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 기계류 가격도 올라서 투자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또한 가계의 경우에는 해외여행 비용이 상승하고, 기업의 경우에도 외화표시 부채의 상환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

환율이 높거나 낮은 것 중 어느 것이 우리 경제에 더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율 변동성이 높은 것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질 때에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킨다. 예를 들면, 투기세력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수하면 환율은 크게 변동하게 된다. 이때 정책당국은 외환보유액을 이용하여 외환시장을 진정시킨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외화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교란 시 환율 안정을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예) 환율 변동과 상품의 가격

수입품과 수출품의 가격을 환율을 이용해 계산하여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자. 국산품의 수출 가격은 국내 가격을 환율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수입 상품의 국내 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에 환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 환율이 \$1=1,200원일 때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6만원인 상품의 수출가격은 \$ ① 이다.
: 수출가격(달러) = 국내가격/환율 ⇒ (60,000₩)/(1,200₩/\$) = \$ ①
- 환율이 \$1=1,200원일 때 국제 시장에서 \$100인 상품의 국내 시장가격, 즉 수입가격은 ₩ ② 이다.
: 수입가격(원) = 국제가격×환율 = \$100×1,200₩/\$ = ₩ ②
- 만약 환율이 \$1=1,200원에서 \$1=1,250원으로 상승하면 \$ ① 의 값은 \$ ③ 로 바뀌고, ₩ ② 의 값은 ₩ ④ 로 바뀐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의 국제시장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생기고 수입품의 국내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정답: ① 50 ② 120,000 ③ 48 ④ 125,000)

3 추가

주식과 주식시장

주식은 주식회사가 자본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주식시장은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인 기업들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개인들은 여유자금의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다. 주식시장이 없다면 기업들은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주식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발행시장은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이 발행되는 시장이고, 유통시장은 발행 이후의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라 하면 유통시장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은 크게 유가증권시장(KOSPI market), 코스닥시장(KOSDAQ), 코넥스시장(KONEX)이 있다.

주가지수와 경기변동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종목의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은 가격이 올라가고 또 어떤 주식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도 한다. 주식시장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주식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index)가 필요하다. 주가지수를 작성하는 원리는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것과 같다. 지수 작성의 목적에 맞추어서 특정 종목군의 주식을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인지 하락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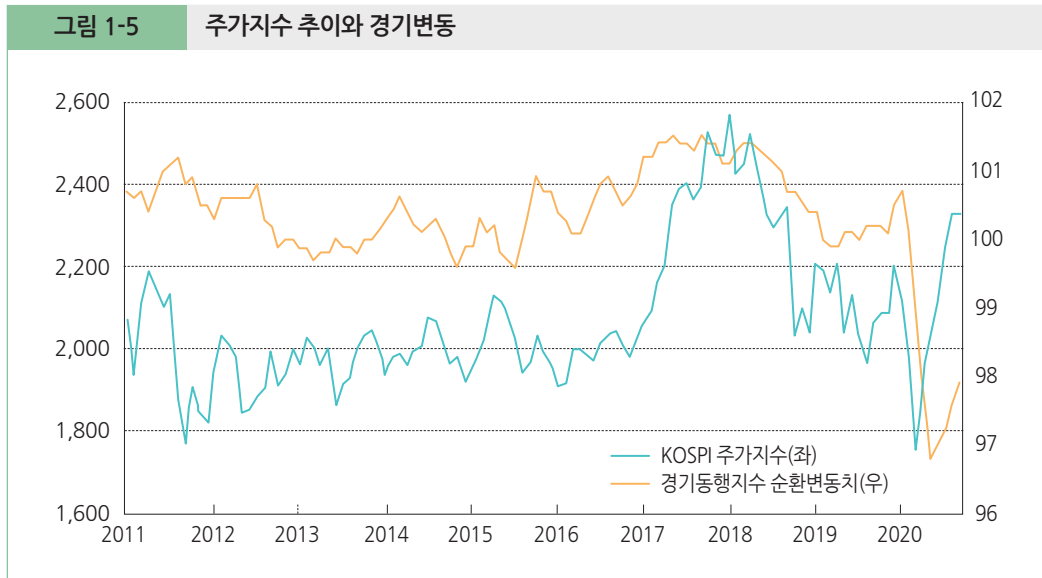
$$\text{주가지수} = \frac{\text{비교시점의 시가총액}^2}{\text{기준시점의 시가총액}^2} \times 100$$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지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며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지면 주가지수가 상승하고 반대로 불경기나 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면 주가는 하락한다. 따라서 주가지수의 변동은 경제상황을 판단하게 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통화 공급이 늘어나거나 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기업의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지수는 상승하게 된다.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투자도 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반대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 주가지수가 하락한다. 이 밖에도 주가지수

2 상장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일정시점의 상장주식주에 주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는 국내의 정치상황이나 사회변동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코스피(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는 우리나라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의 시가총액을 1980년을 기준지수 100으로 했을 때와 비교한 지수이다. 현재 코스피가 2000이라고 한다면 주식의 시가총액이 1980년보다 20배로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중에서 거래량이 많고 대표성이 있는 주식 200종목을 선정하여 별도로 주가지수를 만든 것이 코스피200(KOSPI 200)이다. 이 지수는 1990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작성된 지표이다. 코스닥(KOSDAQ Composite Index)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주가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1996년에는 기준지수가 100이었지만 2004년에 기준지수를 1,000으로 변경하여 작성하고 있다.

주요국의 주가지수

18세기에 출범한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New York Stock Exchange)는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이다. 원래는 미국 기업들의 주식만 거래하였지만 지금은 외국 기업들도 상장되어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

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500지수 등이 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 Dow Jones Industrial Average)는 경제 전반에 걸친 30개 대형 제조업 기업들의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수는 단순가격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가지수이다. 한편 S&P500지수(Standard & Poor's 500 Index)는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대형주로 구성되며 미국 주식시장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미국의 산업기술주를 주로 거래하는 나스닥(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시장은 1971년부터 주로 정보통신과 산업 기술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전산으로 매매한다. 나스닥지수(NASDAQ Composite Index)는 나스닥 증권시장에 등록돼 있는 주식을 가중평균하여 구한 지수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일본의 니케이지수(Nikkei Stock Average Index), 홍콩의 항셱지수(Hang Seng Index),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Sanghai Composite Index) 등이 있다.

세계주가지수

세계주가지수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서 MSCI와 FTSE 지수가 대표적이다. 먼저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는 미국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지역별 지수, 산업별 지수 등 다양한 지수가 편제되고 있다. 전세계지수(ACWI: All Country World Index), 선진국지수(WI: World Index)와 신흥국지수(EMI: Emerging Markets Index) 등이 대표적인데 한국은 신흥국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FTSE지수는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International에서 작성·발표한다. 선진지수(Developed Index), 선진신흥지수(Advanced Emerging Index), 신흥지수(Secondary Emerging Index) 및 프런티어지수(Frontier Index)로 구분되는데 한국은 2009년부터 선진지수에 포함되어 있다.

주식시장의 다른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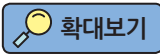
주식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주가의 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주가지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지만 주식시장의 규모나 유동성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도 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수량인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중요한 지표이다.

사람들이 사업실적이나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한다. 반대로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고 경제 상황이 비관적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주식을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어 거래

량이 감소하고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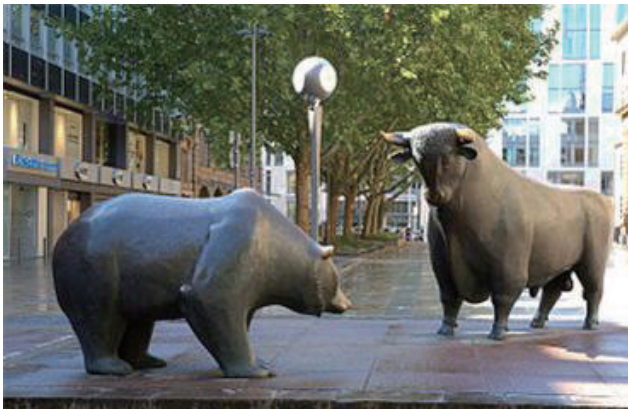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변동하기 전에 거래량이 먼저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즉, 주가가 상승하는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매수 세력이 크게 늘어나 거래량이 증가하나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거래량이나 거래금액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규모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



Bull Market과 Bear Market

실업률이 낮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서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호황을 보이는 시장을 Bull Market 또는 강세장이라고도 부른다. 반대로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은 Bear Market 또는 약세장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용어는 두 동물이 공격할 때의 모습을 빗대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황소는 싸울 때 뿔을 위로 치받는 반면 곰은 앞발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기 때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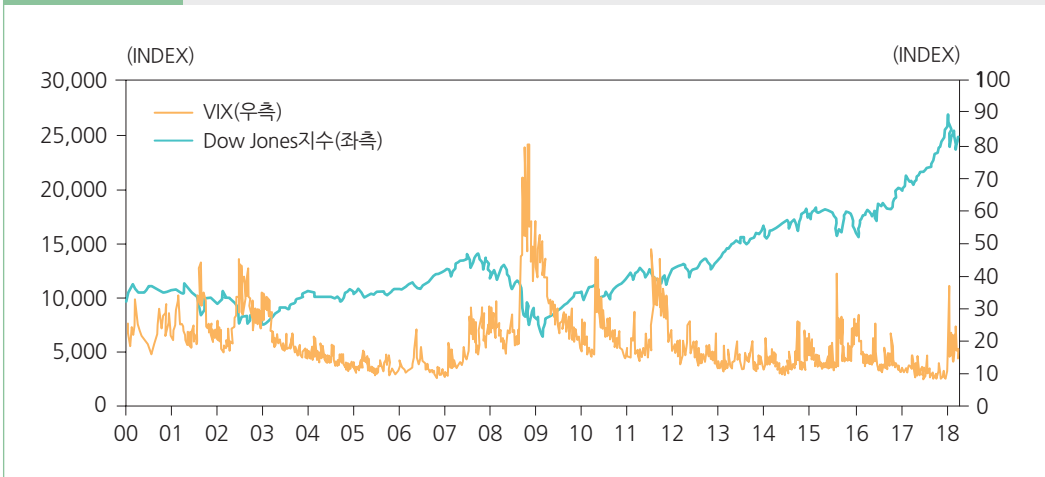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 앞에 있는 황소와 곰 동상

4 변동성지수

금융시장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며 시장위험의 원천이 된다. 주식, 채권 등 금융상

그림 1-6 주가지수와 변동성지수



출처: 한국은행(<http://www.bok.or.kr>)

품의 가격이 변동하는 정도를 이용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변동성지수 (Volatility Index)이다. 이 지수는 옵션가격결정이론을 토대로 산출된다. 옵션가격을 바탕으로 옵션시장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기초자산가격(주가지수 등)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변동성지수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주가지수 상승 시에는 변동성지수가 떨어지고, 반대로 주가지수 하락 시엔 변동성지수가 오른다. 이처럼 변동성지수의 상승은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포지수’로 지칭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변동성지수로 미국의 VIX와 유럽의 VSTOXX 등을 들 수 있다. VIX(Volatility Index)는 미국 시카고 선물옵션거래소(CBOE: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에 상장되어 있는 S&P500 지수 옵션가격에 내재되어 있는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VSTOXX지수는 유럽의 대표 주가지수인 EuroStoxx의 변동성지수로 EuroStoxx50 지수의 옵션가격으로부터 산출된다.

- 경제활동은 경제주체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한 국가의 경제는 생산·분배·지출의 과정을 반복하며 순환한다. 생산·분배·지출과 같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 간에 일어나는 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화폐의 양이 충분해야 하고 화폐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 국민경제의 순환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는 생산, 분배, 지출 활동에 있어서 해외부문의 역할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석유, 식량, 원자재 같은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 금융의 기능은 재화와 서비스 교환의 원활화, 자금중개, 위험관리 수단 제공, 투자기회 제공 등이 있다.
- 금리는 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가격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기 과열 시에는 물가가 안정될 수 있고 외국자본의 유입이 늘어나서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 환율은 외국 돈의 가격이면서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환율(w/\$)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반대로 수입상품의 가격은 상승하여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외국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때는 국가 간 수익률 차이뿐만 아니라 만기 시의 환율 변동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해외 투자의 경우에 만기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로 환산할 때 실제 수익은 감소할 수 있다.
-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을 주가라고 하는데 주식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지수화한 것이 주가지수이다. 주가지수는 주식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에는 코스피(KOSPI)가 있다.



예시문제

서술형

- 01 생산·분배·지출과 같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경제는 선순환을 하며 발전할 수 있다. 경제가 선순환하기 위해 금융이 하는 주된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

.....

- 02 금리·주가·환율 등의 금융지표를 통해 우리는 실물경제 상황을 알 수 있다. 금융지표별 움직임에 따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

.....

- 03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왜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있는 외국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설명하시오.

.....

.....

빈칸 채우기

- 01 연리 2.0%의 3년만기 정기예금을 가입한 경우 물가상승률이 연 1.0%라면 실질금리는 약 이다.

- 02 실제 경제성장률이 수준을 상회하는 과열양상을 보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 03 이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시장이라고 한다.

 O·X 문항

- 01 국민경제의 순환은 생산, 분배, 지출 활동 등을 통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수출입이나 자본유출입 등의 활동은 세계경제의 순환을 구성한다. ()
- 02 실물거래의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반대급부가 자금의 이전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금융거래의 경우 차입자 또는 투자대상으로부터의 미래회수를 전제하여 자금이 일방적으로 이전된다. ()
- 03 환율(W/\$)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02

금융상품,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Section 01
금융상품

Section 02
금융시장

Section 03
금융회사

Section 04
금융유관기관



02

금융상품,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속성을 살펴본다.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 및 금융자산을 개발·운용·판매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그리고 민간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유관기관의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 학습목표

- 주요 금융상품의 기본 속성을 구별할 수 있다.
- 금융시장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들의 역할을 파악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금융유관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이해한다.

📌 생각열기

윤석현 원장 “소비자 위한 ‘보이는 손’ 필요”

윤석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2020년 6월 1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헤럴드 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불완전 경쟁의 결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규제라는 ‘보이는 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정부가 공개되고 소비자 편향도 없는 완전한 자율경쟁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적용되겠지만 금융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 소비자가 만족해야 금융회사도 발전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 “결함이 있는 금융상품



을 만들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결국 금융 안전성도 손상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시스템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비자 편향, 금융사와 소비자간 이해 상충 관계 등을 이유로 소비자 보호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금융파생상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고 하이브리드나, 부동산, 해외 등 투자 대상은 확대되는데 금융 교육은 부족해 비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꼬집었다.

윤 원장은 “전통경제학에서 경제적 인간은 완전한 정보 하에서 최적의 선택이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편향과 어림짐작으로 불완전한 선택을 하고 금융사가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윤 원장은 금융사들이 수요자 중심 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사와 소비자는 본질적으로 이해상충 관계인데 실적을 중시하는 성과 제도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급자 중심의 혁신금융이 되려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2020. 6. 17.]

- 금융소비자가 일상에서 필요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는 무엇일까?
- 금융시장에는 어떤 금융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금융회사는 항상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할까?
-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SECTION
이

금융상품

일반 시장에서 상품들이 거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상품이 거래된다.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즉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크게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서는 금융상품의 종류를 살펴본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출상품의 경우 차입자의 신용도나 담보로 제시할 자산이 있느냐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도 보험 가입자의 사고 경력이나 나이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에서는 찾기 어려운 점이다.

저축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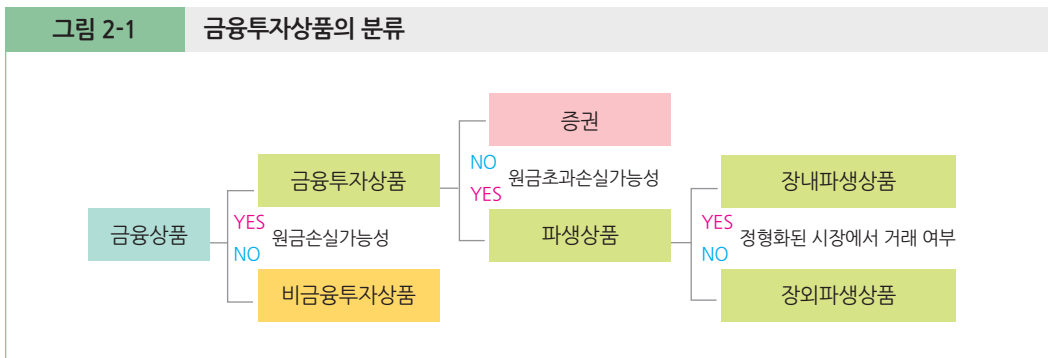
안전성·수익성·유동성을 기준으로 보면 저축상품은 수익성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저축은 목적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목돈마련을 위한 정기적금, 목돈을 불려나가는 거치식 예금인 정기에금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통예금은 이자가 아주 낮은 대신에 입출금이나 송금이 자유롭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결제 계좌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출상품

대출이란 돈이 필요한 가계나 기업 등에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 상환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수취한다. 대출상품은 주택이나 자동차, 예금 등을 담보로 저당권·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담보대출과 담보 없이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신용대출로 나눌 수 있다. 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자산을 매각하여 원금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낮다.

금융투자상품

금융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투자성이란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장래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투자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손실을 볼 위험도 있다. 금융투자상품 중 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이 있고, 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파생상품 등이 있다.



보험상품

보험은 질병, 재해, 사망 등 각종 사고와 같은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금융상품이다.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약정된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상품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주된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이 있고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 있다. 또한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이 있다. 그 외에 보증보험, 재보험 등이 있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 많고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특히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연금상품

연금상품은 저축이나 투자상품처럼 구조면에서 다른 상품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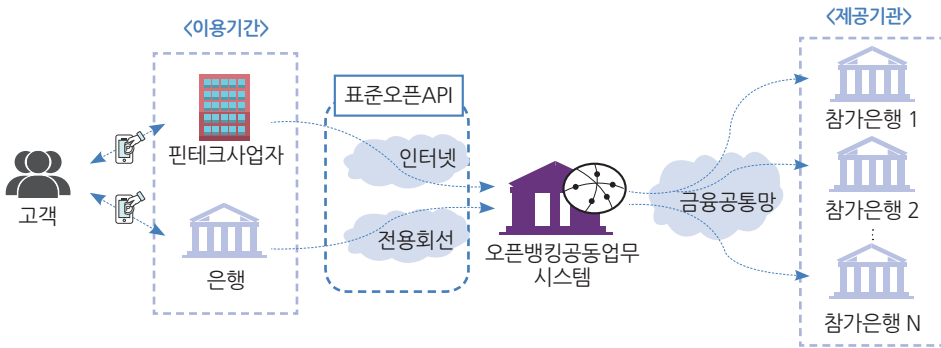
적인 노후생활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형태가 다양하다. 개인이 금융시장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상품은 세액공제¹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발생한 이자나 수익에 비과세²하는 연금보험이 있는데,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된다. 그 밖에도 즉시연금, 월배분형 연금펀드 등 다양한 연금상품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공통적인 특성은 유동성이 매우 낮게 설계된다는 점이다. 노후 준비라는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꾸준히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연금상품의 가장 큰 특성이기 때문이다.

확대보기

새로운 금융서비스 형태

오픈뱅킹(open banking)은 금융회사(정보제공기관)가 보유하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3자(정보수취기관)에게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자 금융회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판매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가능하게 했다. 2019년 10월 30일 시범 운영이 시작돼, 같은 해 12월 18일 정식 가동됐다. 이와 같은 오픈뱅킹의 핵심은 API이다. API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자신들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동작하게 할 때 사용하는 명령문, 송수신하는 데이터 형식 등을 정하는 것이다. 오픈뱅킹에 따라 핀테크기업 등 신규 진입업체들이 은행과 고객의 중간에서 고객의 결제지시를 대행하거나 계좌정보를 포함한 금융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대출이나 예금 등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오픈뱅킹의 기본 구조〉



출처: 금융감독원, 은행과 핀테크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 (보도자료, 2019. 12. 18.)

- 1 납부자가 부담하는 세금액 중 일부를 빼주는 것을 말한다.
- 2 원래는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대상이나, 어떤 목적 등을 위해 아예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오픈뱅킹의 도입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우선 고객 관점에서 제3자 신규업체 등과의 정보 공유에 따라 거래 개선, 상품에 대한 접근과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업자의 관점에서는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 및 신규시장 진출 기회가 제공된다. 둘째, 오픈뱅킹은 종래의 은행-고객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고객 중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셋째, API를 통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분화'(unbundling) 및 '재결합'(rebundling)이 활발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픈뱅킹은 은행에 대한 접근성 및 경쟁 강화, 금융정보의 신속한 전파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SECTION 02

금융시장

1 금융시장

농산물 시장에서는 농산물 생산자인 농부가 공급자가 되고 일반 소비자들이 수요자가 되며, 거래되는 상품은 쌀·콩·채소·과일과 같은 농산물이다. 금융시장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상품이 있어야 한다. 금융시장이란 기업, 가계,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가 금융거래를 하는 곳이다.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자금수요자의 하나는 기업이다. 기업은 생산을 위해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근로자를 고용한다. 특히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상당한 자금을 동원해야 한다. 가계도 자동차나 주택 구입과 같이 일시적으로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들의 소득만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수요자가 될 수 있다. 정부 역시 조세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자금의 수요자가 된다. 이 밖에 외국도 자금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될 수 있다.

자금의 공급자는 본인들의 수입이나 소득이 지출보다 큰 사람들로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돈을 증식시키려고 한다. 이들은 저축뿐 아니라 채권이나 주식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구입하여 이자나 배당소득 그리고 매매차익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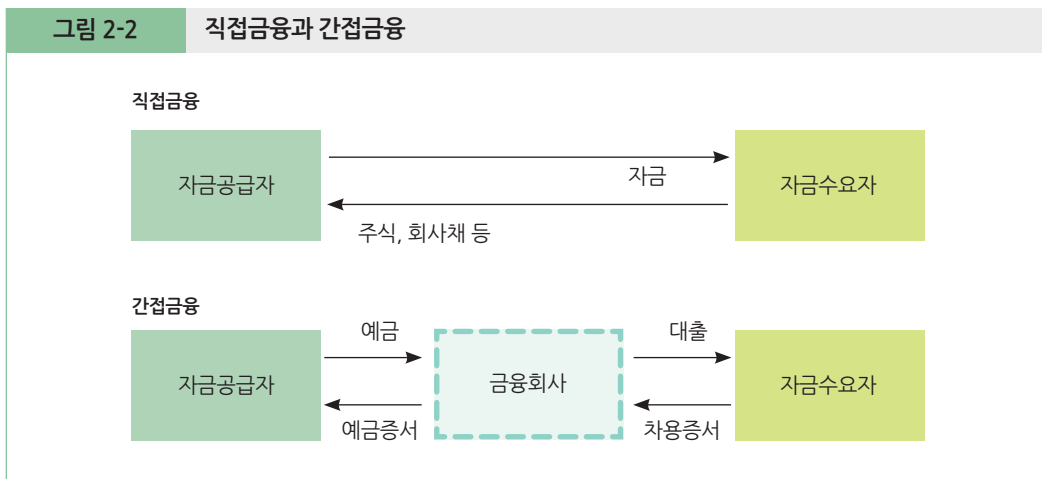
2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직접금융은 기업과 같이 자금의 수요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매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금융시장에서 회사채나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회사채(채권)는 기업이 일정기간 후(반기)에 정해진 액면금액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말하며,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직접금융은 기업들이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장기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에 용이하다. 그러나 주식의 발행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고, 회사채의 발행은 신용도에 따라서 높은 금리를 지불하거나 발행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정부도 직접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간접금융은 직접금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개입하는 형태이다. 은행이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서 간접금융의 자금거래는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금의 공급단계로 자금공급자가 금융회사에게 자금을 맡기고 금융회사는 자금공급자에게 예금증서 등을 교부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금의 수요단계로 금융회사가 자금을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차용증서를 교부받는 단계로 구성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간접금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금융계약의 성격이 변화



한다는 점이다. 직접금융의 경우에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나 주식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반면 은행의 간접금융에서는 예금자와는 예금계약을, 대출자와는 대출계약을 맺게 된다. 예금과 대출이 서로 다른 금융상품인 것은 자명하다. 대출은 일반적으로 예금에 비해 만기가 길며, 유동성이 낮고, 부도위험이 높다. 이처럼 간접금융의 과정에서 금융계약의 성격이 변화되는 것을 자산변환(qualitative asset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른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산변환 기능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만기의 차이에 따른 금리위험, 유동성의 차이에 따른 유동성 위험 및 부도위험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이 된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의 차이(NIM: Net Interest Margin)는 은행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다.

3 금융시장의 종류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자금시장)과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상품의 만기란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되돌려 받거나 갚아야 하는 기한이다.

단기금융시장에서는 콜(Call),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등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자산이 거래된다. 콜시장은 금융회사 상호간에 자금과부족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초단기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콜거래는 최장 90일 이내로 만기가 제한되어 있으나 거래물량의 대부분을 익일물이 차지하고 있다.

기업어음은 신용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양호한 기업 또는 금융회사가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이다. 기업어음은 기업 등 발행자가 자기신용을 이용하여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자금공급자에게는 단기자금 운용수단이 된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권으로서 요구불예금증서와 정기예금증서가 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기업어음과 마찬가지로 할인방식으로 발행되며 발행금리는 발행금액 및 기간, 발행 금융회사의 신용도,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장기금융시장은 자금수요자가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 발행 또는 유통되는 시장이다. 장기금융시장은 보통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회사채,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이 거래되는 채권시장과 만기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금융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발행시장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시장이고,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나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시장이다. 유통시장에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선물시장 등이 있는데, 만기가 정해진 상품일지라도 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시장가격도 이곳에서 결정된다.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은 발행시장에서 인기가 없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발행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규모가 작고 가격이 낮은 주식이나 채권은 유통시장에서도 인기가 없다. 이와 같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

유통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거래소시장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장소와 거래의 형식이 일정하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집중되고 가격 및 거래정보가 누구에게나 잘 알려지며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장외시장은 특정한 규칙 없이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가 증권과 파생상품의 원활한 거래와 가격형성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에는 주식·채권 등을 거래하는 증권거래소, 선물 및 옵션을 거래하는 선물거래소, 기술주 중심의 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증권시장 등 3곳을 한국거래소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는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및 파생상품 등을 모두 거래하고 있다.

장외시장은 주로 증권회사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증권회사는 매도 또는 매수를 원하는 투자자와 반대거래를 원하는 상대방을 연결시켜 거래를 중개한다.

SECTION
03

금융회사

1 금융회사의 종류

금융회사가 오랜 역사를 통해 사회의 요구에 맞춰 발전하게 되면서 점차 금융회사 사이에 분업이 나타나게 되었다. 금융회사는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금융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1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현황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우체국예금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
기타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사업금융사)

2 은행

은행은 예금 또는 채무증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계 등에 대출하는 금융회사이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거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일반은행,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거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특수은행,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구분된다.

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그리고 겸영업무로 구분된다. 은행법에 규정된 은행의 고유업무는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 발행,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및 내·외국 환이다. 부수업무는 이와 같은 은행의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채무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보호예수 등이 있다. 겸영업무는 다른 업종의 업무 중 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업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매매·중개업 및 투자자문업, 신탁업,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사업 등이 있다.

한편 은행은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주로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은행은 수출이나 산업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이익이 낮아서 일반은행들이 참가하지 않는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특수은행으로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1954년 전후 복구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 미래성장동력 발굴,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며, 중소기업은행은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은행이다. 농협은행은 농업인과 농업협동조합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수협은행은

어업인과 수산업협동조합에 필요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확대보기

은행의 기원

은행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많은 문헌에서 유럽의 금(金) 세공업자로부터 은행이 탄생했다고 전하고 있다. 과거 금이 돈을 대신하여 거래되던 시기에는 금이 부피와 무게 제약으로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았고 간혹 중량과 순도에 있어서 말썽이 나기도 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약간의 보관료를 지불하면서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겼는데, 이는 금 세공업자가 튼튼한 금고로 가지고 있어 안전한 보관이 가능하고 순도 또한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사람들이 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보다 금 세공업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이용해 상거래를 하게 되면서 맡겨둔 금을 실제로 찾으러 오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그러자 금 세공업자들은 보관하고 있는 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시작했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 돈을 벌기 시작했다.

금 세공업자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금을 맡긴 주인들이 금 세공업자가 자신들의 금을 이용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항의하자, 금 세공업자는 대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금 주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예금 이자의 개념이 된다.

이처럼 금 세공업자들이 맡아둔 금보다 많은 보관증을 발급하여 대출하는 순간 은행가(banker)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맡아둔 금보다 더 많이 보관증을 남발할 수 있었을까? 이는 금 세공업자들의 경험에 따라 사람들이 금을 맡긴 후 찾아 쓰는 비율은 통상 맡긴 금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10%라는 수치는 현재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지급준비율의 토대가 된다.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으로 얼마나 남기느냐에 따라서 예금통화의 크기가 결정된다. 100만원의 현금이 예금으로 들어올 때 예금 금액의 10%만 현금으로 남겨둔다면 9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현금을 대출받은 고객이 다른 은행에 90만원을 맡기면 다시 예금을 받은 은행은 10%인 9만원만 남기고 81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81만원을 예금으로 받은 세 번째 은행은 8.1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시 대출해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면 최초의 100만원 현금 예금이 900만원의 대출을 가능하게 해준다. 예금통화 창조 금액은 지급준비금의 역수가 된다. 지급준비율이 20%면 5배의 통화량이 새로 만들어지고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0배의 통화량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	A은행	B은행	C은행	합계
화폐발행	100				100
예금		100	90	81.0	1,000
지급준비금		10	9	8.1	100
대출		90	81	72.9	900

3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은 흔히 저축은행이라고 부르는데 지역 서민들과 기업을 대상으로 여수신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은행보다는 높지만 대신에 예금금리도 높다.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면서 설립되었다. 당시 은행은 제한된 금융자본을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부문에 주로 공급하였다. 그 결과 서민들은 사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금융기관은 부실경영 등으로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금융기관을 양성화하여 전문적 서민 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전문적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서민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 확대를 도모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추어 총여신의 일정비율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운용해야 한다.

직장·지역 단위의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농어민 협동조합인 지역 농·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등은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해 조합원 상호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상호금융이라고도 한다.

우체국예금은 농어촌 등 민간 금융 취약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체신관서를 금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경영하는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의 원리금을 정부가 지급할 책임을 지고 있다.



확대보기

이자수익과 수수료 수익

은행의 주요 수입원은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자수익은 은행이 예금고객에게 지불하는 예금이자와 예금으로 받은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받은 대출이자 간의 차이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다. 비이자수익은 수수료수익이라고도 하는데 환전할 때 발생하는 환전수수료, 증빙서류를 발급할 때 받는 수수료, 펀드 및 방카슈랑스 판매 수수료, 송금수수료, 문자통지 서비스 수수료 등 이자수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과거에는 은행의 업무 특성상 전통적 업무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은행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나 저금리기조로 들어서면서 이자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4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말하는데 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하여 사건이 발생(사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을 담당한다. 반면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담당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분리된 보험으로 겸영하지 않지만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 질병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은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다.

보험회사 중에 보증보험을 전담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일반적인 보증보험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시스템에 근거하여 기술혁신형기업의 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조합주택시공 보증,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모기지 보증 등을 담당한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계약한 보험내용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보험제도이다. 재보험은 대형 사고와 같이 큰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여 한 개의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제도로써 우리나라에는 재보험만 전문으로 하는 코리안리가 있다.

5 금융투자회사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무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의 여섯 가지 업무를 구분하고 금융투자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를 금융투자회사라고 부른다.

금융투자회사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채권 등 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을 받아서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과는 달리 증권회사는 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은행과는 업무성격이 다르다. 즉, 은행 예금자는 자신의 돈을 대출 받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증권회사를 통해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투

표 2-2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종류

종류	내용	예
투자매매업	금융회사가 자기자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을 발행·인수 또는 권유·청약·승낙하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투자중개업	금융회사가 고객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상품을 매도·매수하거나 증권을 발행·인수 또는 권유·청약·승낙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증권회사 선물회사
집합투자업	2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영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자산운용회사
신탁업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신탁회사 증권회사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자문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일임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자자는 그 기업의 주주가 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주주의 자격에 근거한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펀드를 설정·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펀드의 투자수익률은 투자전략과 이를 구현하는 자산운용회사 및 펀드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에 앞서 투자설명서를 통해 투자전략, 자산운용회사, 펀드매니저 등 펀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일임업이나 투자자문업을 주로 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하지만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우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운용전략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방문하여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 보고 이 서비스에 이름이 조회되지 않는 회사라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6 기타 금융회사

먼저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과 지주회사를 합한 말로 주식의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지주회사를 의미한다.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대주주요건, 재무 및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20년 말 기준 금융지주회사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이상 은행지주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비은행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보험지주회사) 등 10개가 있다.

금융회사 중에서 고객의 예금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가게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들이 있다. 신용카드,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여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금융회사들이다.

신용카드 회사는 전형적인 여신전문 금융회사인데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미리 지불하고 결제일에 한꺼번에 금액을 받거나 나누어서 갚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사용수수료로 수입을 올린다.

리스회사는 건물, 자동차, 기계, 사무기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대여하여 사용료를 받는 일을 한다. 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자산관리의 부담이나 한꺼번에 많은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장점 때문에 리스회사를 이용한다.

할부금융은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미리 돈을 내고 소비자는 일정기간 나누어서 갚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할부금융회사는 상품구매액을 초과하는 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그리고 할부금융 자금은 상품 구입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대출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회사 이름에 주로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붙은 금융회사들이 전형적인 할부금융회사이다.

한편 대부업은 정식 금융회사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한테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대부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게의 자금수요 증가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불법적인 채권추심, 고금리 부과 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대부업의 투명성 확보와 대부금융 이용자 보호가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대부업은 2002년 8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양성화되었다.



확대보기

전당포의 대출업무

전당포는 역사가 매우 오래된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서기 650년 무렵의 당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전당포에서는 시계나 반지 등 물건을 담보 잡아 소액의 현금을 빌려주는 담보부 대출업무를 취급하는데 일반적으로 담보물의 가치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을 빌려준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간단한 업무구조가 전당포 업무의 강점이라는 점이다. 미국 MIT의 홀름스트림 교수에 따르면 전당포업의 백미는 담보물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빌려줌으로써 담보물의 정확한 가치를 따지는 수고를 덜어준다는 데 있다. 돈을 빌려오는 입장에서조차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기만 하면 자신의 담보물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담보물 가치를 정확하게 매기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쪽과 빌려오는 쪽이 협상을 벌인다면 그 시간과 비용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홀름스트림 교수는 이러한 업무구조가 전당포로 하여금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존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분석한다. 나아가 그는 동일한 분석이 은행의 담보대출이나 담보부 채권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대출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주식시장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한다.

SECTION

04

금융유관기관

1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은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데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기존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 1월에 설립되었다. 그 후 2008년 2월에 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과는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금융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기구가 정치적 압력 또는 행정부의 영향력에 의해 자율성을 잃지 않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금융감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이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업무, 금융분쟁의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을 기능면에서 크게 구분하면 시스템 감독, 건전성 감독 그리고 영업행위 감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스템 감독은 경제 전반에 걸친 금융혼란에 대비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며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보다 넓은 개념이다. 건전성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의 건전성, 자본적정성 및 각종 건전성 지표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이고, 영업행위 감독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들과의 거래에서 공시(公示), 정직, 성실 및 공정한 영업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다.

금융회사의 검사는 금융회사의 취급 업무를 사후 교정적인 측면에서 확인 및 점검하여 감독정책이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업무 현장에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검사(on-site examination)를 실시한다. 이와 병행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과 면담, 조사출장, 영업실태 분석,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 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 또는 취약 부문을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검사 실시와 연계하는 상시감시도 수행한다. 또한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불공정거래나 보험사기 조사업무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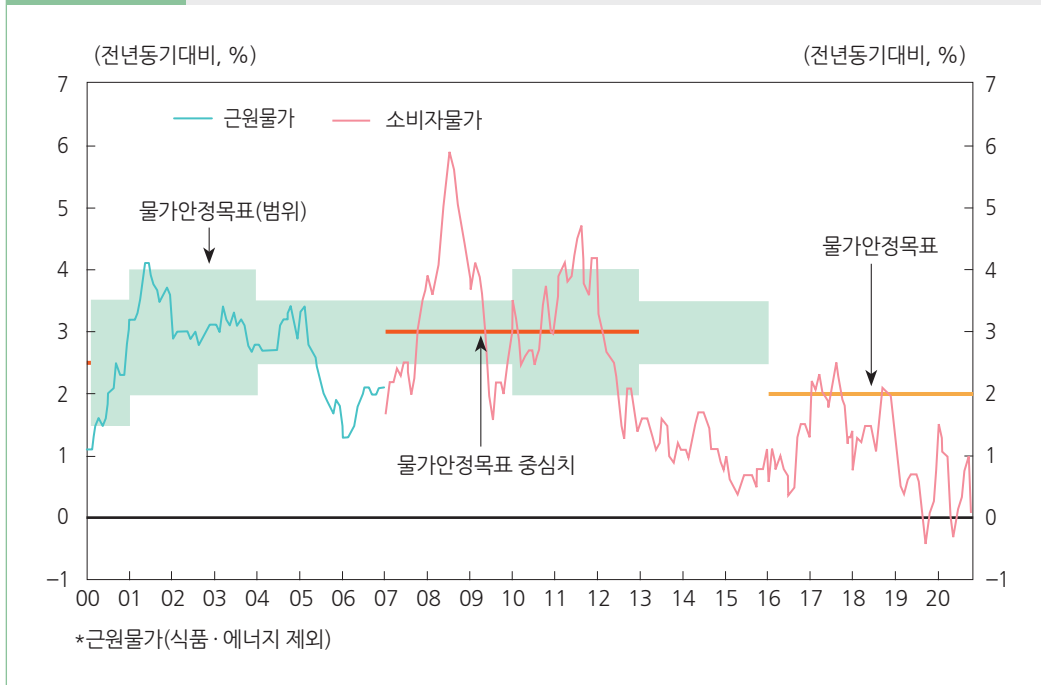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직접 제기하는 민원의 상담, 조사 및 분쟁조정, 금융교육 등을 통한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각종 업무는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와의 거래 관계에서 금융회사에 비해 협상력, 정보력 등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발권 은행이다. 화폐의 발행 외에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물가안정목표제이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량 등의 중간 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그림 2-3 물가안정목표 및 대상물가지표 상승률



출처: 한국은행(<http://www.bok.or.kr>)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정하고 여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예금을 받아 금융회사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한 지급준비금 등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에 대출을 해주며 자금부족에 직면한 금융회사가 순조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은행의 은행이며 국민이 정부에 내는 세금 등 정부 수입을 국고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정부의 은행이기도 하다. 또한 2004년 1월 개정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책무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규정의 개정,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 평가, 지급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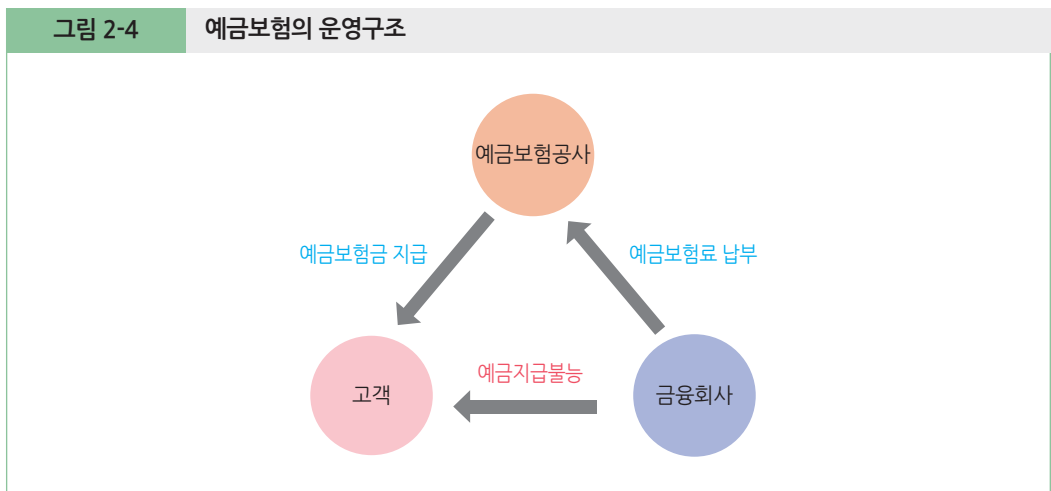
3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의 보험료,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동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분석 등을 통해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있으며,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투자매매·중개업을 인가받은 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등이다. 따라서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지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각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기금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외화표시예금은 2008년 11월 3일부터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또한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별로 5천



만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및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4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유통시장의 중심으로서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 등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한다. 한국거래소의 설립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상품매매, 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등이다.

한국거래소의 조직은 경영지원본부, 3개 시장본부(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및 시장감시본부 등 5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사와 파생상품시장본부는 부산에,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규제하고 회원 및 투자자, 회원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자율규제 전문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있다.

5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의 파산을 예방하며 서민의 금융상담과 신용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대일 심층 상담으로 채무와 신용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해서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개인에게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도와주고 있다. 아울러, 법원과의 업무연계로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채무재조정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 9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함께 설립되어 서민금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조정 및 정책자금지원 정보뿐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상품 정보 등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 고용·복지 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지원,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결합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1397 통합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전통시장, 임대아파트 등)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은 휴면예금인데 이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6 금융업권별 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국내지점을 사원은행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금융회사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금융문제의 조사연구 및 은행업무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사원은행의 경영 개선 및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등이 있다.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생명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문화를 확산하며 합리적인 보험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생명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생명보험 관련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보험업법 등 생명보험 관련 법령의 연구 및 개정건의, 모집제도의 개선 및 연구, 설계사의 등록 및 말소업무 등을 담당한다.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손해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손해보험 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건의, 재해방지 및 손해경감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 등을 담당한다.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업무와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검토 및 투자광고의 자율심의, 비상장주권 등의 장외시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여신전문금융에 대한 연구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무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법 제25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서 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 예탁금을 받아 이를 운용하는 등 저축은행의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사·연구, 저축은행 간의 업무 협조와 신용질서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 저축은행 보유·매출 어음의 매입, 내국환업무,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등을 수행한다.

-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에는 대출상품, 저축상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금융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투자성이란 투자한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직접금융은 기업 등 자금의 수요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매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며, 간접금융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개입하는 형태이다. 간접금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산변환이 발생한다.
- 금융시장은 단기와 장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 등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단기금융시장에서는 콜,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이 거래되며, 장기금융시장에서는 회사채, 국채, 통화안정증권, 주식 등이 거래된다.
- 금융회사는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기타 금융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은행은 예금 또는 채무증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가계 등에 대출하는 금융회사이다.
- 보험회사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상하는 생명보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 등 보험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다.
- 금융투자회사는 업무의 종류나 범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신탁업 등의 업무가 있는데 어떤 회사들은 모든 업무를, 어떤 금융회사들은 이 중에 일부만 특화하여 영업을 한다.
- 금융회사 중에서는 여신전문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처럼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 자본을 조달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영업하는 회사들도 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 금융감독원 외에도 다양한 금융유관기관이 존재하는데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업권별 협회 등이 있다.

예시문제

서술형

01 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금융시장과 장기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금융자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기술하시오.

02 은행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금융중개(brokerage) 서비스를 주로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03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과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빈칸 채우기

01 금융상품은 투자한 원금의 가능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된다.

02 은 자금의 수요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자금의 공급자가 직접 매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03 은행은 영업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과 주로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 나눌 수 있고,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O·X 문항

- 01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달리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자가 누구냐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
- 02 거래소시장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장소와 거래의 형식에 대한 특별한 규칙 없이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
- 03 은행 등을 통한 간접금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금자와 대출자 간에 주고 받는 자금 규모, 기간 등 자산변환이 발생한다. ()

03 저축의 이해

Section 01
소득, 소비, 저축

Section 02
저축의 가치

Section 03
저축상품

Section 04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과 예금자보호제도



03

저축의 이해

📌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소득, 소비, 저축 간의 관계와 이자, 인플레이션 및 세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축의 중요성을 학습한다. 금융상품 중 저축상품의 종류별 특징을 학습하고,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과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 학습목표

- 저축의 중요성과 소득, 소비, 저축 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이자, 인플레이션 및 세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저축상품의 종류별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과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생각열기

제로금리여도 저축률 5배 오른 유럽

미국과 유로존,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가계저축률이 올해 들어 최대 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 금리가 '제로'(0)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소득·고용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돈을 쌓아두는 가계가 늘어난 것이다.

3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저축률은 지난해 말 7.2%에서 올해 8월 14.1%로 2배가량 상승했다. 유로존과 영국은 지난해 4분기(10~12월) 각각 12.3%, 6.0%에서 올해 2분기(4~6월) 24.6%, 31.8%로 올랐다. 영국의 가계저축률은 반년 만에 5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미 연준은 올해 3월에만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포인트 인하하며 0.00~0.25%까지 낮췄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역시 기준금리를 0.1%로 유지하고 있으며, 유로존을 총괄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은 시중은행이 ECB에 단기자금을 맡기고 받는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금리인 -0.50%로 운용 중이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이 제로금리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예금금리 또한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저축률이 크게 오른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가계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가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이자를 못받더라도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고 보자는 가계가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해 말 대비 올해 2분기 유로존에서 저축이 늘어난 요인의 약 40%는 고용·소득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한 '자발적 저축'이었다. 이는 약 20%를 나타낸 1분기 때보다 2배 가량 오른 수준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들 국가의 저축률은 더 오를 전망이다. 주요국이 잇따라 '봉쇄'조치를 강화하며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여 돈을 모으는 '비자발적 저축'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향후 봉쇄조치가 완화되면 비자발적 저축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자발적 저축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이하 생략) ...

[출처: 아주경제, 2020. 10. 31.]

-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면 저축은 어떻게 될까?
- 가계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SECTION
이

소득, 소비, 저축

1 소득

소득

소득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대가를 의미한다. 이와 비교할 때 수입은 가게 내로 유입되는 모든 돈을 의미한다. 소득과 수입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매월 받는 봉급뿐 아니라 만기가 되어 찾은 저축상품의 원금 및 이자, 부동산을 매도하여 받은 돈 등도 모두 수입에 포함된다. 이에 비해 소득은 가게 내로 유입되는 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수입과 동일하지만, 가게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유입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수입 중 봉급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적금의 만기수령액이나 부동산 판매대금 등은 가게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산의 형태가 금융상품과 부동산에서 현금으로 바뀌었을 뿐이므로, 수입에는 포함되지만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의 종류

소득은 소득의 원천, 규칙성, 실질가치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소득은 소득원천에 따라서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근로소득이란 가게의 구성원이 정신적·육체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봉급, 상여, 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가게구성원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재산소득은 화폐, 토지, 건물 등의 재화를 생산자본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다. 재산소득은 재산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재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소득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재산소득은 가족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근로소득과는 다른 차원에서 가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사업소득이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사업자의 역량, 생산요소의 성질, 경제변동 등에 따라 큰 이윤을 얻을 수도 있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며 가계에 소득이 들어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낮다.

이전소득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이다. 이전소득에는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상속이나 증여 또는 선물 등의 형태로 주어지는 소득 등이 포함된다.

■ 경상소득과 임시소득

이자, 배당금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확실하게 들어오는 소득을 경상소득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경상소득은 매월 일정하게 들어오는 소득을 말하지만 때로는 주급이나 일당의 형태로 들어오기도 하고 6개월이나 1년을 주기로 들어오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가계는 예측가능한 정기적 소득인 경상소득을 기반으로 지출과 저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임시소득 또는 비경상소득이라고 한다. 경조금이나 퇴직금, 어떤 특별한 경우만 지급되는 일회성 보너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임시소득은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계의 지출과 저축 및 투자계획 수립 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예상 밖의 임시소득이 생길 경우에는 부채상환이나 미래를 위한 준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물가수준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을 화폐 액면가치 그대로 나타낸 것을 명목소득이라고 한다. 즉, 월급이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할 때 이는 명목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명목소득은 물가의 변동에 따라 구매력에 차이가 발생한다.

실질소득¹은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로 나눈 것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을 반영하여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력으로 평가한 소득을 말한다. 가령 어떤 가계의 소득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물가지수는 100에서 150로 올랐다면 실질소득은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을까? 명목소득은 10만원 증가하였으나, 현재의 실질소득을 계산해보면 40만원(60만원/150×100=40만원)이 되어 결국 명목소득이 늘어났을지라도 물가상승을 감안해보면 오히려 실질소득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실질소득 = (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DI: Disposable Income)은 처분이 가능한 소득, 즉 개인의 소득 중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이 가능한 소득을 의미한다. 개별가계의 가처분소득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과 같은 비소비지출²을 뺀 금액을 말하며, 개인이 소비지출이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가처분소득은 실제 가계가 소비지출과 저축 및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소득보다는 가처분소득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3-1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소득 현황

구분	금액(만원)	
		구성비
소득(A)	530.5	100.0
경상소득	522.5	98.5
근로소득	347.7	(65.5)
사업소득	99.1	(18.7)
재산소득	4.0	(0.8)
이전소득	71.7	(13.5)
비경상소득	8.0	1.5
지출	398.9	
소비지출	294.5	
비소비지출(B)	104.4	
가처분소득(A-B)	426.1	
가구원 수 (명)	3.02	
가구주 연령 (세)	52.5	

출처: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보도자료, 2020. 11. 19.)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30.5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65.5%가 근로소득, 18.7%가 사업소득, 13.5%가 이전소득이며 재산소득의 비중이 0.8%로 가장 낮았다. 월평균 소득 530.5만원 중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426.1만원으로 나타났다.

2 가계구성원을 위한 소비성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

2 소비

가계는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 즉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 소비를 한다. 넓은 의미에서 소비는 재화와 용역의 획득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만족감을 얻는 경제행위라 정의할 수 있으며 가계의 소비는 가계경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지출의 종류

지출은 수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재화와 용역을 취득하기 위하여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계의 소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값으로 활용된다. 가계는 여러 지출 비목(예: 식비, 의료비, 교통통신비 등) 간에 소득을 분배하여 지출하게 되는데, 지출 비목 간 소득의 분배 구조를 지출구조라고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계지출의 종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경상지출과 임시지출

경상지출은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기타 각종 요금 등을 말한다. 임시지출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로 지출이 생기거나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로서 규칙적이지 않은 지출을 의미한다. 의료비, 손님접대비, 의류 및 가구 구입비 등이 여기에 속한다.

■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월세, 세금, 이자비용 등과 같이 최초의 계약 또는 규정에 따라 미리 그 지출금액이 정해져 있어 가계관리자가 임의로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을 고정지출 또는 정액지출이라 한다. 또한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등과 같이 그 지출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계의 의도에 따라 지출금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변동지출, 임의지출 또는 부정액지출이라 한다.

가계가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출의 축소가 필수적인데,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구분한 뒤 변동지출 중 절약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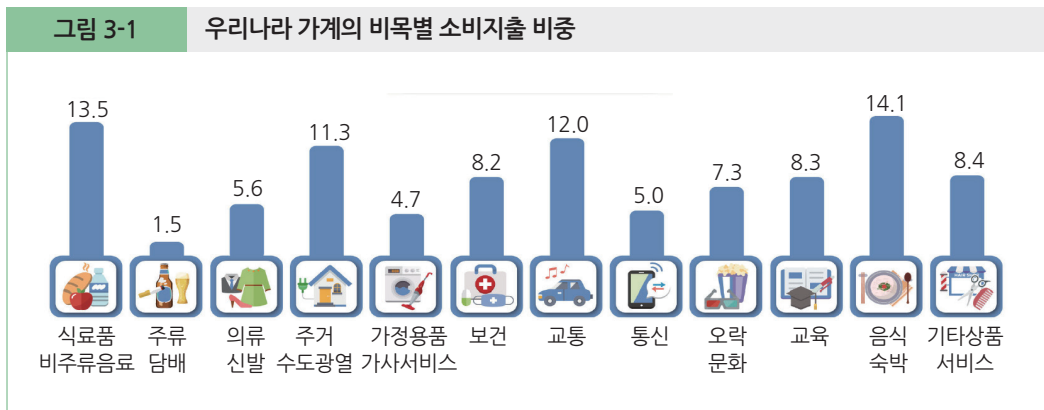
■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통계청에서는 가계의 지출을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하고 있으며, 앞서 배운 가처분소득은 이 중 비소비지출을 가계의 소득에서 뺀 금액을 의미한다. 소비지출 비목은

2020년 기준으로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 상품·서비스 등 12개 항목으로 구분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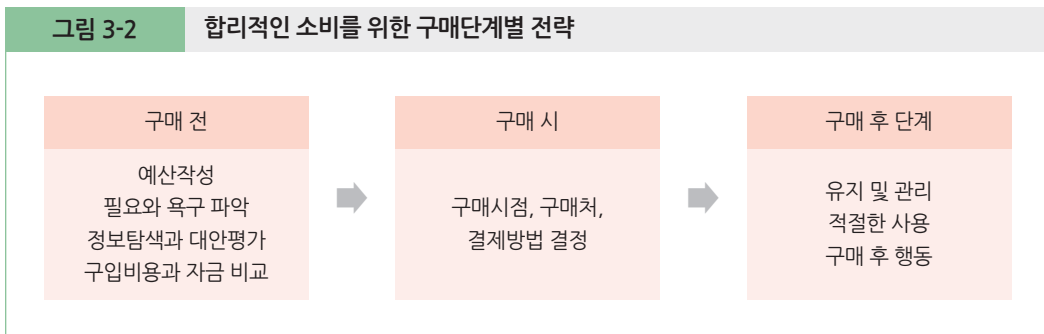
통계청의 2019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숙박이었고, 그 다음으로 식료품·비주류음료와 교통비, 주거·수도광열비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지출) 결과(보도자료, 2020. 5. 7.)

합리적인 소비

가계는 소득을 얻어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저축하므로 결국 합리적 소비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해야 저축을 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합리적인 소비



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도록 소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는 선택과 사용을 포함하는데,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사용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는 개인이나 가족의 삶의 질을 낮출 수 있으므로 소비행동이 이루어지는 구매단계별로 합리적인 소비전략을 세워야 한다.

구매 전 단계

구매 전에는 예산을 작성하고 합리적으로 소비지출을 배분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소비지출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need)가 욕구(want)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가족이나 친구, 각종 매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정보 원천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각 정보를 비교하여 보는 것이 좋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탐색할 때는 각 인터넷쇼핑몰 간의 상품가격을 비교·정리한 가격비교사이트,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경험을 공유하는 소비정보사이트를 활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각종 대안, 구매비용 및 사용가능한 자금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소비를 결정해야 한다.

구매 단계

구매 단계에서는 구매시점, 구매장소 및 결제방법을 선택하는데 개인은 상품의 특성과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 구매시점은 계절, 일주일 중 주중, 주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계구성원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한다. 구매장소는 백화점, 일반 소매점, 창고형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과 인터넷, TV 홈쇼핑, 혹은 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결제방법은 현금 혹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나 일시불 혹은 할부로 결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금결제에 비해 충동구매나 과소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획적인 구매가 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최근 해외직구를 비롯하여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일방적인 광고나 판매조건에 현혹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배달된 물품이 광고와 다른 경우, 물품대금의 이중청구, 교환과 환불 관련 문제,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 후 단계

상품 구매 후 이를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계의 저축과 소비지출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또한 구매 후에는 구매한 제품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거나 후회하는 등의 '구매 후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대보기

비합리적 소비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

밴드웨건 효과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라이벤스타인이 발표한 논문(Bandwagon, Snob, Veblen Effects in the Theory of Consumers' Demand, 1950)에서 처음 사용하면서 유래하였다. 밴드웨건은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에 흔히 사용하던 운송수단인 포장마차를 말하는데, 당시에는 금광이 있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다른 사람들을 따라 서부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즉, 자신의 주관이나 기호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나 모임 등의 소비를 따라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소비트렌드나 유행을 쫓아가거나, 좋아하는 유명 스타가 나오는 광고를 보고 소비하는 등의 행동을 말한다. 모방소비도 여기에 해당한다.

양떼효과(Herd effect)

군중심리에 의한 동조소비를 의미하는 양떼효과(Herd effect)는 밴드웨건 효과와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양떼효과는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뒤처지기 싫어서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소비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양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거나 소외되기 싫어 그 행동이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다른 사람을 따라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스nob효과 (Snob effect)

스nob효과는 속물효과라고도 하며 밴드웨건 효과와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남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차별화시키려는 소비행동'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과 구별되도록 특별한 의상이나 한정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진귀한 예술품이나 희귀한 스포츠카를 소유하고자 하는 소비 행동이 포함된다. 사치스럽더라도 본인만의 개성을 살리기 위한 가치판단에 의한 소비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행동은 아니다.

베블렌효과 (Veblen effect)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렌이 1899년에 출간한 '유한계급론'에서 언급한 용어로 '상류층의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각 없이 행해진다.'라고 언급한 데서 유래되었다. 베블렌효과는 상류층이 자신의 성공과 부를 과시하고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치품을 소비하는 행동을 말하며, 가격이 오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거나 과시욕구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명품이나 최고가 제품을 소량 한정판매할 때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비합리적 소비행동이 포함된다.

3 저축

저축의 개념

저축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다. 예정된 일자에 이자 및 원금을 확실하게 회수하여 안정적인 미래 소득을 얻는 것이 저축의 목표이다.

저축의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서 소득과 지출의 일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 자녀 교육 및 결혼, 은퇴 이후 노후의 삶에 대비한 저축 등이 그 예이다. 둘째, 실업,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로 저축을 하기도 한다. 셋째, 상속적 동기에 의한 저축으로 자손에게 물려줄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저금리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어 저축의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저축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자산형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자산 형성의 기초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재무목표를 세워 일정 금액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축과 투자의 차이

본래 ‘아껴서 쌓아두다’라는 저축(貯蓄)의 개념 속에는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투자도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고 투자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어 미래에 소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정된 이자율을 보장받는 저축과 달리 투자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저축으로 발생하는 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금손실을 볼 수도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얼마가 발생할지 확신할 수 없다. 투자 시점에 예상하는 수익률은 불확실성이 반영된 기대수익률을 의미하며 투자결과에 따른 최종수익률을 실현수익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저축을 원금손실이 없는 ‘예금’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축의 경우에도 예금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하는 데 불확실성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저축과 이자

단리와 복리

이자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자율을 표시할 때 기간을 명시하는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단순히 원금에 이자율을 곱하여 나온 값을 이자금액으로 계산한다.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곱하는 원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단리(單利, simple interest)와 복리(複利, compound interest)로 구분할 수 있다.

단리는 일정한 시기에 오로지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때 발생하는 이자는 원금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금에만 이자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단리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FV = PV \times [1 + (r \times n)]$$

여기서, FV = 미래가치

PV = 현재가치

r = 수익률(연이율)

n = 투자기간(연 단위)

예 100만원을 연 4%의 이자율로 3년 동안 단리로 저축하면 얼마가 되는가?

$$1,000,000\text{원} \times (1 + (0.04 \times 3)) = 1,120,000\text{원}$$

즉, 100만원의 3년 후 미래가치는 1,120,000원이 된다.

복리란 중복된다는 뜻의 한자어 복(復)과 이자를 의미하는 리(利)가 합쳐진 단어로서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다.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복리의 위력이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가 재투자된다는 가정하에 복리계산은 다음과 같다.

$$FV = PV \times (1+r)^n$$

여기서, FV = 미래가치
 PV = 현재가치
 r = 수익률(연이율)
 n = 투자기간(연 단위)

예) 100만원을 연 4%의 이자율로 3년 동안 복리로 저축하면 얼마가 되는가?

$$1,000,000원 \times (1+0.04)^3 = 1,124,864원$$

즉, 100만원의 3년 후 미래가치는 1,124,864원이 된다.

같은 금액, 같은 이자율이라도 적용 이자계산법을 단리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복리로 할 것인가에 따라 원리금이 크게 달라지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이가 급격히 벌어지게 된다. <그림 3-3>은 100만원을 연 4%의 이자율로 저축한 경우, 자산이 10년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단리의 경우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만 복리의 경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그 금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100만원을 연 4% 이자율의 금융상품에 저축할 때, 50년 후 단리는 300만원이 되지만 복리는 710만원이 넘어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그림 3-4>는 100만원을 30년 동안 운용할 경우, 연 이자율이 각각 4%, 8%, 12%일 때,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복리 적용 시 운용결과가 이자율에 단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자율이 연 4%에서 연 8% 및 연 12%로 되었을 때, 단리의 경우 순이자 120만원에서 240만원 및 360만원으로 단순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복리의 경우 순이자 224만원에서 약 4배인 906만원, 다시 약 13배인 2,896만원이 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단 1%포인트의 이자율 차이도 적지 않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저축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효과가 더욱 커지므로 표면금리가 동일하다면 복리상품이 실제수익률면에서 단리보다 매우 유리하다.

그림 3-3

저축기간에 따른 단리와 복리 효과 비교(100만원을 연이자율 4%로 저축) (단위: 천원)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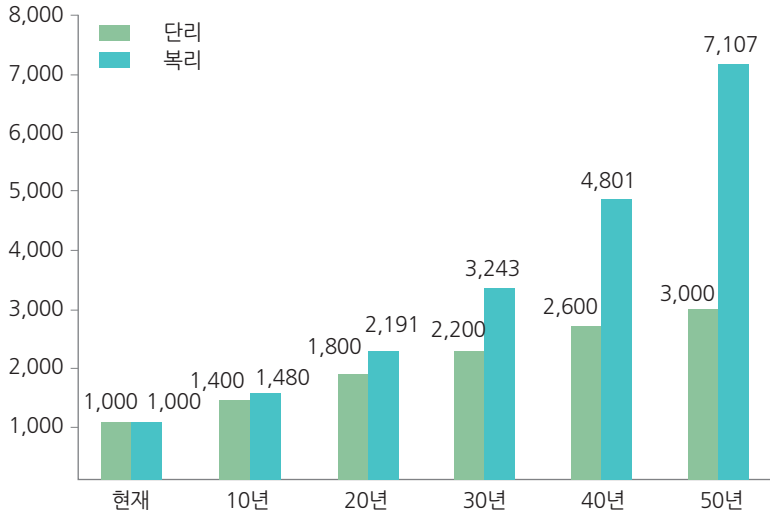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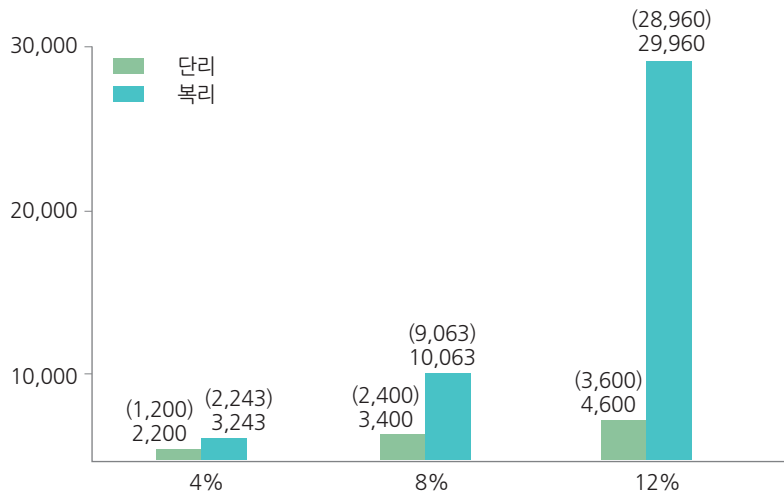


그림 3-4

이자율에 따른 단리와 복리 효과 비교(100만원을 30년 저축) (단위: 천원)

(단위: 천원)





확대보기

72의 법칙

72의 법칙은 복리를 계산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법칙이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72/\text{금리} = \text{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년)}$$

예를 들어, 100만원의 돈을 연 5%의 복리상품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원금의 2배인 200만 원으로 불어나는 시간은 얼마가 걸릴까? 답은 14.4년이다. ($72/5=14.4$)

72의 법칙은 목표수익률을 정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 만일 10년 안에 원금이 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익을 내야 할까? 답은 연 7.2%이다. ($72/10=7.2$)

이처럼 72법칙을 이용하면 원하는 목표수익률 및 자금운용기간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자율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저축액은 큰 차이가 난다. 특히 장기간 저축을 할 경우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30년 후 필요한 노후자금을 5억원이라고 보고 이를 매달 일정액의 저축을 통해 모으려고 할 경우, 이자율에 따라 저축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자. 아래 <표 3-2>에서 보듯이 금리가 1%이면 매월 저축액이 1,191,531 원이 되어야 하고 5%라면 거의 반인 600,775원이 필요하며,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금리였던 12%를 가정하면 매월 저축액이 143,063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결국 30년 동안 동일한 5억 원을 모으는 데 필요한 저축액이 금리가 하락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이자율에 따라 30년 후 5억원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월 저축액(원)

이자율	1%	2%	3%	5%	7%	10%	12%
월 저축액	1,191,531	1,014,764	858,020	600,775	409,846	221,191	143,063

이번에는 5억 원을 은행에 맡겨두고 20년 동안 원리금을 매월 일정액씩 찾아서 노후생활자금으로 쓴다고 가정하고, 이자율에 따라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표 3-3>에서 보듯이 금리가 1%이면 매월 인출액이 2,299,472원, 2%라면 2,529,417원이 되고, 5%인 경우는 3,299,779원씩을 찾아 쓸 수 있으며, 과거 우리나라 평균 예금금리였던 12%를 가정하면 5,505,431원으로 월 인출액이 크게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노후대책을 위해 모아두어야 할 자금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표 3-3 이자율에 따라 5억원을 20년간 매월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원)

이자율	1%	2%	3%	5%	7%	10%	12%
월 저축액	2,299,472	2,529,417	2,772,988	3,299,779	3,876,495	4,825,108	5,505,431

2 저축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물가가 상승할 경우, 동일한 화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가계 입장에서는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구매력이 하락하게 되며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투자해서 얻게 되는 미래의 수익도 같은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실질수익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명목금리란 말 그대로 표면상의 금리를 의미하며, 실질금리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금리를 말한다. 단순하게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금리가 된다.

$$\text{실질금리} = \text{명목금리} - \text{물가상승률}$$

예를 들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1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2%라면 실질수익률은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연 0.5%에 불과하게 된다. 금융상품 중에는 수익률이 물가상승률과 연계하여 결정되거나 상품의 특성상 수익률이 물가상승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인플레이션 헤지상품도 있으므로 금융상품 선택 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다면 저축한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소비를 미래로 이전하기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에서는 1984년에 물가가 27배 올랐다. 1월 1일에 100원짜리 연필이 12월 31일에는 2,700원이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일에 100만원을 연이자율 10%로 저축했다면 어떻게 될까? 12월 31일에 저축원리금은 110만원이 되겠지만 그 돈의 가치는 형편없이 낮아져 있을 것이다. 가령 1월에는 100만원으로 연필 1만개를 살 수 있었지만 12월 31일에는 110만원의 불어난 돈으로도 약 407개의 연필 밖에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축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저축과 세금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매매 시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통해 금융회사가 일률적으로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 금융상품 중에는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상품과 9.9%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상품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은 한시적으로 일부 계층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있다. 19세 이상 거주자면 누구든지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본 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매년 최대 2천만원씩 누적 한도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재가입도 가능하다. ISA를 통해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수익 등이 발생할 경우, 연 2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장기저축성보험도 활용되고 있는데,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예치한 경우 발생한 보험차익³을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다만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5년 이상 납입하고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의 한도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금융상품별로 서로 다른 과세 기준을 잘 살펴보고 적용 세율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세상품을 찾아보는 노력도 중요하다.



확대보기

다양한 비과세 금융상품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

- 예탁금: 상호금융(지역 농·축협, 지구별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만이 해당되며, 저축은행은 미 해당)에서 취급하며, 비과세 한도는 1인당 3천만원이다.
- 재형저축/보험/펀드: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된다.
-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 상품 중 저축기간을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 생계형저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가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가입 시 비과세를 요청하면 1인당 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3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저축상품의 이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1 저축상품의 개요

가장 대표적인 저축상품은 예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종합금융회사, 우체국예금 등으로 정해져 있다.

예금은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된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지 예금자가 ‘요구’ 하면 은행이 바로 돈을 내주어야 하는 예금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예금자는 수시로 사용해야 할 돈을 요구불예금에 저축한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돈을 불리기보다는 보관하겠다는 목적이 강한 저축상품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요구불예금을 흔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라고 부르는데 당좌예금, 보통예금, 공공예금, 국고예금 등이 요구불예금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요구불예금은 금리가 낮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한 사람이 언제 돈을 찾아갈지 몰라 항상 돈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를 적게 줄 수밖에 없다. 예금자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예금을 찾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적게 받더라도 이용한다.

저축성예금은 저축 및 이자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예금의 납입 및 인출방법에 대해 특정 조건이 있는 기한부 예금이다. 저축성예금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일정 기간은 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이자를 그만큼 더 많이 주게 된다. 저축성예금은 크게 돈을 조금씩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적금’과 목돈을 예치하면 이를 운용해서 더 늘어나게 하는 ‘예금’이 있다. 그 밖에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형성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도 저축성예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예금은 일부 특정인 또는 기업에만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금통장을 개설할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고 거래하도록 되어 있다. 본인 명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소위 ‘대포통장’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빌려주는 측과 빌려서 사용

하는 측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현실을 이용하여 통장을 빌려주거나 전달, 또는 제3자에게 운송하는 등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유혹이 많은데 절대로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2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일반적으로 거래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이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생활자금과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일시적인 유희자금을 예치하는 수단이 되고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한 자가 일반 상거래로 취득한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예금잔액(또는 당좌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당좌수표 또는 거래은행을 지급장소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다. 이자는 없으며 가입대상은 신용과 자산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으로 구체적인 거래대상 기준은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가계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은 개인가계수표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현금사용을 줄이고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 도입된 예금이다. 전 금융회사를 통하여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무이자인 일반당좌예금과는 달리 은행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이며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MMDA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은행

에 맡긴 자금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익을 이자로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단,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어서 일시적인 목돈을 운용하는데 적합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MMDA와 유사한 MMF(money market funds)는 고객의 돈을 모아 주로 금리가 높은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콜(call)자금 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하여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다. MMF는 수익률이 높은 단기금융상품 대신에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국공채 등에 주로 운용된다. MMF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에서도 취급한다. MMF의 최대 장점은 가입 및 환매가 청구 당일에 즉시 이루어지므로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실적에 따라 이자가 붙는다는 점이다. 다만, 계좌의 이체 및 결제 기능이 없고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일명, 종금사)가 취급하는 CMA(cash management account)가 있다. 자금을 금리가 높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실적배당을 한다는 점에서는 MMF와 유사하지만, MMDA처럼 이체와 결제 그리고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입출금 기능을 갖고 있다.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만 증권회사의 CMA는 그렇지 않다.

표 3-4 MMDA, MMF, CMA 비교

상품명	취급금융회사	예금자보호	이율	이체 및 결제
MMDA	은행	보호	확정금리(차등)	가능
MMF	은행, 증권사	비보호	실적배당	불가능
CMA	종금사, 증권사	종금사만 보호	실적배당	가능

3 저축성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예금자가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예치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기한부 예금이다. 정기예금은 저축성이 강한 예금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예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금이다.

한편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특수한 형태의 저축성예금으로서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가 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최소 발행단위가 1,000만원이고, 최장 만기는 제한이 없으나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자의 명의를 기재되지 않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되고, 액면 금액보다 할인되어 발행되는 방식으로 이자가 계산된다. 단,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 은행의 경우 실물증서는 발행하지 않고 통장을 교부한다. 중도환매는 허용되지 않고 대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거액의 부동산자금을 운용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또한 실세금리연동 정기예금상품은 가입 후 일정기간(회전기간)마다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하는 정기예금으로서 금리상승기에 유리한 금융상품이다. 가입기간은 통상 3년 이내이며,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고 이자지급은 만기지급식, 월이자지급식, 회전기간별 이자지급식 등으로 나뉘며 이자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금주가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만기에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적립식 예금이다. 정액적립식 상품과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적금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반면에 근로자의 주택마련이나 재산형성 등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계층에게만 가입을 허용하면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목적형 정기적금도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재산형성저축을 들 수 있다.

또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은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보통예금보다 이자가 많지만 유동성은 낮다. 또한 만기 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약정한 이자보다 훨씬 낮은 이자를 지급받거나 경우에 따라서 이자가 없을 수도 있다.

적용하기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한눈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의 '금융상품한눈에' 메뉴를 활용해보자. '저축'을 선택하면 현재 은행에서 판매 중인 각종 정기예금, 적금 상품과 상품별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저축으로서 2009년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어 출시되었다. 전 금융회사를 통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가입은 주택소유·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나,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9세 미만인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하다. 매월 2만원에서 50만

표 3-5 주택청약종합저축 약정 이율

기간	금리(세전)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시기금(<https://nhuf.molit.go.kr>)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도 가능하다. 약정이율은 최대 1.8%이며, 납입기간은 별도의 만기 없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이다.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는 당해연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최대 96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된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 면적 85m² 이하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청약예치 기준금액이 달라진다.

표 3-6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거주지역/전용면적별) (단위: 만원)

구분	청약가능 전용 면적			
	85m ² 이하	102m ² 이하	135m ² 이하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군	200	300	400	500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이 내 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18년에 출시한 상품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하되 재형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납입금액 기준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보다 1.5%p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한다. 또한 가입한 지 2년 이상 지나면 최대 10년의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9~34세이어야 한다. 군복무 2년을 했으면,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둘째,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인 창업가와 프리랜서, 일용직을 비롯한 비근로 소득자의 신고소득도 인정된다. 셋째,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세대 세대원이나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된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다. 지금은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지만, 이직이나 결혼으로 3년 내에 전셋집으로 이사 갈 계획에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확대보기

가로저축 vs 세로저축...나에게 맞는 저축방법은?

가로저축이란 생애 주기별로 목적 자금을 고려해 결혼, 주택, 자녀교육, 노후자금 등 여러 저축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자금을 목적별로 분산해 저축하는 방식이다.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상황 및 목적에 맞게 자금을 분산해 저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급한 목돈부터 노후자금까지 대비할 수 있다. 가로저축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와 함께 각 목적에 따라 목돈을 차곡차곡 쌓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저축금액을 무리하게 설정하면 단기자금 목표도 달성하지 못해 결국 중, 장기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세로저축은 가로저축과 반대로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금액의 전부를 한 통장에 올린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령,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3년간 매달 100만원을 모아 대출을 청산해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면 이후에는 결혼자금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몇 년간 다시 돈을 모으는 식이다. 단기간 목표 자금을 모을 때 주로 사용되며 목돈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경우에도 적합하다. 하나의 목표에 올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로저축 대비 단기간에 원하는 자금을 모으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세로저축은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모인 금액을 모두 소비하는 사이클이 반복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목표 달성 후 남은 자금을 무계획적으로 써버릴 수 있어서 개인성향에 따라 효과적인 돈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가로저축과 세로저축은 각기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어느 한쪽의 방법이 좋다고보다는 자신의 저축 성향과 목표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단기적으로 돈을 빨리 모으고 싶다면 세로저축을, 미래 계획을 통해 단기 목돈부터 노후자금까지 전략적으로 모으고자 한다면 가로저축을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

출처: 시사저널e, 2020. 9. 26.

SECTION
04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과 예금자보호제도

1 저축상품 선택 시 고려사항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저축상품의 특성과 거래할 금융회사와의 거래 편리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는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저축상품 선택이나 향후 거래 시 참고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주거래은행 정하기

예금액, 대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은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를 높이는 주요 요소로서 예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한 은행에 집중하여 거래하면 고객에 대한 은행의 평가가 좋아져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활용하기

비과세종합저축(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면제)의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2019년 이후),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며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전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1인당 5천만원으로 본인의 잔여한도는 거래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만 19세 이상 조합원(새마을금고는 회원)은 3천만원까지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22년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⁴된다.

만기된 예·적금 바로찾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되며, 만기일 이후부터는 약정금리에 훨씬 못 미치는 만기 후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약정금리가 3%인 정기예금은 만기까지는 3%가 적용되는 반면, 만기일 이후부터는 금융회사에서 고시한

⁴ 지방소득세 1.4%는 부과.

금리(예: 보통예금이자 0.5% 등)가 적용된다. 따라서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을 그대로 둘 경우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만기에 도달하면 새로운 예금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예금금리 변동 내역 통보서비스 활용하기

은행에서는 정기 예·적금의 금리 변동 시 그 변동내역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금금리 변동 내역 통보서비스는 변동금리 부 정기 예·적금을 가입할 때 또는 가입한 후 언제든지 은행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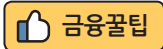
자동화기기 이용하기

보통예금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창구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가장 높고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수수료가 낮다. 또한 은행에 따라 급여이체, 휴대전화 요금 이체 등 우대조건에 해당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보통예금)이 있으며, 은행별로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은행연합회의 은행수수료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하면 수수료가 더 저렴한 은행을 찾아 이용할 수 있다.

엉뚱한 계좌로 송금한 경우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착오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는 없다. 대신 신속하게 이체를 실행한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수취은행 및 수취인에게 동 사실을 알린 후 수취인의 반환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거에는 송금인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1년 7월부터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여 관련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거래 관련 서비스

①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

은행은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휴대폰 문자 또는 스마트폰 앱 알림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서비스

은행은 월세 등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 고객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자동이체해주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정주기 단위가 아니라 특정일에 한번 자금을 이체해주는 예약이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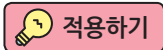
③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

은행들은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계좌개설 은행의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인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④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는 굳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를 이용해보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은행, 제2금융권 등에 개설된 계좌 및 잔액 등의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고, 각종 계좌의 자동이체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



2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도 도산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도산할 조짐이 보이면 뱅크런(bank-run)이라고 불리는 예금인출 쇄도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금융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예금자들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취지에서 만든 사회적 안전망이 바로 예금보험제도(deposit insurance system)이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기관이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미리 징수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금융회사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더라도 대부분의 예금이나 보험, 그리고 일부 투자금에 대해 1인당 최고 5,000만원(세전)까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금자보호법상 예금 및 적금의 보장한도는 은행별로 산정되므로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씩 분산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5,000만원을 가입한 경우 만기 시 원리금(5,100만원) 중 원금 5,000만원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지만, 4,900만원을 가입한 경우 만기 시 원금(4,900만원)과 이자(약정이자 98만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작은 금액)가 보장된다.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2016년 6월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1인당 5천만원이 한도이며 운용실적과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보장보험금에 대해서만 예금자보호가 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펀드나 일부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별도의 기금 등을 통해 보호받는 상품도 있다.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이 기금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보호를 받는 셈이다. 지역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서 가입한 예·적금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은 아니나, 각 중앙회가 설치·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

표 3-7

예금자보호 금융상품과 비보호 금융상품 (2020. 09. 기준)

구분	보호 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개발신탁
증권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출보증,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 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출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 주식워런트증권(ELW) •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증권사 발행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 · 최저연금적립금 · 최저중도인출금 · 최저중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 · 최저연금적립금 · 최저중도인출금 · 최저중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p>상호저축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	-------------------------------------------------------------------------------------------------------

출처: 예금보험공사(<http://www.kdic.or.kr>)

- 소득, 소비, 저축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소비는 현재와 미래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행위이다.
- 이자의 계산방법은 단리와 복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리는 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장기저축이 필요한 노후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 인플레이션과 세금은 저축 원리금의 가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 대표적인 저축상품은 예금이고,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저축상품을 선택할 때는 저축상품의 특성과 거래할 금융회사와의 거래 편리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세금우대상품을 활용하며, 만기된 예금이나 적금은 바로 찾아야 한다.
-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기관이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미리 징수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회사별로 1인당 최고 5,000만원(세전)의 원리금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시문제

🏆 서술형

01 단리와 복리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02 인플레이션과 세금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03 저축상품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시오.

04 예금자보호제도의 기능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 빈칸 채우기

01 개인의 소득 중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이 가능한 소득을 이라고 한다.

02 의 법칙은 복리를 가정할 때 원금이 2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거나 목표수익률을 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칙이다.

03 저축상품은 예금자가 요구하면 은행이 바로 돈을 내주어야 하는 과 예금자가 일정 가입기간을 약정하는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04 는 예금보험기관이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미리 징수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O·X 문항**

- 01**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이다. ()

- 02** 장기저축성보험은 저축기간이 10년 이상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03** 단리는 일정한 시기에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

- 04** 시중은행에서 가입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

04

금융투자의 이해

Section 01
투자의 기초

Section 02
금융투자상품

Section 03
주식 투자

Section 04
채권 투자

Section 05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Section 06
증권분석



04

금융투자의 이해

📌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투자 수익률과 위험(risk) 등 투자에 대한 기초 개념을 학습하고, 금융투자상품 투자과정 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대표적인 투자상품인 주식과 채권의 거래방법 및 투자 가치 분석방법을 정리 해 본다.

📌 학습목표

- 투자의 수익과 위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고 레버리지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을 통해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 주식과 채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재무제표의 개념과 투자가치 분석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생각열기

새해벽두 비트코인 광풍...화려한 부활인가, 2년전 악몽 대자뵈인가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새해부터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역대 최고가인 개당 3만 3400달러(약 3600만원)를 넘어선 데 이어 다음 달에는 5만달러선 돌파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체 없는 거품이라는 지적과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규제 가능성이 걸림돌이다. ...*(중략)*...

지난해 연저점 대비 460%가량 급등했던 비트코인은 작년 12월 6일 2만달러를 돌파한 지



한 달도 안 돼 66% 넘게 뛰었다. 미국 비즈니스전문지 엔터프라이저는 “기관과 개인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등에 업고 올해 사상 최고치로 출발했다”고 논평했다.

▶ 비트코인의 달라진 위상

비트코인이 초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암호화폐가 주류 자산시장에 편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다.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처럼 새로운 결제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관측이 잇따라 나오며 허상뿐인 투기대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한 영향이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리더 채권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치 저장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암호화폐, 사기꾼들이 가장 선호해”

장밋빛 기대 속에서도 비관론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관론자인 ‘닥터 뚝’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고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도 아니다”며 “결국 거품이 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행보도 변수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행정부 내 관련 요직의 인물 성향에 달렸다”고 전했다. 재무장관 지명자인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수년간 암호화폐를 ‘투기성 자산’이라 표현하며 “익명의 통화는 테러 자금과 자금 세탁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중략)…

일각에서는 2018년 겨울의 악몽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급등한 비트코인은 당시 최고치였던 2만달러선을 돌파했지만, 중국이 암호화폐 사업을 단속하면서 그 해 12월 3200달러 수준으로 폭락했다. 비트코인 역대 최저점이었다. …(이하 생략)…

[출처: 이데일리, 2021. 1. 3.]

- 금융투자 시 자산가치 결정요인, 변동성 요인들은 무엇인가?
- 자산가치의 평가와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SECTION
이

투자의 기초

1 투자의 개념

투자란 미래에 긍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길 바라며,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저축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12% 전후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대로 떨어졌다. 이러한 저금리는 저축(예금)을 통해 목돈을 모으는 것을 어렵게 하고, 모은 돈으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이 때문에 자금운용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개인들도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과 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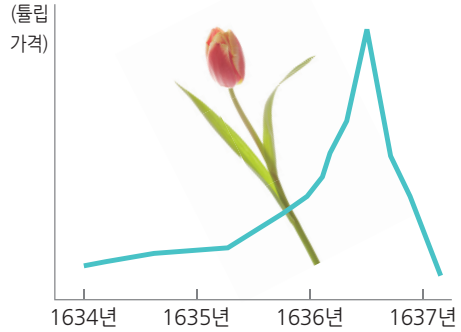
투자는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산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관리하는 행위이다.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때, 투자는 그 가치를 발휘한다. 이러한 개인의 합리적인 투자 선택은 자금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적절히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므로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종 과도한 이익을 목표로 비합리적인 자금 운용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투기라고 부르며 건전한 투자와 구별한다. 투기란 요행을 바라고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를 말하는데, 개인과 가계의 재정을 커다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사회에도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다. 투기는 경제활동을 위한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방해하며, 경제 곳곳에 가격 거품을 형성하여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올바른 투자자라면 개인의 자산 증식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투자의 결과까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확대보기

투기와 튤립

튤립은 중세 터키의 사원이나 궁정에서 재배되었으며, 꽃 모양이 터번과 비슷하여 “터번 꽃”이라는 의미로 유럽에서는 “튤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튤립이 그냥 아름답고 평범한 꽃은 아니었다.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은 꽃의 색깔에 따라 튤립을 다양하게 분류했는데 최상급 꽃은 잎에 황실을 상징하는 붉은 줄무늬가 있어 ‘황제’라고 불렀고, 이어 ‘총독’과 ‘제독’, ‘장군’ 순으로 이름을 붙였다. 1634년 당시 황제 튤립은 암스테르담 시내의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1,200플로린(florin, 당시의 금화)에 거래되었다. 튤립은 조그마한 텃밭에서도 재배할 수 있었고, 꽃이 활짝 필 때까지 무늬와 색깔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튤립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튤립 가격은 거침없이 올라갔고, 1635년 ‘Semper Augustus’라는 희귀종 튤립 한송이가 6,000플로린이라는 최고가에 매매되었다. 이 금액은 당시 네덜란드 사람의 평균 연간 수입 150플로린의 4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그러나 튤립에 대한 네덜란드인의 뜨거운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더 비싼 가격으로 튤립을 구입할 만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튤립은 평범한 식물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침내 1637년 2월 3일 튤립시장이 무너졌다. 튤립 거래의 중심지였던 하를렘에는 더 이상 튤립을 살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튤립의 가격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튤립은 더 이상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이 되었다.

2 투자 수익률

수익률이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란 투자자가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얻은 모든 금액을 고려한 총 수익률 개념인 보유기간수익률로 나타낼 수 있다. 보유기간수익률은 먼저 매도금액에서 매입금액을 뺀 매매차익에 투자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합산 또는 차감한다. 그런 다음 이 값을 매입금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로 환산하여 구한다.

$$\text{수익률} = \frac{\text{매도금액} - \text{매입금액} \pm \text{보유기간 중 현금흐름}}{\text{매입금액}} \times 100$$

예) 3개월 전에 10,000원에 매입한 주식을 오늘 10,900원에 매도하고 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2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3개월 동안의 투자수익률은 얼마인가?

$$\frac{10,900 - 10,000 + 200}{10,000} \times 100 = 11\%$$

즉, 3개월간의 투자수익률은 11%이다.

그러나 이렇게 구한 수익률은 투자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기간 수익률을 연 수익률로 바꾸어 연율화(annualization)한다. 연율화 과정에서도 재투자를 가정한 복리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11%의 수익률을 연율화할 때, 1년이 3개월의 4배이므로 보통은 11%의 4배인 44%를 연율로 간주하는데, 이는 복리를 무시한 계산 방법이다. 매 3개월마다 11%의 수익률로 계속 재투자된다고 가정하면, 복리 계산법에 의해 $(1 + 0.11)^4 - 1 = 0.5181$, 즉 51.81%가 된다.



확대보기

화폐의 시간가치

화폐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현재 특정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락할 수 있는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은 이자를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하여 1년 후에 110만원을 받을 경우 현재 100만원의 가치와 1년 후 110만원의 가치는 동일하며, 이자 10만원은 화폐의 시간가치에 해당하고 명목이자율은 10%이다. 즉, 이자율은 미래의 화폐가치를 동일한 가치의 현재의 화폐가치로 전환하거나, 현재의 화폐가치를 동일한 가치의 미래의 화폐가치로 전환할 때 사용되며, 할인율 또는 수익률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수익률 계산 시 고려할 사항

수익률 계산 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명시적 비용으로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증권거래 시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거래수수료나 부동산거래에서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등이 거래비용에 속한다. 결국 총수익에서 거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실질적인 투자수익이 되기 때문에 거래횟수가 빈번할수록 비용 대비 수익은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장기투자가 유리한 이유가 된다.

또한 저축 또는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가 실질적인 수익이 된다. 따라서 세전(before-tax) 수익률과 세후(after-tax) 수익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거래비용 및 세금과 같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비용 외에도 암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들 수 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기회의 가치를 의미하는 기회비용은 투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면 명시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기회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수집 비용도 암묵적 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투자에 수반되는 기회비용 및 정보비용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직접투자 대신에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투자결정 및 운용을 대신 해주는 대가로 운용보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3 투자의 위험(risk)

우리는 실생활에서 리스크(risk)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리스크란 불확실성에 노출(exposure to uncertainty)된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적 상황 외에 긍정적 가능성도 내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의 경우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을 가리켜 환리스크가 있다고 하고, 이 기업은 이후 환율이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유리하고 하락하면 불리해진다.

수익률과 투자위험(risk)의 관계

확정된 수익률이 보장되는 저축과 달리, 투자의 경우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리스크가 수반된다.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투자 결과의 변동 폭이 크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클수록 기대수익률도 높다. 이런 투자의 특성을 'high risk high return(고수익 고위험)'이라고 한다. 기대수익률(expected return)이란 미래에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을 의미하므로, 실제 투자 결과로 발생하는 사후적 수익률, 즉 실현수익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리스크가 큰 투자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며, 기대수익률이 높아야만 투자자들이 기꺼이 리스크를 부담하여 투자를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안전한 저축 대신에 주식투자를 선택하는 투자자는 저축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투자를 선택한 것이지만, 주식투자 결과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결과적으로 주식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며, 그중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투자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리스크인 것이다.

보통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수익률을 무위험 수익률(risk-free rate of return)이라고 하고,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증가하는 기대수익률 부분을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라고 한다. 투자의 기대수익률은 무위험 수익률¹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값이다.

그리고 투자자는 각자의 투자목적과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리스크를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text{기대수익률} = \text{무위험 수익률} + \text{리스크 프리미엄}$$

투자위험의 관리와 분산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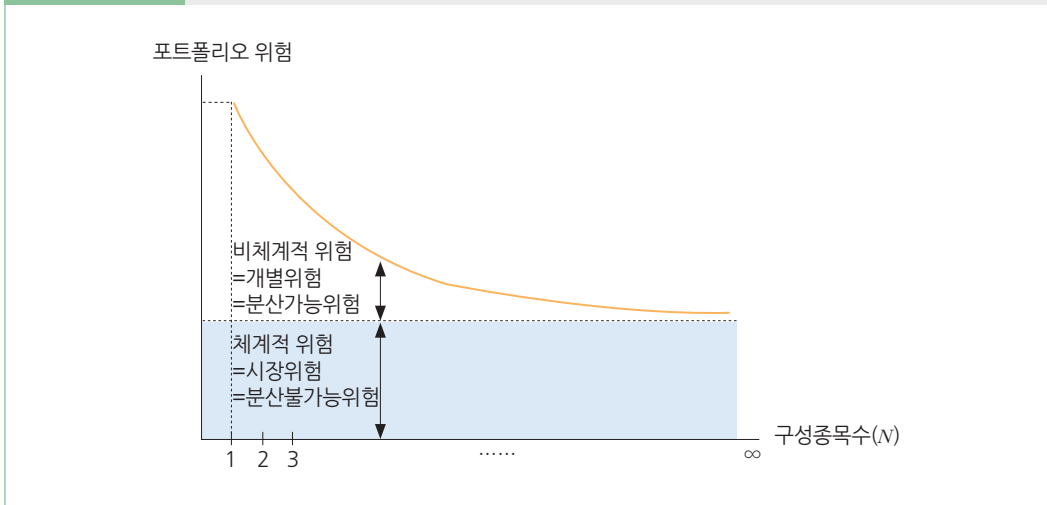
투자의 본래적 속성에 리스크가 포함된다고 해서, 손실 위험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투자위험 관리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산분산을 통한 분산투자이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표현으로 분산투자를 강조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산, 즉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하여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말이다. 포트폴리오란 여러 가지의 모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금융에서는 두 개 이상의 자산들로 구성된 투자대상의 집합을 의미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 금융상품이나 자산에 돈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여 리스크가 감소한다. 예를 들어, 우산 가게와 아이스크림 가게가 각각 있다고 하면 두 가게는 날씨에 따라 매출액의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 리스크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같은 가게에서 우산과 아이스크림을 함께 판매한다면 날씨에 따른 총매출액의 변동성 폭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별자산별로 보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개별자산에 나누어 투자하게 되면 전체 리스크, 즉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분산투자를 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림 4-1>과 같이 편입자산의 수가 증가하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일정한 수준

1 금융시장에서는 무위험 수익률로 정부가 발행한 단기 국채의 수익률을 주로 사용한다.

그림 4-1

분산투자와 투자위험



까지만 하락한다. 포트폴리오의 편입자산을 증가시켜 다각화를 통한 분산투자효과를 추구하여도 시장 전반에 기인하는 위험은 제거할 수 없는데 이를 체계적 위험, 시장위험, 또는 분산 불가능위험 등으로 지칭한다. 체계적 위험은 세계 경제위기나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이 모든 자산이나 투자 대상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의미한다. 반면 분산투자에 의하여 제거 가능한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 개별위험, 분산가능위험 등으로 지칭한다. 비체계적 위험은 경영자의 횡령, 산업재해, 근로자의 파업 등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가치에만 고유하게 미치는 위험으로 자산을 분산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그 크기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분산투자는 투자대상자산, 시기, 지역, 통화 등을 통한 분산이 가능하다. 즉, 기대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투자 대상 지역을 여러 나라에 분산할 수 있다. 또한 외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달러화, 유로화 등 다양한 통화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투자대상에 투자하지만 투자하는 시기를 달리하여 분산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적립식 펀드 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적립하여 투자한다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인 주식형 펀드 등에 일시에 투자하는 것보다 매입 평균단가를 낮추는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

레버리지 효과와 투자위험

분산투자와 같이 투자위험을 줄이는 전략도 있지만 기대수익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투자

위험을 오히려 늘리는 전략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레버리지(leverage) 투자이다. 영어로 'leverage'란 지렛대를 의미한다. 지렛대를 이용하면 실제 힘보다 몇 배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데,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에 비유하여 레버리지로 표현한다.

투자에 있어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려면, 즉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려면 투자액의 일부를 자신의 자본이 아닌 부채로 조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금 100만원으로 10,000원인 주식을 100주 매입한 뒤 주가가 20% 상승한 12,000원에 매도하였다면 거래비용은 무시하고 자기자본 100만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주가변동률과 같은 20%가 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금 100만원 중에서 60%인 60만원은 대출자금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40만원만 자기자본이라고 가정하면 투자수익률은 20%의 2.5배인 50%로 크게 높아진다. 발생한 총수익은 2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투자에 사용한 자기자금은 4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이다($50\% = 20\text{만원} / 40\text{만원} \times 100\%$). 물론 거래비용과 대출이자 등을 감안한다면 수익률이 좀 더 줄어들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성립한다. 위의 예에서 만일 주가가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10% 하락했다고 가정하면, 자기 자금 40만원에 대출자금 60만원을 보태서 투자한 경우 총투자액 100만원에 대한 손실액은 10만원이고 따라서 자기 자금 40만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25%가 되어 실제 가격변동률 -10%의 2.5배가 된다. 결과적으로 투자의 레버리지는 총투자액 중 부채의 비중이 커지면(동일한 의미로, 자기자본의 비중이 작아지면) 증가하게 된다.² 다음 공식에 따라 투자의 레버리지를 계산하면 된다.

$$\text{투자 레버리지} = \text{총 투자액} / \text{자기자본}$$

앞의 예시를 공식에 대입해보자. 총 투자액 100만원 중 40%인 40만원만 자기자본으로 사용하여 투자를 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2.5배(=100만원/40만원)로서 실제 주가가 20% 상승해도 실제 투자수익률은 2.5배인 50%가 되고 10% 하락해도 투자수익률은 2.5배인 -25%가 된 것이다. 결국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투자수익률은 가격변동률의 몇 배로 증가하여 리스크가 커

²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는 현상을 감안하여 실제 현실에서는 레버리지가 부채를 대신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고 언급하거나 부채가 많은 기업을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레버리지를 '양날의 칼'에 비유하기도 한다.

레버리지는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기업이 부채 없이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한 전략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우 감내할 만한 수준 이내에서 적절한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이 부채를 사용하여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주식과 같이 리스크가 큰 투자에서 레버리지를 통해 리스크를 더욱 확대한다는 것은 건전한 투자를 넘어 사실상 투기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투자는 부채 없이 여유자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부채에는 이자부담이 수반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확대보기

레버리지와 깡통전세

우리나라에서는 전세제도를 이용한 레버리지 부동산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5억원인 아파트를 4억원의 전세를 끼고 자기자본 1억원으로 매입하는 경우인데, 이때 투자 레버리지는 5배(=5억원/1억원)가 된다. 만약 집값이 30% 상승하여 6억 5천만원이 되면 자기자본 1억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실제 집값의 상승률인 30%의 5배인 150%가 되고, 만일 집값이 30% 하락하여 3억 5천만원이 되면 투자수익률은 손실률인 -30%의 5배인 -150%가 된다. 이렇게 되면, 부채나 마찬가지로 전셋값 4억보다 집값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실제 주택의 가치보다 부채인 전셋값이 더 높은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SECTION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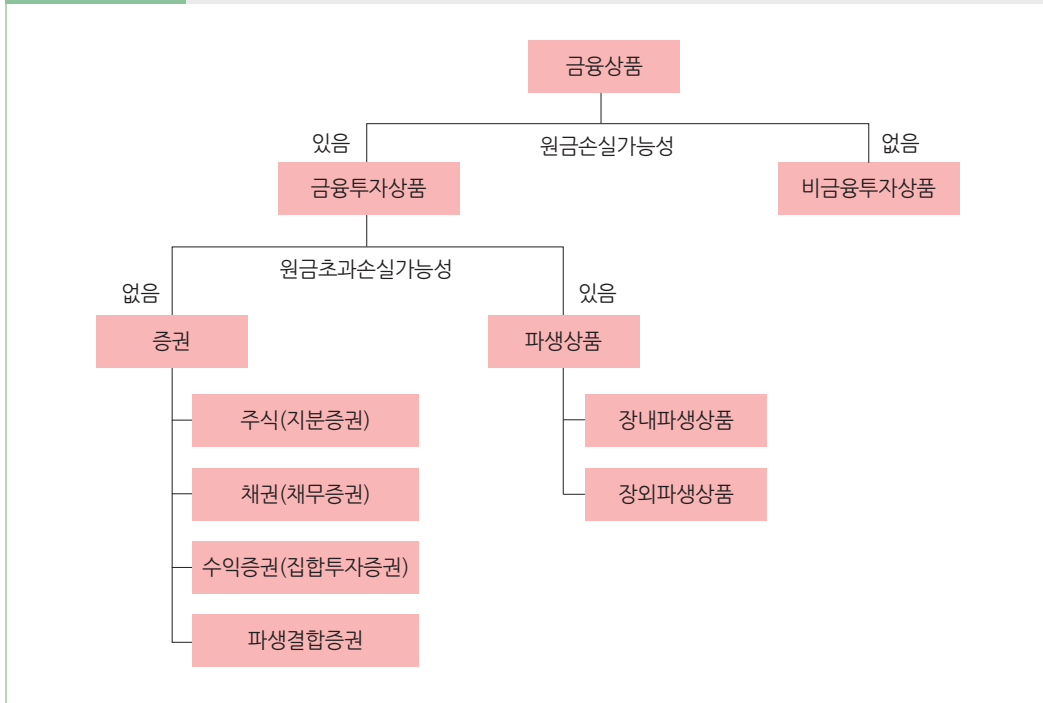
금융투자상품

1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금융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과 원금손실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된다. 비금융투자상품으로는 예금상품, 대부분의 보험상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을 초과하는 추가손실가능성 여부에 따

그림 4-2

금융투자상품의 세부 분류



라 추가손실가능성이 없는 증권과 추가손실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증권은 주식(지분증권), 채권(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분류되며,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상품의 분류는 <그림 4-2>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번 장에서는 주식과 채권에 대해 살펴보고 5장에서는 수익증권(펀드)과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금융투자상품 투자 과정

금융투자상품은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누고 있는데, 일반투자자는 쉽게 말해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투자권유준칙을

지키며 판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융투자상품은 복잡한 구조를 통해 수익의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해당 상품에 내재된 투자위험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판매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자인 금융회사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즉 투자권유준칙을 정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의 구매자인 투자자도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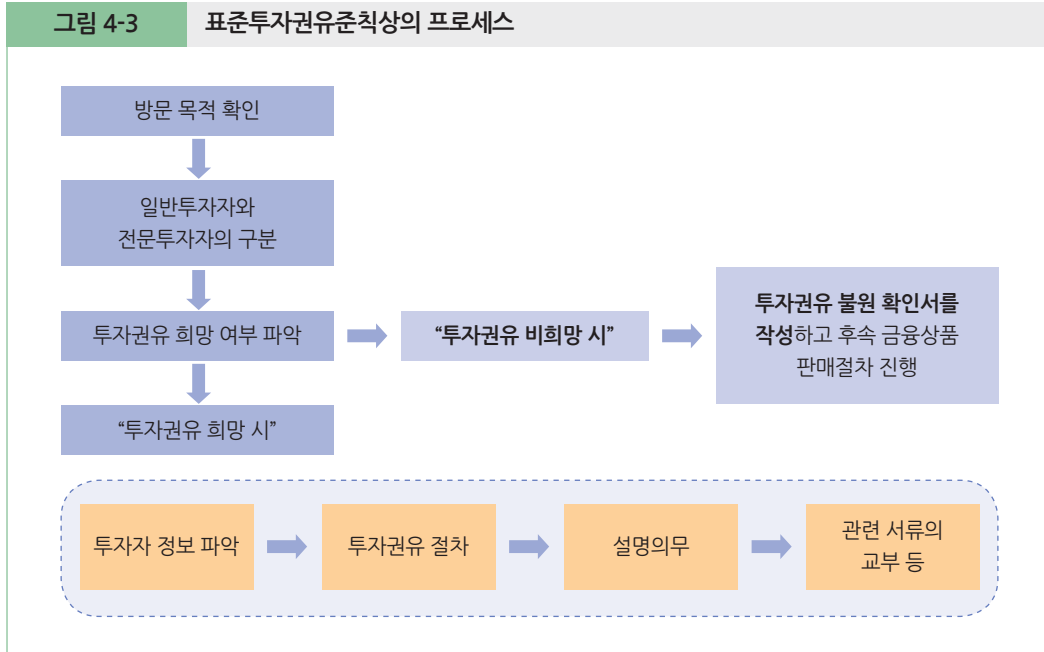
투자상품의 매입과정을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단계별로 확인해보면 먼저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방문 목적을 파악하고, 투자를 희망할 경우 일반투자자인지 혹은 전문투자자인지 구분한다. 전문투자자는 국가, 한국은행, 은행, 증권회사 등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이다. 다음은 투자자 정보에 근거한 투자권유를 희망하는지 파악하고 희망할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판매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이용한다.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부분과 위험선호도를 파악하는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금융회사는 파악한 투자자 정보에 근거하여 투자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알맞은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선정하여 추천한다. 금융회사는 추천한 투자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상품의 투자설명서나 상품소개서 등을 이용한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충분한 설명을 들은 투자자는 최종적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각종 필요한 서명을 하고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는 투자설명서 등을 전달받게 되는데, 금융회사 직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서명하는 내용을 꼼꼼히 재확인하고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직원의 설명, 그리고 서명하는 서류의 내용을 비교하여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에는 없지만,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의 구매 후, 정기적으로 상품의 성과, 현황 및 자신의 상황(자신의 가치관, 재정상황, 가족 등)을 고려하여 계속 투자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투자의 목표(목적)에 알맞은 수단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투자는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동안은 매순간 해당 투자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기억해야 하겠다.



확대보기

나는 어떤 투자자일까?

아래의 표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투자자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조사하는 항목의 예시이다. 각 내용에 체크하여 자신은 어떤 투자자로 분류될지 확인해 보자.

문항		배점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9세 이하 ② 20세 ~ 40세 ③ 41세 ~ 50세 ④ 51세 ~ 60세 ⑤ 61세 이상	1~4
2. 고객님의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1~5

3.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④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1~5
4. 고객님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은 수준 :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② 낮은 수준 :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③ 높은 수준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④ 매우 높은 수준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1~4
5. 고객님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십니까?	① 10% 이하 ② 10% 초과~20% 이하 ③ 20% 초과~30% 이하 ④ 30% 초과~40% 이하 ⑤ 40% 초과	1~5
6.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1~3
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②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③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④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2~6

각자 위의 투자자 정보를 실제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한다. 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항목별로 배점이 있으며, 배점을 합쳐서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한다. 문항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번 :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2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 3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⑤로 응답한 경우 5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번 : ①로 응답한 경우 1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4점
- 5번 : ①로 응답한 경우 5점, ②로 응답한 경우 4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점, ④로 응답한 경우 2점, ⑤로 응답한 경우 1점

- 6번 : ①로 응답한 경우 3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점
- 7번 : ①로 응답한 경우 -2점, ②로 응답한 경우 2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점, ④로 응답한 경우 6점

1번부터 7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는데 예를 들어, 1번부터 7번까지의 합이 26점이라면 $(26점/32점) \times 100 = 81.3점$ 과 같이 계산한다. 이러한 점수결과에 따라 자신의 투자성향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파악할 수 있다.

- 20점 이하: 안정형
- 20점 초과 ~ 40점 이하: 안정추구형
- 40점 초과 ~ 60점 이하: 위험중립형
- 60점 초과 ~ 80점 이하: 적극투자형
- 80점 초과: 공격투자형

SECTION 03

주식 투자

1 주식의 개념

주식(stock 또는 share)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서 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 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므로 주식 소유자는 주주로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을 갖는데, 만약 회사에 순이익이 발생하면 ‘내 몫을 주시오’ 할 수 있는 이익배당청구권이 생기며, 혹시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 중 ‘내 몫을 주시오’ 할 수 있는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생긴다. 또한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등을 갖는다.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갖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되므로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주식회사 주주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출자한 자본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 책

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출자한 회사가 파산하여 갚아야 할 부채가 주주 지분 이상이 되더라도 주주는 지분가치를 초과한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주가 출자한 회사에 대한 권리는 크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익권과 회사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권으로 나뉜다. 앞에서 설명한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은 자익권에 속한다. 한편, 주주의 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에 지분 수에 비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 회계장부와 관련된 주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이미 선임된 이사를 임기 전이라도 일정 수 이상의 주주 동의를 얻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이사해임요구권,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의 주주 동의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자익권과 공익권을 갖는 주식을 보통주(common stock)라고 하고, 이러한 보통주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 주식으로 우선주(preferred stock)라는 것이 있다. 우선주는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다. 즉, 보통주에 앞서 우선적으로 회사 이익에 대해 배당을 받고, 회사가 청산될 경우에도 부채를 제외한 잔여재산에 대해서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분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우선주는 보통주에 있는 의결권이 없다.

주식투자의 이익

주식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자본이득과 배당금이 있다. 자본이득은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주식의 가격이 변동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배당금은 기업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돈으로, 주식회사는 보통 사업연도가 끝나고 결산을 한 후에 이익이 남으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분배한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정하는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투자의 위험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10월은 주식투자를 하기에 매우 위험한 달이다. 다른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식투자의 위험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주식의 가격은 매매체결에 따라 매순간 바뀌므로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는데, 가격 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 및 경기의 침체, 해당 주식이 속한 산업의 위축, 기업의 경영 부실,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실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극단적으로는 주식이 상장 폐지되거나 기업이 도산하여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주식 중에는 거래 물량이 적어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이 어려운 종목도 있으므로 환금성의 위험 또한 존재할 수 있다.

2 주식의 발행과 유통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발행되어 거래가 이루어진다. 주식시장이란 주식회사가 주식을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고 발행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주식시장은 주식이 발행기관을 통하여 최초로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발행시장

창업 초기의 기업은 소수의 특정인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기업이 성장하고 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모집(또는 매출)하는 최초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를 하게 되고 거래소에 상장하게 된다. 이때부터 누구나 이 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을 주식 발행시장(primary market)이라고 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에는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두 가지가 있다. 직접발행은 발행기업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반면에 간접발행은 전문성과 판매망을 갖춘 중개기관을 거쳐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최초기업공개 시에는 대부분 이 방식이 사용된다.

유통시장

발행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주식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식 유통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유가증권시장이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서 엄격한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이 상장(listing)되어 거래되는 시장이다. 반면에 코스닥시장은 원래는 미국의 나스닥(NASDAQ)과 유사하게 장외거래 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주식을 전자거래시스템인 코스닥(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을 통해 매매하는 시장으로 출발하였으나, 2005년 1월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가 통합거래소 체제로 일원화 되면서 지금은 또 다른 장내시장의 하나가 되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상장 기준이 덜 엄격한 편이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이 상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코넥스(KONEX : Korea New Exchange)는 코스닥 상장 전 단계의 기업들이 상장된 주식시장으로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을 위해 2013년 7월 개장했다. 코넥스는 기존 주식시장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 공시의무를 완화하여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투자자격은 까다로워 투자주체는 증권사,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및 각종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또는 기본예탁금이 3천만원 이상인 일반투자자 등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끝으로 K-OTC(Korea Over-the-Counter)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된 주식의 매매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서 경쟁매매방식 대신에 지정가 호가에 의한 상대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K-OTC시장은 기존의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장외주식시장으로 2014년 8월 개설되었다.



확대보기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치주와 성장주

주식을 구분하는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형주와 중소형주이다. 일반적으로 대형주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큰 주식을 말하는데, 시가총액이란 현재의 주식의 가격과 주식의 수를 곱한 값으로 현재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서로 1~100위의 기업의 주식을 대형주라고 한다. 대형주는 대기업의 주식일 확률이 높고 거래규모가 크므로 안정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식이다. 반면, 중소형주는 시가총액이 101위 이하의 기업을 말한다. 101~300위를 중형주, 301위 이하를 소형주로 나누기도 하는데, 기업규모가 작고, 경제나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등락 폭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수익의 기회도 큰 경향이 있다.

가치주와 성장주의 구분도 자주 쓰이는데, 가치주(value stock)란 기업의 매출액, 이익 등으로 평가한 본질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다. 성장주(growth stock)는 동종 업종 또는 시장 평균에 비해 성장에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으로,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에 발생할 이익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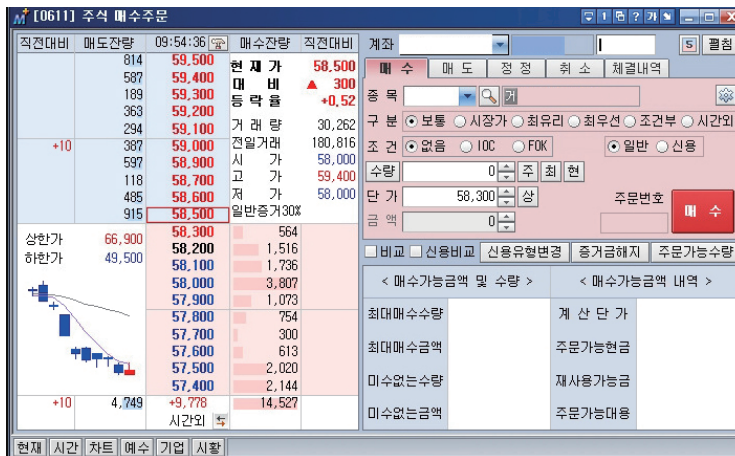
3 주식 거래 방법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한 다음,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주문하거나 인터넷 등의 전자주문매체를 이용하여 주문을 하면 된다. 최근에는 온라인 발달로 인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HTS(Home Trading System)가 보편화되었고,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MTS(Mobile Trading System)의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므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비대면 계좌 개설에 따른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을 활용할 수도 있다.

표 4-1 거래소 주식 매매거래 시간

체결방식	시간
장 전 증가매매	08:30~08:40
단일가매매	08:30~09:00, 15:20~15:30
정규시장매매	09:00~15:30
장 후 증가매매	15:30~16:00 (체결은 15:40부터, 10분간 접수)
시간외 단일가매매	16:00~18:00 (10분 단위, 총 12회 체결)

확대보기 온라인 주식거래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개설한 증권계좌에 투자할 자금을 입금해야 한다. 그 후 증권회사 홈페이지에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거나 스마트폰에서 증권회사의 거래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한다. '주식매수' 메뉴에서 원하는 주식을 검색하여 매수할 수량과 가격을 입력하고 매수를 누르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 반대로 매도를 원할 경우 '주식매도' 메뉴에서 주문하면 된다.

매매체결방법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매매체결방식은 가격우선원칙과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여 개별 경쟁으로 매매거래가 체결된다. 즉, 매수주문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을, 매도주문의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동일한 가격의 주문 간에는 시간상 먼저 접수된 주문을 체결하게 된다.

다만, 시초가와 종가의 경우는 시간의 선후에 상관없이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받아 제시된 가격을 모아 단일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단일가매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오전 8시 30분부터 주문을 내는 것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가격과 수량을 통해 오전 9시에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면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폐장 10분 전인 오후 3시 20분부터는 매매 없이 주문만 받다가 오후 3시 30분에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면서 종가가 결정된다.

이러한 정규주문 거래 외에도 장이 끝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외거래가 가능하며 기관투자자들 간의 시간외 대량매매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주문방법

주문가격은 원하는 매수 또는 매도가격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지정가 주문(limit order)과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시장가 주문(market order)이 있다. 대부분의 주식거래는 지정가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시장가 주문은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매수하고자 할 때 종종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의 주식매매 단위는 1주이다. 최소호가 단위, 즉 최소가격변동폭(minimum tick)은 주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천원 미만 1원, 오천원 미만 5원, 일만원 미만 10원, 오만원 미만 50원, 십만원 미만 100원, 오십만원 미만 500원, 오십만원 이상 1,000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단기간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예방하

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을 제한하는 가격제한(price limit)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전일 종가 대비 $\pm 30\%$ 이내에서 가격 변동이 허용되어 상한가 및 하한가가 결정된다.³

매매가 체결된 주식의 결제시점은 체결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T+2)이다. 예를 들면, 목요일에 매매가 체결된 주식은 토요일과 일요일 외에 다른 휴장일이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이 결제일이 되어 개장 시점에 매입의 경우는 증권계좌에서 매입대금이 출금되면서 주식이 입고되고, 매도의 경우는 증권계좌에 매도대금이 입금되면서 주식이 출고된다.

거래비용

주식거래에도 필연적으로 과세문제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금융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총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종합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기존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합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소액개인투자자에게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이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경우는 매도 시 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매도가격의 0.08% 및 0.15%씩 부과되고, 코스닥 종목의 경우는 매도 시 매도가격의 0.23%가 거래세로 부과되어 결국 두 시장 모두 매도 시 매도가격의 0.23%가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개기관인 증권회사에 거래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증권회사별로 온라인 거래 여부, 거래금액 규모 등에 따라 매입 및 매도 시 거래대금의 0.001%에서 0.5%까지 부담하게 된다.

3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일일 최대가격변동폭은 초기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되다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금융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가격제한폭을 $\pm 15\%$ 로 확대한 이후 오랫동안 이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2015년 $\pm 30\%$ 로 확대하였다.

SECTION
04

채권 투자

1 채권의 개념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과 주식회사가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한국거래소에 가장 많은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이 채권이다. 채권은 확정이자부 증권(fixed income securities)의 형태가 일반적이며 발행시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상환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발행된 채권 1장의 가치를 액면가(par value)라고 하고, 이것이 채무자가 만기 시점에 채권 보유자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이 된다.

또한 주식과 달리 채권은 발행기관의 순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발행회사의 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배당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나, 채권은 발행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식과 차이가 있다. 채권의 액면가에 대해 약정한 이자율을 연율로 표시한 것을 표면금리(coupon rate)라고 한다. 또한, 채권은 원리금의 상환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term-limited securities)이다. 따라서 채권에는 만기(maturity)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만기까지 매 단위기간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점에 표시된 액면가를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투자의 이익

채권투자는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이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채권의 수익성이란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하고 매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다. 이자소득은 발행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자본소득은 채권의 유통가격이 변동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매매차익을 의미한다. 둘째,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금융회사, 상장법인 등이 주로 발행한다. 각 발행기관의 특성에 따라 원리금 상환능력은 다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채와 공채는 일반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비하여 안전하다. 셋째,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함으로써 확정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만기 도래 전에 유통시장에서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채권투자의 위험

한편, 채권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채권가격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위험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시장금리 및 발행기관의 신용 변화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아졌을 때에는 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 발행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채권의 발행물량이 적고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못한 경우는 채권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동성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채권의 분류

채권은 발행주체, 상환기간, 이자 지급방법, 보증유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① 발행주체별

- **국채** : 국가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다. 국채에는 일반재정적자를 보전하거나 재정자금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발행되는 일반국채, 특정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사업국채, 국가의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상채권 등이 있다.
- **지방채** :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기관 등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 **특수채** :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금융채** :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금융회사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인 하나이고,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주로 장기 산업자금에 사용된다.
- **회사채** :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는 주주들의 배당에 우선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며 발행회사가 도산하거나 청산할 경우 주주들에 우선하여 회사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② 상환기간별

- **단기채** : 통상적으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채권을 단기채권이라 하고, 우리나라에는 통화안정증권, 금융채 중 일부가 여기에 속한다.

- 중기채 : 상환기간이 1년 초과 5년 이하의 채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회사채 및 금융채가 만기 3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 장기채 : 상환기간이 5년 초과인 채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국채가 만기 5년 또는 10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③ 이자 지급방법별

- 이표채 : 이자 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 할인채 : 표면상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대신에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되는 채권으로서 이자가 선급되는 효과가 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무이표채(zero-coupon bond)라고 불리기도 한다.
- 복리채 :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대신에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을 말한다.

④ 보증유무별

- 보증채 : 원리금의 상환을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보증하는 채권으로서 보증의 주체가 정부인 정부보증채와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 등이 보증하는 일반보증채로 나뉜다.
- 무보증채 : 제3자의 보증없이 발행회사의 신용에 의해 발행·유통되는 채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보증채가 많이 발행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무보증채의 발행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현재에는 대부분이 무보증채로 발행되고 있다.

채권의 발행과 유통

채권시장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 등의 발행자가 처음 채권을 발행하는 시장이 발행시장이며, 이미 발행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유통시장이다. 발행시장에는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반 개인투자자는 채권형펀드 또는 채권ETF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확대보기

채권가격의 특성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시장이자율, 만기, 표면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 ① 채권가격과 시장이자율 : 채권가격은 시장이자율과 역의 관계에 있으며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상승하고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채권을 매입하고 시장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채권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 ② 채권가격과 만기 :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일정한 이자율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폭이 크다.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장기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시세차익을 확대하고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보유 채권 포트폴리오의 만기를 줄여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③ 채권가격과 표면이자율 :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정한 이자율변동에 대해서 표면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가격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채권에 투자하여 높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이 유리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표면이자율이 0%인 순수할인채의 가격변동폭이 가장 크다,

표 4-2 주식과 채권의 비교

구분	주식	채권
발행주체	주식회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수익형태	배당금, 주식매매 차익	이자수익, 채권매매 차익
원금보장	원금보장 안됨	발행자의 파산 시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원리금상환 보장
자본조달형태	자기자본	타인자본
증권소유자 지위	주주	채권자
증권소유자의 경영참가	가능	불가능
투자위험	비교적 높음	비교적 낮음
증권의 존속기간	발행회사와 존속을 같이 하는 영구증권	한정적인 만기가 사전에 특정

2 특수한 형태의 채권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 즉 일반사채와는 달리 계약 조건이 다양하게 변형된 특수한 형태의 채권이 등장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이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주로 많이 발행되고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순수한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사채이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사실상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전환사채에는 발행조건으로 전환할 때 받게 되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전환비율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 발행회사의 주가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채권 보유자는 전환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환하지 않고 사채로 계속 보유하게 된다. 전환사채는 보유자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전환권을 행사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사채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채권자에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 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와는 달리 발행된 채권은 그대로 존속하는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신주인수권이라는 옵션이 부여되어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에는 몇 주를 어느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회사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상승하게 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당시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보유자에게 유리한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사채에 비해 낮은 금리로 발행된다.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이 행사되면 사채는 소멸되는 데 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warrant)을 행사하더라도 현금납입형의 경우 채권은 계속 존속한다. 전환사채의 경우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더라도 발행회사에 현금유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현금납입형과 대용납입형이 있다. 현금납입형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투자자는 주식매입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발행회사에 현금유입이 발생한다. 대용납입형의 경우 사채의 발행가격으로 신주의 발행가격 전액의 납입에 충당하므로 사실상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란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주식으로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교환사채에는 발행조건으로 교환할 때 받게 되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교환비율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교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는 전환사채와 동일하지만,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을 통해 발행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반면에 교환사채의 경우는 발행회사가 보유 중인 타 주식(자기주식 포함)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4-3 특수한 형태의 채권의 비교

구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발행목적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이자비용으로 자금조달 등		
권리	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
대상 주식	발행회사의 신주	발행회사의 신주	발행회사 보유 상장법인 주식 또는 자기주식
권리 행사 시 대금 납입	사채금액과 대체	별도 대금납입(현금납입형) 사채금액과 대체(대용납입형)	사채금액과 대체
사채권	사채권 소멸	사채권 유지(현금납입형) 사채권 소멸(대용납입형)	사채권 소멸
취득가격	전환가격	행사가격	교환가격

금융꿀팁 주식·채권 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1.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한다.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 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지배구조 변경으로 인한 경영불안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임직원의 횡령 배임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경영진 등의 횡령 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3.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유의한다.

50인 미만의 개인, 법인 등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일 수도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SECTION
05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발행 기업에 대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나타낸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이 표명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재무제표

재무제표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나타난 특정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등 각종 재무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회계보고서를 말하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각 재무제표는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유기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지배기업의 기본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다.

상장기업을 포함한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아 공개해야 하며, 만일 실수나 고의로 잘못된 회계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파악하고 경영의사결정, 투자의사결정 등에 반영한다.

재무제표는 기업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로서 널리 활용되지만, 재무제표에 나타난 장부 가치(book value)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시장가치(market value)와 괴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회계정보는 과거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주가는 미래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무제표에 표시된 값은 시가보다 보수적으로 평가되어 작성될 수밖에 없고, 특히 화폐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항목, 즉 경영자의 능력, 기술개발력, 브랜드 가치와 같은 질적 정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특정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경제적 자원)과 부채(경제적 의무),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재산과 같은 개념으로 기업이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지배하고 있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된다. 자산은 1년 기준에 의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즉,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하며, 비유동자산은 1년 이상에 걸쳐 현금화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통상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는데, 당좌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등을 말하며,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등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그림 4-4

재무상태표 양식

재 무 상 태 표			
제 ○ 기 20××년 ○○월 ○○일 현재			
○○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유동자산	15,500	유동부채	15,000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000	매입채무	5,000
단기금융상품	3,000	단기차입금	10,000
단기매매증권	2,000	
매출채권	2,000	비유동부채	4,000
선급비용	500	사채	2,000
상품	3,000	장기차입금	2,000
제품	2,000	
.....		부채총계	19,000
비유동자산	21,500		
토지	10,000	자본	
건물	10,000	자본금	10,000
비품	500	자본잉여금	8,000
영업권	1,000	
.....		자본총계	18,000
자산총계	37,000	부채와 자본총계	37,000

부채는 기업이 미래에 상환해야 할 빚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로 정의된다. 부채 또한 1년 기준에 의하여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다만,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즉,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로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등을 말하며,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에 걸쳐 상환하여야 할 채무로서 사채, 장기차입금 등을 말한다.

자본은 소유주 지분 또는 주주지분이라고도 하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값과 같다.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달성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로 총포괄손익인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의 손익은 당기 실현 여부에 따라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되

그림 4-5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포괄손익계산서
제○기 20xx년 ○월 ○일부터 20xx년 ○월 ○일까지
제○기 20xx년 ○월 ○일부터 20xx년 ○월 ○일까지

○○ 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목	당기	전기
매출액	xxx	xxx
매출원가	xxx	xxx
매출총이익	xxx	xxx
판매비와관리비	xxx	xxx
영업이익	xxx	xxx
영업외수익	xxx	xxx
영업외비용	xxx	xx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xxx	xxx
법인세 비용	xxx	xxx
당기순이익	xxx	xxx
기타포괄손익	xxx	xxx
총포괄이익	xxx	xxx

는데, K-IFRS가 도입되기 전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K-GAAP')에서는 당기손익 정보만 표시하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K-IFRS에서는 당기손익정보와 기타 포괄손익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수익과 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손익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데, 포괄손익계산서는 이러한 기업의 경영성과를 당기손익 관점에서 그치지 않고 총포괄손익 관점에서 보여준다.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식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로 일정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 변동 내역을 기록한 표이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뜻하며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 자본구성요소 등이 있다.

현금흐름표는 기업이 현금을 어떻게 창출하고 사용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어떤 사업을 하든 기업은 영업활동, 채무상환,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며, 이러한 현금의 변동내역은 기업은 물론 채권자나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이다. 즉,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창출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이용자로 하여금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부채 상황 및 배당금 지급 능력과 자금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식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에 나타내지 못했던 사항을 각주 형식으로 번호를 매겨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회사의 개황,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 자산과 부채의 측정기준이나 계정과목의 산출 근거 등을 주식사항으로 기재한다.

2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란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말한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 감사의견 근거,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 등의 책임,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강조사항과

기타사항이 추가된다. 또한, 감사보고서에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참여 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내용을 적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전문가로서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핵심감사사항이나 강조사항 등을 기술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에게 독립적인 정보전달 기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주식시장 때 기준가격 결정, M&A 관련 기업평가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감사인의 감사의견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는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 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도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에는 감사범위 제한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여부 등에 따라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가 있다. 다만, 감사보고서상 적정의견은 당해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으면 해당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감사범위 제한으로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또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곧바로 상장이 폐지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

표 4-4 감사인의 감사의견

감사의견	내용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하는 의견
한정의견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지만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거절을 표명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을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
부적정의견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즉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나 불완전성을 나타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이거나,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표명하는 의견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을 받거나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곧바로 상장이 폐지된다. 다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는 사유해소 확인 시 반기말까지 상장폐지를 유예한다.



감사의견에 대한 예시

1. 적정의견 예시

- (적정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무제표는 회사의 20××년 ××월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 한정정의견 예시

- 한정정의견 근거 : 감사범위 제한 또는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에 대한 근거 서술
- (한정정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정의견 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년 ××월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부적정의견 예시

- 부적정의견 근거 : 중요하고 전반적인 재무제표의 왜곡표시에 대한 근거 서술
- (부적정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 근거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회사의 20××년 ××월 ××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의견거절 예시

- 의견거절 근거 : 중요하고 전반적인 감사범위제한에 대한 근거 서술
- (의견거절)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 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1 증권의 투자가치 분석

주식은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나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투자하는 증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증권분석(securities analysis)이란 개별증권의 투자와 관련하여 일체의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기법은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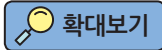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기본적 분석이란 시장에서 증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가격이 그 증권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증권의 내재가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내재가치가 추정되면 이를 시장가격과 비교함으로써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증권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매입 또는 매도 투자결정을 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기본적 분석은 경제분석, 산업분석, 기업분석으로 이어지는 환경적 분석과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재무적 분석이 포함된다.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증권가격 및 거래량의 추세와 변동패턴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 증권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분석기법이다. 즉, 증권시장의 시황이 약세시장이나 강세시장으로 전환하는 시점과 시장동향을 미리 포착하여 초과수익을 얻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 증권가격 움직임을 양상이 미래에도 반복된다고 가정하고 있고, 증권가격의 패턴을 결정짓는 증권의 수요와 공급이 이성적 요인뿐 아니라 비이성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기술적 분석은 주로 과거 추가흐름을 보여주는 주가 차트(chart)를 분석하여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으로 주로 이용된다.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증권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사실 성공적인 증권분석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보 수집 및 예리한 분석 능력을 갖추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민첩하게 실행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는 증권분석을 전업으로 하는 전문가에 비해 항상 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직접 주식투자 대신에 전문가를 통해 위탁매매를 하거나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개인투자자가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결국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자기책임원칙을 인식한다면, 개인투자자의 경우도 기본적인 증권분석 방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 시장가설과 증권분석

증권분석을 통해 초과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효율적 시장가설 (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따르면 효율적인 금융시장에서 현재의 주가는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과거 주가변동과 미래 주가변동이 독립적이고 규칙적인 패턴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초과수익을 획득할 수 없고, 공개된 모든 정보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주가가 내재가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에 의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주식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 비합리적인 투자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잘못 평가된 증권을 식별해내고,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발굴하며, 새로운 투자기법을 개발하는 증권분석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입장이다.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민첩하고 창의적인 증권분석과 효과적인 투자전략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워렌 버핏(Warren Buffett) 버크셔 헤더웨이 회장, 피터 린치(Peter Lynch) 피델리티 펀드 매니저, 템플턴 투자그룹 설립자인 존 템플턴(John Templeton), 조지 소로스(Gerge Soros) 퀀텀펀드 회장 등을 들 수 있다.

2 기업정보

효율적 금융시장에서 개별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에 대한 정보이다. 공시정보, 경영실적정보, 지배구조 및 경영권 등에 대한 기업정보는 결과적으로 주가 등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증권의 가격은 종종 시장의 수급, 경영권에 관련된 정보, 일시적인 유행 등에 따라서도 움직이게 된다.

기업공시 정보

상장기업은 기업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에 따라 발행한 증권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내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 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공시 내용이 중요한 투자정보가 되고, 공시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증권의 가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공시정보의 사전유출은 불법이기 때문에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사실상 어렵고, 발표된 공시정보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증권의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후에 공시정보를 활용한 투자는 별로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경영실적 정보

아무리 경쟁력 높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능력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실적에 뒷받침되어야만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역시 기업의 실적 발표이다.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주요한 재무정보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실적 발표는 실제로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전에 주요 기업의 실적을 예측하여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실적 예상치가 어느 정도 주가에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일의 주가는 절대적인 실적의 증감보다는 예상을 상회 또는 하회하는지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특히,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라고 하여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는 '어닝 쇼크(earning shock)'라고 하며 주가는 폭락하게 된다.

지배구조 및 경영권 정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복잡한 지분 관계로 묶여 재벌을 만들고 있거나 계열회사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이다. 기업의 주주분포와 경영권의 소재를 나타내는 소유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어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다. 다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같은 그룹 내에 있는 계열회사의 실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게 된다.

따라서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 기업이 원래 영위하는 사업뿐 아니라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가치와 지분법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로 인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자회사 지분보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holding company)⁴의 경우는 자회사의 실적이 중요하다.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정보도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기업의 인수합병(M&A)은 인수기업 및 피인수기업의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테마이다. 특히, 적대적 M&A 시도로 인한 지분경쟁의 경우는 피인수기업의 주가가 급등하지만 실패로 끝날 경우에는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또한, 대주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지분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게 되나,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변동한 주가는 결국은 제자리로 되돌아오거나 분쟁으로 오히려 기업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유행성 정보

주식시장에서는 갑자기 출현한 이슈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비슷한 이슈를 가진 여러 종목의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테마주’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행성 정보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루머에 따라 급등락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는 조심해야 한다. 때로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 업종 전반에 널리 퍼지면서 거품(bubble)을 형성하기도 한다.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수없이 많은 버블의 역사가 있어 왔고, 이때마다 거품은 오래지 않아 꺼지면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을 파멸로 몰고 갔다. 비교적 최근 예로 2000년도를 전후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인터넷 주식에 불었던 ‘닷컴 버블’과 첨단 기술주에 대한 ‘IT 버블’을 들 수 있다.

4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해서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여러 개의 자회사 주식을 각각 20%(금융지주회사는 50%) 이상씩 보유하여 지배하고 자회사가 다시 관련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여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기업간 상호출자나 순환출자가 금지되어 자회사끼리 가지고 있는 지분은 없다. 이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권 보호가 가능해진다.

적용하기

전자공시시스템(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DART는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에 제출하면 투자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한 종합적 기업공시시스템이다. 기업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경영실적 등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업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증권의 공모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DART 홈페이지와 달리 공시서류를 일일이 열람하지 않고도 주요 공시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시정보 개방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opendart.fss.or.kr)도 이용 가능하다. Open DART의 '공시정보 활용마당'에서는 여러 회사의 재무·비재무 정보를 한 화면에서 직접 비교하고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3 재무비율 분석

재무비율 분석이란 재무제표의 중요한 정보만을 정리하여 간결한 수치로 나타내서 분석하는 기업분석 방법이다. 재무비율은 일반적으로 부채비율, 유동성비율, 활동성비율, 수익성비율로 분류되며, 재무비율 분석을 통해 동종 산업 내 다른 기업들과 특정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거나 특정 기업의 재무비율을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다.

재무비율은 손쉽게 계산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우선 기업마다 회계처리방법이 달라서 재무비율의 단순 비교가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비율분석의 기준이 되는 표준비율의 선정이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평균을 비교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다각화된 제품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업군을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재무비율의 해석에는 분석자의 주관성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부채지표(leverage measures)는 기업이 자산 또는 자기자본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일반적인 부채비율은 총자산 대비 총부채로 측정하지만, 종종 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으로 측정되기도 한다. 부채의 레버리지효과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을 차감한 주주의 이익, 즉 당기순이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당기순이익의 변동성을 크게 하여 재무리스크를 높인다. 특히, 과도하게 많은 부채는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높이게 되므로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주식은 투자를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text{부채비율(\%)} = \frac{\text{총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한편,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에 의해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자보상비율이 높으면 이자비용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영업이익이 있다는 의미이고, 만일 이자보상비율이 1보다 작다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기업이 심각한 재무적 곤경에 처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ext{이자보상비(배)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유동성지표(liquidity measures)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단기부채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는 지표로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이 있는 유동자산의 비율로 측정한다. 다만,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재고자산의 경우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 항상 필요한 자산이므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유동자산, 즉 당좌자산만으로 유동성을 측정하는 당좌비율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동성비율이 높을수록 단기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유동자산 또는 당좌자산이 충분한 것이나, 지나치게 높은 비율은 불필요하게 많은 자금을 수익성이 낮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text{당좌비율(\%)} = \frac{\text{유동자산} - \text{재고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활동성지표(activity measures)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업이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주로 총자산 대비 매출액으로 측정된 총자산회전율로 측정한다. 자산회전율이 낮다면 매출이 둔화되었거나 비효율적인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의 활용도가 낮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철강, 자동차, 조선과 같이 자본집약적 산업의 경우는 총자산회전율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재고자산 대비 매출액으로 측정된 재고자산회전율 등도 활동성지표로 활용된다.

$$\text{총자산회전율(회)}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text{재고자산회전율(회)} = \frac{\text{매출액}}{\text{재고자산}}$$

수익성지표(earnings measures)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재무비율지표로서 크게 매출액과 투자자본 대비 수익률로 측정한다. 먼저, 매출액 대비 수익률을 각각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으로 측정한 매출액순이익률(ratio of net income to sales)과 매출액영업이익률(ratio of operating profit to sales)이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지분법이익과 같이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발생한 영업외 수익과 이자비용과 같은 영업외 비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만으로 측정한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더 많이 사용된다. 한편,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으로 측정한 총자산이익률(ROA : return on asset)은 기업이 자산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자본이익률(ROE : return on equity)은 주주의 몫인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비율 지표로 자주 인용된다.

$$\text{매출액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text{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text{총자산이익률(ROA)(\%)}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총자산}} \times 100$$

$$\text{자기자본이익률(ROE)(\%)}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4 주가배수 평가

주식투자를 위한 기본적 분석의 핵심은 기업의 가치와 현재 주가를 비교하여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 낮은 저평가 주식은 매입하고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높은 고평가 주식은 매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는 언제든 시장에서 알 수 있지만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기업의 가치를 알아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본적 분석에 의한 성공적인 투자의 관건이 된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기업가치와 주가를 비교해서 주식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가이익비율과 주가장부가치비율이 있다. 즉, 이는 기업의 가치를 각각 수익수준과 장부가치로 측정하여 현재 주가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주가이익비율(PER : price earnings ratio)

주식가격을 1주당 순이익(EPS : earnings per share)으로 나눈 값이며 기업이 벌어들이는 주당 순이익에 대해 증권시장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가를 뜻한다. 기업의 순이익 한 단위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상대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주가이익비율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주가이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주가가 순이익에 비해 고평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낮으면 주가가 순이익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비교하는 기준은 유사한 위험을 지닌 주식들의 PER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동종 산업의 평균 PER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해당 기업의 과거 수년간의 평균 PER을 이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PER = \frac{\text{주가}}{\text{주당순이익(EPS)}}$$

그러나 PER 계산에서 분모로 사용되는 주당순이익⁵(EPS)은 해당 기업의 최근 실적을 의미하는 반면에 분자가 되는 주가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두 값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실적은 좋았으나 향후 기업 전망이 좋지 못하면 PER이 낮을 수 있고, 반대로 최근 실적은 부진하지만 향후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PER이 높게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높은 성장은 기대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의 경우는 PER이 낮고, 현재 수익은 작지만 성장성이 높은 산업은 PER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의 경우는 시장에서 PER이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PER의 절대적인 수준에 의해 수익 대비 주가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해당 기업의 과거 수년 동안의 평균값이나 기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수익 대비 현재 주가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자주 사용된다.

주가장부가치비율(PBR : price book value ratio)

PER과 함께 주식투자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가장부가치비율(PBR : price book value ratio)은 시장가치(market value)를 나타내는 주가를 장부가치(book value)를 보여주는 주당순자산⁶(BPS : book value per share)으로 나눈 비율로서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장가격과 장부가치의 괴리

5 주당순이익은 최근 1년(분기별로 이익을 발표하는 기업의 경우 최근 4분기) 동안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6 주당순자산은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것이다. 기업의 순자산은 장부금액으로 기업이 청산된다고 가정하여 구한 값으로서, 기업의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이 자기자본인데 여기에서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과 배당금, 임원상여금 등 사외 유출분을 제외하면 순자산이 된다.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text{PBR} = \frac{\text{주가}}{\text{주당순자산(BPS)}} = \frac{\text{주당시장가격}}{\text{주당장부가치}}$$

주당순자산이란 기업 청산 시 장부상으로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을 나타내므로 PBR이 낮을수록 투자자는 낮은 가격에 주당순자산을 확보하게 된다. 만일 PBR이 1보다 작다면 해당 기업이 지금 장부가치로 청산한다고 가정해도 보통주 1주에 귀속되는 몫이 현재 주가보다 많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회계원칙의 보수성으로 인해 장부상의 자산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고, 경영자의 능력, 기술개발력, 브랜드 가치와 같이 화폐단위로 표시할 수 없는 항목은 순자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의 PBR은 1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PBR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의 PBR은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PER과 마찬가지로 PBR도 해당 기업의 과거 수년 동안의 평균값이나 기업이 속한 산업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대비 현재 주가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투자란 미래의 긍정적인 이익을 바라고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과도한 이익을 목표로 비합리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기와 구분된다.
- 투자위험(risk)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미래 결과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경우 위험은 높아지며, 기대수익률이 낮은 경우 위험은 낮아지는데, 이를 '고수익 고위험'(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한다.
- 위험관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여러 위험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투자이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이므로 자신의 위험성향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성향 등을 파악한 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도록 하고 있다.
-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으로 이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을 갖는다.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갖는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되므로 보유한 주식 지분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주식회사 주주는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출자한 자본액의 한도 내에서만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된다.
-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과 주식회사가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서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 채무불이행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다. 또한 특수한 형태의 채권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이 있다.
- 재무제표란 기업의 특정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등 각종 재무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회계보고서를 말하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감사보고서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한 의견을 표명한 보고서이며,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나눌 수 있다.
-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의 투자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은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나뉘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각종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투자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서술형

01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

02 증권과 파생상품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

03 주식투자 및 채권투자의 이익에 대해 서술하시오.

.....
.....

04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

 빈칸 채우기

01 란 미래에 긍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길 바라며,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02 이란 시장에서 증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가격이 그 증권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증권의 내재가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 03 주식 거래 시 주문가격은 원하는 매수 또는 매도가격을 지정하여 주문하는 지정가주문과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우선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주문이 있다.
- 04 는 채권 보유자에게 발행기업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수량만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이다.

 O·X 문항

- 01 주식회사 주주는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므로 출자한 회사가 파산하여 갚아야 할 부채가 주주 지분 이상이면 주주는 지분가치를 초과한 부채의 상환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는다. ()
- 02 일반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은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이자비용으로 자금차입을 위한 것이다. ()
- 03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은 모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파생상품은 원금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다. ()
- 04 채권가격은 시장이자율과 정(+)의 관계에 있으며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상승하고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한다. ()

05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Section 01

펀드

Section 02

파생상품

Section 03

구조화 상품

Section 04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05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펀드, 파생상품, 구조화 상품 등 최근 금융소비자의 투자가 증가되고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학습목표

- 다양한 유형의 펀드상품의 특성과 직접투자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의 특성과 손익구조를 이해하고 투자위험을 설명할 수 있다.
- 구조화 상품의 주요 특성과 손익구조를 이해하고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생각열기

겉 없는 서학개미, 주식서 3.4조 벌었지만 파생상품서 외장창

최근 해외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린 이른바 ‘서학 개미’가 올해 들어 3조 4,000억원의 평가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저점 매수’에 나선 게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고위험·고수익 투자인 해외 파생상품까지 손댄 ‘겉 없는’ 서학개미들은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금융 당국은 “고위험 상품은 상품구조를 충분히 분석해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략)…

그러나 고위험·고수익 투자로 꼽히는 파생상품에 손댄 서학 개미들은 웃기 어려웠다. 올해 상



반기 개인 투자자의 월 평균 해외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는 556조 6,000억원에 달한다. 전년(346조 9,000억원) 대비 60.5% 증가한 것이다. 전체 거래규모 가운데 개인 투자자 비중이 76%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중 개인 투자자가 해외장내파생상품에서 잃은 돈(실현손익+미실현 평가손익)은 8,788억원에 달한다. 작년 한 해 손실 규모(4,159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장내 파생상품 투자는 해마다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7,823억원 손실, 작년 4,159억원 손실, 올해 상반기 8,788억원 손실 등이다. ...**(중략)**...

금융당국은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아, 특정 정보에만 의존하는 ‘묻지마식 투자’는 주가변동 리스크에 더욱 노출된다”고 했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사례는 ‘아픈 손가락’ ○○○다. 올해 6~8월 국내 투자자는 이 회사에 2억 1,00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9월 사기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해외장내파생상품과 FX마진거래는 최근 거래규모가 늘어나며 그에 따른 개인 투자자 손실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무래도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투자하라는 권고다.

[출처: 조선일보, 2020. 10. 27.]

-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

1 펀드의 개념

투자방식에는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다.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주식,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정보를 스스로 수집·판단하여 투자를 하고, 또한 본인의 한정된 자금만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분산투자가 어려워 투자위험이 높다. 반면, 간접투자는 자산운용 전문가인 제3자에게 자금을 위탁하여 운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대규모 자금으로 분산투자하여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은 펀드(fund)이다. 펀드(집합투자증권)는 2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채권, 인프라(도로, 항만, 공항 등) 및 실물자산(금, 구리, 설탕 등)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여 그 결과를 각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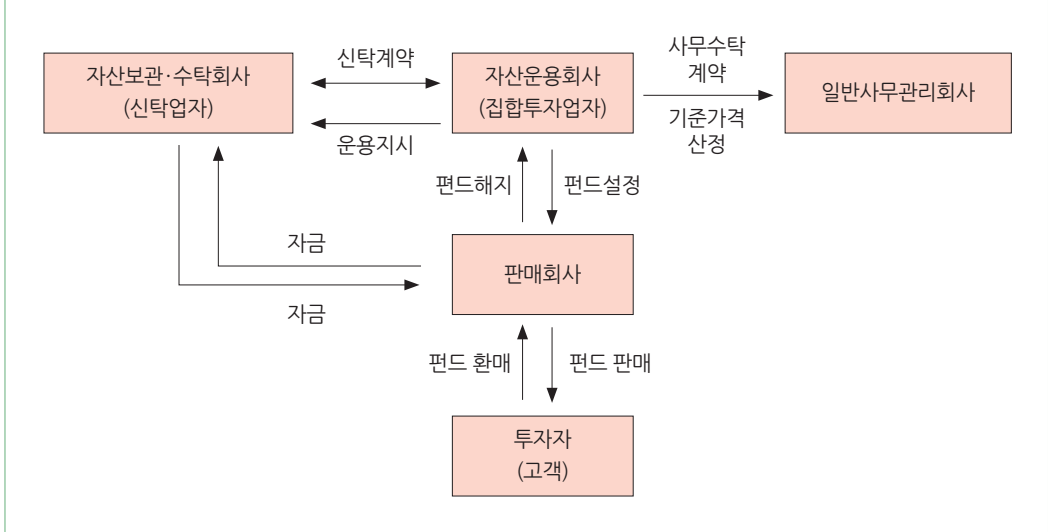
펀드는 투자포트폴리오의 운용성과에 따라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용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자신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펀드투자 의사결정 시 펀드의 운용특성, 투자위험 및 보수·수수료 등을 확인해야 하며, 투자 이후에도 펀드 운용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펀드 교체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

펀드의 운용구조

자산운용회사는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다. 펀드매니저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편입자산의 종류와 투자비중을 결정하고, 편입자산 발행회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시장상황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펀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펀드는 법적 형식에 따라 투자신탁(이하 '계약형펀드')과 투자회사(이하 '회사형펀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 펀드는 대부분 계약형펀드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계약형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며, 수익증권의 보유자는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을 투자한 비율대로 분배받는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은 펀드 판매회사로서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투

그림 5-1 계약형펀드의 운용구조



자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익증권을 판매한 대금, 즉 투자자의 투자자금은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보관·수탁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투자자의 펀드투자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펀德基준가격 산정업무와 펀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처럼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보관·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각각 특화된 업무와 유기적 협업을 통하여 펀드가 운용되고 관리된다. <그림 5-1>은 계약형펀드의 전체적인 운용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회사형펀드는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실제로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다. 회사형펀드는 상법상의 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계약형펀드에 비해 제약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회사형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는 측면에서 계약형펀드와 실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투자자가 펀드의 주주가 되고 펀드는 하나의 주식회사가 된다는 점에서 계약형펀드와 다르다. 회사형펀드에서 투자자(주주)는 회사(회사형펀드)의 운용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분배 받는다. 또한 회사형펀드의 투자자는 주주로서 보유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양도할 수 있다. 이 외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자산보관·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펀드 운용구조는 계약형펀드와 유사하다.

한편, 펀드운용 관련 회사 중 펀드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는 펀드를 설정하

고, 펀드재산을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이다. 따라서 운용 역량이 우수한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를 골라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펀드투자 비용

펀드투자 비용은 펀드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펀드 가입 시 펀드투자 비용이 적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펀드운용 관련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각종 수수료와 보수를 받는다. 즉, 펀드투자 비용에는 수수료와 보수가 있다. 수수료(commission)는 펀드투자자가 지불하는 일회성 비용이며, 보수(fee)는 펀드 가입기간 동안 펀드순자산의 일정비율로 지속적·정기적으로 지불되는 비용이다.

펀드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자산운용회사가 받는 돈을 운용보수라고 하며, 매년 펀드 자산의 일정비율을 보수로 떼어간다. 펀드 판매회사가 판매서비스에 대해 받는 대가에는 판매 수수료와 판매보수가 있는데, 판매수수료는 펀드를 추천하고 펀드내용을 설명해주는 대가이며, 선취 또는 후취로 떼어간다. 판매보수는 투자자의 펀드계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비용이며, 운용보수와 마찬가지로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을 지급하게 된다. 그 밖에 자산보관·수탁회사가 받는 신탁보수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사무관리보수가 있으나 운용보수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비하면 많지는 않다.

또한, 펀드에 따라 펀드에 가입한 후 3~6개월이 지나기 전에 펀드를 해지하면 일종의 페널티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펀드 투자기간이 불확실하거나 너무 빨리 환매할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략을 수립·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수수료이다.

펀드투자의 장점

펀드투자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소액으로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구성할 수 없다. 가령 개인이 500만원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해외자산 등에 분산투자하기 어렵지만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에서는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

둘째, 펀드는 자산운용 전문가인 펀드매니저에 의해 관리되고, 운영되는 장점이 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는 전문가에 비해 정보의 취득이나 분석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투자 경험도 적어 자금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반면 펀드는 자산운용 전문가에 의해 투자되

고 관리되므로 이러한 개인투자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셋째,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을 들 수 있다. 펀드는 대규모로 투자되고 운용되므로 규모의 경제로 인해 거래비용과 정보취득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명시적인 비용 외에도 각 개인이 소규모 자금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하지 못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다른 투자기회의 가치, 즉 기회비용을 줄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

2 펀드의 유형

기본 유형

펀드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되지만 대표적으로 중도 환매가능 여부, 투자자금의 추가 불입 가능 여부, 투자자금의 모집대상, 투자방식 등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환매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해 보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펀드와 만기까지 환매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폐쇄형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폐쇄형펀드의 경우에는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해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추가입금이 가능한 추가형펀드와 추가입금이 불가능한 단위형펀드로 구분된다. 투자자금 모집대상별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공모형펀드와 소수(49인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사모형펀드로 분류된

표 5-1 펀드의 유형

기준	펀드의 유형	
환매 여부	개방형펀드	언제 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로, 운용 후에도 추가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다.
	폐쇄형펀드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로, 첫 모집 당시에만 자금을 모집하고 기간이 끝나면 전 자산을 정산해서 상황이 이루어진다.
추가불입 여부	단위형펀드	추가입금이 불가능하고 투자기간이 정해져 있다.
	추가형펀드	수시로 추가입금이 가능하다.
자금모집방법	공모형펀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사모형펀드	49인 이하의 소수의 거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투자방식	거치식펀드	일시에 거금을 투자한다.
	적립식펀드	정기적(매월, 매분기 등)으로 일정금액을 투자한다.
	임의식펀드	투자금이 있을 때마다 투자한다.

다. 투자방식별로는 일시에 거금을 투자하는 거치식펀드와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투자하는 적립식펀드, 투자가능 자금이 있을 때마다 임의로 투자하는 임의식펀드로 나눌 수 있다.

투자대상에 따른 펀드 유형

펀드는 투자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펀드,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 금·구리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실물펀드,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선박이나 도로 등 특수자원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등이 있다. 부동산, 특별자산(도로, 항만, 선박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증권펀드와 구분하여 대체투자펀드라고도 한다.

또한, 증권펀드는 주식 및 채권에 어떤 비율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형펀드,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면 채권형펀드로 구분한다.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비율이 모두 60% 미만이면 혼합형펀드이다. 주식형펀드는 투자하는 주식의 특성에 따라 다시 성장주펀드, 가치주펀드, 배당주펀드, 섹터형펀드, 인덱스펀드 등 매우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채권형펀드 내에서도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정크)펀드, 단기의 안전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MMF(Money Market Fund), 국공채에 투자하는 국공채펀드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는 공식적인 구분은 아니고, 펀드 투자자가 해당 펀드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산운용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유형의 분류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표 5-2 투자대상에 따른 펀드의 유형

주식형 (주식에 60% 이상 투자)	성장주펀드	성장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가치주펀드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가치주를 발굴하여 투자하는 펀드
	배당주펀드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섹터형펀드	특정 섹터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인덱스펀드	KOSPI200지수와 같은 지표를 따라 가도록 설계한 펀드
채권형 (채권에 60% 이상 투자)	하이일드펀드	BBB 이하인 투기등급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MMF펀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 등 유동성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수시입출금이 용이한 펀드
	국공채펀드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
	회사채펀드	BBB+ 이상인 우량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
혼합형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 미만으로 투자하는 펀드	
기타	대체투자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도로, 항만, 항공기, 선박 등)펀드

펀드 클래스의 유형

하나의 펀드에서 운용방식은 같지만 펀드의 비용수준이나 비용부과방식은 펀드 클래스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투자자는 펀드 예상투자기간, 가입경로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즉 비용부담이 적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명칭의 마지막에 표기하는 알파벳은 이러한 펀드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자가 명칭만으로도 펀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도 부기한다.

먼저 펀드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에 따라 펀드 가입시점에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수료 선취(A)형, 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를 후취하는 수수료후취(B)형,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고 판매보수만 받는 수수료미징구(C)형, 펀드 가입시점 및 환매시점 모두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수료선후취(D)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판매수수료는 펀드 가입 또는 환매 시 약 1% 내외로 상당히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클래스는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또한, 펀드 판매경로에 따라 온라인(e)형, 오프라인형, 온라인슈퍼(S)형, 직판(J)형으로 분류

표 5-3 펀드 클래스의 유형

구분	클래스	내용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A)	가입 시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만, 판매보수가 낮아 장기투자에 적합
	수수료후취(B)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환매 시 후취수수료가 부과되지만, 단기에 환매가능성이 낮은 장기투자에 적합
	수수료미징구(C)	선취·후취 판매수수료가 없으나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로서 단기투자에 적합
	수수료선후취(D)	선취·후취 판매수수료가 모두 부과되는 펀드
판매 경로	온라인(e)	인터넷 전용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하나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오프라인	오프라인 전용펀드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으나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
	온라인슈퍼(S)	한국포스증권에서 판매하는 저비용 펀드
	직판(J)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펀드
기타	보수계감(CDSC)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펀드로 자동 전환하는 펀드
	무권유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펀드를 매수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다른 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펀드
	개인연금(P1)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펀드
	퇴직연금(P2)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펀드로 일반펀드보다 판매보수, 수수료가 저렴
	주택마련(H)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용도로 판매되는 펀드

한다. 온라인(e)형과 온라인슈퍼(s)형은 오프라인형 펀드에 비해 펀드비용이 약 30~50% 저렴하다. 이 외에 보수체감(CDSC)형, 무권유저비용(G)형, 개인연금(P1)형, 퇴직연금(P2)형 등으로 분류한다.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1. 장기투자 시에는 판매보수가 낮은 수수료선취(A)형 펀드가 유리하다.
수수료선취(A)형은 가입시 판매수수료가 일시에 부과되지만 매년 부담하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하다.
2. 단기투자 시에는 판매수수료가 없는 수수료미징구(C)형 펀드가 유리하다.
수수료미징구(C)형은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A)형보다 높지만 가입 시 판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단기투자자에게 적합하다.
3.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한다.
동일한 펀드라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s://dis.kofia.or.kr/>)에서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해 본 후 판매회사를 선택하면 펀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 온라인 가입 시 상대적으로 판매보수가 저렴하다.
온라인(e)형 및 온라인슈퍼(s)형은 오프라인 전용 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하지만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5.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를 체크한다.
대다수 펀드에서 환매수수료는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환매할 경우 부과되나, 펀드에 따라 10년 동안 환매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하니, 가입단계에서부터 투자예상기간과 환매수수료의 부과기간 등을 반드시 비교 확인한다.
6. 재간접펀드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펀드가 편입하는 투자대상 펀드의 비용이 일부 추가되므로 피투자펀드 비용을 합산한 총 비용을 비교하여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19)에서 발췌

상장지수펀드(ETF : Exchange 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는 특정지수의 변동 또는 특정자산의 가격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이다. ETF도 펀드이기 때문에 그 속성은 일반펀드와 동일하지만, 특정지수 등에 연동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가입 및 환매절차와 조건이 복잡한 일반펀드와 달리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지수나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펀드처럼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

용하지 않아 운용보수가 저렴한 등 편리한 점이 많은 펀드이다.

국내에서는 자산운용회사가 자사의 브랜드를 붙여, 예를 들면 KODEX, TIGER 등의 이름으로 ETF를 발행하고 있다. ETF시장 개설 초기에는 KOSPI200과 같은 시장대표지수를 복제하여 추적하는 ETF가 주류였으나, 그 이후 특정 업종의 상장기업 주가 흐름을 추종하는 섹터 ETF, 해외 시장대표지수 등을 추종하는 해외 ETF, 금과 같은 상품 가격 또는 상품선물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ETF, 채권지수를 추종하는 채권 ETF, 통화지수를 추종하는 통화 ETF 등의 다양한 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어 거래되고 있다.

최근에는 ETF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상품인 상장지수증권(ETN : Exchange Traded Notes)이 상장되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ETN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이다. 발행회사인 증권회사는 투자수요가 예상되는 다양한 ETN을 상장시켜 투자자가 쉽게 ETN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실시간 매도·매수호가를 제공한다. ETF와 ETN은 모두 인덱스 상품이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ETF의 경우는 자금이 외부 자산보관·수탁회사에 맡겨지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이 전혀 없는 반면에, ETN은 발행기관인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ETF는 만기가 없는 반면에, ETN은 Notes이기 때문에 1~20년 사이에서 만기가 정해져 있다.

금융꿀팁 ETF 투자 시 유의사항

1. ETF는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펀드상품이다.

ETF는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상장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므로 원금 손실위험에 대해 숙지한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2. 상품·운용회사에 따라 수수료와 보수가 상이하다.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보수 등 비용이 펀드자산에서 차감되며 장기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투자 전에 수수료 및 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큰 ETF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한다.

ETF 순자산가치가 기초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추적오차”가 큰 ETF나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인 “괴리율”이 큰 ETF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는 수익구조가 일반 ETF와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레버리지 ETF는 주가지수 등의 움직임의 2배로 상승 또는 하락하며, 인버스 ETF는 주가지수 등이 상승하면 하락하고, 주가지수 등이 하락하면 상승하기 때문에 위험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해외지수나 원자재 ETF는 환율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해외상장지수나 농산물·원자재 선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기본적으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므로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19)에서 발췌

부동산투자회사(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흔히 리츠라고 불리는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 매매, 임대 및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상품이다. 리츠는 소액투자자의 부동산 투자기회 등을 확대하기 위해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것으로, 부동산 펀드와는 달리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리츠는 부동산 등에 총 자산의 80% 이상을 투자하고,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리츠를 이용하게 되면 소액 개인투자자라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거래비용 및 세금이 부담되는 부동산 투자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금화가 매우 어려운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리츠 주식의 매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환율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

펀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펀드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성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펀드 투자 시에도 자신의 투자목적, 투자성향, 자금용도 등에 적합한 투자의사 결정이 필요하며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펀드 투자판단 시 펀드 핵심정보가 기재된 서류인 간이투자설명서를 확인하고, 특히 1~6등급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펀드 투자 시에도 투자대상의 분산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다. 기본적으로 펀드는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특정 섹터에 한정된 펀드도 많이 있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해외펀드의 경우 국가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펀드의 경우에도 섹터, 투자지역 등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투자대상 분산 외에도 투자시점을 분산하는 적립식 펀드투자를 하게 되면 매입가격 평균화효과(Cost Averaging Effect)에 의해 한 번에 거금을 투자할 때 높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판매보수·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적은 펀드를 골라 가입할 필요가 있다. 펀드에 따라 판매보수·수수료 부과체계가 다양하고 환매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와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 수준 등의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따져 가입하는 것이 좋다.

넷째, 과거 수익률을 참조하되 과신해서는 안 된다. 펀드의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펀드를 선택할 때 최근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성과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많은 실증 분석에서도 펀드의 과거 수익률과 미래 수익률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high risk high return'의 원칙이 당연히 펀드투자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기대수익률이 높은 고수익 펀드에 투자하면 손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다섯째, 펀드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자산운용회사, 펀드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가입한 펀드의 운용성과 등을 확인한다. 펀드에 가입하면 매분기별로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가 발송되는데, 기준가격,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현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유사한 펀드의 수익률이나 시장수익률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시적 또는 지속적 현상인지 알아본 후, 필요한 경우에는 펀드 교체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펀드 가입 시 꼼꼼한 상품내용과 리스크 확인 등도 중요하지만 가입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성공투자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투자액, 평가액, 평가손익 및 수익률 등을 관리하면 펀드수익률의 추세파악이 용이하여 필요한 경우 자산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펀드를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판매수수료 등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확대보기

시간분산투자법: 적립식 투자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에 나누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대상자산 분산뿐만 아니라 투자시점을 나누어 분산투자하는 시간분산도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단기간 내에 가격이 급등락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적절한 투자시점을 잡기 매우 어렵다. 특히, 일반 개인투자자는 시장상황 및 기업가치에 대한 정보가 기관투자자나 전문투자자에 비해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상태에서 그나마 개인투자자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투자시점을 분산하는 것이다. 즉, 몇 개의 시점으로 나누어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또는 매도시점을 분산함으로써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도 매입가격 또는 매도가격을 평균화(averaging) 할 수 있는 것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투자는 정액분할투자법의 대표적인 예다. 이 방식에 따르면, 매달 투자하는 금액은 일정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주가가 높은 달에는 주식을 적게, 주가가 낮은 달에는 주식을 많이 매수하는 것이 되어 평균 매입단가가 낮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주식을 매월 100만원씩 매입하는데 주가가 첫 달은 2만원, 둘째 달은 1만원, 셋째 달은 3만원일 때 매입했다면 평균 매입단가가 2만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2만원일 때는 50주, 1만원일 때는 100주, 3만원일 때는 33주를 사서 총 183주를 매입했기 때문에 총 투자금액 299만원을 183주로 나눈 16,339원이 평균 매입단가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액분할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매입가격 평균화효과(cost averaging effect)에 의해 가격변동 위험을 줄이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표 5-4 개별 주식과 다양한 인덱스 추종 금융상품의 비교

구분	개별 주식	ETF	인덱스펀드	액티브펀드
이용목표	인덱스 초과수익	특정 인덱스 추종	특정 인덱스 추종	인덱스 초과 수익
법적 성격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		
유동성	비교적 높음		비교적 낮음	
레버리지 가능	가능		불가	
거래비용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 운용보수	판매수수료 운용보수	판매수수료 운용보수
분산투자	불가	가능		
증권거래세	매도 시 부과	미적용		

SECTION
02

파생상품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가리키며,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파생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주식, 채권, 외화 등의 금융상품과 금, 은 등의 물품·원자재(commodity)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옵션의 형태로 많이 거래된다. 파생상품은 가격 외의 거래조건을 표준화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

는 장내파생상품(선물, 옵션)과 거래소 밖에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선도, 스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물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은 불확실한 미래 가격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는 헤지(hedge)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거나,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변동을 예상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특히, 기존의 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개발, 즉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이 가능해졌다. 금융공학은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고안하고 금융상의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면서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양산하게 되고, 급기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파생상품의 효용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파생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었다.

1 선물계약

선물의 개념

선물(futures) 또는 선물계약(futures contract)은 거래당사자인 선물매도자와 선물매입자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선물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체결한 계약을 의미한다. 현재 합의된 가격으로 미래에 한쪽은 자산을 매입하기로, 다른 한쪽은 매도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선물계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인간의 욕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예를 들어, 밀을 생산하는 농부는 자기가 가을에 수확하게 될 밀의 가격이 얼마일지 모른다. 만약 농부가 밀의 가격을 알 수만 있다면 그는 자기 수입이 얼마가 될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밀로 빵을 만드는 제빵업자의 경우에도 원료가 되는 밀의 가격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빵의 원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빵의 가격을 정하고 자신의 수입 또한 확정지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선물계약은 불확실한 기초자산의 미래가격을 확실한 것으로 고정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 간의 욕구가 그 시초가 된 것이다.

선물거래의 기능

선물계약을 통한 선물매입, 선물매도 등 선물거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로 가격 변동리스크를 줄이는 헤징(hedging) 기능을 들 수 있다. 즉, 가격변동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투자자(hedger)는 선물시장에서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미래에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더라도 수익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3개월 후 수출대금으로 1,000만 달러를 수취할 예정인 수출업자는 3개월 후 환율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원화로 받게 될 금액이 변동한다. 즉, 환리스크가 발생한다. 3개월 후 수출대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선물환을 매수한 것과 같으므로 3개월 후 달러당 1,120원에 1,000만 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선물환 계약을 가능하다면, 선물환 매도계약을 통해 3개월 환율 변동에 상관없이 112억원의 원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선물거래는 현물시장의 유동성 확대에 기여한다. 선물거래는 현물의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현물의 투자위험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투자자들은 현물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여지가 증대되고, 특히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도되어 현물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선물거래는 장래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선물시장에서 경쟁적으로 형성되는 선물가격은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기대값을 의미한다. 물론 선물가격이 미래의 현물가격과 꼭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현물가격을 예상할 수 있는 가격예시기능을 갖고 있다.

끝으로, 선물거래는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선물거래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선물거래는 레버리지가 높은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arbitrage)거래나 선물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 스프레드(spread)거래 등의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선물계약의 종류

선물계약은 거래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크게 상품선물과 금융선물로 구분된다. 상품선물(commodity futures)은 기초자산이 실물상품인 선물로서 초기에는 농산물, 축산물 등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임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에너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금융선물(financial futures)은 기초자산이 금융상품인 선물로서 금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장단기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s), 개별주식 및 주가

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주식관련선물(stock-related futures),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를 대상으로 하는 통화선물(currency futures)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5월 국내 최초로 코스피200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다양한 선물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왔다. 그중 일부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으나, 적지 않은 선물이 미미한 거래량을 보이며 간신히 유지되고 있거나 일부는 아예 폐지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선물로는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코스피200선물을 비롯하여 코스피200선물 대비 거래단위를 1/5로 축소한 미니코스피200선물,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시장 특성을 반영한 코스닥150선물, 코스피200지수 구성종목을 산업군별로 재분류하여 산출한 코스피200섹터지수선물, 코스피·코스닥시장 통합지수인 KRX300선물 등 다양하다. 금리선물로는 각각 3년, 5년, 10년 만기 국채선물이 있고, 통화선물은 각각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유로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거래하는 선물이 있으며, 상품선물로는 금선물, 돈육선물이 있다.

선물의 손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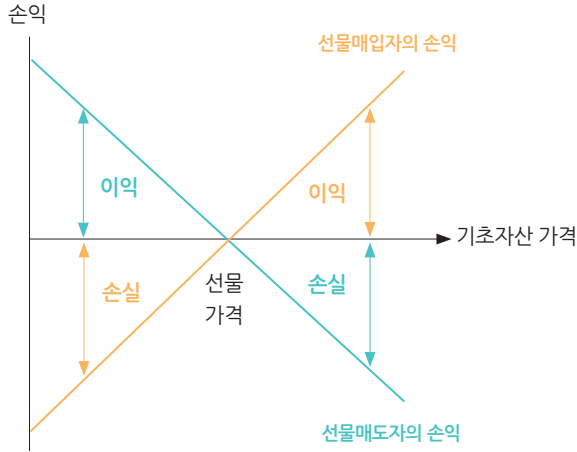
선물계약은 크게 선물매입(long position)과 선물매도(short position)로 구분된다. 선물매입은 최종거래일에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선물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행위이며, 선물매도는 최종거래일에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선물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도하기로 약정한 행위이다.

선물계약자는 최종거래일에 현물가격에 관계없이 선물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인수하거나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물계약의 손익은 청산일의 현물가격이 체결일의 선물가격보다 얼마나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익과 손실의 크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선물계약의 손익의 합은 항상 0이 된다.

선물매입자는 선물가격에 기초자산을 매입해야 한다. 따라서 선물매입자는 매입포지션 청산일의 현물가격이 체결일의 선물가격보다 상승하면 이익을 얻게 되고, 체결일의 선물가격보다 하락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된다. 반면, 선물매도자는 선물가격에 기초자산을 매도해야 한다. 따라서 선물매도자는 매도포지션 청산일의 현물가격이 체결일의 선물가격보다 하락하면 이익을 얻게 되고, 체결일의 선물가격보다 상승하면 손실을 보게 된다.

그림 5-2

선물의 손익구조



확대보기

베어링스 은행의 파산과 선물 투기거래의 위험성

선물 투기거래로 인해 파멸에 이른 개인이나 금융회사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베어링스(Barings) 은행의 파산은 대표적인 사례로 뽑힌다. 1995년 2월 27일 영국왕실인 원저궁의 주거래 은행이기도 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베어링스 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선물거래에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

싱가포르 국제통화거래소(SIMEX)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통해 1993년 베어링스 그룹 전체이익의 20% 이상을 벌어들이는 성공을 거두었던 닉 리슨(Nick Leeson)은 1994년 말에 1만 9천까지 떨어진 지수가 2만대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판단하여 Nikkei225주가지수선물에 상당액의 매입 포지션을 취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미국에서 고금리 정책의 기미가 보였기 때문인데,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지고 따라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므로 엔고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경제가 회복되어 Nikke이지수 또한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5년 새해의 Nikke이지수는 1만 8천까지 폭락했고, 이어 1월 17일 고베 대지진으로 다시 1천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에 리슨은 본사에 10억달러를 긴급 지원 요청하였고 이 돈으로 70억달러의 주가지수선물을 더 사들여 지수의 인위적인 상승을 시도했다. 그러나 곧이어 미국의 금리억제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Nikke이지수는 1만 7천대로 다시 폭락하여 13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과 함께 베어링스 은행은 결국 파산하게 되었다.

이처럼 선물 등 파생상품은 투자를 잘못 하는 경우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거대한 은행도 파산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금융상품이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거래금액 한도를 정하고, 거래절차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감독기관도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 옵션계약

옵션의 개념

옵션이란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물계약은 매입측과 매도측 쌍방이 모두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나, 옵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계약을 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반해, 계약상대방은 이러한 권리 행사에 대해 계약이행의 의무만을 지게 된다. 따라서 옵션계약의 경우는 계약이행의 선택권을 갖는 계약자가 의무만을 지는 계약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에 상응하는 대가인 옵션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옵션거래의 기능

옵션은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주식, 채권 등과 결합하거나 옵션 간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수익구조를 갖는 투자수단을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각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나 향후 가격변화에 대한 예상 또는 자신의 자금사정이나 투자목적에 따라 적합한 투자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또한, 선물거래의 가장 큰 기능이 헤징이었듯이 옵션도 불확실한 미래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헤징을 위해 선물과 옵션을 이용하는 데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선물거래는 헤지로 거래할 기초자산의 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위험을 제거하는 반면, 옵션거래는 미래에 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비한 보호수단을 제공하며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선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옵션시장에도 투기거래가 존재한다. 옵션의 거래비용은 옵션매입자의 경우 옵션프리미엄에 한정되기 때문에 옵션투자 시에는 적은 투자비용으로 레버리지가 매우 높은 투자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옵션계약의 종류

옵션계약은 선택권의 종류에 따라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으로 구분된다. 콜옵션은 기초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으로, 콜옵션의 매입자는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콜옵션의 매도자는

선택권 행사에 응해 기초자산을 매도해야 한다. 풋옵션은 기초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옵션으로, 풋옵션의 매입자는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기간 내에 특정 기초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풋옵션의 매도자는 선택권 행사에 응해 기초자산을 매수해야 한다. 또한 옵션은 권리행사시기에 따라 유럽식 옵션과 미국식 옵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럽식 옵션(European option)은 옵션의 만기일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이다. 반면 미국식 옵션(American option)은 옵션의 만기일이 될 때까지 언제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옵션을 말한다.

이 외에도 옵션은 기초자산에 따라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옵션(stock option),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옵션(stock index option), 주요국의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통화옵션(currency option), 금리변동과 연계되는 금융상품이 기초자산이 되는 금리옵션(interest rate option),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계약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션(options on future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품으로는 코스피200옵션, 미니코스피200옵션, 개별주식 옵션, 미국 달러옵션 등이 있다.



확대보기

옵션가격과 행사가격

옵션가격이란 옵션매입자가 옵션이라는 선택권을 갖는 대가로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며, 옵션프리미엄(option premium)이라고도 한다. 옵션가격은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및 행사가격, 기초자산의 배당, 옵션의 만기, 무위험이자율 등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다른 개념으로서 행사가격(exercise price 또는 strike price)은 옵션매입자가 옵션이라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의미하므로,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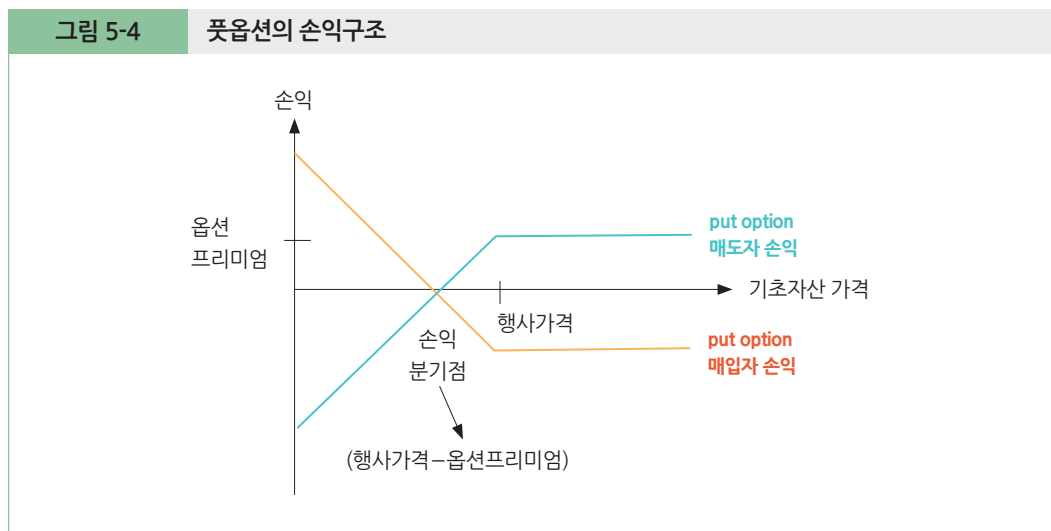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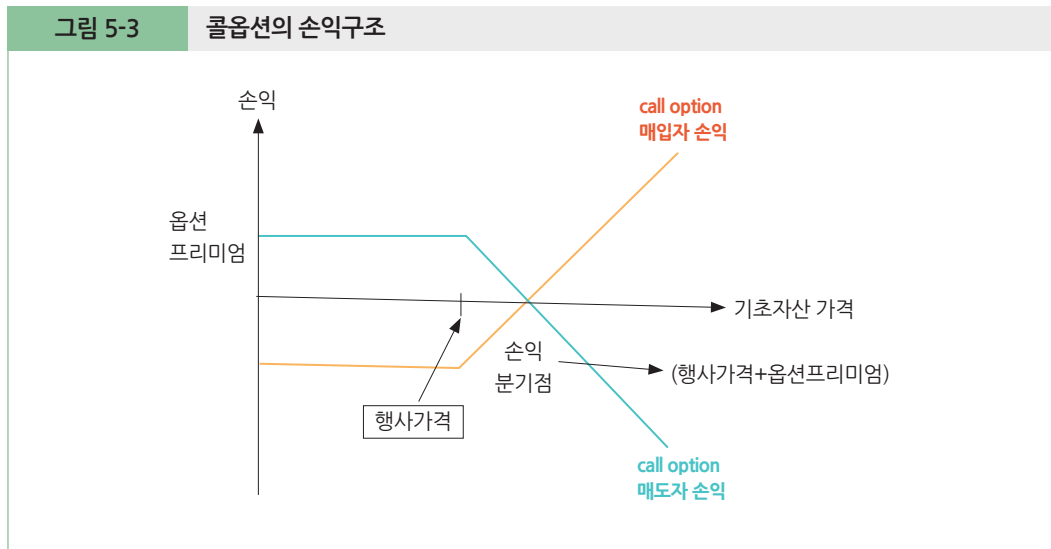
- 옵션프리미엄(option premium): 옵션매입자가 선택권을 갖는 대가로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옵션의 가격은 바로 이 옵션의 프리미엄을 지칭
- 행사가격(exercise price 또는 strike price): 옵션보유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

옵션의 손익구조

콜옵션 매입은 옵션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활용되고, 콜옵션 매도는 옵션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각각 활용되는 포지션이다. 콜옵션 매입자는 만기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에 콜옵션 프리미엄을 가산한 가격인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상승해야 이익이 발생한다. 콜옵션 매도자는 만기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그림

5-3)은 콜옵션 매입자 및 매도자의 손익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풋옵션 매입은 옵션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활용되고, 풋옵션 매도는 옵션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각각 활용되는 포지션이다. 풋옵션 매입자는 만기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에 풋옵션 프리미엄을 차감한 가격인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해야 이익이 발생한다. 풋옵션 매도자는 만기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손익분기점 이상이면 이익이 발생한다. <그림 5-4>는 풋옵션 매입자 및 매도자의 손익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3 스왑계약

스왑의 개념

스왑(Swap)계약이란 두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이다. 스왑은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데, 그 이유는 스왑은 두 당사자가 자신의 자금흐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계약형태가 다양하여 표준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왑의 종류 및 기능

스왑은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통화스왑(Currency Swap),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주식스왑(Equity Swap), 상품스왑(Commodity Swap)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통화스왑의 경우 이종 통화 간에 원금과 이자의 자금흐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러화와 원화를 스왑하여 원금과 이자를 서로 교환하게 되면 환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또한, 금리스왑을 하여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현금흐름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SECTION 03

구조화 상품

1 구조화 상품의 개념과 특징

구조화 상품의 개념

구조화 상품이란 예금, 주식, 채권, 통화,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 가공하거나 혼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상품이다. 구조화 상품의 예로는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을 혼합하여 만든 추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기타파생결합증권(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예금과 주식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추가연계예금(ELD : Equity Linked Deposit) 등이 있다.

구조화 상품의 등장배경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는 저축상품만으로는 재산증식이나 노후대비가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렇다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수익성은 높으나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개발된 것이 구조화 상품이다. 그러나 구조화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구조화 상품의 특징

구조화 상품은 기초자산의 수익성이나 리스크를 구조화기법을 이용하여 완화하거나 증폭시킨 것이기 때문에 상품의 구조와 내용이 복잡하여 일반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그리고 가치에 대한 평가나 정보입수가 어렵고, 유동성 부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조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 상품구조 및 유동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조화 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증권이기 때문에 파생상품과는 달리 투자원금의 100%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2 대표적인 구조화 상품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 ELS의 개요

주가연계증권(ELS)은 개별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조기 및 만기 상환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주가연계증권은 만기, 수익구조 등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반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음에 따라 유동성이 낮고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리스크(만기상환불이행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동으로 조기상환되는 조건이 부여되고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매를 요구할 수도 있다.

■ ELS의 종류

주가연계증권은 원금보장형 상품과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된다. 원금보장형 상품은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손실의 크기를 제한함으로써 최소한 원금이 보장되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원금비보장형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원금까지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원금보장형 상품에 비해 수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주가연계증권은 투자수익률이 연동되는 기초자산에 따라 지수형상품, 주식형상품, 혼합형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수형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가연계증권의 발행방식은 사모보다 공모의 비중이 높고, 원금비보장형 상품이 많으며, 투자자는 개인 및 일반법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자산운용회사, 퇴직연금신탁 등도 투자하고 있다. 또한, ELS 관련상품은 발행 또는 판매주체에 따라 증권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ELS,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ELF(주가연계펀드), 은행 등이 신탁을 통해 판매하는 ELT(주가연계신탁)가 있다.

■ ELS의 손익구조

ELS는 다양한 손익구조를 가지는데, ELS의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손익구조는 투자자들이 ELS 투자 시 위험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 원금보장형 ELS는 운용 자금의 대부분을 안전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일부 자금은 주가와 연동되는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초과수익을 확보하는 수익구조를 갖는다. 원금보장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만기수익이 제한적이다. 원금보장형 ELS에서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상관없이 만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원금의 비율인 원금보장률(floor rate)이 사전적으로 제시된다.

반면 원금비보장형 ELS는 만기에 원금을 보장한다는 조건이 없는 대신에 기대수익률은 높게 제시된다.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ELS의 손익구조는 투자자들의 수요에 따라 Knock-Out형, Step-Down형, Bull Spread형, Reverse Convertible형, Digital형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나타내기 어렵다. <그림 5-5>는 원금보장이 되는 Knock-Out형 ELS의 수익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받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미리 정한 경계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률에 비례하여 일정한 수익률을 획득하게 된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경계가격에 한번이라도 도달하면 기초자산의 가격수준에 상관없이 사전에 제시한 수익률이 확정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된다.

<그림 5-6>은 주식투자의 손익구조와 원금비보장 Step-Down형 ELS의 손익구조를 비교하여 단순화해 나타낸 예시이다. 주식투자 시 주가가 오르면 이익이 발생하고 주가가

그림 5-5 원금보장 Knock-Out형 ELS의 수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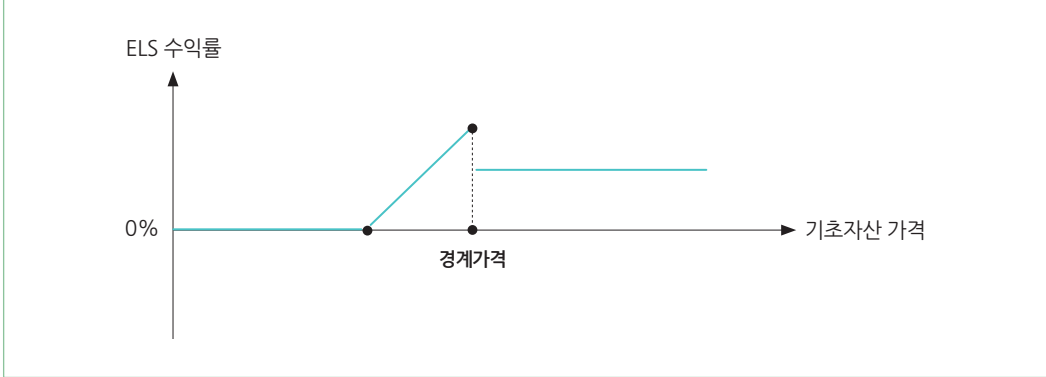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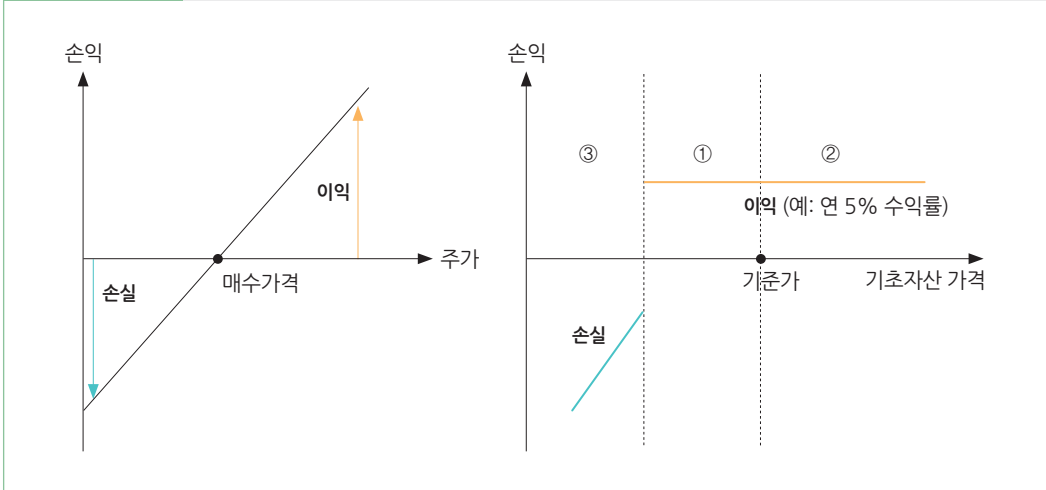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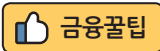
그림 5-6 주식투자의 손익구조 원금비보장 Step-Down형 ELS의 손익구조



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반면에 ELS는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 하락과 다른 손익구조를 갖는다. 오른쪽 그림에서 ①의 구간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보다 하락해도 일정 수준(예 : 6개월마다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의 90%, 85%, 80%, 75%)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약정된 이익(예 : 연 5%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②의 구간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보다 많이 상승해도 약정된 이익만 얻을 수 있다. ③의 구간에서는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수준보다 더 하락(예 :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의 75% 미만)하면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표 5-5〉는 다양한 유형의 ELS 손익구조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유형	수익구조
Knock-Out형	만기까지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률이 단 한번이라도 사전에 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미리 정한 수익률로 만기수익률이 결정됨
Step-Down형	정해진 시점(통상 6개월)마다 주가를 평가하여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 확정수익률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됨
Bull-Spread형	만기시점 기초자산 가격의 상승률에 비례하여 수익률 결정
Reverse Convertible형	기초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정한 하락 폭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해도 수익률 지급
Digital형	만기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이거나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 수익률이 각각 다른 상품



ELS 등에 투자 시 유의사항

- ELS 등의 구조화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가격흐름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판매직원이 “사실상 원금보장이 된다”라고 설명하더라도 주의해야 한다.
- ELS 등의 구조화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증권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한 무담보·무보증증권으로 발행회사인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 ELS 등의 구조화 상품의 손익발생조건과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기초자산의 가격흐름에 따라 손익(수익률)이 결정되는 만큼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과거 가격추세, 향후 가격 전망 등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고 투자결정을 하여야 한다.
- ELS 등의 구조화 상품은 일반적으로 제시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한 상품이다.
제시수익률이 높다면 이에 따른 높은 위험성을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ELS 등의 구조화 상품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률은 높으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가 커지도록 설계된 상품임을 유념해야 한다.
- ELS 등의 구조화 상품은 중도환매(상환) 시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중도에 상환을 신청할 경우 중도상환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중도상환절차와 중도상환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 ELS 등의 구조화 상품의 조기상환은 정해진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다.
조기상환은 발행 당시 미리 정해진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므로 조기상환을 예상하고 단기 필요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만기까지 자금의 여유가 충분한지 고려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ELS 등 구조화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회복기간은 한정되어 있다.

만기가 정해진 상품이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손실감수가 불가피하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19)에서 발췌

기타파생결합증권(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 DLS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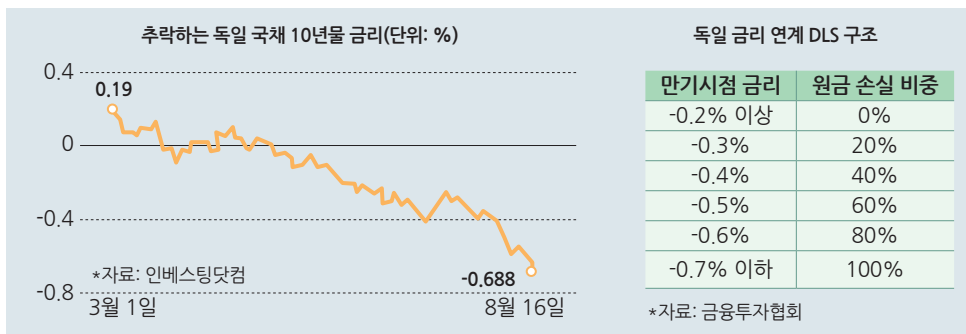
ELS는 기초자산인 개별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었으나, DLS는 기초자산이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가 아닌 금리, 환율, 상품가격 등의 변동에 연계되어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이다. 금리 등이 일정범위 내에 있을 경우 약정수익률이 지급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DLS의 법적 형식은 증권이므로 다른 증권처럼 투자자금의 100%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손익구조 등 다른 특징은 ELS와 유사하다.

한편, 파생결합펀드(DLF : Derivatives Linked Fund)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를 편입한 펀드를 말한다. 따라서 DLF의 손익구조는 DLS와 동일하다.

■ 구조화 상품의 위험성

ELS, DLS 등 구조화 상품은 저금리 시대의 도래에 따라 중위험·중수익 추구상품으로 개발되었다고는 하나,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주가지수, 금리 등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범위를

그림 5-7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S 예시



* 손익구조 : 독일 국채금리 -0.2% 이상(연 4~5% 수익), -0.7% 이하(100% 손실)

벗어나는 경우 투자원금의 100%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ELS, DLS 등 판매회사에 대하여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화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판매회사로부터 상품내용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 상품내용을 잘 이해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SECTION 04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에는 원금손실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금융투자상품 중 주식·채권·펀드 등은 투자자가 낸 원금의 범위 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즉, 원금을 전부 내고도 추가로 금전을 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투자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품의 내용을 알고 투자하여야 한다. 주식, 채권, 펀드, 구조화 상품, 파생상품 등 상품별 각기 다른 특징과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수준 등을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ELS, DLS 등 구조화 상품과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 선물·옵션 등은 어떤 조건에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지 상품의 특징과 손익구조 등을 잘 이해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펀드투자 시에는 판매회사 직원으로부터 실제로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상품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 상품특징 등을 이해한 후 서명을 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등 투자비용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연금상품이나 적립식 상품과 같이 장기간 가입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차이가 투자 성과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각 금융협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동일유형의 상품을 비교한 후 투자비용이 적은 상품을 골라 투자할 필요가 있다. 판매채널별로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선택하면 투자비용이 오프라인보다 약 30~50% 저렴하다.

셋째,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일부 자산에만 집중투자를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투자방법이다. 대상자산을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으로 가능한 다양하게 구성하고, 투자지역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좋으며, 적립식 투자를 통해 투자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투자를 한 이후에도 투자수익률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환경이나 국내 및 세계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투자지속 여부, 포트폴리오 조정필요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장기 투자하면서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투자행태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수익보다는 위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투자상품을 고르는 기준으로 가장 먼저 '수익률'을 살펴본다. 그러나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도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기대수익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원금손실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 즉, 투자자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대신에 기대수익을 낮추거나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에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여섯째, 투자에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투자에 실패해 투자한 원금을 전부 잃을 때에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투자상품은 여유자금만으로 투자해야 한다. 학자금, 치료비, 전세자금 등 단기간 내에 용도가 정해진 자금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투자는 내재가치 등에 근거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기업 경영환경이나 금융시장 상황 등의 급변에 따라 일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회복될 때까지는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일곱째, 레버리지 효과와 환율 변동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회사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 등으로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대출 등을 이용한 투자는 자신이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상품가격 하락위험 외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으로 투자손실 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판매회사 직원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투자정보를 얻어야 한다. 짧은 시간의 상담만으로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투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금융회사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흔들려서 충동적으로 투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번 상담 후 바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참고해 스스로 냉정하게 투자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결과는 수익·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불안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금융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명심하고 자기책임하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불공정거래에 빠지지 않기

정상적인 증권분석 방식 대신에 불법 또는 편법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고객 주문정보 이용 및 종목추천 전 매매행위 등을 통해 초과수익을 노리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혹이 있더라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시세조종은 특정 주식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시세를 자의적으로 등락시키고 그 등락된 시세가 타인에게 공정한 시세라고 오인시킴으로써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세조종행위의 유형으로는 시장의 시세보다 고가로 주문을 내거나 실제 매매체결 의향이 없으면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많은 수량의 주문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매매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낸 후에 정정하거나 취소하는 허수주문,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이 있다.

내부자거래는 상장회사의 임원 등의 내부자가 신제품 개발, 합병, 영업양수도 등 상장회사의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외에도 고객의 주문정보를 처리하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의 매수·매도 주문정보를 자신의 매매에 먼저 이용하거나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추천을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매수하는 행위 등 선행매매(front running)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의 유형을 요약하면 <표 5-6>과 같다.

표 5-6

불공정 거래의 유형

시세조종 (주가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가 성황을 이룬 듯이 오인케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거래(통정매매)하거나 스스로 매수·매도(가장매매)하는 행위 • 고가주문,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내부자 등이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불건전 거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주문정보 이용, 종목추천 전 매매, 위법일임매매, 과도한 투기적 거래, 고객의 위법주문의 수탁행위 등 증권·선물회사 임·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주요 주주 및 대량보유자(5%)의 주식의 소유 및 변동 보고의무 위반

3 손실과 손해는 다름을 이해하기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손실’이란 투자의 본질적 속성에 의한 마이너스(-) 수익이고 현재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줄어든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투자한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다. 금융회사가 법을 어기고 결합이 있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를 ‘투자 피해’ 또는 ‘투자 손해’라고 한다. 투자 손실은 본인의 투자 선택으로 발생한 결과이므로 누구를 원망하거나 따질 수 없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불법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이를 따져 배상을 받아야 한다. 종종 ‘손해’를 입고도 걱정만 하며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투자자가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어떤 행동이 불법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나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비용부담 없이 빠른 기간 내에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투자 관련 법률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반드시 이렇게 해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정해 놓았다. 만약 금융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아두어야 투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도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의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대보기

수익보장·손실보전 약정의 효력

간혹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말 또는 서류로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투자손실보전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수익보장약정'이란 일정한 수익을 내도록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이고 '투자손실보전약정'이란 적어도 원금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금융회사 직원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익이 나도록 보장한다거나, 손실이 나면 보전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법상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투자손실보전약정'은 모두 위법한 약속으로 전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가 금융회사 직원에게 애초에 약속한 내용대로 이익을 보장하라거나 손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판례에 따르면 설령 그러한 약속에 따라 이익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이익금은 다시 금융회사로 돌려주어야 한다.

- 펀드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한다.
- 펀드는 주식과 같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성향, 투자 목적 등을 파악한 후 투자하여야 한다. 펀드투자는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투자전문가에 의한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운용보수 외에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 파생상품(derivatives)이란 주가, 금리, 환율, 실물가격 등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가리키며,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으로부터 파생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파생상품'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 파생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주식, 채권, 외화 등의 금융상품과 금, 은 등의 물품·원자재(commodity)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또는 옵션의 형태로 가장 많이 거래된다. 파생상품은 가격 외의 거래조건을 표준화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선물, 옵션)과 거래소 밖에서 비표준화되어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선도, 스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구조화 상품이란 예금, 주식,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 가공하거나 혼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상품이다. 구조화 상품은 기초자산의 수익성이나 리스크를 구조화기법을 이용하여 완화하거나 증폭시킨 것이기 때문에 상품의 구조와 내용이 복잡하여 일반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기초자산, 상품구조 및 유동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구조화 상품에는 ELS와 DLS가 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시 보수, 수수료 등을 비교하여 투자비용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결과는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잊지 말고 투자하여야 하고, 투자 이후에도 투자수익률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예시문제

🏆 서술형

01 펀드의 투자대상에 따른 유형 구분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
.....

02 선물계약의 손익구조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
.....

03 구조화 상품의 특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
.....

04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
.....

🏆 빈칸 채우기

01 펀드투자시 펀드운용 관련 회사에 지불하는 일회성 비용은 수수료이며, 펀드 가입기간 동안 펀드순자산의 일정비율로 지속적·정기적으로 지불되는 비용은 [] 이다.

02 [] 는 특정지수의 변동 또는 특정자산의 가격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고 운용보수가 일반펀드에 비해 저렴한 펀드이다.

- 03 선물계약은 매입측과 매도측 쌍방이 모두 계약이행의 의무를 지게 되나, [] 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에 유리하면 계약을 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반해 상대방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대해 계약이행의 의무만을 지게 된다.
- 04 [] 은 개별 주식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으로서, 원금비보장형의 경우 주가지수 등이 일정범위 내에 있을 경우 약정수익률이 지급되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O·X 문항

- 01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여 운용되는 펀드에 투자하면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
- 02 선물가격이 미래의 현물가격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물거래는 미래의 현물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
- 03 ELS는 투자원금의 10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
- 04 금융투자상품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에게 그 책임이 귀속된다. ()

06 신용관리

Section 01

신용의 개념과 신용관리의 중요성

Section 02

개인신용정보와 신용평가

Section 03

신용관리 및 연체 시 대처방법

Section 04

신용카드 활용법



06

신용관리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개인과 가계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신용의 개념과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신용정보와 신용평가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현명한 신용관리 방법과 올바른 신용카드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목표

-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 신용정보에 기초하여 개인신용평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개인신용평가 결정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신용등급제와 신용점수제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바람직한 신용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신용카드의 기능과 종류 및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생각열기

사회초년생 신용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A씨(25)는 단돈 2,000원으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A씨는 군대를 가기 직전, 가지고 있는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후불교통카드가 등록된 체크카드에 결제 금액이 2,000원이 남아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다. 통장은 정리되었고 A씨는 군대에 입대하



였으나 휴가를 나올 때까지 2,000원은 계속 연체되고 있었고, 물론 A씨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몇 달 후 휴가를 나왔을 때야 비로소 연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때는 이미 신용등급이 8등급이 된 후였다. 신용등급이 떨어진 건 한순간이었는데, 신용등급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2년이 지나서야 4등급이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신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고 신용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이 되면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신용을 관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신용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신용평가 시 활용되는 금융거래이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4~6등급인 경우가 많다. 이는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약속대로 잘 갚을 수 있다고 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신용거래 내역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래은행을 선정해서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고 학자금 대출, 통신비, 각종 공과금, 세금 등의 꾸준한 납부를 통해 신용가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방법도 신용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한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는 하면 안 된다. 2020년부터는 신용점수제가 도입되어 금융이력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았던 사람들도 적절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출처: 한경 JOB&JOY, 2020. 7. 21. “내 신용은 몇 등급?” 순간 방심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용등급 관리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2020년 달라진 신용등급제도 재구성]

- 그동안 나의 신용관리 방법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 신용점수제가 도입되면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SECTION
01

신용의 개념과 신용관리의 중요성

1 신용의 개념

신용이란 미래 어느 시점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현재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으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행위는 상대방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신용은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신뢰를 담보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경제생활은 신용, 즉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가 대부분이다. 현대 사회에서 신용이 없다면 학자금 대출, 휴대전화 개통은 물론 자동차 할부 구입, 해외여행 등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매우 제한될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일상적인 소비지출 시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고, 돈을 빌릴 때에도 높은 이자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불편함과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신용은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현 사회를 신용 사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신용은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화폐 또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갚아야 할 빚 또는 채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미래 시점에서는 갚아야 할 빚이 증가된 것이므로 신용을 이용하는 데에는 돈의 시간가치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신용관리의 중요성

신용은 잘 사용하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과도한 빚이나 채무로 인해 심할 경우 파산에 이르게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과 가계는 신용을 잘 이용하면 지금 현금이 없어도 나의 신용도만큼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 사용하여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한 후에 비용을 납부하는 휴대전화

사용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 대학등록금을 위한 학자금 대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신용을 적절히 잘 이용하면 금리변동이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개인과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상승 시에는 현재의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된 장기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시에는 대출을 받아 미리 물건을 구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신용을 잘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현금 없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용사용에 대한 대가로 이자 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이자의 경우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의 신용에 따라 차등을 두어 높은 신용점수를 보유할수록 이자비용이 저렴해진다. 또 금융회사는 신용이 낮은 경우 신용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출을 거절하기도 한다. 따라서 평소 신용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신용 사용은 이자 또는 수수료 부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 없이 물건을 살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과소비나 충동구매 등 비합리적인 소비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가계측면에서는 부채부담이 증가하여 가계건전성이 하락할 수도 있다. 또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을 사용한다면 연체, 채무불이행 더 나아가 파산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신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SECTION 02 개인신용정보와 신용평가

1 개인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개인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 정보, 신용능력정보 등을 말한다. 개인의 신용에 대한 평가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금융회사들은 돈을 빌려주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를 먼저 조사하고, 이를 바

탕으로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는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돈을 빌려주며, 신용이 좋지 않거나 신용정보가 없는 사람에게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대출을 거절하기도 하는데, 이 때 평가에 활용하는 자료가 개인신용정보인 것이다. 개인신용정보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뿐만 아니라, 백화점에서 고객 카드를 신청하거나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할 때,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의 취업 시에도 개인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개인신용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거래정보가 있다. 식별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활용보다는 주로 다른 신용정보들과 결합하여 이용되고 있고, 신용거래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출, 보증, 담보 제공, (가계)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 돈을 빌리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생성된 신용도 판단정보와 개인의 소득 및 자산, 재산세 혹은 소득세 납부실적 등으로 평가하는 신용능력정보, 그리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경제 관련 법령 위반정보 및 국제·지방세 체납 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등이 포함된 공공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된다.

표 6-1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종류	내용
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의 거래내용 및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등의 연체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금융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의 종류, 기간, 금액 등에 관한 정보
신용능력정보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 소득 및 재산, 소득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 등
공공정보	법원의 재판 결과 관련 정보, 세금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 정보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2020),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관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개인신용정보는 CB(Credit Bureau)라고 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평가회사에서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CB는 공공 CB와 민간 CB로 구분되는데 공공 CB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있고, 민간 CB의 대표적인 회사로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NICE평가정보가 있다. 공공 CB는 개인신용정보만을 수집하는 데 비해, 민간 CB는 신용정보를 기초로 개인의 신용수준을 평가하는 동시에 개인 대출심사 등 신용평가 결과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등 신용정보 수집과 신용평가를 같이 담당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와 보험개발원에서 분산, 관리해 오던 신용정보를 안전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각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자신의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이 대출을 신청하여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활용해야 할 때, 한국신용정보원이 각 금융회사로부터 수집해 놓은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이용하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수집하는 주요 정보에는 채무불이행정보(연체 90일 이상), 대출 및 채무보증정보, 카드개설정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금체납정보, 법원으로부터 파산정보, 소송정보 등의 공공정보 등이 포함된다. 민간 CB인 신용평가회사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백화점, 통신사, 전기/가스회사 등 비금융회사 그리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거래 내역과 관련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평가하고 가공하여 신용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표 6-2 개인신용정보 관리

관리 기관		등록 신용정보	신용정보 제공	신용정보 이용
공적 CB	한국신용정보원	채무불이행 정보(연체 90일 이상)	금융회사, 국세청, 법원 등 공공기관	금융회사
		대출 및 채무보증 정보		
		카드개설 정보		
		세금체납 등 공공정보		
민간 CB	KCB, NICE평가 정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정보	한국신용정보원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비금융회사에서 받은 정보		

개인신용정보의 활용

KCB, NICE평가정보와 같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를 CB정보라고 한다. CB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수집한 일반적인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자의 현황(재산 소유, 직업, 소득 등) 및 거래 이력(상환 이력, 금융거래 횟수)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도 포함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수치화하여 제공하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연체정보도 연체기간 90일 이상이 아닌 5일 이상의 연체정보를 수집하고 대출, 채무보증, 카드 정보 등도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또한 대부업체와 백화점, 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와 개별 계약에 의해 연체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정제, 가공하여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필요한 개인과 기관에 제공한다.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얻은 신용보고서(credit report)와 신용평점(credit score)을 이용하여 거래 여부 및 금리, 대출 조건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거래고객의 신용정보는 다시 신용평가회사에 전달되어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개인신용정보의 확인과 정정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경우 연 3회(4개월에 1회)까지 무료로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KCB에서 운영하는 올크레딧이나 NICE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나이스지키미에 접속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분실한 경험이 있다면 분실한 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신용거래에 부정 사용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11년 10월 이전에는 신용정보 조회횟수 혹은 조회한 기관 등의 정보가 개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작용했으나 지금은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신용관리 차원에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하였는데 정보가 잘못되어 있다면 신용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회사 등에 자신의 정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회사에 우선적으로 정정요청을 해야 한다. 만일 신용정보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회사 등은 신용정보 오류 정정 신청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용정보가 정정·삭제된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거래처 및 본인(신용정보 정정신청자)이 요구한 곳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3 개인신용평가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는 신용평가점수제(1~1,000점)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점수는 CB사가 개인에 대하여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이다. 기존의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대출심사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 신용등급제는 신용등급 구간별 점수 폭이 너무 커서 금융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획일적인 금융서비스를 받아왔으며 1~2점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서 다른 대출 기준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 665점과 662점은 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 신용도가 유사하지만 이를 등급제에 적용하면 각각 6등급과 7등급으로 분류되어 대출심사 시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신용평가점수제 시행으로 은행별로 차별화된 대출가능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심사가 거절되었던 금융소비자도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게 된다.¹ 또한 신용이력이 부족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던 대학생이나 20대 사회초년생의 경우 더욱 상세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신용평가점수 평가요소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요소에는 신용행동, 신용여력 그리고 신용성향이 있다.

먼저 신용행동은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 부채를 빌리고 갚는 신용거래 이력을 뜻하는데 상환이력정보, 현재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상환이력정보란 채무의 기한 내 상환 여부, 과거 연체경험 정보이며, 현재부채수준은 현재 보유한 대출, 보증 등 상환이 필요한 채무 정보, 신용거래 기간은 대출, 보증 등 신용거래활동을 시작한 후 거래기간에 대한 정보, 신용거래형태는 신용거래 종류(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따른 채무정보를 의미한다.

이 밖에도 입증된 소득에서 지출수준을 고려한 미래 가치분소득을 의미하는 신용여력과

1 신용등급제에서 7등급, 신용평점 662점인 사람은 대출이 거절되었으나 신용평가점수제로 전환되면서 A은행은 664점 이상, B은행은 660점 이상 등 은행별로 대출가능 점수를 차별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소비자 개인의 신용개선을 위한 노력 정도를 의미하는 신용성향도 반영된다.

한편, 정교한 신용평가를 위해 CB사가 자체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의 성실 납부 내역을 개인이 스스로 CB사에 제출하면 이를 개인의 신용평가에 반영해주고 있다. 이는 금융거래가 거의 없거나 신용정보 등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의 신용평가에 유리하다.

개인신용평가 결과는 금융회사의 대출가능 여부 또는 카드발급 여부 및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초년기부터 꾸준한 신용정보 관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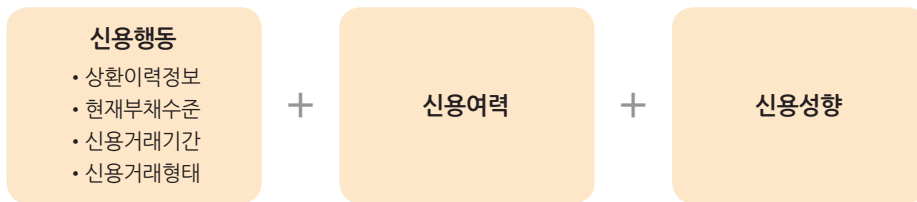
확대보기

신용평가에도 이용되는 비금융거래 이력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평가 시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신용평가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초년생처럼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 실적, 체크카드 이용 기록 등을 이용하여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

최근에는 교통법규 미준수 등 사회공익을 해치는 행위나 SNS 등의 온라인 활동과 온라인 쇼핑 내역, 공공요금 등 비금융거래 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비금융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민간 CB가 도입되면서 비금융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림 6-1 개인신용평가점수 평가요소



※ 신용조회정보는 신용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SECTION
03

신용관리 및 연체 시 대처방법

1 신용관리방법

신용을 좋게 만든다는 것은 좋은 신용기록을 쌓는다는 의미이므로 단기간에 신용을 좋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꾸준한 신용관리가 중요하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연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등에서 신용평가를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체 정보인데, 결제일을 깜박하거나 청구서가 도착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납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현명한 신용관리를 위한 팁’을 알아두자.

① 갚을 능력을 고려해 적절한 채무 규모 설정하기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언젠가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다.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가게 운영이나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CB 또는 금융회사에서도 채무가 많은 채무자에 대해 연체 위험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신용도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규모나 지출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 규모를 설정하고 정해진 규모 안에서 대출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②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기

대부분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겠지만, 단지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체 위험도가 높게 평가되므로 실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로 낮은 금리로 전환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보이스 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③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연체정보는 개인의 신용평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일단 소액이라도 연

체가 발생하면 연체금액을 상환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신용평가 시 불이익 정보로 반영된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통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소액연체는 대부분 개인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미리 통장잔액을 확인해 소액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④ 연체를 상환할 때에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연체는 기간이 길수록 개인의 신용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여러 건의 연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연체 건부터 상환하여 연체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⑤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이용하기

금융회사는 거래기간이 길거나 거래량이 많은 고객에 대한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서 이용하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오픈뱅킹²이 등장하면서 주거래 은행의 의미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주거래 은행에서 단골고객에게 금리우대를 적용하거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통보하기

금융회사에서는 대출 금액이 연체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주소나 이메일,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 거래 금융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⑦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꾸준히 쌓아가기

개인의 신용은 과거 신용거래 실적과 현재 신용거래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신용거래가 거의 없는 개인은 평가 근거가 부족해 좋은 신용점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도를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체 없는 대출거래, 신용카드 이용 등 신용거래 실적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²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⑧ 자신의 신용정보 현황을 확인하기

본인의 신용정보는 C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1년에 3회(4개월마다 1회)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정보가 정확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적용하기

'전국민 신용교육' 및 무료 신용조회서비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해 제공되는 '전국민 신용교육'을 활용해 보자. 신용평가회사(KCB,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신용교육 프로그램을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1년에 3번, 4개월에 1회씩 무료로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KCB에서 운영하는 올크레딧(www.allcredit.co.kr)이나 NICE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오류가 있을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연락하여 신용점수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를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2 연체 시 대처방법

연체정보 등록 및 해제

채무불이행, 즉 연체는 신용평점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체정보는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금융회사에서는 3개월 미만의 연체정보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CB의 신용평가를 기초로 최종 신용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일 연체를 하였다면 가능한 빨리 연체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학자금대출의 대출금, 이자 등이 연체된 경우는 6개월 이상 연체 시(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된다.

일반적으로 연체정보는 연체금 완납 시 해제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체정보 해제 후 기록보존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연체금액에 상관없이 연체정보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체금액을 갚거나 대출연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연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그 이외의 연체정보는 상환일로부터 연체기간 동안 기록이 남아 있으며, 최장 1년간 기록이 관리된 후 삭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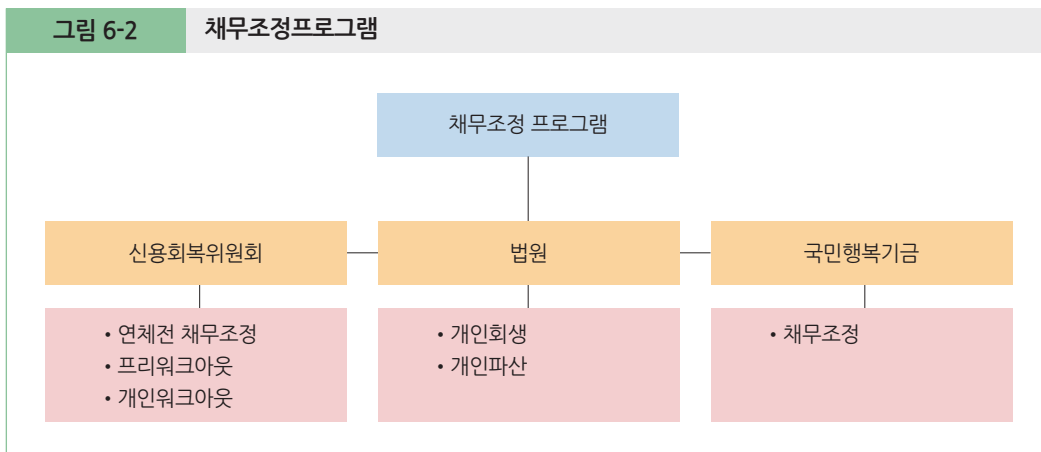
3 채무조정제도

소득원이 없거나 소득에 비해 빚이 너무 많거나 또는 소득이 불안정하여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 전 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등이 있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속채무조정을 하는 연체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인 프리워크아웃, 일반 채무조정인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자의 부채상환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 채권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된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프리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은 1~3개월 미만 단기연체 채무자가 연체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채무



출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

법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사채를 포함하여 채무조정을 하기 때문에 사채가 많은 경우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개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신용회복지원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최대 5년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가능하다. 개인파산면책제도는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여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한다. 다만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한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며

표 6-3 채무조정제도 종류

구분	연체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운영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채권(6,100여 개)			제한 없음(사채 포함)		국민행복기금 인수채권
채무범위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 없음	인수채권
대상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능자	연체기간 31일 ~89일 사이인 연체자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인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해당자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채권의 채무자
채무조정 내용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장 3년 이내 채무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무담보채권: 약정이자율의 1/2까지 인하,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담보채권: 연체 이자만 감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무담보채권: 이자, 연체이자 전액, 원금은 상각채권 중 최대 70%까지 감면, 최장 8년 분할 상환 -담보채권: 연체 이자만 감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변제기간 5년 이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청산 후 면책	-최장 10년까지 연장 -일반감면: 20~70% -특수채무관계자감면: 감면율표에 의해 70~90% -장기연체채무자추가 감면: 10~30%

출처: 신용회복위원회(2020).

부채규모로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제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금융소외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신용 회복 지원제도이다. 제도권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신청, 동의에 따라 채무조정을 시행한다.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70%(기초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특수 채무자의 경우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해 주고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 조정된다.

4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서비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상환을 장기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주기 위해 신용회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신용회복지원서비스에는 분할상환제도,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정상화(기한이익회복)제도 등이 있다.

■ 분할상환제도

분할상환제도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³나 기한이익상실⁴ 시, 채무를 분납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상환기간은 대출금을 10년까지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채무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0년까지 허용한다. 분할상환 시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해준다. 채무가 10만원 미만 소액인 경우에는 분할상환이 불가하며,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분할상환서비스가 중지되며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3 채무자의 정부보증 학자금 장기연체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됨.

4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대출 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 함.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는 학자금 대출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⁵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이거나 대학원 입학 후 2년 이내, 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고, 재등록을 유예하여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중소기업 재직자' 유예를 포함하여 최장 3년간 등록 유예 가능)가 가능하다.

■ 정상화(기한이익회복) 제도

정상화(기한이익회복) 제도는 학자금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자가 연체금액 전액 상환 시 당초 대출조건으로 회복하는 제도이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유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농어촌융자 학자금대출 등의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자가 연체금액 전액을 상환하면 초기 대출 조건으로 정상화되어 기한이익이 회복되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서비스

부채의 규모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스스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하루라도 빨리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용회복서비스에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및 연체전 채무조정이 있으며, 대학생 등 청년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지원 프로그램과 소액금융 신용보증지원 프로그램이 해당된다(2020년 기준).

■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지원제도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지원 프로그램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만 29세 이하의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상환유예,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채무감면은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상환유예는 대학 졸업 시까지, 그리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이 유예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5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정보.

■ 소액금융제도

소액금융제도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신청인에게 대출해줘서 경제적 재기를 지원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여 미납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중이거나, 개인회생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저소득 저신용자(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해당)가 신청할 수 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학학자금,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이 있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 이내,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이 적용된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지원상품에는 희망사다리론, LH 공사 행복론, 미소금융론, 새출발 마중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론, 개인회생론 등이 있다.

SECTION 04

신용카드 활용법

1 신용카드에 대한 이해

신용카드의 기능

화폐경제가 발달하여 점점 더 편리한 지불수단을 추구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신용카드(credit card)와 각종 체크카드(check card)가 사용되고 있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상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한 달에 한 번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도 있고 월별로 대금을 나누어 지불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어도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불편한 잔돈 발생을 막으며 거래기록을 쉽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지불 수단이다.

신용카드는 지불의 편리성 외에 신용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신용카드 고객의 계좌에 지불에 필요한 금액이 당장 없더라도 결제일까지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을 제공받아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할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개인의 신용이나 신분을 나타내거나 외환거래를 할 수도 있고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우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부가서비스(결제 연기, 제휴 할인,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제공,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신용카드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수집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신용카드의 장단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이 있다. 첫째, 신용을 이용하여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소비자의 소득과 지출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서 사용하여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신용을 사용하면 필요한 물품을 즉시 구입하도록 도와주어 만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셋째, 신용 사용으로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소비지출 규모를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개인 및 가계의 재무관리에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올바른 신용 사용은 개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신용은 미래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 둘째, 신용을 사용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자나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셋째, 신용을 이용하면 당장의 구매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소비나 충동구매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조심하지 않으면 과소비나 과다부채가 발생하여 가계재무건전성이 위협해질 우려가 있다. 넷째, 무분별하고 계획성 없는 신용의 사용은 개인과 가계의 재정을 파산에 이르게 하여 경제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다.

2 신용카드의 종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즉,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 구매하는 시점보다 약 한 달 뒤 정해진 결제일에 사용한 모든 물품대금을 갚게 된다. 이에 비해 체크카드는 통장에 남은 잔액 내에서만 물품구매가 가능하며, 물품 구매를 위해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순간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간다. 신용카드는 소득이 없거나,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는 발급되지 않지만 체크카드는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최근 신용카드로 인한 과소비 방지를 위해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보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고 있다. 또 다른 유사 지불수

단으로 선불카드가 있다. 선불카드는 돈을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는 카드로 구매보다 먼저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와 차이가 있으며, 충전해 놓은 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국내전용카드와 국제카드

국내전용카드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카드이고, 국제카드는 국내를 비롯하여 해외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국내전용카드와 국제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국제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외에서도 국내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카드를 국내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비자, 마스터카드, 유니온페이, 아메리카익스프레스(아멕스), JCB 등 해외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국내카드사가 국제카드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제카드를 보면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한쪽 귀퉁이에 국제 신용카드사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다.

3 신용카드의 주요 서비스

할부거래

할부거래는 구매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낼 수 있는 신용카드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이다. 할부를 이용하면 냉장고,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내구재 구입이 편리해질 수 있으나, 충동구매나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할부거래를 하면 신용카드사에 할부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보통 대출이자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할부수수료율은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해당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많을수록, 그리고 할부기간이 짧을수록 낮아진다.



확대보기

할부거래법과 금융소비자보호

할부거래법에서는 할부를 이용한 총동구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권, 항변권, 기한전지급 권을 명시하고 있다.

청약철회권은 총동구매 등으로 구매결정을 잘못하여 구매한 물품을 판매자에게 반납하고 이미 납부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권리이다. 청약철회권은 구매한 물품의 하자로 수리나 교환을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이며, 수리나 교환 등 판매자가 계약 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는 매월 납부하는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데 이것이 항변권이다.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물품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만일 청약철회 마지막 날이 주말 혹은 국경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약철회를 하면 된다. 이에 비해 항변권 행사는 할부기간 동안 계속 가능하다.

소비자가 청약철회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품에는 일정한 제한(예: 비닐로 포장된 CD의 경우 비닐포장이 벗겨진 것은 복사를 하였다고 간주하여 청약철회가 안 됨)이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무분별한 권리행사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만 청약철회와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소비자의 기한전지급권은 물품 구매 시점에서는 돈이 부족하여 할부로 구매하였지만 할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경제적 사정이 나아져서 할부 잔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할부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살펴보면 이번 달에 지급할 할부금과 앞으로 갚아야 할 잔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로 신용카드사에 기한 전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일에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일로 이월하는 결제방식이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카드이용대금을 전액 결제하지 않아도 연체상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사실상 단기대출상품으로 이월되는 잔액에 대해 일반대출상품보다 높은 이자(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습관적으로 이를 이용하게 되면 이자와 원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자신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

단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이란 소액의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말한다. 단기카드대출의 사용 한도액과 현금서비스 수수료(이자)는 신용카드회사별로 회원의 신용도, 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다르다. 한도액은 일반적으로 50만원~300만원 정도이며, 수수료는 카드사 평균 약 19%(2020년 기준)에

이르는 고금리이다. 따라서 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빨리 갚는 것이 좋다.

장기카드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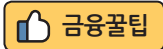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간편한 절차를 거쳐 대출받을 수 있는 장기카드대출을 제공하며, 이는 기존의 카드로론을 말한다.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도와 카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대출한도와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대출이자율은 카드사 평균 약 13.6%(2020년 기준)에 이른다.

그러나 편리하다고 단기카드대출이나 장기카드대출을 자주 사용하면 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기카드대출이나 장기카드대출은 고금리이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므로 연체위험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포인트와 선포인트 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때 결제금액의 일부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카드가 있다. 카드회원은 적립된 포인트를 카드이용대금 결제, 물품구입, 연회비 납부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된 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서 사용해야 한다.

선포인트서비스는 카드사가 상품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먼저 지급해 주고, 이후 회원은 동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카드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자동차나 TV, 가구 등의 고가품을 구매할 때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선포인트서비스는 할인이 아닌 부채이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여 상환할 만큼의 포인트가 적립되지 못하면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연체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평소 카드 이용실적을 감안해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선지급 받는 것이 좋다.



금융꿀팁

카드 포인트 활용방법

1. 카드포인트는 현금화가 가능하다.

단 1포인트라도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 국세 납부, 기부 등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다. 카드를 해지할 때에도 잔여 포인트를 입금받는 것이 가능하다.

2.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중은행 계열 카드사 고객은 ATM기기에서 포인트를 1만원 단위로 출금할 수도 있다. 휴대폰 앱으로 ATM 출금을 신청하고, 출금 시 이용할 1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한 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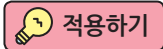
3. 카드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확인해서 사용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포인트와 소멸 시기를 안내한다.

4.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 무이자 할부 등의 결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포인트 결제 방침은 카드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19)에서 발췌



적용하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https://www.cardpoint.or.kr>)를 활용하면 간편한 카드인증/아이핀 인증 절차를 거쳐 전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모든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하여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4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해외여행 시 현금 소지의 위험을 없애고 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여행 후 외국 잔돈이 남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여권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의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출국 전에 신용카드와 여권상 영문이름을 일치하도록 교체 발급 받는 것이 좋다.

둘째, 출국 전에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소비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외에서 매출 승인이 제한되어 해외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SMS를 신청하면 카드사용내역은 즉시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부정 사용되는 경우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셋째,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 매출전표 보관은 만약에 있을 매출전표 변조, 과다 청구 등에 대비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증거자료로 매우 중요하다. 해외사용 실적의 거래취소나 환급에 걸리는 기간은 국내보다 길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보관하는 것이 좋다.

넷째,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시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각 나라의 긴급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 이내 새 카드를 현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금융꿀팁

해외에서 카드 이용 시 '현지 통화'로 결제하기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란 해외에서 물품 등의 구매 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카드 이용 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 → 미화(USD)'로 변환하여 국제카드사(비자, 마스터 등)로 청구된다. 이때 한국 카드사에서는 미화(USD)를 접수일자의 환율을 적용하고 원화로 변환한 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반면,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원화(KRW) → 현지통화 → 미화(USD)'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추가 수수료(3~8%)가 부과되어 소비자가 결제할 금액이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커지게 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표에 서명하기 전에 결제통화를 반드시 확인하며, 가맹점에서 원화로 표기된 전표를 제시할 경우 거절하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카드사에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차단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전면 차단(카드 승인거절)되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긴급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 해제(신청취소)도 가능하다.

5 신용카드 피해 예방 및 구제

신용카드 관리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자산이 되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하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신용카드 회원가입 시 약관을 잘 읽어보고 카드 이용방법, 회원의 책임, 도난 및 분실 시 보상제도 등을 확인한다.
- ② 신용카드를 수령한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을 한다. 서명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카드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렵다.
- ③ 신용카드 비밀번호 및 CVC번호를 주의하여 관리한다.
- ④ 신용카드 영수증은 잘게 찢어서 버리고, 사용 내역 관리는 SMS 서비스를 활용한다.
- ⑤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바로 해지한다.
- ⑥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도는 점점 떨어지고, 카드 사용과 발급에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한 후 5일 이내에 최대한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⑦ 신용카드는 현금과 같이 통용되는 것이므로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지 않는다.
- ⑧ 가능한 하나의 카드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관리하기 편하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 ⑨ 주소가 변경되면 즉시 카드회사에 주소변경을 요청한다.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 시 대처방법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을 인지한 즉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카드사에

신고하고, 접수번호 등 접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제3자가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다만 현금을 부정 인출한 경우는 신고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비자(회원)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회원의 고의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카드분실로 기망하는 경우 등)
-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회원이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돈 거래에 있어서 신용은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잘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의미한다. 신용사회에서 신용이 낮은 사람은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어 금융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다.
- 개인의 신용평가는 개인신용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개인신용정보에는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이 포함된다. 민간 CB는 이러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평가 및 가공하여 개인의 신용수준을 평가하는 동시에 신용평가 결과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개인신용평가점수는 상환이력정보, 현재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형태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 개인의 연체정보는 신용평점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체정보는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체금을 완납하면 일반적으로 연체정보는 해제된다. 그러나 연체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삭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연체금액을 갚거나 대출연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장 1년간 기록이 관리된 후 삭제된다.
- 연체가 발생하면, 학자금대출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재정지원 및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금융부채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혹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고려한다.
- 신용카드는 당장 필요금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불 기능뿐 아니라 신용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 밖에도 개인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외환거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용카드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수집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 신용카드는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켜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며, 올바른 신용사용을 통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갖는다. 반면에 미래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신용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과소비나 충동구매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가계 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단점도 있다.
- 신용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사고를 당했을 때는 지체없이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제3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다만 현금을 부정 인출한 경우는 신고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예시문제

서술형

01 신용의 개념과 신용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0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03 신용카드의 장점 및 단점을 2개씩 서술하시오.

04 채무자구제제도 중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빈칸 채우기

01 개인신용평가점수의 평가요소 중 신용행동은 , 현재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형태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02 채무자구제제도 중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에는 와 개인파산제도가 있다.

03 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일에 결제금액의 일정 퍼센트만을 갚고 미결제된 금액은 다음 결제일로 이월되는 서비스이다.

04 는 신용평점 하락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O·X 문항

01 민간 CB인 신용평가회사는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거래 내역과 관련 신용정보는 수집하지만, 백화점, 통신사, 전기/가스회사 등 비금융회사의 신용거래 내역과 관련된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

02 여러 건의 연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연체 건부터 상환해야 연체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

03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수리나 교환 등 판매자가 계약 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매 월 납부하는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데 이것을 청약철회권이라 한다. ()

04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원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수수료 부담이 적다. ()

07

부채관리

Section 01

부채의 개념과 영향

Section 02

대출의 활용

Section 03

부채관리와 대출상환

Section 04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07

부채관리

📌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가계의 부채 발생원인과 영향에 대한 학습을 통해 부채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각종 대출상품의 종류와 특징 및 대출 시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또한 부채관리 방법과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등을 학습한다.

📌 학습목표

- 부채 발생요인과 영향에 대한 학습을 통해 부채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대출상품의 종류, 대출금리, 대출상환방식 등 대출을 받거나, 부채상환계획을 세울 때 고려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 서민과 대학생·청년을 위한 대출제도를 이해한다.
- 부채관리와 대출상환 방법,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생각열기

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6%...주요국 중 사실상 1위

지난 23일 글로벌 금융회사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IIF)가 세계 3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00.6%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8년 말 97.9%에서 작년 말 95.3%로 2.6%포인트 감소했



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100%를 넘어섰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은 것은 국내외 관련 통계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 지난 8월 항구 폭발 사고로 GDP가 급감한 레바논(116.4%)에 이어 2위였다. 세계 평균(65.3%)보다는 35%포인트 높았다. 최근 1년새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도 한국은 7.0%포인트로 홍콩(10.6%포인트), 일본(7.8%포인트), 미국(7.7%포인트)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컸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의 과도한 가계 빚이 성장 여력을 갉아먹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0%를 넘어선 핵심 원인 중 하나로는 올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포착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우선 꼽힌다. …(중략)… 부채가 갈수록 과도해져 가계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2020. 11. 30.]

-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가계부채가 과도할 경우 가계 또는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SECTION
이

부채의 개념과 영향

1 부채의 개념

부채는 다른 사람 혹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 즉 차입금이나 외상으로 구입한 재화나 서비스 상당액을 말한다. 이 중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돈을 보통 대출이라고 한다. 개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소득 내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일 때에는 다른 사람이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며, 그 결과물로 부채를 갖게 된다.

부채는 관리만 잘하면 일생 동안 발생하는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매우 중요한 돈 관리 수단이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은 안정적인 생활공간 마련에 도움이 되고, 학업을 위한 학자금 대출은 미래를 위한 발전 기회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부채는 개인을 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키거나 상황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정상적인 사회 및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개인의 과도한 부채는 개인 스스로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경제에도 큰 위협요인이 된다. 금융시장에서 개인의 부채비율이 높아서 부도나 채무불이행률이 높아지면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일으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대보기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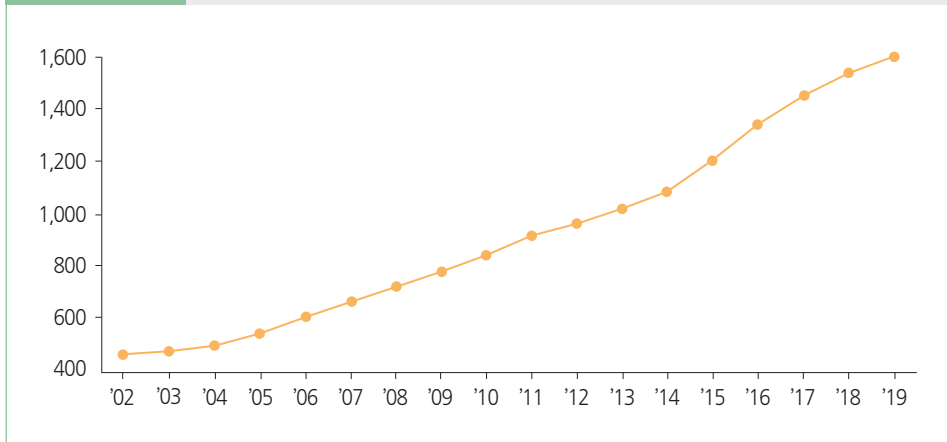
국내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는 경제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잔액은 1,682조원으로 2019년말 잔액인 1,600조원 대비 약 82조원 증가하였다.¹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가계부채 건전성이 위협받게 되면 금융시장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모 관리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1 한국은행, 2020년 3/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보도자료, 2020. 11. 24.)

그림 7-1

가계부채 증가 추이

(단위: 조원)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2 부채 발생 요인

개인 및 가계 특성

■ 시간선호

부채의 발생에는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를 의미하는 시간선호요인이 작용한다. 동일한 조건을 가진 개인 혹은 가계라도 미래보다는 현재소비를 중시하는 경우 현재소비를 위해 부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 소득부진

기본적으로 개인 혹은 가계가 대출을 받는 이유는 소득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 소득부족이 지속되면서 생활비 등을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율은 2010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2015년 3분기 이후로는 0%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의 기타대출(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가계소득의 부진이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 수요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적 환경요인

■ 이자율

돈은 다른 물품처럼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에 따라 그 수요의 규모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저금리는 가계의 금융비용을 낮추어 가계의 대출수요가 늘어나게 하고 저축 의지의 감소 및 소비의 촉진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예금 등의 자산에 비해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

■ 물가상승률

일정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한 비율을 나타내는 물가상승률도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친다.

향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되면 보유한 화폐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을 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금이나 부동산 등의 실물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은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개인이나 가계가 물가상승이 지속되리라 생각할 경우 부채를 저서라도 실물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

■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나 대출규제의 변화 등도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정부는 2013년 각종 정책을 통해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여 가계의 부동산 매매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고, 2014년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이는 가계가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2017년 6월 이후 2020년까지 발표한 정책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부동산 관련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인상하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 목적, 규제지역 해당 여부, 보유주택 수, 실수요 여부,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는데 이는 가계의 부채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부채의 영향

가계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가계의 현금흐름과 실물자산(주로 주택)의 가치가 외부충격에 쉽게 노출된다. 즉, 부채상환단계에서 가계소득에 외부충격이 발생하면 소비 또는 저축에 악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부채상환의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담보자산의 경매 등으로 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노출은 개별 가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의 정도와 보유자산 등에 따라 다르며, 사회초년생, 고령층, 저소득층에 대한 부채의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상용근로자의 2배에 이르고 자영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현금흐름 충격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지나친 가계대출 증가는 건전성 악화와 부실채권 증가를 통해 금융회사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저축은행 및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가계대출이 최근 들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외부충격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아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경쟁은 수익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는 소비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투자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가계는 차입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소비증가 효과는 상당 부분 사라진다. 특히 차입한 자금을 활용하여 수익성 자산에 투자한 경우, 수익발생이 급격한 소비증가 효과를 유발하고, 수익감소 시 급격한 소비감소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축감소를 통하여 투자재원 감소 및 장기 성장 잠재력 약화로 연결된다.

또한 가계부채가 확대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되고, 재정정책 활용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즉,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계는 추가적인 차입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부의 효과²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2 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효과로 '자산효과'라고도 한다.

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대외신뢰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LTV와 DSR

정부는 LTV와 DSR에 대한 규제를 통해 담보가치와 고객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 LTV(Loan to Value ratio) : 담보인정비율을 의미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text{LTV 비율} = (\text{대출 취급 가능금액} / \text{주택의 담보가치}) \times 100$$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할 때 고객의 부채부담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즉, 고객의 연소득에 대한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이 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타대출(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비주택담보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한다.

$$\text{DSR 비율} = (\text{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 \text{연소득}) \times 100$$

SECTION 02

대출의 활용

1 대출 시 고려사항

대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대출하기 전에 대출의 필요성과 목적, 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자율,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대출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대출의 조건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금융회사들은 각자 원칙에 의해 신용한도를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게 된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따라 이자율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아무리 이자율이 낮다고 해도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대출상환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상환방법은 크게 만기일시상환방식과 분할상환방식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총 이자 부담액과 월 상환액이 달라진다. 셋째, 대출기간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대출기간은 보통 1~3년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최장 30년이다.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분할 상환을 할 경우 월 상환액이 줄어들겠지만 내야 하는 이자는 많아진다. 따라서 무조건 대출기간을 길게 하지 말고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대출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출금을 일찍 상환하는 것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는 것도 고려하여 대출기간을 결정한다. 금융회사는 대출기간보다 빨리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조기 상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게 된다. 넷째, 대출조건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대출로 차입하는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게 적용된다. 또한 대출 관련 각종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대출이자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2 대출기관

대출을 해주는 기관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리고 제3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제1금융권은 은행을 말하며 대출기관 중에서 대출이자가 가장 싸다. 그러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 받기가 힘들다. 제2금융권은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말하며 보통 은행보다 대출이자율이 높은 편이나 대출심사가 덜 까다로워서 신용도가 다소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제3금융권은 주로 대부업자를 의미하는데, 연체가 있거나 신용이 좋지 않아 제1, 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이용하게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따라 2018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제한하였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불법이다. 아울러 2021년 하반기부터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계획이다.

3 대출상품 종류

신용대출

신용대출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정하는 대출이다. 금융회사는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로부터 고객의 신용평가 결과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신용도 평가기준(예: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기간, 거래실적 등)을 적용하여 대출금액과 금리를 결

정한다. 그러나 개인의 신용이 불충분할 경우 신용보증회사의 보증을 기초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신용대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금융과 판매신용

신용대출의 경우 현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비자금융과 판매신용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자금융은 현금을 직접 대출하여 주는 형태를 말하며 현금대출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판매신용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나중에 일시불로 지불하거나 할부로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이다. 판매신용으로는 할부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이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신용을 들 수 있다. 한편 개인휴대전화 통신비용과 같은 서비스신용도 판매신용에 포함된다. 서비스신용이란 서비스를 미리 공급받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 사용료를 후지급하는 것으로 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과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할부신용과 비할부신용

부채액을 일정 기간 일정 횟수에 걸쳐 상환하는 부채를 할부신용이라고 한다. 할부신용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의 내구소비재를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 혹은 신용카드회사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해 주고, 이를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분할한 원금 + 할부수수료)으로 받는 형식을 갖는다. 주로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한다. 이에 비해 비할부신용은 일시불로 갚거나 신용카드의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서비스처럼 여러 회에 걸쳐 원하는 만큼씩 갚아 나가는 부채이다.

개별계약형대출과 포괄계약형대출

개별계약형은 매번 거래마다 대출금액, 대출이자,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일반 대출상품이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해 포괄계약형은 미리 대출한도액, 대출기간, 대출조건 등을 정해 놓고 대출기간 동안 대출한도액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상품이다. 마이너스 통장대출은 포괄계약형 대출의 대표적인 예로, 가령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에 1천만원을 마이너스 한도액으로 설정해 놓으면 통장에 예금잔액이 없더라도 1천만원 내에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대출 사용이 매우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신용정보상으로는 실제

로 돈을 대출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한도액 전체가 대출로 기록되므로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다소 높다.

담보대출

금융회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에 대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담보물의 경제적 가치 이내에서 대출을 해 주는데, 이를 담보대출이라고 한다. 담보대출은 채무자가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낮다.

금융회사의 담보대출상품으로 대표적인 것은 주택담보대출로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라고 한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억 원 이상의 목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집값을 모두 모은 후 구입하기보다는 일부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 집을 장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기지론은 대체로 상환기간이 10년~30년까지로 매우 길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4 대출금리 및 대출상환방식

대출금리의 결정

대출금리는 대출 시 기준이 되는 금리(이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금융회사마다 우수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된다. 먼저 기준금리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다. 기준금리로는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거래에 이용되는 금리인 콜금리, 3개월 만기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그리고 8개 은행의 자금조달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COPIX)³가 많이 사용된다. 대출금의 원천은 은행들이 예금이나 차입 등으로 조달한 자금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금융회사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가산금리는 금융회사가 직접 결정하며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고객의 신용도, 담보 여부, 대출기간 등 개인적인 요소와 금융회사의 영업비용 등에 의해서 결정

³ COFIX(Cost of Funds Index)는 8개 은행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산출기준에 따라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 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로 구분 공시된다.

표 7-1 은행 대출 시 사용하는 주요 기준금리

구분	발표기관	내용
COFIX(코픽스)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한 금리
CD금리	한국금융투자협회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인 양도성예금증서의 금리
금융채	신용평가회사	시중은행 및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금리
KORIBOR(코리보)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간 대차시장에서의 단기기준금리

되는데 금융회사가 개별 고객에게 돈을 빌려줌에 따라 감수해야 할 위험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우대금리는 금융회사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출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다.

$$\text{대출금리} = \text{기준금리} + \text{가산금리} - \text{우대금리}$$



확대보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금리적용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크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나눌 수 있다.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변동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적용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통상 3개월이나 6개월의 주기로 조정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꿀팁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1. 대출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개인이 대출을 받은 후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점수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본인 대출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며, 대출 시 고객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상품(정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제외된다.

2. 금리인하 신청 및 약정은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각 은행별로 제공되는 비대면채널(모바일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리인하 신청 및 약정까지 처리할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금융감독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보도참고자료, 2019. 11. 26.)

대출상환방식

대출금리가 같더라도 대출상환방식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대출 이자액은 달라진다. 대출상환방식은 크게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구분한다. 일시상환이란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갚는 방식으로 만기일시상환이라고도 한다.

한편 분할상환이란 빌린 돈을 조금씩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과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나눌 수 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해 동일한 금액을 갚는 방식인데, 이자는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원금 균등분할 상환에 비해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원금 균등분할 상환은 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원금을 갚고 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대출기간 뒤로 갈수록 남아있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도 점점 줄어든다.

이처럼 대출기간과 대출금리가 동일하더라도, 원금이 먼저 상환되는 방식이 이자가 먼저 상환되는 방식보다 총 이자부담액이 적다. 따라서 일시상환보다 분할상환이 유리하며, 같은 분할상환이라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보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 이자상환 금액이 적다.

표 7-2 대출 상환방식에 따른 상환총액의 차이

상환방법	대출금액(원)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이자 합계(원)
만기일시상환	10,000,000	10%	5년	5,000,000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2,748,227
원금 균등분할 상환				2,541,667

적용하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금융거래계산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금융거래계산기' 메뉴를 활용해보자. '대출계산기'를 선택하여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대출기간을 입력하고 대출상환방식(만기일시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등)을 선택하면, 대출상환방식별 대출이자합계, 평월 납부금액, 만기 월납부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 금융거래계산기

예적금계산기
대출계산기
현재가치계산기

대출계산기

대출을 받기 전에 매월 납입 금액(이자와 원금상환액)은 얼마나 되고 총 납입이자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에 따른 이자나 원금상환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액	<input type="text"/> 만원	대출이율	연리 <input type="text"/> %
대출기간	<input type="text"/> 년	거치기간 (있을경우만)	<input type="text"/> 년
대출상환방식	<input type="text" value="만기일시 상환"/>		

계산하기 >



5 대출제도

서민을 위한 대출제도

정부와 금융회사 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게 다양한 대출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새희망홀씨'는 대표적인 생활안정자금 대출로서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을 위해 은행이 제공하는 맞춤형 상품이다.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경우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3천만원,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나 연 10.5%수준이다. 또한 '햇살론 생계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이며 지원대상은 '새희망홀씨' 상품과 유사하나,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대출한도는 1천 5백만원이다.

한편 신용이 낮아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햇살론17'이 2019년에 출시되었다.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이거나, 신용평가회

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농어민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햇살론17’은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에 따라 금리나 한도를 차등화하지 않으며, 금리 17.9%, 한도는 700만원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대환자금, 일반 생활자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 외에도 창업자금, 사업운영자금 대출, 주거안정자금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www.kinfra.or.kr) 또는 서민금융콜센터(☎1397)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제도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및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다양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은 대학(원) 등록금 및 생활비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가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구간 이하에 속하는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추후 취업 등으로 인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연간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 및 이수학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금 전액과 더불어 학기당 150만원 한도까지 생활비도 대출이 가능하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모든 소득구간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최장 대출기간은 20년이다.

‘또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는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이다. 재학 중에는 상환 부담이 없고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뒤부터 상환하게 된다. 이 밖에도 한국장학재단은 다양한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므로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적합한 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대학생·청년 대상 기타 대출제도

경제적 상황이 곤란한 대학생·청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액대출상품으로는 서민금융

진흥원의 ‘햇살론Youth’가 있다. 만 19세~34세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연간 600만원 이내, 최대 1,200만원까지이며, 상환기간은 최장 15년, 금리는 연 3.5%로 고정금리이다. 관련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SECTION 03 부채관리와 대출상환

부채로 인한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상환계획을 세워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채관리는 우선 부채현황을 파악하고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1 부채현황 파악하기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우선 어떤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다음 <표 7-3>의 서식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서식을 작성해 보면 부채별로 만기가 언제인지, 월상환 총액이 얼마인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서 쉽게 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

표 7-3 부채현황

(단위: 원, %)

번호	금융회사명	대출일자	대출원금	연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월상환액	대출잔액	상환목표 (만기일자)
					분할	일시				
	1	OO은행	20,000,000	7.5	X		3년	597,220	16,102,500	
	2									
	3									
	합계									
사채	1									
	2									
	합계									
총계			대출원금					월 상환액	대출잔액	

2 부채상환계획 수립하기

보유자산 현금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채상환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파악한 후 이에 맞추어 일시불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와 매월 변제할 수 있는 채무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때 일시불로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부채는 변제기일이 지나 연체이자를 내고 있거나 곧 변제하지 않으면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부채 등이다.

먼저 현금화가 비교적 쉬운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을 이용하거나 혹은 주식·채권을 현금화한다. 그리고 자동차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산의 현금화라는 측면과 아울러 자동차 유지에 필요한 세금, 유류비, 보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계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동차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에서는 어떠한 것을 현금화할 수 있는지 결정하여 현금화한다.

한편 주택을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대출이 없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신용대출 등의 채무를 정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가 제공되는 대출은 이자율이 더 낮으며, 대출의 연장이나 상환기간 등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소비지출 줄이기

지출감소를 통한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월 지출 항목을 정리해보고 변동 지출비목 중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도록 한다. 식비는 외식비를 중점적으로 줄이도록 한다. 그리고 통신비의 경우, 가족 모두의 휴대전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유선전화 이용요금 등을 체크한다. 유류비는 필수적인 것 외에는 모두 줄여도 좋다.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차량유지비를 고려해서 중고 경차 이용을 고려하며 가능한 공공교통수단도 함께 이용했을 때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한다. 이외 체련단련, 오락·유흥비, 경조사비, 개인 용돈 등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소득증대 방안 모색

소득의 경우 고용조건이 있으므로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종, 교육, 연령, 성별, 거주지역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러한 조건들을 바꾸어

소득을 증대시키기도 어렵다. 하지만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가족구성원 중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구성원이 직업을 가지거나 부업 등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 때, 새롭게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가족구성원의 추가적인 소득과 취업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즉, 취업에 따른 비용에는 가사 시간의 감소로 가계생산을 시장 재화나 서비스로 대체하는 비용과 취업을 유지하기 위한 교통비, 외식비, 의복비 등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부로 지내던 배우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득 전부가 가처분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을 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교통비, 중식비, 의복비, 탁아비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3 부채상환원칙

부채는 합리적으로 상환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대출상환방식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상환방식을 빚을 갚기 쉬운 구조로 변경한다. 원금은 그냥 둔 채 이자만 갚아나가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상환이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빚을 갚기 쉬운 대출조건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가는 것이다. 즉,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대출원금상환에 대해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혹 저축을 통해 대출금을 갚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자도 대출이자보다 낮고 세금이 있어 수익률이 떨어진다.

둘째, 대출의 수를 줄여 대출관리가 쉽도록 한다. 채무가 커지다 보면 여러 종류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보험대출, 신용대출, 직장의 직원대출, 카드대출 등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여러 대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불가피하게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가장 받기 편한 대출을 받다 보니 대출의 수가 늘어난 경우가 많다. 대출의 수가 많으면 상환일을 놓치는 등 부채관리가 어려우며 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액 또는 고액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 대출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이 때 중도상환 수수료 및 인지세 등의 추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가비용까지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SECTION
04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계약대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채무자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추심 전문회사가 많이 생기게 되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채권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채무자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 특히, 채권 금융회사의 불법채권추심에 대하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과 대응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금융꿀팁

주요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

채무의 존재 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또는 반복적 전화 방문

필요 시 증거자료(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내용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관계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19)에서 발췌

- 대출이란 개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동을 의미하며, 부채는 대출로 인해 발생한 금융회사에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한다.
- 대출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구분되며,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에 기초하여 대출금액과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것에 비해, 담보대출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등 담보자산의 경제적 가치 내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된다.
-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대출상품은 '새희망홀씨', '햇살론17' 등이 있으며, 대학생을 위한 대출제도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Youth' 등이 있다.
- 대출 결정 시 먼저 대출이 꼭 필요한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대출금리 및 대출상환방식을 비교한다. 또한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예시문제

서술형

01 부채가 가계, 금융회사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02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03 부채관리와 대출상환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04 서민과 대학생을 위한 대출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빈칸 채우기

01 개인과 가계는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대출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을 라고 한다.

02 대출기관 중 제1금융권은 을 의미하며, 대출기관 중 대출이자 가장 낮은 편이다.

03 대출금리는 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된다.

04 대출상환방식은 크게 과 분할상환으로 구분한다.

 O·X 문항

- 01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부채를 부담하더라도 현금자산보다는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
- 02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편이다. ()
- 03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에 따라 지불하는 이자 총액이 달라질 수 있다. ()
- 04 부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갚아나가도록 하며, 연체를 하고 있다면 연체기간이 짧은 것부터 갚아나가도록 한다. ()



리스크관리와 보험

Section 01
리스크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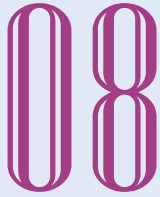
Section 02
리스크의 관리

Section 03
보험의 이해

Section 04
보험의 주요 요소

Section 05
생활과 보험





리스크관리와 보험

📌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겪게 되는 리스크의 개념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보험의 기본 원리와 기능, 주요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와 역할 및 상호 보완관계를 이해한다. 다양한 민영보험 종류에 대해 학습하고 경제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주요 보험 상품들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보험판매채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 학습목표

-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대표적인 리스크 중 보험상품으로 관리가능한 리스크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보험의 종류 및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민영보험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대표적인 보험상품을 이해한다.
- 보험 가입 시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생각열기

[니즈의 다변화, 이색보험 쏟아진다 '켰다 끄고, 달린 만큼 돈 내고' 진화하는 보험]

보험이 진화를 시작했다. 미래 위험 대비에 꾸준히 돈을 내야 하는 보험은 이제 옛말이 됐다. 보험은 반려동물보험, 전동킥보드보험 등 신산업에 단순 결합하는 방식을 넘어 필요할 때마다 켜다 끄는 '온디맨드(on demand)', 층간소음·결혼식취소 등 일상의 피해를 보장하는 방식의 이색보험으로 확 달라지고 있다. 국내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8%(지난해 기준)를 넘는 시장 포화에도 신생아 감소 등 정체를 맞은 보험사들이 저마다 차별화에 나선 결과물이다. …(중략)…

○ ○ 펫산책보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나갈 때 앱으로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산책 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 여기에 보험료 2,000원을 미리 충전하면 산책을 한번 나갈 때마다 45원씩 차감



하는 정산방식의 창의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독점판매 권한도 획득했다.

지난 3월 00손해보험이 내놓은 '000 자동차보험'도 온디맨드형 이색보험으로 꼽힌다.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하는 기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체계를 벗어나 매일의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가입할 때 첫 달 기본료와 주행거리 1,000km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선납하면 매달 자신이 운전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중략)…

00손해보험 역시 '시간제 이륜차 보험'을 내놓는 등 이색보험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시간제 이륜차 보험'은 배달의민족 라이더(오토바이 배달원)가 시간, 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보험료가 높아 가입률 자체가 매우 저조했지만, 시간 단위 보장을 채택해 보험료 가격을 낮췄다. 또 배달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라이더가 별도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붙지 않도록 구성했다.

000손해보험은 층간소음 피해를 보상해주는 이색보험 '00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을 내놨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으로 공동주택 거주자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피해를 보상해 준다. 월 780원을 내면 층간소음 피해를 본 계약자에 최대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층간소음 보험은 결합판매 상품이다. 기존 주택화재보험 보험료에 780원을 더 내면 특약으로 추가되는 형태다.

보험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MZ세대(1980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인 Z세대를 합친 용어)'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보험 가입 연령층인 40~50대의 보험 비가입률은 10%대인 반면 MZ세대인 20~30대의 보험 비가입률은 20%를 넘어섰다. 이들 MZ세대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는 성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가 필요할 때마다 가입할 수 있는 이색보험을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하 생략)…

[출처: 중앙시사매거진, 2020. 9. 21.]

- 일상 경제활동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일상 경제활동 속에서 보험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SECTION
01

리스크의 이해

1 리스크의 개념과 구분

리스크의 개념

우리의 생활은 현실에서 미래를 탐색하고 걱정하며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일련의 리스크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미래에 발생할 결과에 대한 불안함은 모두 미래에 대한 인간의 예측 능력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투자에서 말하는 리스크 하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측한 결과보다 좋은 성과의 가능성(upside risk)과 좋지 못한 성과의 가능성(downside risk) 모두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투자에서의 리스크는 미래 경제적 활동의 결과로 이익과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리스크이다.

한편, 보험에서 사용하는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동시에 발생결과가 부정적인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결과가 손실로 연계되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만 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관련 리스크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험제도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가능성을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상호부조 금융제도로써 보험급여 지급을 통한 손실 보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자동차 운행 시에 교통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손상되는 등 그 사고결과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동차운행 중 교통사고는 보험대상사건이며 그 경제적 손실 가능성은 보험대상리스크에 해당한다.

리스크의 구분

리스크를 구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인지주체 및 통계에 근거한 측정가능 여부에 따라 주관적 리스크와 객관적 리스크로 구분한다. 주관적 리스크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인지된 리스크를 말한다. 따라서 리스크를 인지하는 상황과 인지주체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므로 통계적 신뢰성이 부족하고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에 객관적 리스크는 누적된 경험 자료를 근거로 통계적 방법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망리스크, 화재리스크, 자동차사고리스크 등은 모두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손실발생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관련 리스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객관적 리스크는 보험대상리스크에 해당한다.

2 보험대상리스크의 요건

보험대상리스크(insurable risk)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화재리스크처럼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해당 리스크에 직면한 다수의 경제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를 리스크의 동질성 및 대량성 요건이라 한다. 둘째, 해당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사람의 사망 사고, 질병사고 등 인적손실의 정도를 경제적 손실규모로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인적손실은 예외적으로 사전에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양자 간 협약한 금액으로 손실규모를 추정한다. 셋째, 해당 리스크는 통계적 신뢰성에 근거하여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집적 및 분석기법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통계적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넷째, 화재사고처럼 해당 리스크의 발생은 우발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방화 등과 같은 고의성이 있는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보험대상리스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생활 속의 보험대상리스크

인적손실리스크(personal risk)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경제적 손실은 인적손실이다. 인적손실리스크는 질병이나 사고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사람은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1위는 단연코 ‘악성신생물(암)’이다. 암이 발생할 경우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실직, 고액의 의료비 등으로 금전적 부담이 실제로 크다. 최근에는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2018년에 처음으로 10대 사망원인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우리는 교통사고와 같이 신체가 손상되거나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다양한 사고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이에 인적손실리스크는 우리 생활 속에 상존하는 대표적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인적손실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표적 보험 상품은 사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 질병입원치료의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질병보험, 치매간병급여의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치매간병보험 등이 있으며 공적제도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표 8-1 2019년 10대 사망원인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순위	사망원인	사망률	'18년 순위 대비
1	악성신생물(암)	158.2	-
2	심장 질환	60.4	-
3	폐렴	45.1	-
4	뇌혈관 질환	42.0	-
5	고의적 자해(자살)	26.9	-
6	당뇨병	15.8	-
7	알츠하이머병	13.1	↑(+2)
8	간 질환	12.7	↓(-1)
9	만성 하기도 질환	12.0	↓(-1)
10	고혈압성 질환	11.0	-

출처: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보도자료, 2020. 9. 22.)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약 0.43년씩 평균수명이 증가한 반면에 OECD 국가의 평균수명은 약 0.23년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면 노후생활자금을 더 많이 준비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마련한 은퇴자산의 소진시점이 자신의 사망시점보다 빨리 발생할 가능성을 장수리스크라고 한다. 최근 OECD 보

고서¹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²은 43.8%로 OECD 평균 13.5%의 약 3.2배 수준이다. 노인빈곤율과 함께 더욱 심각한 것은 노인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장수리스크에 미리 대비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민영상품이 연금보험이고 공적제도는 국민연금보험이다.

재산손실리스크(property risk)

재산손실리스크는 우발적 사고에 의해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을 말한다. 대표적인 재산손실리스크는 주택, 건물, 창고 등에 대한 화재리스크이다. 주택은 대부분 개인 재산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면 재산상의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선박사고, 도난사고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재산손실은 직접손실(direct loss)과 간접손실(indirect loss)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손실은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1차적 재산상의 피해를 말하며, 간접손실은 직접손실에 부수되는 금전적 손실이다. 가령 물류창고에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물류창고 건물과 그 보관물품의 피해액이 직접손실에 해당하고, 창고를 정상화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창고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반되는 경영상의 손실액이 간접손실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재산손실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도입된 금융상품이 재산보험이며, 대표적으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등이 있다.

배상책임리스크(liability risk)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 화재사고로 위층에 화재 피해를 입힌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는가? 대형 쇼핑몰에서 냉·온방 장치의 고장으로 상당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건물관리책임자는 각 매장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유조선 침몰로 양식장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선주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가? 의사가 오진 혹은 수술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유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회사 임직원의 경영상 과실, 부주의로 주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³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1 OECD, Pensions at a Glance(2019)

2 전체 노인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생활하는 65세 이상 인구 수) ÷ (65세 이상 전체 인구 수) × 100” 산식으로 산출된다.

3 어떤 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적손실 혹은 재산손실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을 배상책임리스크라고 한다. 실제로 배상책임은 의사의 의료과실, 회계사의 감사부실 등 전문가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부터 공산품 설계·제조 하자,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하자, 전 사회 물품파손 등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배상책임리스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책임보험이며, 대표적으로는 전문직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환경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4 보험대상리스크의 측정

우리 주변에 상존하는 다양한 보험대상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 것일까? 암과 같은 큰 질병은 평생에 몇 번 발생할까 말까 하지만 발병 시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면 감기와 같은 경미한 질병은 자주 발생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리스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의미하는 손실빈도와 한번 발생 시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의 크기를 나타내는 손실심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손실빈도(loss frequency)

손실빈도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횟수를 의미한다. 가령 사람의 사망은 한번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빈도는 1회로 측정될 수 있으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빈번할 수 있으므로 수차례로 측정될 것이다. 손실빈도는 일정 기간 사고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를 측정하여 사고 발생확률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손실심도(loss severity)

손실심도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실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적 손실의 규모를 의미한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므로 손실의 심도는 매우 큰 반면, 볼펜을 잃어버릴 경우의 손실은 볼펜을 다시 재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소액의 비용이므로 손실의 심도는 매우 작다.

보험대상리스크의 크기

보험대상리스크의 크기는 손실빈도와 손실심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text{보험대상리스크의 크기} = F(\text{손실빈도}) \times S(\text{손실심도})$$

SECTION 02

리스크의 관리

1 리스크관리 방법

리스크관리는 개인이나 조직이 직면한 다양한 종류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거나 경감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리스크관리 방법은 다양하지만, 손실빈도와 손실심도에 따라 리스크보유, 리스크회피, 리스크감소, 리스크전가 등 네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리스크보유(risk retention)

리스크보유는 손실빈도와 손실심도가 모두 낮은 경우에 적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리스크관리 방법이다. 가령 연필을 잃어버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는데, 이는 연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연필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시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정 리스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리스크보유라고 한다.

리스크보유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 리스크보유와 관련 리스크에 대한 무지, 무관심, 태만 등으로 수동적으로 떠안게 되는 소극적 리스크보유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리스크보유의 대표적 유형에는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산출하여 합당한 자금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자가보험(self insurance)이 있다.

구분		손실빈도	
		낮은 빈도	높은 빈도
손실심도	낮은 심도	리스크보유	리스크감소
	높은 심도	리스크전가	리스크회피

리스크회피(risk avoidance)

리스크회피는 손실빈도와 손실심도가 모두 높아서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말하며,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표현과 잘 맞는 리스크관리 방법이다. 가령 전쟁 지역에 가면 포탄이나 총탄에 맞을 확률이 매우 높고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 그 피해 또한 심각하다. 이렇게 인적손실의 리스크빈도와 심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는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리스크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영향으로 리스크심도가 높은 상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항공기 추락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리스크회피는 리스크관리 방법 중 가장 소극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리스크감소(risk reduction)

리스크감소는 손실빈도 또는 손실심도를 줄이는 방법을 말하며, 손실통제(loss control)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손실방지, 손실경감, 리스크분산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손실방지(loss prevention)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손실빈도를 감소시키는 조치이다. 예를 들어,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겨울철에 독감에 걸릴 가능성을 줄이는 행위, 다중 이용시설에 CCTV를 설치하여 도난 범죄를 예방하는 등의 조치이다. 또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손실경감(loss reduction)은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 내의 스프링클러 장치나 방화벽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주변으로 화재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실제로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자동차의 에어백장치 설치, 소화설비 설치 등 손실경감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리스크분산(risk diversification)은 분실, 파손, 해킹 등으로부터 관리해야 할 대상을 시간, 장

소, 기술 등을 통해 분산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는 중요 정보를 다수 서버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분산 보관함으로써 서버 가동 중단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리스크전가(risk transfer)

리스크전가란 개인이나 조직의 리스크를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손실심도 또는 손실빈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스스로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제3자에게 넘기는 방법이다. 리스크를 전가할 때에는 손실빈도 및 손실심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적정 비용을 지불하여야 거래가 성립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보험 가입을 꼽을 수 있다. 암으로 진단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암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암 관련 치료비 부담 등 경제적 리스크를 리스크집단 전체에 전가할 수 있다. 또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불이행리스크를 보증인에게 전가하는 보증계약도 리스크전가의 한 예이며, 보증계약을 보험형식으로 전환한 것이 보증보험이다.

2 리스크관리 절차

개인이나 조직 등 경제주체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리스크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단계로 어떤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둘째,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각 리스크의 손실빈도 및 손실심도를 분석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예측하여 해당 리스크별로 중요도를 평가한다. 리스크관리는 인적·물적 비용이 발생되어 예산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각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리스크관리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스크관리 방법을 실행하고 정기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현행 방법을 계속 적용할지 아니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SECTION
03

보험의 이해

1 보험의 기본 원리

보험이란 동질의 리스크에 직면한 다수의 독립적 경제주체가 보험계약을 통해 리스크단체를 형성하여 보험료 납입을 통해 보험기금을 마련하고, 약정된 우발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해당 경제주체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제도이다. 보험제도는 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보증과는 달리,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에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계약이다. 리스크에 직면한 경제주체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사전적으로 약정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각종 리스크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보험과 유사한 제도는 고대사회에서부터 존재하였으나, 오늘날의 보험제도는 화폐경제 및 다양한 리스크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제가 발전한 이후에 등장하였다. 보험은 손실을 평가하고 보상할 공통의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물물교환기반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평가나 보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은 리스크에 대한 계산을 기초로 하기에,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⁴과 통계확률론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확대보기

근대적 보험의 탄생, 로이즈(Lloyd's) 커피하우스

근대적 보험의 시작인 해상보험이 탄생한 영국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1687년경 사무엘 로이드(Samuel Lloyd)가 처음 문을 열었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로이드(Edward Lloyd)가 물려받으면서 항해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장소로 발전하였다.

에드워드는 해상무역 과정에서 여러 손실 리스크에 공동으로 노출되어 있던 선원들의 위험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리스크를 공동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인수하는 보험사업자가 되었는데, 바로 이

4 일정한 사건이 일어날 비율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법칙이다. 따라서 동일한 성질의 리스크를 가진 보험단체의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그 사고 발생확률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된다.

것이 영국 해상보험의 시작이다. 에드워드는 정식 보험약관은 아니지만 종이 한 장(slip)에 보상내용을 약속한 뒤 하단에 서명(underwriting)을 했다. ‘작은 종이조각’이라는 뜻의 slip은 오늘날 보험을 가입할 때 쓰는 ‘청약서’란 용어로 사용되고, 현재 증권사나 보험사 등이 ‘리스크 심사 및 인수’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라는 금융용어 역시 에드워드가 보험료를 받고 리스크를 인수하면서 계약서의 합의조항 아래(under)에 그의 이름을 써주고(writing) 약속 이행을 확약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편, 로이즈 커피하우스의 고객 중 상업이나 선박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보험회사 대리인 그룹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1771년에는 재력과 신뢰를 갖춘 79명의 언더라이터들이 입회비 100파운드를 납부하고 로이즈 협회(Society of Lloyd’s)를 결성하였고, 18세기를 지나면서 로이즈 커피하우스는 세계 최대의 해상보험 거래가 이루어지는 런던로이즈(Lloyd’s of London) 보험시장이 되었다. 현재 런던로이즈는 세계 최대의 재보험시장으로 성장하여 바늘부터 인공위성까지 담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인수 종목이 확대되었다.

2 보험의 기능

보험은 경제적 손실 발생 시 보상을 통해 복구를 지원하므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중요시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보험은 개인의 경제생활이나 기업의 경영상 안정에 기여한다. 경제활동 주체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직면한 리스크를 보험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비교적 어려움이 없이 사고 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둘째, 보험료로 구성된 보험기금은 주식, 채권 등에 장기적으로 투자되어 자본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한다. 또한 산업자본으로 활용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셋째, 보험은 가입자의 신용을 높여 경제주체 간의 상거래를 활성화시킨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을 통하여 계약상 채무이행을 보증하여 거래의 신용리스크를 감소시키거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어 제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는 측면도 있다. 넷째, 보험은 국가 주도 사회보장정책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완재로서 국민건강보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리스크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 손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즉, 보험가입자가 사고방지시설 설치 등과 같이 리스크관리를 충실히 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리스크관리에 노력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사고발생 가능성 및 손실규모도 작아지게 된다.

이러한 순기능이 있는 한편, 보험은 보험금 편취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

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사기 등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한 증대된 비용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SECTION 04 보험의 주요 요소

1 보험료의 구성과 해지환급금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금전적 약속인 보험계약에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약정 금액이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는 지급금을 보험금이라고 한다.

보험료는 영업보험료라고도 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된다. 또한 순보험료는 사망, 암 발생 등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의 만기 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부가보험료는 보험영업에 필요한 판매수수료 등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begin{aligned} \text{영업보험료} &= \text{순보험료} && + \text{부가보험료} \\ &= \text{위험보험료} + \text{저축보험료} + \text{부가보험료} \end{aligned}$$

보험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규모가 커지면 위험보험료가 증가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증가한다. 흔히 자동차 사고발생률이나 암 발병률이 높아져서 관련 보험의 보험료가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보험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이라고 한다.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합계에서 각종 사업비, 해지 시까지의 사고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

되므로, 가입 초기(예 : 7년 이내)에 해지 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보다 작을 수 있어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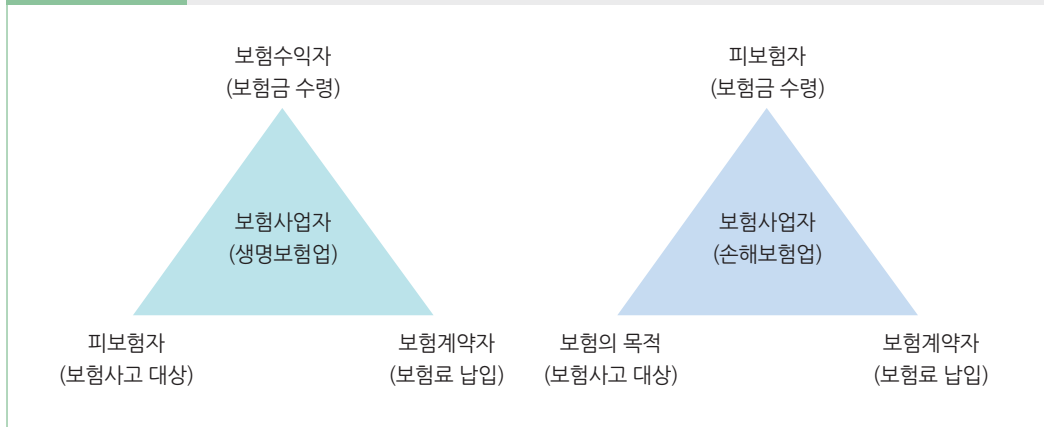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주체이며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는 생명보험 계약에서만 존재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을 가진 자이다. 보험수익자는 한 명일 필요는 없고 생명보험 계약 체결시점에 반드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필요도 없다.

피보험자는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연인을 말하며, 피보험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모두 같을 수도 있고, 각각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암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였다면, 남편은 보험계약자, 아내는 피보험자, 자녀는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험계약자인 남편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피보험자인 아내에게 암이 진단되어 수술비 등이 발생하면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반면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를 말하는데, 보험의 목적(subject matter of insurance)⁵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약정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며 법인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남편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자동차는 보험의 목적이 된다. 이처럼 보험계약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그림 8-1>과 같이 보험사업자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5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객체로서 피보험자의 법적 재물, 재산인 반면에,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생명, 건강, 신체 등을 말한다.

그림 8-1

보험계약의 이해관계자



3 보험금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받은 일시금, 분할금 등 일체의 보험급여(benefits)이다.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은 정액보상(fixed-sum plan)과 실손보상(indemnity plan)으로 구분된다. 정액보상이란 약정한 보험사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고,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생명보험계약은 주로 정액보상을,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⁶ 이는 생명과 관련된 인적 손실은 그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한 생명보험상품에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금액 모두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실손보상을 하는 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실액만 보상하므로 여러 보험에 가입한다고 보험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모르고 유사한 실손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하면 불필요하게 보험료만 많이 납부하게 된다.

4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기간이

⁶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정액보상의 예외에 해당한다.

다. 보험사업자의 책임은 일시납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된다. 보험료납입 기간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다. 보험료는 일시납과 분할납이 가능하지만, 보험기간이 장기인 보험계약은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담이 상당히 때문에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납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

1. 청약철회권리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건강진단을 실시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등은 청약철회가 불가

2.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다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3. 품질보증해지권리

보험 가입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가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이 없었거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기존 계약 부활권리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세상에는 사람의 수명과 연관된 다섯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 바로 전쟁, 자연재난, 인적재난, 질병, 범죄를 말한다. 한편 기업을 경영하면서 파산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는 화재와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한다. 우리의 경제활동 전반은 이러한 리스크로 둘러싸여 있는 생활환경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와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1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사회보험은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공법인이 관리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노령, 질병, 상해, 실업 또는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고의 발생에 의한 생활의 불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제공되는 공적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 소득수준의 일정비율 형식으로 보험료율이 책정되어 소득이 상승하면 자연히 보험료도 체증하는 구조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진다. 사회보험은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입의무가 부여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에는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이 있다.

2 사회보험의 종류

국민연금보험은 제9장(노후와 연금)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나머지 사회보험을 다룬다.

표 8-3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주요 차이점

구분	사회보험	민영보험
운영 원리	독점시장 원리	자유경쟁시장 원리
운영 주체	비영리 공단(준정부기관)	보험회사
보험 가입	의무가입	임의가입
운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복지정책의 실현 • 소득 재분배 및 공공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영업이익(기업가치) 제고 • 경제주체에 리스크관리 수단 제공
보험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등의 일정비율로 부과 • 보험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 • 사용자가 100% 부담하는 경우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보험계약의 급여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결정 • 보험가입자가 부담
보험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률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보험계약에 의해 결정
보험종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리스크를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와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단일 건강보험요율을 곱하며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 50%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에 기준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책정하고 점수당 일정금액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입한다. 그리고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에 의해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공적부조제도에 의해 무상으로 의료혜택이 주어지며, 독립유공자 등은 특별법에 의해 무상으로 의료급여가 제공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업주로부터

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사업자 역할은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기업), 피보험자는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산재근로자이지만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그 유가족이 된다.

산재근로자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반드시 업무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보상책임은 사업주에게 과실이 없어도 연대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9월 29일 이후 근로자가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험급여에는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장해 및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다.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강조하기 위해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이라고 한다. 적용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또한 2020년에 문화예술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문화예술인도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신규 및 퇴직 등 고용관계의 변화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피보험자이면서 보험수익자이다. 다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보험가입자이면서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이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 지급요건은 이직의 횟수와 상관없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 이후에 적극적으로 구직할

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상한과 하한이 있고 퇴직 직전 월평균보수의 60% 수준이며,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누적가입기간에 따라 지급기간이 결정되며 최대 270일이다. 또한 고용보험에서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방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민영보험의 종류

민영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리스크에 대비하여 자유로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설계사, 홈쇼핑, 은행창구, 증권사창구, 보험대리점 등에서 손쉽게 접하는 보험회사 등⁷의 다양한 보험상품이다.

보험업의 구분과 보험종목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할 수 없다. 하지만 제3보험업은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면 취급할 수 있는 공통 보험영역이다.

⁷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공제상품과 우체국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거의 차이가 없으나 근거법규 등에서 차이가 있다.

표 8-4

보험업별 보험종목

구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정의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보험종목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포함)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보험 등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보험가입 목적에 따른 구분

보험은 보험가입의 주목적에 따라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한다. 보장성보험은 보험의 본래 기능인 사망, 질병 등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보장성보험의 대표상품으로 종신보험, 정기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있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해당연도에 납입한 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시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마련, 노후대비 등을 위해 저축기능이 강화된 상품으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대부분의 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및 시장금리 등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적용이율(예: 공시이율)을 변동하여 이자를 적립하는 금리연동형보험이다. 저축성보험의 대표상품으로 연금보험, 교육보험, 저축보험 등이 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은행 저축상품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보험차익⁸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나, 10년 이상 계약유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⁸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저축상품의 이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4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과 생존을 주된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며,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보험종목은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이다. 이들은 보험기간이 비교적 긴 장기성계약의 속성을 가진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생명보험상품이며, 종신(終身)이란 ‘목숨이 다하기까지의 동안’이란 뜻으로 보험기간을 확정적으로 정할 수 없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사망하면 약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사망하기에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주로 집안의 가장이 자신의 조기사망 등으로 가족의 생활권, 자녀의 교육권 등이 위협받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장인 본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를 유가족으로 지정하는 계약구조를 가진다.

정기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중 보험기간이 15년, 20년 또는 80세 등 일정기간으로 확정되어 있는 생명보험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나, 보험계약의 만기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면 사망보험금은 없고 보험계약이 소멸한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은퇴 이후의 생활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근로기간에는 체계적으로 은퇴자산을 축적하고 은퇴시점에는 축적된 은퇴자금으로 연금을 받아 단절된 소득을 보완하는 상품이다. 이는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핵가족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여생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 상품구성은 근로소득 등이 있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인 제1보험기간과 퇴직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인 제2보험기간으로 구분된다. 연금의 지급방식은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은 연금수령자가 생존하면 평생 동안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이다. 확정연금형은 연금지급기간(예: 10년)을 확정하여 지급하고, 상속연금형은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연금수령자가 사망 시에 적립금 잔액을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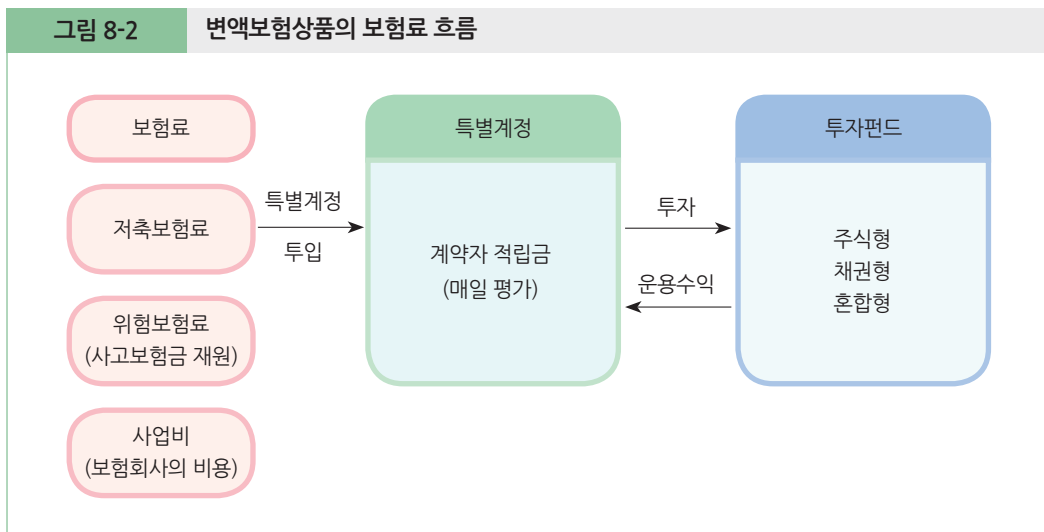
변액보험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보험계약 시점에서 약정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미리 정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보험상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액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성계약에서는 물가상승률 효과를 상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이며, 이는 생명보험회사만이 판매가 가능하고 손해보험회사는 판매가 불가하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중에서 저축보험료 등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구성된 투자펀드에 직접 투자해 운용수익을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직접 반영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이다.

〈그림 8-2〉와 같이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감안하여 투자펀드를 선택하면 그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모두 보험계약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고 보험기간 중에 해지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는 등 납입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사망보험금,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최저보증 옵션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보증비용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변액보험에는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그리고, 보험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다만 변액보험은 계약에서 최저보증을 하는 부분(예: 최저



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등)과 특별약관(rider)⁹을 제외하고는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5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산업의 상대적인 의미로 ‘non-life insurance’로 표현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보험업이 해상보험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험업의 시작이고 표준이라는 의미로 ‘general insurance’라고 표기한다. 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 14개 종목이 있다.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공장, 주택, 발전소 등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상하는 보험기간이나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장기화재보험 등으로 구분한다. 화재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는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피난손해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재로 인한 이웃집 손해, 화재발생 벌금, 도난손해 등도 다양한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직업 활동 혹은 경영 활동 등을 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 신체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책임보험은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된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상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9 특별약관은 줄여서 ‘특약’이라고 약칭한다. 기본계약(이를 ‘주계약’이라고도 함)에 부가하여 기본계약의 보장내용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목적으로 개발되는 하나의 독립된 간단한 보험상품이다.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하여 전문직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의료인의 의료분쟁에 대비한 의료배상책임보험 그리고 항공, 선박, 원자력 발전소 등의 특수한 사고에 의한 환경배상책임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

우리나라는 2019년 말 차량등록대수가 2,360만대를 넘어섰고 그 중 약 94%가 개인용 자동차이다. 이러한 자동차생활문화 속에서 자동차사고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22만 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음주운전 정지자 등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2019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34만여 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3,300여 명으로 상당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감소추세이지만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부상자수는 줄지 않고 있다.

표 8-5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고(건)	221,711	223,656	215,354	223,552	232,035	220,917	216,335	217,148	229,600
사망(명)	5,229	5,392	5,092	4,762	4,621	4,292	4,185	3,781	3,349
부상(명)	341,391	341,391	328,711	337,497	350,400	331,720	322,829	323,037	341,712

출처: 경찰청(<https://www.police.go.kr>)-경찰통계자료

자동차 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가해 운전자는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에 대하여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대인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하고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등 대물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패키지종합보험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표 8-6>과 같이 자동차종합보험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가 입은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 상해’,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 총 6개의 차별화되고 독립된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2천만원 한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만약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상태로 운행할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표 8-6 자동차종합보험의 보장내용

보장종목	보장내용
대인배상 I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제3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정한 대인배상액을 보상하는 의무배상책임보험(강제보험). 예시) 사망·후유장애(1.5억원), 상해1급(3천만원)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대인사고를 보상하는 임의배상책임보험(비강제보험)으로 일반적으로 보험금액은 무한대로 설정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제3자에게 자배법에서 정한 2천만원 한도의 대물배상책임보험과 2천만원을 초과한 배상액을 보상하는 임의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
자기신체 사고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받는 임의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받는 임의보험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는 임의보험(단,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사고, 뺑소니사고, 무면허운전사고는 보험회사 면책)

한편, 자동차사고를 매일 접하는 일상에서 사고자를 범죄자로 기소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단, 대인배상 II가 무한)에 가입한 경우 12대 중과실(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등을 제외하고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처벌¹⁰ 이외에도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시 자동차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 운전자 본인이 최대 1억 6,500만원(대인 1억 1,000만원, 대물 5,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40% 이상 감액 지급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에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금융꿀팁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험금이 줄어들게 되며,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다.

10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험운전치상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1. 음주·무면허·과로·과속 운전 시 과실비율이 20%p 가중된다.
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이 15%p 가중된다.
3.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6 제3보험

제3보험은 신체의 상해, 질병이나 이로 인한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험사고로 보며,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 질병보험(sickness insurance), 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표 8-7 보험업종별 특성 비교

구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보험사고	사망, 생존	금전적(재산, 배상책임) 손해	신체 상해, 질병, 간병
보험금 청구권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	정액보상	실손보상	정액, 실손 모두 존재
중복보험 & 연대비례보상책임	없음	있음	실손보상보험은 있음
보험기간	장기(3년 초과)	단기(3년 이하)	단기, 장기 모두 존재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상해 사망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는 상해사고이며 우연성, 외래성 그리고 급격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신체 내부에서 기인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상해보험에는 사고의 종류나 담보하는 보장항목에 따라 일반상해보험, 교통상해보험, 여행보험, 운전자보험 등이 있다.

■ 여행보험

여행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손해사고에 대비하는 종합보험이다. 보험기간은 여행기간 중으로 단기이지만 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 등 후유증상까

지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이 밖에도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질병사망, 실손의료비 그리고 여행 중 발생한 개인배상책임손해, 휴대물품손해 등도 선별적으로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 가령 여행 중에 호텔의 물품을 훼손, 파손하는 경우에 ‘개인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범위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여행기간 동안 가지고 다니던 고가의 카메라나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특약가입금액 범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기간 동안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현지 경찰관서 등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운전자보험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전자는 상대방 차량 및 운전자나 승객의 입원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할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죽거나 다치게 했으므로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도 져야 한다. 앞서 설명한 자동차보험이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서 파생하는 형사상 책임손해, 행정상 책임손해 및 기타 비용손해를 보상한다.

운전자보험의 보편적 보장내용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벌금, 형사적 책임을 감경시키기 위

자동차사고 기준	자동차종합보험	운전자보험
가입 대상	자동차 및 그 소유자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
의무가입	대인배상 I, 대물배상(2천만원 한도)	임의보험
대인 및 대물 민사적 배상책임	보상	무보상
피보험자의 형사적 책임	무보상	보상: 사망/부상의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
피보험자의 행정적 책임	무보상	보상: 면허취소 위로금 등
피보험자의 기타 비용손해	무보상	보상: 긴급견인비용, 렌트카 비용, 차량손해위로금,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등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상. 단, 사고부담금 부담 대인배상 I: 1천만원 대인배상 II: 1억원 대물배상(의무): 5백만원 대물배상(임의): 5천만원	무보상

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필요한 비용, 자동차 사고로 공소가 제기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 사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의 위로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기타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질병보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심각한 중증질환까지 다양한 유형의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질병은 상해사고와는 달리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 연령, 성별 등에 따라 그 발병률이 다르다. 질병에 걸리게 되면 질병으로 인한 진단, 수술, 입원, 통원 등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 질병보험이다. 대표적 질병보험은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이 있다.

■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¹¹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으로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며, 재가입 주기 15년으로 15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치료, 의료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준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입원의료비의 80%를 보험회사가 보상하고 20%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한다.

표 8-9 표준형(상해, 질병)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기본형	입원	보상대상의료비의 80% 해당액 보상	1/3/5천만원	
	통원	보상대상의료비에서 외래병원규모별 1~2만원(약제비는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 공제 후 보상	5/10/15/20/25만원	합산 30만원 한도
			5/10/15만원	
특약 (3종)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각 특약별 보상대상의료비에서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350만원(합산 50회 한도)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합산 50회 한도)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300만원	

1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부담금

그리고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여도 정액보험이 아니므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지 못하게 되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야기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체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는 내보험다보여(<https://credit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복계약은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가입가능 나이가 50~75세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치료이력이 있거나 경증만성질환을 가진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자기부담금 범위를 상향 조정한 '유병력자실손보험' 등이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1.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는 상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회사별로 보험료는 상이하므로, 가입 전에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모집수수료 등이 적어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2. 해외 장기 체류 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받을 수 있다.

3.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

회사별로 상이하나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은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4. 간병비, 예방접종비, 의약외품 구입비, 외모개선 목적 의료비, 일반 건강검진비는 비보장

병원 입·통원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간병비,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등이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외품 구입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성형수술과 같은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 일반 건강검진비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19)에서 발췌

■ 암보험


암보험은 암으로 인한 치료자금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대표적인 질병보험이다. 이는 암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점이 반영된 것이다. 암보험은 일반적으로 암진단비, 암수술비, 암입원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암보험의 핵심보장은 암진단비이며 치료비 경중에 따

라 고액암, 소액암 등으로 구분하여 암진단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암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을 시작하고, 1년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암보험은 다른 질병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정주기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갱신형과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가 일정한 비갱신형이 판매되고 있다. 암보험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갱신형 암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갱신 시에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표 8-10 **암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	보장내용
암 진단비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지급(최초 1회에 한함)
암 입원비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지급(3일 초과 입원일수 기준으로 총 120일 한도)
암 수술비	암보장 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수술 1회당)

 **확대보기**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사망, 진단 등에 대한 과거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위험률(발생빈도)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기간 전체에 동일한 보험료를 산출, 적용한다. 이를 비갱신형 보험이라 한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장기이며 위험률 변동이 큰 경우에는 향후 만기까지 위험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단위로 최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한 위험률과 연령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갱신형' 보험상품이다. '갱신형' 보험은 보험가입 당시의 초기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일정주기마다 위험률의 변동 및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도 있다. 특히 갱신주기가 지속되어 60세 이후의 고령기에는 퇴직 이후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갱신형'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는 상품안내자료에 명시된 가입당시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고령기의 보험료도 꼭 비교해보아야 한다. 반면에 '비갱신형' 보험은 계약 초기 '갱신형'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험기간 동안 위험률의 변동이 있더라도 만기까지 처음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표 8-11 갱신행보험상품과 비갱신행보험상품의 비교

구분	갱신행	비갱신행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	일정주기(1년, 3년, 5년 등)로 보험료를 새로이 재산정하여 계약갱신 단, 보험기간 = 보험료납입기간	계약 시 약정한 보험료가 보험기간 동안 변경 없이 동일 단, 보험기간 ≥ 보험료납입기간
적용요율	갱신시점의 위험율, 이자율, 사업비율	계약시점의 위험율, 이자율, 사업비율
보험사 적용상품	위험률 변동성이 예상범위를 초과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상품 (예: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변동성이 예상범위 이내이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상품(예: 종신보험)
장점	가입 당시 초기보험료는 저렴	위험률이 상승해도 보험기간 중 보험료는 동일하게 유지
단점	갱신 시 급격한 보험료 인상 또는 일부 보장내용 축소, 가입거절될 수 있음	가입초기에 갱신행에 비해 높은 보험료 부담

간병보험

간병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더 이상 일상생활(ADL)¹²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 도달하여 타인의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보험사고로 정의하고 매일매일 발생하는 일상간병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분기별 입원진료비 통계에 의하면 치매입원진료비가 가장 높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2012년 9.18%에서 2020년 10.39%, 2040년 11.9%, 2050년 15.06%로 급등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과 함께 ‘치매국가책임제’¹³가 시행되면서 치매상태가 되었을 때 진단비와 간병비를 지급하는 치매간병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적 건강보장을 보완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및 상해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 치매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완재로 활용되고 있다.

12 ADL은 ‘Activities of Daily Living’의 약어로서 남의 도움 없이 행하는 일상생활을 의미한다. 식사하기, 옷입기, 화장실 가기, 목욕하기, 이동하기, 감정 자제하기 등을 포함한다.

13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지원센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8-3 공사연계 건강보험체계



7 보험가입채널

보험상품의 판매는 흔히 모집이라고 정의되기도 하는데,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이고 무형적인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보험업법」 제83조에서 보험상품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모집종사자)를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 그리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 모집종사자들은 보험회사 관점에서 보면 모두 보험상품의 판매 통로에 해당하므로 보험판매채널이라 하며 보험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보험가입채널이 된다.

보험설계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보험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이다.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은행, 증권사 등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카슈랑스라 한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의 ‘Bank’와 보험의 ‘Assurance’를 합성한 단어로 법률상의 명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다.

텔레마케팅

텔레마케팅은 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수단으로 보험상품판매를 위해 보험회사가 확보

한 고객데이터 베이스자료를 토대로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장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채널과 인터넷, 신문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려는 자발적 가입자의 전화 유입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인바운드(In-bound) 채널로 나누어진다.

홈쇼핑채널

최근 TV채널이 다양화되면서 홈쇼핑 채널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홈쇼핑채널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는 해당 채널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험상품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보험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 검색한 뒤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채널이다. 온라인 전용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및 선택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사별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비교하여 가입경로를 안내할 목적으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를 운영 중이다.

적용하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http://www.e-insmarket.or.kr)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여행자보험, 암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입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보험회사별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편리하게 비교해 볼 수 있다.



독립보험대리점

독립보험대리점(GA : general agency)이란 보험시장에서 특정보험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전속보험대리점(exclusive agency)의 상대개념으로서 다수의 보험사와 판매제휴를 통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비전속보험대리점이다. 최근 보험가입 유형이 보험설계사를 활용한 전통적인 지점영업소 중심에서 GA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8 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리스크 인식 및 가입목적 명확화

자신 및 그 주변에 있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가장 크고 위협적인 리스크부터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 가입목적이 명확해져야 이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해 또는 질병에 따른 치료비용을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 30~40대 가장의 경우에는 본인 사망 시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 등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의 가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보험료 수준 및 변동 여부 확인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시 일괄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월 납입한다. 보험은 장기상품으로 보통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총 납입한 보험료합계는 상당한 금액이 되고, 보험 납입기간 중 실직 등 예기치 않은 일로 약정한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납입하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갱신형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갱신 시마다 보험료가 상승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을 고려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수준이 보험가입 당시뿐만 아니라 향후 보험료납입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비흡연자 등 보험회사가 정한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건강인할인특약, 20세 이상의 보험계약자가 50세 이상인 부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효도특약, 다자녀가정 우대특약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한편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만기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한다면 상대적으로 타 보험상품에 비해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 계약 해지 시에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동일보장의 일반상품 대비 보험료,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확인하고, 보험가입자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보장내용 및 보험금 지급방식 확인

많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문데, 보험 가입 시에는 주요 보험사고 발생 시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의 지급방식이 정액인지, 실손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실손상품이면 2개 이상의 동일한 실손상품을 가입할 경우에 실제 발생한 손실액 이상의 보험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고 실제 손실액 한도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비례하여 분담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이 발생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손상품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용하기 '내보험 다보여'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 중인 '내보험 다보여'(https://ins.credit4u.or.kr)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모든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본인이 계약자로 된 전체 보험계약 건수와 그 중 유효한 보험계약 건수, 보험료 납부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입한 보험의 유사 연령대 대비 과부족 보장 등을 확인하는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비용, 수수료 등 공제금액 확인

많은 보험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초기에 상대적으로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 또는 해지 시점에서 돌려받는 금액인 환급률(환급금÷납입보험료 합계)이 낮다. 따라서 보험가입 시에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보험가입 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저축성보험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준수

보험가입 시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 현재 및 과거의 병력 등 중요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라고 한다. 이는 보험계약 시에 작성하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하여야 성실히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계약전 알릴의무와 별개로 계약체결 후에 사고발생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 이를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라고 한다. 가령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에 일반사무직원에서 운전기사 등으로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 자동차사고 확률 등이 높아지므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변경 전후의 보험료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보험정보 비교

보험 가입 시 다양한 상품을 직접 비교해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바로 연결이 가능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의 '상품비교공시' 메뉴에서는 상품별로 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가격지수 등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단, 비교공시 사항은 표준조건에 따른 예시이므로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불완전판매비율, 보험금 부지급률, 소송, 지급여

력비율 등의 지표를 확인하면 보험회사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꿀팁

보험가입 시 체크해 보면 유익한 5가지 지표

1. 보험가격지수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수준을 나타낸 지표이다. 보험가격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 상품의 평균가격 대비 20%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비율은 새로 체결된 보험계약 중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이다. 보험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4. 소송공시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모든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 보험에서의 리스크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생명보험업은 인적손실리스크, 손해 보험업은 재산손실리스크 그리고 배상책임리스크를 각각 인수하는 것을 주된 영업 목표로 한다.
-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모두 낮으면 리스크를 보유하고, 손실의 빈도와 심도가 모두 크면 리스크 자체를 회피하는 전략 수립이 최선의 리스크관리이다. 그러나 손실의 빈도는 낮으나 심도가 크면 예산 허용 범위에서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사업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 최선이다.
- 보험은 크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뉘며,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 민영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해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업'과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업',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 상해 또는 질병, 그리고 간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제3보험업'으로 보험업을 구분하고 있다.
- 고령화에 따라 은퇴 이후에 생활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과 치매로 인한 간병비 등을 보장하는 치매간병보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자동차종합보험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배상 I & II', '대물배상'과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신체 상해',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 총 6개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며, 운전자의 민사상 책임을 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운전자 자신의 형사상의 책임을 보전함에 있다.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하여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다.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 그리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다.
- 보험에 가입할 경우 먼저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해 보고 그에 알맞은 보험을 찾아야 한다. 보험의 보장종목과 보장내용, 보험료 갱신 여부, 보험금의 지급방식(정액 또는 실손), 보험기간 등을 확인하고,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 다모아',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료비교 공시자료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예시문제

📌 서술형

01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대표적 리스크를 하나 선정하여 심도와 빈도를 감안하고 리스크 관리방법을 설명하시오.

02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03 변액보험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04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 빈칸 채우기

01 보험대상리스크의 크기는 손실빈도와 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02 제3보험업은 , 질병보험 그리고 간병보험으로 구성된다.

03 보험계약은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금전적 약속이며, 보험사업자가 약정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지급금을 이라고 한다.

04 순보험료는 사망, 암 발생 등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 와 보험계약의 만기 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O·X 문항

- 01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
- 02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 책임을 주된 보장내용으로 개발된 상품은 운전자보험이다. ()
- 03 보험계약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 보험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보다 작을 수 있다. ()
- 04 저축성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이율로 부리되어 적립된다. ()

09

노후와 연금

Section 01

고령사회

Section 02

노후에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위험

Section 03

노후준비와 연금



09

노후와 연금

📌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로 인한 노인빈곤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살펴보고, 노후준비를 위한 다양한 연금제도를 알아본다.

📌 학습목표

-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가 노출되기 쉬운 제반 위험을 설명할 수 있다.
-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도입취지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합리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제도 활용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생각열기

5060세대 67% “노후에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생각 안 해”

우리나라 50, 60대 ‘신중년’은 현재 생활이나 노후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으로 ‘소득 부족’을 꼽았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또는 ‘부모 부양’ 등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나 자녀가 자신을 부양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자신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만혼 추세 등으로 자녀 부양 기간도 길어졌지만, 자녀 세대로부터 부양을 받기는 어렵다고 인식하는 셈이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50~69세 2,022명을 대상으로 가족 부양 부담과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현재 생활에서 걱정거리가 있는지, 있다면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지’ 묻는 말에 ‘걱정거리가



있다'는 응답이 73.2%, '걱정거리가 없다'는 응답이 26.8%였다. 가장 큰 걱정거리로는 '소득이 부족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2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22.5%), '자녀의 독립 또는 은퇴 이후 느끼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11.8%), '부모님을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7.6%),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움'(6.7%) 등이었다.

'본인의 경제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 묻는 말에도 '소득 불충분'이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20.8%), '부모 및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6.6%),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못 느낌'(6.3%),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2.3%) 등으로 나타났다. 일차적으로 소득이 불충분하고, 자녀에 대한 지원이나 부모 부양 때문에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반면 '본인 노후에 자녀들이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0%(전혀 동의 않음 33.1%, 별로 동의 않음 33.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부모와 자녀 부양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걱정하고 있지만 자식 세대가 자신을 부양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이하 생략)...

[출처: 한국일보, 2019. 6. 23.]

-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로 어떤 것이 있을까?
- 노후의 경제적 위험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SECTION
01

고령사회

1 고령화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비약적 증가와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이슈를 고령화 이슈라고 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이다. 통계청의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¹은 1970년 4.53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 0.92명으로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남녀 평균수명은 1970년에 62.3세였으나 2019년에는 83.3세에 달해 49년 동안 약 20년이 증가하였다. 연 평균 약 0.43년씩 평균수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출산율 악화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구자산(population asset) 변화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평균수명과 출산율은 연령 측면에서 미래에 어떤 사람들이 그 사회를 구성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인구자산의 연령별 구성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text{총 인구} = \text{유소년인구}(0\sim 14\text{세 범위의 사람 수}) + \text{생산연령인구}(15\sim 64\text{세 범위의 사람 수}) + \text{고령인구}(65\text{세 이상 사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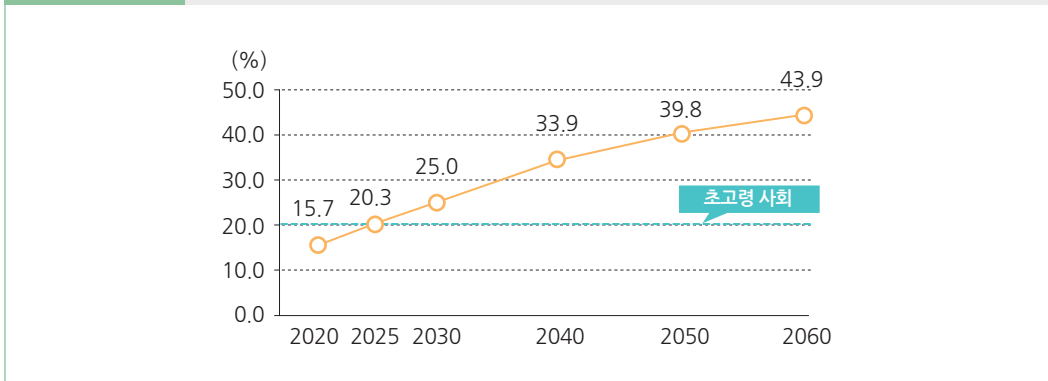
이 때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인구 구성비(고령인구 비중)라고 하며, 고령인구 구성비가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를 거쳐 2017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7%이다.² 또한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5년에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6년에 30%, 2051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약 30년이 걸린 반면에 우

1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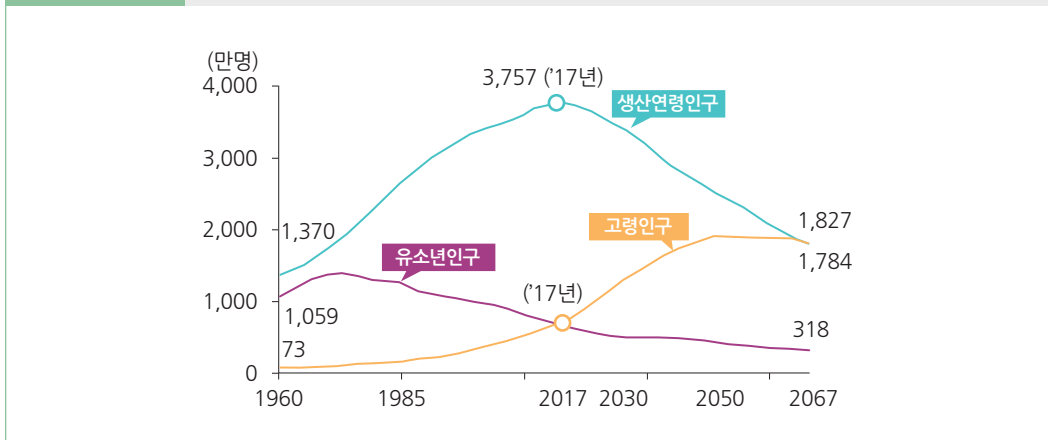
2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보도자료, 2020. 9. 28.)

그림 9-1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출처: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보도자료, 2020. 9. 28.)

그림 9-2 연령별 인구구조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보도자료, 2019. 3. 28.)

리나라는 8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중위연령(median age)³도 2017년 42.0세에서 2031년 50.0세를 넘어 2067년 62.2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령화의 속도로 인하여 2017년에 처음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넘어섰고 2067년에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의 5.7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점차적으로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⁴

3 특정집단의 전체 인구를 연령 순서로 나열할 때에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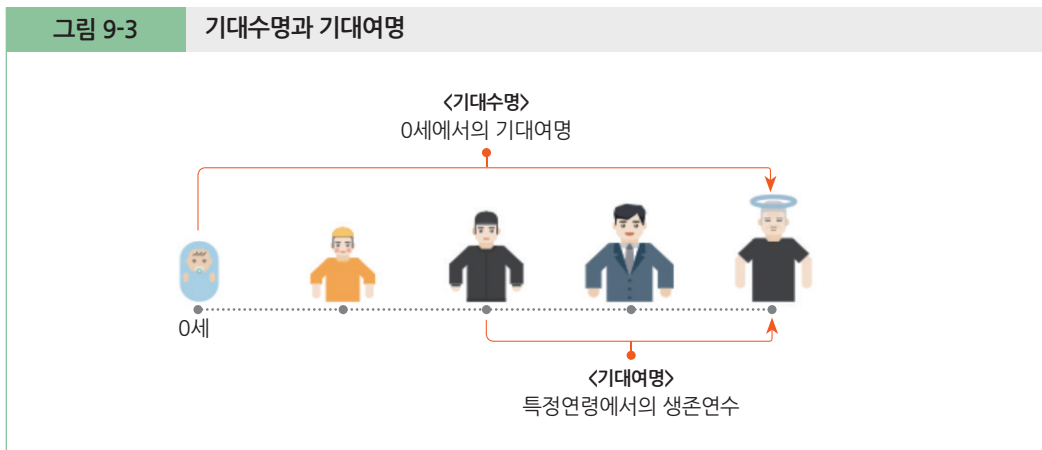
4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보도자료, 2019. 3. 28.)

2 기대수명, 건강수명, 행복수명

우리나라는 과거 40년 동안 압축 성장하였다. 경제성장의 결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수명 또한 빠르게 연장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령화 이슈는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수명연장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현재는 막연하게 오래 생존한다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풍족하게 오래 살아간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수명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이란 특정 연도의 0세 신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이는 국가별 수명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민의 평균수명 개념이다. 예컨대, 2025년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84.2년이라고 하면 이는 2025년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평균기간이 84.2년이라는 의미이다. 한편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은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아래 <그림 9-3>과 같이 기대수명은 출생 시 기대여명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기대여명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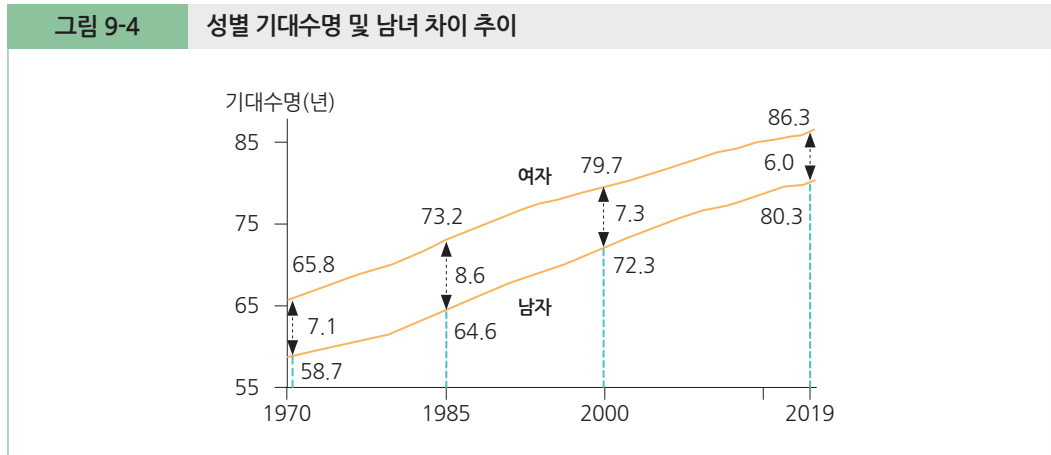
특정집단의 기대수명과 기대여명은 그 특정집단에 대해 작성한 생명표(life table)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명표는 국가 보건 및 의료정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이 발표된다.



출처: 통계청(<http://kostat.go.kr>)-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5 과거 특정집단의 연령별 사망 경험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연령별 사망확률 그리고 생존확률을 산출하여 작성한 통계표로서 일반적으로 남녀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2019년 기대수명은 83.3년(남자 80.3년, 여자 86.3년)이며,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1985년의 8.6년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다.⁶



출처: 통계청, 2019년 생명표(보도자료, 2020. 12. 1.)

또한 통계청은 장래 기대수명을 격년마다 정기적으로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아래 <표 9-1>은 고위(낙관적 관점), 중위(중간수준 관점), 저위(비관적 관점)의 세 가지 시나리오의 분석결과 중에서 예측의 정확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 중간수준 관점의 값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는 미래 인구정책, 복지정책 등을 수립할 때 활용성이 매우 높다.

표 9-1 기대수명 추계 결과(2017~2067년) (단위: 년)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67
중위	계	82.7	83.2	84.2	85.2	86.0	86.8	87.5	88.2	88.8	89.4	89.9	90.1
	남자	79.7	80.3	81.5	82.6	83.6	84.6	85.4	86.2	87.0	87.7	88.3	88.5
	여자	85.7	86.1	86.9	87.7	88.4	89.0	89.5	90.1	90.6	91.0	91.5	91.7
	남녀 차이	6.0	5.8	5.4	5.1	4.8	4.4	4.1	3.9	3.6	3.4	3.2	3.2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보도자료, 2019. 3. 28.)

최근에는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기대수명 외에 ‘건강수명’이나 ‘행복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생존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강

⁶ 통계청, 2019년 생명표(보도자료, 2020. 12. 1.)

수명(disability adjusted life expectancy)’이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기간으로, 삶의 질을 반영하여 실제 일상생활 등을 영위하며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건강수명은 기대수명보다 10년가량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수명’이란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표화한 것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건강수명, 경제수명, 활동수명, 관계수명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객관적 준비 수준, 주관적 만족도, 준비계획 등을 측정하여 ‘행복수명지표’를 산출한다⁷. 이에 대해 실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행복수명은 74.6세로 응답자의 평균 기대수명 83.1세보다 8.5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후생활 준비가 부족하여 노후에 평균 8.5년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02

노후에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위험

1 질병위험

생(生)-노(老)-병(病)-사(死) 인생 과정에서 고령자가 질병에 걸리는 횟수와 질병의 정도는 더욱 증가한다. 그러므로 고령자가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질병위험이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2019년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명당 750명이 사망하였고, 그 다음은 심장질환(335명), 폐렴(283명), 뇌혈관질환(2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⁸ 특히 암은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령자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나고 있다.

⁷ 건강수명은 은퇴 이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기반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 경제수명은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 활동수명은 은퇴 이후 사회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 그리고 관계수명은 은퇴 이후 원만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⁸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보도자료, 2020. 9. 28.)

질병위험은 질병 자체만으로도 큰 위협이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도 매우 클 수 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계속 증가하여 2018년 기준 448만원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1인당 진료비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전체 인구 진료비 대비 고령자 진료비 비중이 더욱 증가하여, 고령자 개인별 진료비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경제적 위험

노후에는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치료비와 간병비, 생활비 등 다양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면 경제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은퇴 이후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개인별 건강상태 그리고 거주 지역의 물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중고령자 대상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2019년)에 따르면,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 생활비는 개인기준 117만원, 부부기준 195만원이고, 적정 생활비는 개인 기준 165만원, 부부기준 268만원으로 나타났다.⁹ 상대적으로 물가수준이 높은 서울은 최소 생활비가 개인기준 137만원, 부부기준 224만원에 달했다.

통계청의 자료¹⁰에 따르면 2019년 55~79세 고령자 중 연금 수령자 비율은 47.1%이며 월 평균 각종 연금 수령액은 63만원으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고령자의 67.4%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며, 그 이유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함이 60%로 나타났다. 또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세까지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노후에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더 나아가 OECD의 「Pensions at a Glance 2017」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old-age income poverty ratio)¹¹은 45.7%로 OECD 평균인 12.5%의 약 3.6배로서 회원국 중 최고 수

9 노후생활비는 주관적 인식에 따라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생활비 수준을 의미하며, 최소 생활비는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적정 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말한다.

10 통계청,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2020. 7. 28.)

11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중에서 국민 전체의 중위가처분소득(national median disposable household income)의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수준에 있는 고령자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준이었다. 2019년 보고서 기준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인 13.5%의 약 3.2배로 다소 개선되었지만, 최근 10년간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였으며, 국가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SECTION 03

노후준비와 연금

1 다층연금제도

노후준비의 가장 기본은 연금자산을 은퇴 이전에 미리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다. 연금이란 가입자가 경제활동기에 꾸준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노년기에 생활비 형태로 일정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체계적 연금제도에 의해 연금자산을 적립하게 된다. 여기서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plans)와 사적연금제도(private pension plans)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로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공무원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별정우체국연금), 그리고 100% 조세에 의해 운영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그리고 사적연금제도로는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 농지연금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표 9-2>와 같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제도적으로 완비하고 있다. 1층 연금제도는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고, 2층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합의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3층 연금제도는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을 의미함)이다. 이를 통합하여 3층 보장체계(3-pillar system)라고 한다. 이러한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준비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3층 연금체계는 모두 정기적으로 약정한 보험료(기여금)를 납입해야 하는 부담원칙(contribution principle)이 적용된다. 한편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열악한 경제 환경으로 노후에

표 9-2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분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공무원/교직원/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사적연금	3층보장 체계	3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연금(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2층	퇴직연금	-
공적연금	1층	국민연금 (무소득자도 임의가입이 가능함)		특수직역연금
	0층 (공적 부조)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하위 약 70% 국민)		

대한 준비가 미비한 65세 고령자를 국가책임하에 구제하기 위한 노후복지제도가 기초연금제도이다. 이를 0층 연금제도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특수직역연금의 대상은 제외된다. 특수직역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등 일반국민과는 달리 공적기관에 고용된 특정근로계층을 위해 차별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모두를 합쳐 놓은 연금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층적 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가입 가능한 기간 동안 해당 연금제도에 지속적으로 보험료(부담금)를 납입하고 국가나 금융회사는 그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은퇴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 총액은 은퇴 직전 월급의 약 70~80% 수준을 연금재정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예컨대, 선진국의 퇴직 후 연금소득대체율(개인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pension replacement rate)은 약 7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8년에 시행된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설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되고 생존하는 동안 지급되는 종신연금(life annuity)으로 설계되어 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매월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주어진다. 즉, 국민연금은 만 60세를 경계점으로 보험료 납입의무가 해제되고

표 9-3 노령연금 수급가능연령

출생연도	53년~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년~68년생	1969년 이후
노령연금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출처: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는 구조이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은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며,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으로 나뉜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원천에 따라 아래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의 4.5%씩 총 9%를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납입한다.
-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이다. 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개별적으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납입하여야 한다.
- **임의가입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없어 사업장 및 지역 등 당연가입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예컨대,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으므로 당연가입자가 아니지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 수준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소득 이상으로 본인이 소득수준을 결정하여 9%를 만 60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납입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매월 만 60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기 어렵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미납한 보험료를 차후에 한꺼번에 납입하여 미납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추후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는 임의가입자로 전환하여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점차 늦추고 있지만, 제도도입

초기 ‘저(低)기여-고(高)급여’ 설계로 인해 연금재정의 고갈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국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금급여 지출수준과 보험료 수입수준 등 재정수지가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시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했으나, 이러한 제도는 사용자인 해당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제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하여 외부에서 운용하다가 퇴직자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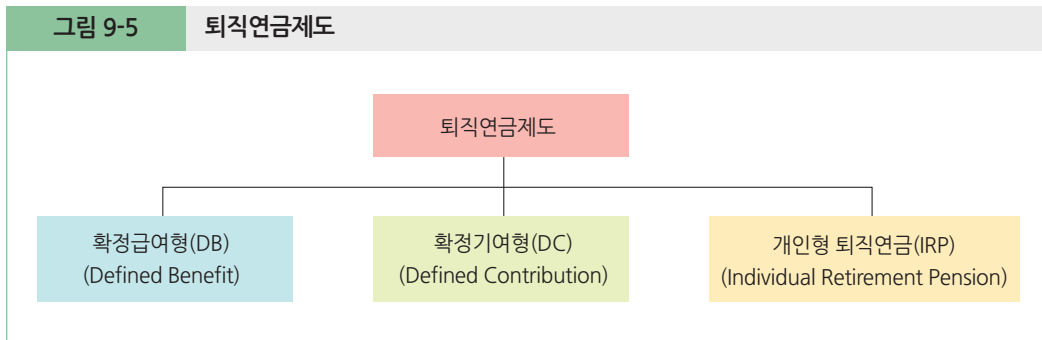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이들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근로자는 재직 중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자는 55세 이상이고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plan)란 가입자인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퇴법에 따라 확정급여의 수준은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임금×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한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급여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운용해야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운용에 따른 투자손익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plan)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퇴법의 확정기여수준은 가입자인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며 사용자는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

다. 근로자별로 구성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적립금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하며 이에 대한 투자손익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plan)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다. 본인이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다음에 설명하는 개인연금제도와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개인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노후대비를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연금제도이다.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납입액)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상품)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세제비적격 개인연금(연금보험상품)으로 양분된다. 개인연금제도의 세제혜택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소득공제로 출발하였지만 현재는 <표 9-4>와 같이 세액공제(납입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 등에서 공제)가 제공된

표 9-4 연금저축상품 관련 세액공제

구분	세부 내용		
종합소득 (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4,0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	10,000만 원 초과 (12,000만 원 초과)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400만 원		연 300만 원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 연 600만 원 (2020~2022년 만 3년간 한시적 적용)		
세액 공제율	15%(주민세 포함 16.5%)	12%(주민세 포함 13.2%)	

다. 적립기간 중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은 만큼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연금수령 시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하는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총 납입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 16.5%)가 부과된다.

연금저축상품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이 판매할 수 있다. <표 9-5>와 같이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자산운용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과 함께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수익률이 반영되는 금리연동형으로 운영되고 최저보증이율이 있으며 예금자보호제도 또한 적용된다. 생명보험회사만 유일하게 종신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 이외의 금융회사는 확정연금만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계좌이므로 예금자보호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의 계좌 안에서 여러 펀드, ETF 등에 분산투자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동향에 따라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등 투자대상 간 전환도 비교적 자유로워 적극적인 적립금 운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저축성보험이고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납 연금보험은 1억원을 한도로, 그리고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납 연금보험은 매월 150만원을 한

표 9-5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특성

구분	은행	자산운용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상품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주요 판매회사	은행	증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은행, 보험사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자유적립식	정기납입	정기납입
적용 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공시이율
연금수령 방식	확정기간형 (기간제한 없음)	확정기간형 (기간제한 없음)	확정기간형, 종신형	확정기간형 (최대 25년까지)
원금보장	비보장*	비보장	보장	보장
예금자보호	보호	비보호	보호	보호

* 2017년까지 가입한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이었으며, 2018년부터는 신규판매를 중단.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

도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저축성보험차익¹²에 대해 모두 비과세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업주부와 같은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금저축보다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관리방법

1. 연금저축 중도해지 대신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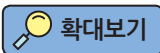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하다고 무조건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 부담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또는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중단했다가 원할 때 납입을 재개할 수 있으며, 2014년 4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유예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다.

2. 연금저축 가입 이후 필요시 연금계좌 간 이체제도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 이후 수익률을 비교하는 등 꾸준히 관리한다. 또 다른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계좌를 신설하고 연금계좌 간 이체를 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하며, 이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 연금 수령 시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도입목적 혹은 판매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도입 목적이므로 지급되는 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된다. 그러나 사적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보험료와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국민연금은 근본적으로 평생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중신지급형으로 설계하지만, 사적연금은 연금수급자의 성향에 따라 연금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사적연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혹은 연금 수령 이전에는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대부분 가입자 임의로 중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2 만기환급금 또는 중도해지환급금과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의 차이를 말한다.

기초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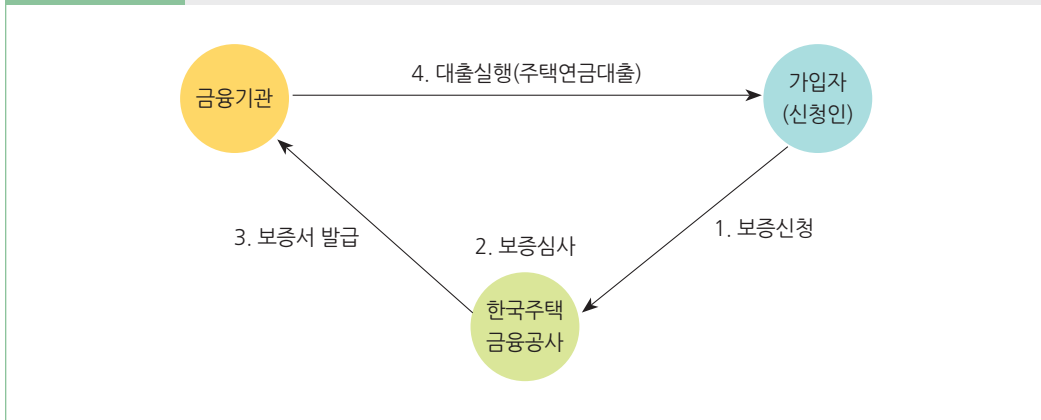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도입된 연금제도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2019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7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219만 2천원 이하이며, 2020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수급자 기준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0만원이다.

주택연금제도

주택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필요경비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역모기지상품이 있다.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제도는 2007년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와 맞물려 매년 수요가 늘고 있으며 주된 가입 대상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이다. 이를 활용하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생활연금을 지급받으며 주택거주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주택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유동화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가입조건은 만 55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최소 1인)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부기준 소유주택(다주택 포함)의 합산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합산 공시 가격이 9억을 초과하면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9억 원 이하로 조정하면 가능하다.

주택연금 운영구조는 <그림 9-6>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가입자나 배우자 모두에게 해당 주택에 평생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기존 연금액은 감액 없이 100% 지급된다. 만약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한 결과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을 처분한 값이 연금수령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물론 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상속인이 주택을 다시 상속받고 싶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연금총액을 상환하고 주택의 상속권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림 9-6 주택연금의 상품구조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

2 은퇴 연금설계

연금의 설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노후에 필요한 연금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은퇴설계이다. 실제로 은퇴설계의 핵심은 필요한 은퇴자금을 토대로 언제부터 얼마씩 모아야 할지, 언제부터 얼마씩 찾아 쓸지에 관한 연금설계로 집약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목표연금을 설정해야 한다. 목표연금을 산출하려면 우선 은퇴 후 예상되는 월 생활비와 필요자금을 조사하고, 은퇴 이후 생존가능기간(평균수명)을 기초로 산출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내가 가입한 연금상품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표 9-6 노후생활자금을 위한 연금설계(예시)

구분	비고
① 목표 연금(은퇴 이후 예상 월 생활비)	은퇴 직전 3년 평균 월 생활비 기준으로 적정 수준을 설정 (예: 60~70%)
② 은퇴기간(= 예상사망연령 - 은퇴연령)	개인별 상황 및 생명표의 기대여명 등을 참조
③ 목표 노후생활자금	월 생활비×12개월×은퇴기간(年)
④ 준비된 노후생활자금	통합연금포털을 통한 가입연금정보조회
⑤ 부족 노후생활자금	목표 노후생활자금 - 준비된 노후생활자금
⑥ 부족 노후생활자금 마련	개인연금 추가 가입, 주택연금 활용 등

(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하면 이미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필요자금과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을 개인연금 상품의 추가가입을 통해 보완한다.

적용하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 관련 온라인 원스톱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해보자. '내 연금조회' 메뉴에서 개인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내역 및 연금 수령 예상액을 조회하고, '노후 재무설계' 메뉴에서는 나이, 은퇴시기 등 간단한 정보만을 입력해도 노후 필요자금 및 월 필요 생활비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연금상품 비교공시' 메뉴를 통해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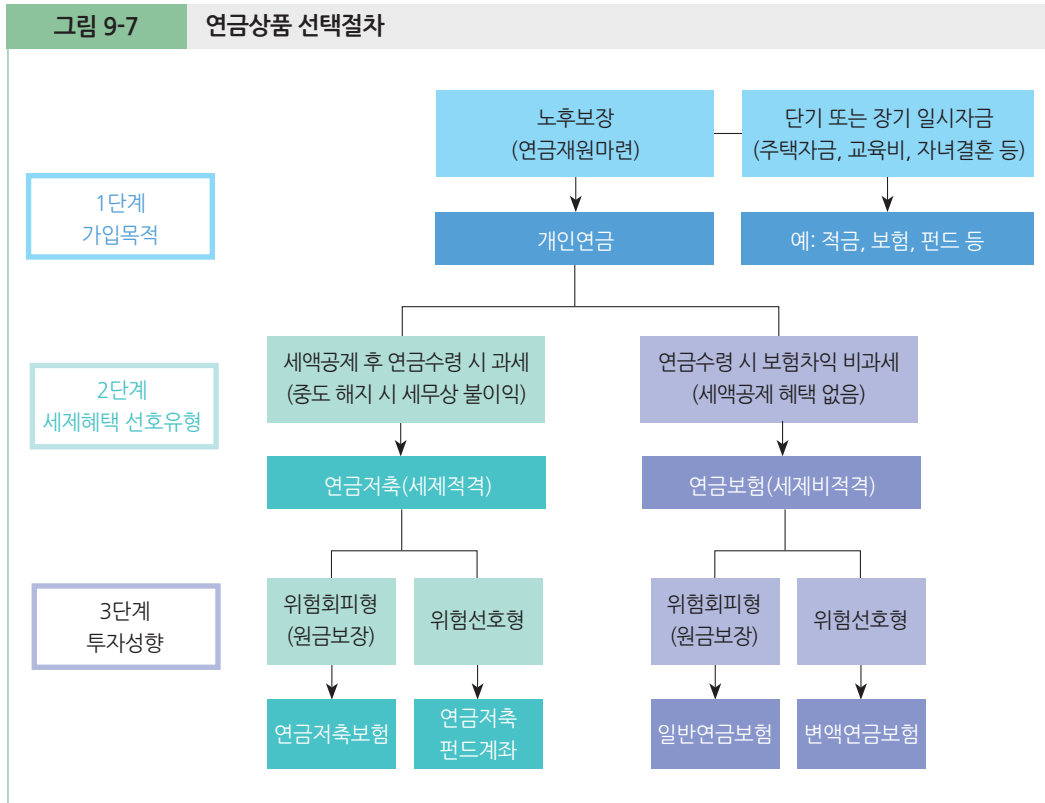


연금의 선택

연금을 가입할 때에는 가장 먼저 금융상품을 가입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납입한 금액을 단기 또는 장기에 주택자금이나 자녀의 교육비,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면 연금이 아닌 적금이나 펀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후자금은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장기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제혜택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연금저축은 납입하는 동안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해야 한다. 반면에 연금보험은 일정요건 충족 시에 저축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다.

또한 자신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원금보장에 중점을 둘 것인지(위험회피형) 아니면 다소 위험부담은 있더라도 투자수익에 중점을 둘 것인지(위험선호형)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싶고 위험회피성향이려면 연금저축보험이 적합할 것이다. 반면에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와 함께 투자수익까지 고려



한다면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적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연금상품 유형 중에서 과거 투자수익, 판매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거 투자성과가 좋고 시장성이 높은 규모가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통합연금포털'의 통합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연금보험상품은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실(<https://pub.insure.or.kr>) 자료를 활용하면 상품별 유용한 비교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판매접근성이나 전문성,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채널을 선택한 다음, 중도해지 가능성이나 연금수령기간과 예상 수령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적합한 상품을 계약해야 한다.



확대보기

호모 헨드레드와 연금

'호모 헨드레드'는 평균수명이 100세에 달하는 신인류를 일컫는 신조어다. 사람이 한 세기를 살아가려면 그만큼 여유자금이 충분히, 그리고 꾸준히 유지돼야 한다. 이제 '은퇴 준비'는 젊은 시절부터 해 나가야 하는 필수작업으로 여겨진다. 신한은행은 최근 '미래설계보고서 2020'을 내놓고 30~50대, 연령대별 은퇴준비 팁을 소개했다. 특히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30대의 은퇴준비를 강조했다. 100세 인생을 이른바 '시즌1·2'로 나눈다면 첫 번째 시즌은 뒤이어 오는 시즌을 누리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에 대한 이해는 기초 중의 기초다... (이하 생략)...

출처: 헤럴드경제, '소비요경' 접어두자...30대 연금설계 팁(2020. 8. 29.)

3 간병보험의 활용

노후가 다가오면 미리 가입한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질병보험상품은 연금자산만큼이나 소중한 은퇴자산임을 실감하게 된다. 물론 고령자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질병보험을 기존의 질병보험과 비교하여 활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예컨대, 5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고령층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입원치료까지 포함하는 '고령자 실손의료보험', 치료이력이 있거나 경증만성질환을 가진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자기부담금 범위를 상향 조정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에 일정 수준의 간병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을 노후자산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65세 이상 노인성 치매유병률이 2020년

10.39%에서 2040년 11.9% 그리고 2050년에는 15.0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 대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인성질환을 국가가 100% 보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장기간병보험의 핵심인 치매간병보험을 미리 준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하는 노후설계가 요구된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치매간병보험의 핵심 보장내용은 진단비와 간병비이다. 피보험자의 치매상태가 확정되면(첫 진단 이후 90일간 그 치매상태가 지속되면 확정) 치매정도(경증치매, 중도치매, 중증치매)에 따라 약정한 진단비 전액을 지급하고 장기간병이 필요한 중증치매 또는 중증치매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약정한 치매간병비가 매월 지급된다.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 하며,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대수명이란 평균수명의 개념이며 특정 연도의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하고,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에서의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한다.
- 노후준비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으로 질병위험과 경제적 위험이 있다. 질병위험은 경제적 위험을 한층 더 가중시키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연금이 있으며, 사적연금제도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이 있다.
- 연금을 설계할 때는 은퇴 후 예상하는 월 생활비를 산출하고 은퇴 후 잔여 생존가능기간을 산출하여 필요한 노후 자금을 우선 산출한다. 연금자산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개인연금 가입, 주택연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연금을 준비한다.
- 노후생활에서 직면하게 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실손의료보험, 치매간병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후설계가 필요하다.



 서술형

01 한국인의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대표적인 노후위험을 설명하시오.

.....
.....

0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
.....

03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

 빈칸 채우기

01 건강수명은 수명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기간으로 측정한다.

02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책으로 연금제도가 있다.

03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지역가입자와 함께 당연가입자이다.

04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자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를 납부한다.

 O·X 문항

- 01 UN기준에 따르면 국가의 고령화 정도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
- 02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규정한 법은 근로기준법이다. ()
- 03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종신형 연금으로 지급된다. ()
- 04 개인형 IRP와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상품 또한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

10 재무설계의 기초

Section 01
재무설계의 개념과 필요성

Section 02
재무설계의 과정

Section 03
20대의 재무설계



10

재무설계의 기초

📌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재무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무설계의 기본개념과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20대에 적용할 수 있는 재무설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학습목표

- 재무설계의 필요성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20대에 필요한 재무설계를 실행할 수 있다.

📌 생각열기

20대가 꼽은 행복 3요소 ‘돈 · 가족 · 취미’... 절반은 “비혼 OK”

20대 청년층의 절반은 ‘비혼’(非婚)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우리 사회를 문제로 꼽는 경우가 많았다. ...*(중략)*...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0월 23~28일 20대 미혼 남녀 1,000명에게 결혼 · 자녀 · 행복 인식 등을 물어본 결과를 공개했다. ...*(중략)*...

20대가 스스로 평가한 경제상태는 별로 좋지 못했다. 본인의 주관적 경제 상황이 ‘보통’(65.9%)이거나 ‘나쁘다’(32.3%)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돈을 벌려고 나선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업 · 취업에 지장을 받은 적 있다는 비율도 37.8%에 달했다. 4명 중 1명은 생필품을 구매할 때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현재 연애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36.6%였다. 연애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



을 못 느껴서'가 26.9%로 가장 많았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25.3%), '여유가 없어서'(22.3%)가 뒤를 이었다. 여유가 없다는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 부족을 제일 많이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대하는 태도는 우호적이진 않았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에 대해선 47.8%가 긍정적 이미지라고 밝혔다. 반면, 비혼에 대해 사회가 우호적이라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향후 결혼 의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편' 39.3%, '절대 하지 않을 것' 8%로 나타났다. 청년 2명 중 1명은 결혼 생각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결혼을 꺼리는 1순위 이유는 남녀가 같았다. 남성은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여성은 '양성 불평등 문화(가부장제 등)가 싫다'는 비율이 높았다. ...**(중략)**...

20대 미혼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뭘까? 이들은 본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3요소로 '경제력', '가족', '취미생활'을 가장 많이 꼽았다. 행복관 형성에 영향을 준 건 가족, 친구·지인, 인터넷·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순이었다.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으로는 가족·친구·연인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1등을 차지했다. 미래에 다가올 행복에 대해선 밝게 보는 사람이 더 많았다. 현재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는 비율이 49.1%였고 비슷할 것 43.3%, 불행해질 것 7.6%의 순이었다.

[출처: 중앙일보, 2019. 12. 4.]

-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돈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

SECTION
01

재무설계의 개념과 필요성

1 재무설계의 개념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란 개인의 삶이나 가계의 생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적·비재무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삶의 목표를 토대로 재무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행동계획을 수립, 실행 및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무설계는 재테크와 다르다. 재무설계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족의 연령, 직업, 자금여력, 생활방식,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미래에 대한 경제적 대비를 의미한다. 반면, 재테크는 부(富)를 이루는 수단인 재(財)와 기술이라는 뜻의 테크놀로지(technology)를 합성하여 이르는 말이다. 즉, 재산을 늘려나가는 기술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립된 재무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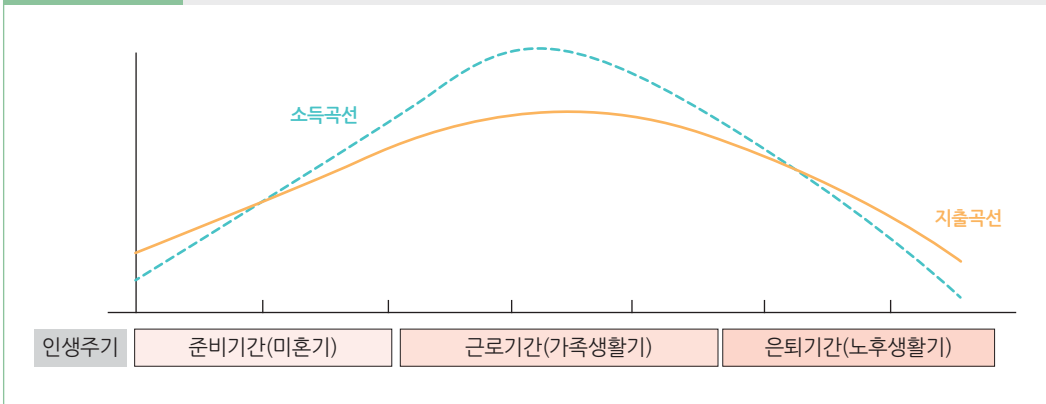
2 재무설계의 필요성

미래에 대한 경제적 대비로서 재무설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그 중 경제적 측면을 보면,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만족을 극대화하고, 각종 위험에 대비하며, 자산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생애소비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지출뿐만 아니라 일생에 걸쳐 안정적, 연속적으로 소비지출을 해야 한다. <그림 10-1>을 보면 사람의 인생주기는 준비기간(미혼기), 근로기간(가족생활기), 은퇴기간(노후생활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시기에 소득과 소비 수준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소비 수준보다 소득이 더 높은 시기도 있고, 소득이 없는 시기에도 소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의 소득과 소비의 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준비기간(미혼기)에는 소비가 소득 수준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만약 미

그림 10-1

인생주기에 따른 소득과 지출의 변화



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출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근로기간(가족생활기)에 소득이 소비보다 클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하고, 미래에 대비하여 저축과 투자 등을 한다. 또한 은퇴기간(노후생활기)에는 미리 축적해 둔 자산과 연금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일생에 걸쳐 소득과 소비 수준의 불일치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사람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을 입거나 타인에게 보상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금전적으로 대비하는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자산과 부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재무설계를 하면 보유한 자산을 보호하고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않으면 교육, 결혼, 자녀양육, 노후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재무설계가 큰 도움이 된다.

넷째,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의 경제적 조건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노후를 위한 금융상품과 공적연금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다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SECTION
02

재무설계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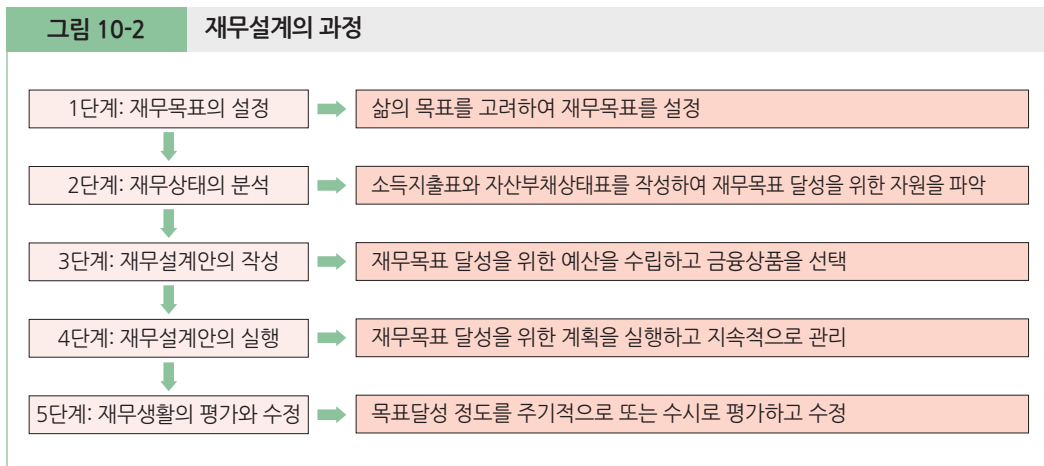
재무설계는 먼저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현재의 재무상태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재무설계안을 작성하여 실행하고, 재무생활을 평가하여 수정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더 완전하고 현실적인 재무설계가 되도록 개선한다.

1 재무목표의 설정

재무설계의 첫 번째 단계는 삶의 목표를 토대로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재무목표는 교육자금 마련, 주택자금 마련과 같이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자신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재무목표는 달성기간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단기·중기·장기목표로 구분하고, 매년 또는 매월 얼마의 돈을 모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3년 후에 사용할 여행자금 200만원 모으기'라는 재무목표를 세웠다면 매월 5만 6천원씩 모으면 된다.

개인마다 삶의 목표와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인생주기의 단계도 다르다. 이에 각자의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생주기를 미혼기-가족

그림 10-2 재무설계의 과정



생활기-노후생활기로 구분한다면 아래와 같이 재무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표 10-1 인생주기별 재무목표

인생주기	주요 이슈	주요 재무목표
미혼기	학업 / 취직 / 결혼 / 여행	학자금 마련 / 독립 및 주거자금 마련 결혼자금 마련 / 여행자금 마련
가족생활기	자녀출산 및 육아 / 내집마련 자녀교육 / 재산형성 자녀결혼 / 은퇴 및 노후대비	자녀양육자금 마련 / 주택구입자금 마련 부채상환(결혼, 주택관련) / 자녀교육자금 마련 주택확장자금 마련 / 자녀결혼자금 마련 노후자금 마련
노후생활기	노후생활	은퇴 후 자산관리 / 상속



재무목표 설정을 위한 SMART 원칙이란?

- S(Specific) 재무목표는 막연히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혹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를 고려해 세워야 한다.
- M(Measurable) 기간·금액 등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운다.
- A(Action oriented)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 계획(action plan)을 명확히 한다.
- R(Realistic) 현재 자산 상태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 T(Timely) 각 시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한다.

출처: 하이럼 W. 스미스, 「성공하는 시간관리와 인생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법칙」에서 발췌

2 재무상태의 분석

재무설계의 두 번째 단계는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의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재무목표에 반영하고 재무설계안을 작성할 수 있다. 재무상태는 소득지출표와 자산부채상태표를 작성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소득지출표

소득지출표는 일정기간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한 표이다. 일정기간의 소득지출상태는 가계

표 10-2 소득지출표의 예시 (202X. 1월 ~ 202X. 12월 기준)

소득		소득유형을 구분
근로소득	2,500만원	
이자소득	50만원	
투자소득	30만원	
소득합계	2,580만원	
지출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구분
고정지출		
세금	200만원	
건강보험료	100만원	
연금보험료	100만원	
대출상환금	200만원	
관리비	120만원	
고정지출 합계	720만원	
변동지출		
식비	500만원	
(외식비)	(200만원)	
피복신발비	150만원	
교양오락비	300만원	
보건의료비	50만원	
기타	300만원	
변동지출 합계	1,300만원	
지출합계	2,020만원	
순수입(지출) = 수입-지출		(+)560만원
저축과 투자		순수입의 경우 저축 또는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기재하고, 순지출의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재
보통예금(생활비)	56만원	
정기적금(여행자금마련)	60만원	
정기적금(결혼자금마련)	180만원	
적립식펀드(주택자금마련)	240만원	
청약저축(주택마련)	24만원	
저축과 투자의 합계	560만원	

부 앱(app) 등을 활용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투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지출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구분한다. 고정지출은 주거비나 대출상환금처럼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쉽게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다. 반면 변동지출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금액조정이 가능한 지출을 말한다. 소득수준에 비해 지출이 많다면 고정지출보다는 변동지출 항목에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소득지출표를 정리해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이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저축과

투자가 적정한지, 특정 항목에 너무 많이 지출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자산부채상태표

자산부채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표이다.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현금성자산, 저축성자산, 투자자산, 사용자산, 보험자산 등으로 자세하게 구분할 수도 있다. 현금성자산에는 현금, 보통예금 등이 포함되고, 저축성자산에는 적금이나 정기예금이 포함된다. 투자자산에는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인 주식, 채권, 펀드 등과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이 포함된다. 사용자산은 거주주택자산이나 전세보증금, 자동차, 귀금속 등 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보험자산은 보험환급예상액, 연금 등 위험이나 노후에 대비하는 자산을 말한다. 또한 부채는 단기부채와 장기부채, 고

표 10-3 자산부채상태표의 예시(202X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부채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현금성자산		단기부채	
보통예금	56만원	신용카드대금	150만원
합계	56만원	합계	150만원
저축성자산		장기부채	
정기적금	800만원	학자금대출	800만원
청약저축예금	100만원	전세자금대출	8,000만원
정기예금	500만원	합계	8,800만원
합계	1,400만원		
투자자산			
주식	70만원		
펀드	480만원		
합계	550만원		
사용자산			
전세보증금	1억원		
자동차	500만원		
합계	1억500만원		
보험자산			
개인연금	200만원		
국민연금	600만원		
합계	800만원		
자산합계	1억 3,306만원	부채합계	8,950만원
순자산(자산-부채) 4,356만원			

금리 부채와 저금리 부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처럼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하면 자산부채의 상태를 평가하기 쉽다.

자산부채상태표를 정리해서 자산과 부채 규모를 비교하고, 자산의 포트폴리오, 부채의 특징 등을 평가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매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순자산이 증가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표 10-3>에서 자산은 1억 3,306만원이지만 부채가 8,950만원이 있어 순자산은 4,356만원이다.

3 재무설계안의 작성

재무설계의 세 번째 단계는 재무설계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재무설계안은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안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 2천만원을 마련하기로 목표를 정했다면, 현재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기간을 구체화해서 매월 저축 또는 투자할 금액을 정한다. 그리고 소득과 지출을 조정할 예산안을 수립하고, 어떤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하는지 등의 방안을 찾는다. 여러 개의 목표를 정했을 경우에는 목표 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저축 또는 투자규모를 배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무설계안을 작성할 때에는 재무목표와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도록 한다. 금융시장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고, 늘 새로운 상품이 등장한다. 경제상황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과 그렇지 못한 상품이 있으므로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안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위험성향에 맞게 선택한다.

안전성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안전성은 미래에 원금 및 수익 지급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해당 금융상품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지, 예금자 보호대상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자금은 투자상품보다 저축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금융상품의 제공금리

나 기대수익률을 물가상승률, 세금 등 기회비용 및 각종 비용 등과 비교하여 수익성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자금의 용도와 운용할 기간, 위험성향에 따라 저축상품 또는 투자상품을 선택한다.

유동성

유동성은 현금이 필요할 때 손실 없이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단기에 필요하거나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자금은 반드시 유동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저축상품인 은행의 보통예금은 수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이 높은 편이지만,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은 약정된 예치기간 중 중도해지할 경우 약속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유동성이 비교적 낮은 상품에 해당한다. 또한 거래량이 풍부한 주식이나 채권은 필요 시 대부분 쉽게 매매할 수 있지만 팔 때 평가손실이 발생한 상태라면 손실을 감수하고 팔아야 한다. 펀드의 경우에도 자금이 필요하면 만기 이전에 환매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환매할 때 손실이 발생한 상태일 수도 있고, 중도에 해지하면 환매수수료가 부과되어 유동성이 낮을 수 있다.

4 재무설계안의 실행

재무설계의 네 번째 단계는 재무설계안을 실행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등 계획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재무설계안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편리한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저축 또는 투자를 꾸준히 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등을 활용하고, 소비지출을 줄이기 위한 가계부 앱(App) 등을 활용하면 재무설계안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재무생활의 평가와 수정

재무설계의 다섯 번째 단계는 재무설계안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재무설계안을 수정하는 것이다.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경

제한경이나 취업, 결혼, 출산, 이직 등 개인적인 상황 등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평가 시에는 재무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용하기

금융감독원의 '참 쉬운 재무진단'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재무상태를 간편하게 진단해보자. 개인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에 관한 재무정보를 입력하여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설계안을 마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 금융교육콘텐츠 → 금융교육자료방 → 체험교육자료 → 재무설계

SECTION
03

20대의 재무설계

1 20대의 재무목표

20대는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준비 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또한 자기계발에 몰두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등 가족생활기를 시작하기 이전의 미혼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재무목표는 주로 학자금 마련, 독립 및 주거자금 마련, 결혼자금 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

학자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정보공시센터¹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약 671만원으로, 사립대학은 약 747만원, 국·공립대학은 약 421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와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출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마련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자금을 마련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만약, 학자금 대출로 돈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일반 상환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학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어느 정도 기간에 돈을 얼마씩 모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도록 한다.

독립 및 주거자금

가족으로부터 독립하려면 주거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통 청년들의 주거형태는 전·월세가 많고, 자가의 비중은 낮다. 전·월세의 경우에 일정규모의 보증금이 필요하므로 독립을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자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매월 임차료를 지불하는 월세에 거주한다면 20대의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으므로 월 소득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진다. 주거자금을 전액 마련하여 독립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때 대출조건과 상환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지원하거나 청년층 주거비 완화를 위한 전월세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하는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결혼자금

결혼자금 중 결혼식, 신혼여행, 예물 및 예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차가 매우 크므로 자기 상황에 알맞게 자금을 마련하면 된다. 또한 결혼자금에서 신혼집 마련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결혼자금과 주거자금 마련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 상대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자금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목표자금을 설정하고 자금 마련을 실행하면 도움이 된다.

1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

자기계발자금

20대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시기이다. 독서나 여행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자기계발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청년세대는 여행을 통한 자기계발에 자금을 지출할 의사가 크다고 한다.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실행하도록 한다.

노후자금

노후자금은 먼 미래에나 필요한 자금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는 은퇴 후 30~4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준비기간이 길면 매월 적은 금액으로 실행할 수 있고 복리효과를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2 20대의 자산관리원칙

종잣돈 모으기

학자금, 독립 및 주거자금, 결혼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 등을 활용하여 꾸준히 자금을 모아야 한다. 자산관리의 첫 시작이 되는 목돈을 종잣돈(seed money)이라고 한다. 종잣돈이 마련되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도록 한다. 이 경우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확대보기

20대에는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

투자는 저축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100-연령의 법칙'을 참고할 수 있다. 이는 100에서 본인의 나이를 차감한 만큼의 비중으로 투자하라는 법칙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0세에는 자산의 70%를 투자자산에 배분하고, 30%는 안전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투자를 하는 경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high risk high return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해야 한다. 여유를 가지고 투자해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단기간에 용도가 정해진 자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손실 발생 시 꼭 필요한 경우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된다.

선저축 후지출

종갓돈을 마련하려면 돈을 모으는 습관이 중요하다. 소득에서 먼저 소비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일정 금액을 먼저 저축하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좌 자동이체를 활용하여 저축하면 도움이 되며, 미혼기에 형성된 저축습관은 평생 자산관리의 기초가 된다.

주거래 은행 정하기와 통장 쪼개기

주거래 은행을 정하여 거래하면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또한 자금을 용도별로 나누어 지출통장과 자산관리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재무목표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통장 나누기가 필수적이다. 자금의 용도를 구분하여 통장을 관리하면 재무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자금인출에 따른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를 쓰면 통장에 돈이 없어도 결제가 되기 때문에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체크카드는 통장잔액 범위 내에서만 바로 결제되므로 통장에 돈이 없으면 결제가 되지 않는다. 또 근로소득이 생기면 매년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세를 확정하게 되는데,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혜택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보다 크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관리

신용관리는 신용점수를 관리하는 것이다. 대출을 받을 때 대출가능 여부, 대출금액, 대출이자 등은 신용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즉, 신용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받기가 어렵고, 대출을 받아도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도 있다. 신용점수가 낮으면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낮다. 신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이자 또는 신용카드대금 결제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체정보 등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개인신용정보는 금융회사들이 공유하므로, 한 금융회사에서 연체가 발생한 경우 다른 금융회사도 이를 알게 된다.

소모성 대출 자제

마이네스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소비성향이 높아지기도 한다. 자금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카드대출,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은 이자상환의 부담이 크고, 개인의 신용평가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보장성 보험 가입하기

보장성 보험은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20대에는 소득이 적으므로 종신보험 등 보험료가 많이 드는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적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손의료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재무설계는 재무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행동계획을 수립, 실행 및 검토하는 과정이다.
- 재무설계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지출표와 자산부채상태표를 작성하여 개인의 재무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재무설계안을 작성할 때에는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안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 20대의 주요 재무목표로는 학자금 마련, 독립 및 주거자금 마련, 결혼자금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예시문제

🏆 서술형

01 자신의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소득지출표와 자산부채상태표를 작성하여 재무상태를 분석하시오.

.....
.....

02 향후 1년간의 재무설계안을 작성하시오.

.....
.....

03 금융상품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개념에 대해 서술하시오.

.....
.....

🏆 빈칸 채우기

01 재무설계의 과정은 재무목표의 설정-재무상태의 분석-재무설계안의 작성-
재무생활의 평가와 수정의 단계를 반복하는 과정이다.

02 소득지출표를 작성할 때 지출란은 고정지출과
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03
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 O·X 문항

01 투자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 금융회사를 이용한 경험이 거의 없고 그동안 돈을 빌린 경험이 전혀 없는 대학생은 신용점수가 높다. ()

03 연체 정보는 금융회사 간 공유되지 않으므로, 한 금융회사에서 연체가 발생해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알 수 없다. ()



금융소비자보호

Section 01

금융소비자보호의 개요

Section 0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Section 03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제고

Section 04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금융소비자보호

📌 학습개요

본 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장치 및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학습목표

-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할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금융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방법을 알고 이용할 수 있다.
-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금융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생각열기

“DLF 판 은행, 최대 80% 배상하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에게 은행이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4년 동양사태 이후 최고 배상비율이다.

5일 금감원은 DLF 피해자, ○○·○○은행 등 당사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분조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각각의 은행 피해 사례 3건씩 총 6건을 뽑아 비율을 정했다. 최저



배상비율은 40%로 결정됐다. 예컨대 DLF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본 사람은 4,000만~8,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손실액의 40~80%인 2,000만~4,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고 배상비율인 80%로 결정된 투자자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고령의 치매환자였다.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사기 판매 때의 최고 배상 비율은 70%였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276건의 분쟁조정신청 사례의 배상비율 가이드라인을 이번 6건의 대표 케이스를 감안해 은행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후 은행과 피해자가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해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가 불응하면 금감원에 다시 분조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다. ○○·○○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DLF 손실 배상비율 현황

A은행

- 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 80%
- 60대 주부 '손실확률 0%' 강조 75%
-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 40%

B은행

- 기초자산 잘못 설명 65%
- 기초자산 이해 못해도 판매 55%
- 손실 감내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 40%

자료: 금융감독원

[출처: 서울경제, 2019. 12. 5.]

-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까?
-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할까?

SECTION
01

금융소비자보호의 개요

1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금융시장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금융소비자는 이를 이용하는 금융거래가 일어난다. 이 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구조와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해 금융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금융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교섭력도 금융소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금융산업과 금융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는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금융거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반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령, 자산·소득 부족, 금융지식 부족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금융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기술이 발달하면서 금융거래의 방식이나 금융시장의 환경도 변화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도 진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요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실효성 있게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소비자¹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모든 금융상품을 예금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재분류하고 있다. 예금성 상품은 은행 예금 등 원금이 보장되며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이고, 투자성 상품은 펀드 등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손익이 발생하는 상품이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장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며, 대출성 상품은 먼저 금융회사 등에서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추후에 상환하는 상품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하 '금융회사')은 은행, 보험사 등과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접판매업자, 보험설계·중개사 등과 같이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업자로 재분류된다. 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재분류하여 동일한 기능에 대해 동일하게 규제하는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에게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규제하며,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의 다양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2 금융소비자의 권리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와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또, 금융소비자는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에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상대방을 말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책무도 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더불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와 금융회사의 역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국가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도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실시,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한 조직 운영 및 금융소비자의 조직 활동 지원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는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 재산피해 예방조치, 공정한 거래,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SECTION 02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크게 사전적 예방조치와 사후적 구제장치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예방조치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공시의무 부과 그리고 금융교육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제고 등이 있다. 사후적 구제장치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금융민원 처리 및 분쟁조정, 손해배상책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다.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각 금융업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 기능별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또는 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법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들 법에 따르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금융소비자보호

법을 적용한다. 여기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와 금융피해구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금융회사가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하여 불안전판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그리고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적합성 원칙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또는 자문)을 하려면 먼저 금융소비자를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²로 구분해야 한다. 적합성 원칙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용되는데,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투자성 상품의 경우), 신용 및 변제계획(대출성 상품의 경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위험성향이 낮은 금융소비자에게 위험등급이 높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되고, 대출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이나 변제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적정성 원칙

적정성 원칙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하지는 않지만 일반금융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 경우에도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 목적과 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전문금융소비자는 국가나 한국은행, 금융회사 등 전문성이 있고 자산규모가 큰 금융소비자를 말하고, 일반금융소비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개인이나 기업 등을 포함한다.

설명의무

설명의무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의무이다. 이때 중요사항을 거짓, 왜곡, 누락하여 설명해서는 아니 된다.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것을 확인받고, 핵심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중요사항은 <표 11-1>과 같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설명과 제공된 정보를 통해 금융상품을 잘 이해하고 나서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다.

표 11-1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사항

금융상품의 종류	중요사항
예금성 상품	예금성 상품의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
투자성 상품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위험등급, 수수료 등
보장성 상품	보장성 상품의 내용, 보험료, 보험금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위험보장의 범위, 위험보장 기간 등
대출성 상품	대출성 상품의 내용, 상환방법, 담보, 대출계약으로 인한 부담총액, 계약해지사항 등
제휴 상품	연계·제휴서비스 등의 내용, 연계·제휴서비스 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연계·제휴서비스 등의 제공기간 등
금융소비자보호사항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불공정영업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받을 때 원하지 않는데도 다른 금융상품을 계약하도록 강요하거나(구속성 상품 또는 끼워팔기) 부당한 담보·연대보증 요구 또는 대출금 상환방식 강요,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등을 해서는 안된다. 또,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제공받거나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변경해서는 안된다.

부당권유행위 금지

부당권유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오인하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회사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가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서는 안되고,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서도 안된다. 또,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서도 안된다.

이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도 있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³를 방해 또는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가 질병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계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보험설계사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계약체결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금융소비자는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방문·전화를 하거나 계약체결을 거절하였는데도 계속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금융소비자가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를 받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광고 규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광고에는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과 금융회사의 명칭과 금융상품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료 등이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투자성 상품의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과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 예금성 상품의 경우 만기지급금 등을 예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시된 지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 그리고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조건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광고에서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은 금지된다.

3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보험소비자는 건강상태나 연령 등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한다.

적합성 원칙 (금융회사의 권유가 있는 경우)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 금지
적정성 원칙 (금융회사의 권유가 없는 경우)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설명 의무	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요구(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개인 연대보증 요구 등)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
광고 규제	광고 내용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판매행위 규제 위반의 제재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판매제한명령,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게 지우고 있다.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계약체결 제한·금지를 명령하여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 판매로 얻은 수입 등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확대보기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청약철회권은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금전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그리고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2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금융거래의 당사자인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직접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불만 접수 창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회사의 대응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1단계).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해결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민원과 금융분쟁조정이라는 피해구제 방법이 있다. 금융민원은 주로 금융감독원에 신청하지만 한국소비자원, 금융협회, 소비자단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금융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거래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2단계).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3단계).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융민원이나 금융분쟁조정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금융민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정보, 고발 등에 관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 또는 전화(1332)를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또는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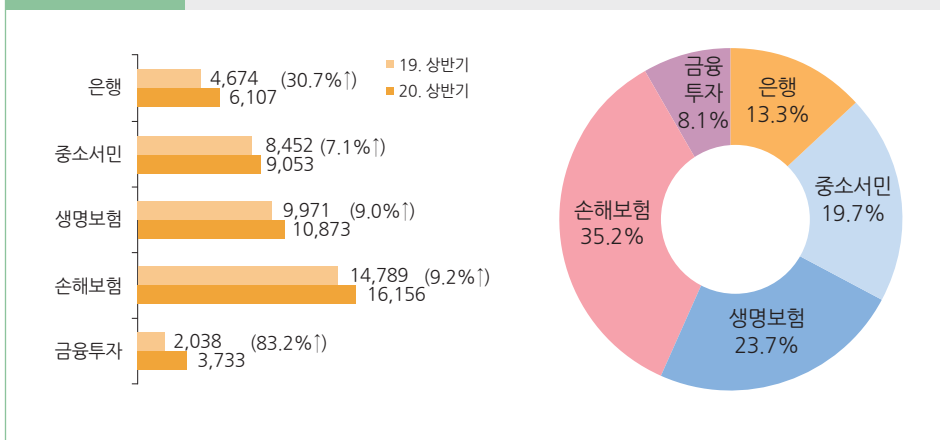
금융민원센터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신용정보회사 등과 관련된 금융민원을 모두 처리한다. 그러나 우체국과 관련된 민원은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민원은 관할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다. 금융민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처리된다. 단, 분쟁조정이 필요한 민원은 30일 이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필요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된다. 이 기간에는 서류 보완, 사실관계 조사 등의 시간과 공휴일 및 일요일이 제외된다.

확대보기

어떤 금융민원이 제기되나?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2020년 상반기에만 4만 6천여 건으로 전년 동기(2019년 상반기 4만여 건)보다 15.0% 증가하는 등 매년 금융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회사와 관련된 민원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특히,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와 관련된 민원이 30.7%와 83.2% 각각 증가하였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금의 산정과 지급에 관한 민원이 많았고,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출거래 관련 민원(예: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인하요구 등)과 펀드 환매지연이나 WTI원유선물 연계상품 관련 민원이 많았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에 금융회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1-1 금융회사 권역별 민원 건수와 비중(2020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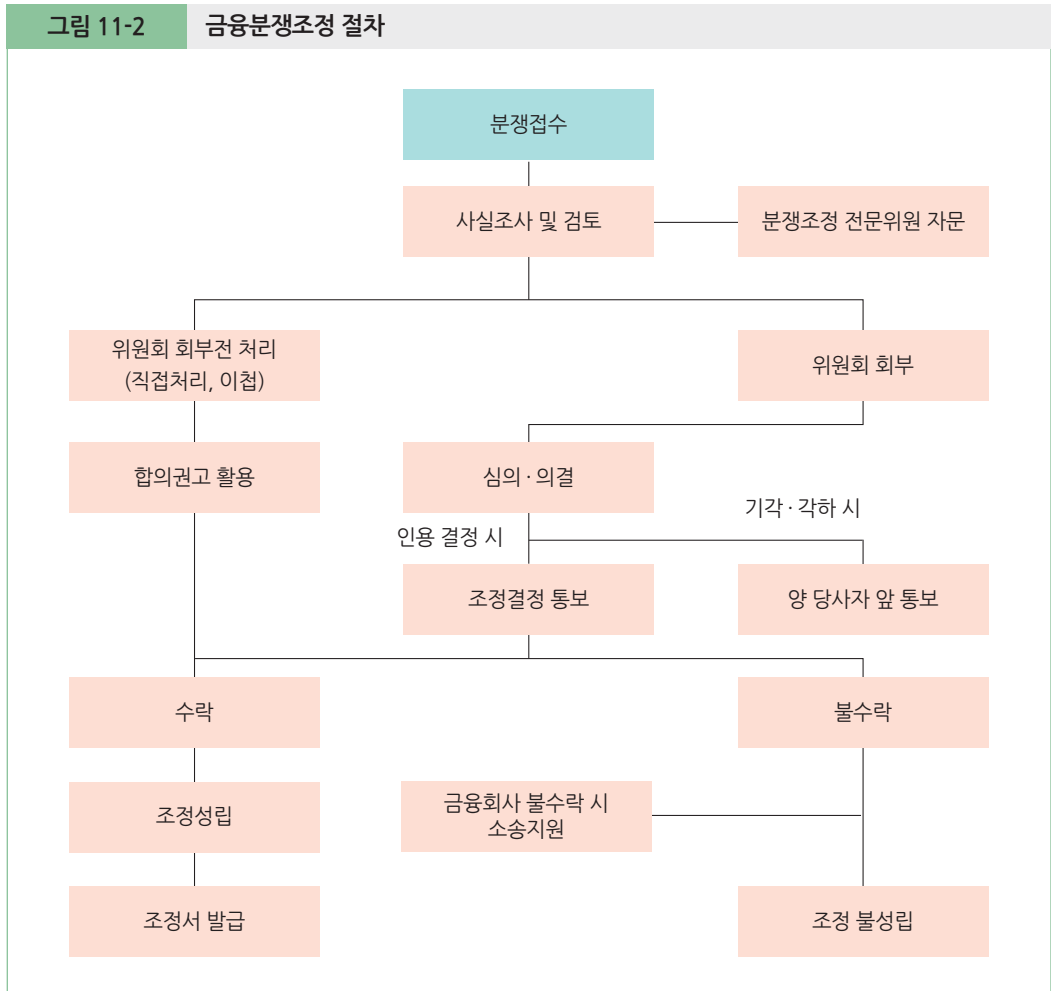


출처: 금융감독원,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보도자료, 2020. 9. 15.)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당사자에게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수락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이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법적 기구를 두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판·검사·변호사, 소비자보호단체의 임원, 금융회사와 금융관계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금융전문가,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분쟁의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

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되므로 그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고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http://consumer.fss.or.kr/>)

확대보기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

분쟁조정이 진행되는 중에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절차가 중지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금융회사는 불리한 조정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고 분쟁조정·소송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새로이 마련되었다.

- 소송중지제도: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조정이탈금지제도: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2천만원 이내)은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를 열람하도록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제한된다.



확대보기

소송지원제도

금융소비자의 손해가 금융분쟁조정으로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 의견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의결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넘는 대출을 받아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03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제고

1 금융교육

금융교육의 필요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제대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려면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라고도 하며,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식,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바람직한 금융태도 및 금융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2014년부터 2년마다 공동으로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OECD 산하 금융교육 국제 협의체인 INFE⁴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

4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 경제·금융교육 관련 국가 간 정보 교환 및 국제표준(모범사례)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08년 5월 설립되었다.

표 11-3 2020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단위: 점(100점 만점))

		금융이해력			
			금융지식	금융행위	금융태도
OECD/INFE 최소목표점수		66.7	71.4	66.7	60.0
전체		66.8	73.2	65.5	60.1
성별	남자	66.6	74.4	64.9	58.9
	여자	67.0	72.0	66.2	61.3
연령별	18~29세	64.7	73.0	61.4	58.9
	30대	69.2	76.7	69.0	58.9
	40대	69.8	76.9	69.8	60.0
	50대	68.5	74.5	68.6	60.0
	60대	65.8	72.0	63.0	62.0
	70대	56.9	56.1	54.4	62.7

출처: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2020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보도자료, 2021. 3.)

나라 성인(18세~79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6.8점(100점 만점 기준)인데, 이는 OECD가 제시한 최소 목표점수(66.7점)와 유사한 수준이다. 금융이해력 차원별 점수는 금융지식 차원이 73.2점으로 가장 높으며, 금융행위 차원은 65.5점, 금융태도 차원은 60.1점이다. 연령별로 금융이해력 점수를 살펴보면, 30~50대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높은 편이고, 18~29세의 금융이해력은 70대의 금융이해력 다음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금융지식 차원에서는 남성의 점수가 여성의 점수에 비해 높으나, 금융행위와 금융태도 차원에서는 여성의 점수가 약간 높다. 20대와 고령층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과거 조사에서도 다른 연령에 비해 낮게 평가되어 온 것을 볼 때,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의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교육의 실태

금융교육은 학교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은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나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사회와 실과(기술·가정) 과목에 금융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전국의 초·중·고교와 금융회사 간 결연을 통해 학교에서 체계적·지속적으로 금융교육

을 실시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강의 교재 및 강사 등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에서의 금융교육은 주로 금융회사와 직장,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을 통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초·중·고·대학교뿐만 아니라 교사, 성인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과 금융강사를 육성하는 사업을 하며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를 운영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www.edu.kinfa.or.kr)은 대출이용자 교육과 미소금융, 햇살론 교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www.kcie.or.kr)는 투자판단능력 향상과 재무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전국 15개 지역 경제교육센터에서 금융교육을 포함한 경제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부가 금융교육을 위한 재정지원과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함에 따라 2009년부터 정부부처와 금융교육 유관기관들의 협의체 역할을 해왔던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적 기구로 전환되었다. 이 협의회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8개 정부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을 위원으로 하여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추진·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학교, 사회 및 정부의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금융교육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비와 금융생활이 가정에서 시작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주는 금융에 대한 인식은 자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적용하기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센터'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fss.or.kr/edu)를 활용해보자. 금융교육교재, 동영상 등 다양한 금융교육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현장 금융교육과 더불어 범 금융권에서 실시 중인 여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 금융정보의 제공

금융정보의 필요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금융거래의 의사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되고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개별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 금융이해력 수준, 위험에 대한 태도, 생애주기 단계별 재무목표에 따른 자금 조달과 운용 계획 등에 따라 금융상품 선택이나 금융거래의 의사결정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지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빠른 금융기술의 변화로 인해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금융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이해력 수준과 활용 능력을 감안하여 충분성, 실효성, 객관성 및 공공성 등을 갖춘 금융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신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금융소비자가 금융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정보의 제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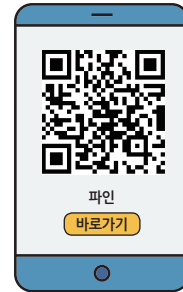
금융정보 공시는 금융소비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금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금융정보에 관한 공시는 개별공시와 비교공시로 나눌 수 있다. 개별공시는 개별 금융회사가 주체가 되어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비교공시는 해당 금융권역에 속한 전체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정보를 종합·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하 '비교항목')으로서 이자율, 보험료, 수수료 또는 기타사항을 포함한다. 비교공시의 내용은 ①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하고, ②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하며, ③ 내용의 정확성·중립성·적시성을 유지하고, ④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정보여야 한다. 그리고 ⑤ 일반금융소비자가 비교공시 내용의 신뢰성 및 유용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적용하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활용해보자. 파인(FINE, Financial Information NNetwork)은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와 은행·카드, 보험·증권, 연금, 소비자보호, 금융꿀팁, 서민·중소기업, 금융회사 관련 정보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한다.



SECTION
04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

1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 체계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에 관한 것으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 의해 부정적으로 이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개인에게 원치

않는 광고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송되거나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나아감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의 규모와 피해 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처리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의료법」 등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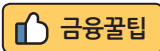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① 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도 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므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예: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는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보장

금융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신용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이에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 신용거래정보(대출, 담보제공, 금융거래 금액,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신용도판단정보(채무불이행, 연체, 부도 등), 신용능력정보(개인의 직업, 재산, 채무, 소득 등), 기타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세금납부실적 등)가 있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조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연락중지 청구,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개인정보 누설 시 알 권리,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기타 권리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⁵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활용하기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금융소비자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접수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와 연락중지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인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도 활용할 수 있다.

5 신용정보법 제6장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제4조)에서는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등, 다섯 가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4.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금융소비자는 법령상 보유기간(통상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6.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7. 개인정보 누설 시 알 권리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경우 어떤 정보가 언제, 어떻게 누설되었는지 금융소비자에게 바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 피해 구제절차, 신고접수처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8.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다른 금융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 자동화 평가에 대응할 권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게 개인신용평가나 금융거래 관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만을 활용하여 자동화 평가를 하는지 여부 및 관련 주요 기준,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신용정보법 및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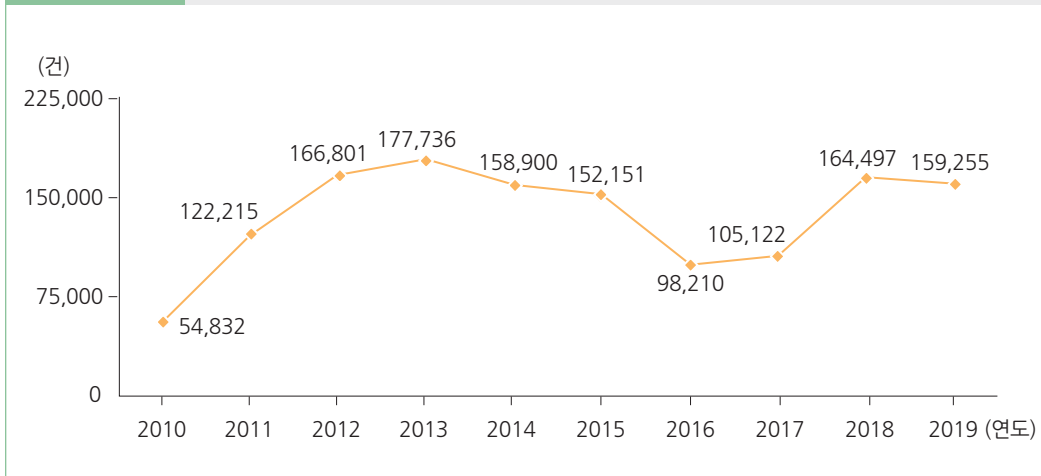
개인정보 침해피해와 구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오남용·불법유통하는 등의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IT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도 빠르게 늘어나고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의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유괴 등 각종 범죄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기업에게는 고객의 신뢰 및 기업의 이미지 훼손,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등으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고, 국가에는 IT산업의 해외수출 애로, 전자정부의 신뢰성 하락, 국가 브랜드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개인정보의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를 유출·오남용·불법유통하는 등 불법행위 외에도 개인정보를 홈페이지나 서류에 노출된 채로 허술하게 관리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개인정

그림 11-3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

보침해 신고센터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 번호 등 타인정보를 도용하였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 개인정보 무단수집, 회원탈퇴 또는 정정 요구 불응 등도 있다.⁶

개인정보 침해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손해배상, 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서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와 비슷한 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개인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 대상자가 단체이며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⁶ 이상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알림마당/개인정보 바로알기, e-나라지표

2 금융사기 피해예방

금융사기는 금융거래에서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금융사기의 종류에는 대출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포통장사기,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으로 다양하다.

대출사기

대출사기는 대출을 핑계로 사람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이다. 대출을 받을 때는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1332(금융감독원)이나 112(경찰청)로 신고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①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가로채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보증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거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점수 상향 조정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준다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례 A는 ○○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A의 신용이 낮은 데도 대출받게 해준다고 보증보험료와 선납이자로 먼저 일정 금액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또 대출금이 승인되었지만 이를 지급하려면 신용점수를 높여야 하고,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해서 이를 송금했다. 그러나 전화를 한 사람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고, A는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② 대출금 가로채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혹하고 대출 전환과정에서 사기범이 대출금을 가로채는 유형 등이다. 또한 사기범이 대출신청자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작업대출'도 있다. 이 경우 대출신청자도 문서 위·변조에 따른 형사처벌을

(www.index.go.kr) 개인정보 침해 건수 등을 참조하였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례 대학생 B는 돈이 급하게 필요했지만 소득이 없어 대출받기 어려웠다. 사기범은 B의 재직증명서와 급여통장 입출금내역서를 허위로 만들어 B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하였다. 또한 B는 수수료 명목으로 사기범에게 대출금의 30%를 지급하였다.

③ 개인정보 악용하기

대출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대출모집인을 사칭하여 대출서류를 수집하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통해 대출모집인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 또한 대출 상담 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먼저 요구하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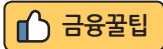
사례 미성년자인 C는 부모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사기범에게 부모의 신분증 사진을 송부하였다. 사기범은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앱을 통해 금융회사에 부모 명의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를 입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①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은 전화 또는 메신저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피싱(phishing)은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 또는 돈 등을 빼내는 사기이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은 주로 수사기관, 금융당국 등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족, 지인 등으로 위장하여 송금을 요구한다. 그 수법이 종전보다 더 정교해지고 변형·융합되는 등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 D는 신용카드 해외 결제 안내문자를 받았으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기에 이를 확인하려고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눌렀다. 전화를 받은 사기범은 D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다. 잠시 후 경찰이라며 전화를 한 다른 사기범은 D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한다며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대출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출하여 잠적했다.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 관련 행동 요령

1.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먼저 유선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휴대전화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메시지 대화를 중단한다.
2. 상대방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휴대전화 보안 상태 검사를 실시한다.
3.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다.
4.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한다.
5.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한다.
6. 본인이 알지 못한 휴대전화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a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가족 또는 친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보도자료, 2020. 11. 4.)

② 스미싱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을 합성한 단어이며,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SMS를 전송한 후 수신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 또는 돈을 탈취하는 사기이다. 정부, 공공기관 등을 빙자하거나 쿠폰, 상품권 증정, 지원금 지급 등을 내세우기도 한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웹사이트로 접속하거나 확인이 되지 않은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례 E는 '○○○치킨 첫 행사 1만원 할인 쿠폰 제공' 문자를 받았다. E는 문자 중 링크를 클릭하여 앱을 설치했는데 실행되지 않아 그대로 종료하였으나 그 이후 게임머니 구매 용도로 돈이 결제되었다는 청구를 받았다.

③ 파밍 및 큐싱

파밍(pharming)은 피싱(phishing)과 조작하다(farming)를 합성한 단어이며, PC나 휴대전화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여도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되도록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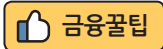
수법이다. 이용자가 이를 모르고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면 이 정보가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사기범에게 전달된다. 한편 QR코드(Quick Response Code)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는 쿼싱(Qshing)도 있다. 스캔할 QR코드에 악성 앱 다운로드 URL을 숨겨두었다가 사용자가 QR코드를 읽으면 자동으로 URL에 연결되어 악성 앱이 다운로드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나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을 사용하고, PC, 이메일 등에 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사례 F는 인터넷뱅킹을 하려고 인터넷 즐겨찾기에 있는 은행의 홈페이지를 눌렀다. 그러나 가짜 홈페이지 접속이 되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사기범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F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

대포통장사기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사기범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대포통장을 사기이용계좌로 활용한다. 즉, 온라인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금융사기 피해금을 일부러 이체한 뒤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아르바이트, 취업 등을 핑계로 업무의 일부라고 속이고 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단기 고수익을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거나, 통장을 개설한 뒤 돈을 받고 팔도록 권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 제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한다.

사례 G는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사기범은 아르바이트 업무가 구매대행, 세금감면업무라고 소개하며 G씨의 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한 뒤 자금이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었고 G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피해를 입었다.



금융꿀팁

대포통장 관련 행동 요령

1.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체 또는 현금 전달은 불법이므로 거절한다.
2. 본인이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재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한다.
3.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한다면 주의한다.
4. 구대대행, 환전 아르바이트 등을 제시하며 통장 대여를 유도하면 거절한다.
5.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보도참고자료, 2020. 7. 6.)

투자사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원금보장 및 고수익 등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는 일종의 투자사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업체는 가입자가 다른 가입자를 계속 모집하게 만드는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초기에 기존 가입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다가 추후 지급을 멈추고 잠적하는 폰지사기 행태를 보인다. 또한 합법적인 신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양한 허위사실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데,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와 거래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융꿀팁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1.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한다.
2.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한다.
3. 다양한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한다.
 - 00% 수익 확정지급, 원금보장, 금융회사 지급보증 등 강조
 -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첨단 금융기법 과시
 - 기술개발, 특허취득, 사업 인·허가 예정 등 그럴듯한 사업계획 제시
 -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취득 또는 글로벌 기업과의 업무제휴 과시

- 투자자 모집 및 추천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
 - 주식시장 상장 추진, 자사주 배정 등으로 현혹
 - 정부 등록 또는 인·허가 업체임을 강조
 -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치중 또는 정·관계 유력인사 등과의 친분 과시
 - 종합금융컨설팅, 재무설계전문가 등 그럴듯한 호칭 사용
 -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등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
4. 미심쩍으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19)에서 발췌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병력 등의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사기적 체결로서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또한 신체의 상해, 사고 등을 일으켜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한 것처럼 속여서 보험사고를 날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과잉진료를 받거나 치료기간을 연장하여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보험사고를 과장하는 행위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 평범한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또는 병원, 손해사정사, 전직 보험설계사 등에게 이끌려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보험사기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험사기 피해예방

<자동차 사고 관련>

1.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과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2.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면 거절하고, 합의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3. 현장에 대한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한다.

<자동차 수리 관련>

1.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의심한다.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의심한다.
2.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은 거절한다.
3. 허위 또는 과장 수리를 하는 정비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병원 진료 관련>

1.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의심한다.
2. 진료받은 사실과 내용이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3. 의심스러운 병원은 피하고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2019)에서 발췌

-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준수하고,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판매제한명령,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역량을 제고하고 최신의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금융사기는 대출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포통장사기, 투자사기, 보험사기 등으로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탈취하는 불법행위이다. 금융사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예시문제

서술형

01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설명하시오.

02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관련 주요 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03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

04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

빈칸 채우기

01 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에 관한 준수 사항,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02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중 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투자경험,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03 [] 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당사자에게 조정의견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수락하여 합의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방법이다.

04 [] 은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이다.

 O·X 문항

01 금융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

02 금융회사가 취급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의 것이므로 금융회사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

03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

04 스미싱은 휴대전화에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하는 문자를 보내고 수신자가 그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정보나 돈을 빼내는 금융사기이다. ()

12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Section 01
핀테크의 개념

Section 02
핀테크 관련 주요 기술

Section 03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Section 04
핀테크의 발전과 생활의 변화



12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 학습개요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다양한 기술이 금융과 결합하면서 간편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핀테크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간편한 결제, 송금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출, 보험, 투자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나타나는 핀테크의 사례 및 특성을 파악해보고,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기대효과와 위험요인을 살펴본다.

📌 학습목표

- 핀테크의 개념과 성장배경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핀테크의 다양한 사례와 이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 핀테크의 발전이 가져올 금융산업의 변화와 긍정적인 기대효과 및 위험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생각열기

[코로나 이후 신세계] ‘캐시리스’ 급진전...금융사들 핀테크 전쟁

평일 낮 12시 30분 종로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은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길게 늘어선 줄을 보자 마음이 갑갑해진 A씨는 자리를 잡은 뒤 스타벅스의 비대면 주문서비스 ‘사이렌오더’로 커피를 고른 뒤 결제를 마쳤다. 현재 스타벅스 등 다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은 신용카드, 모바일페이 등 현금을 제외한 다른 결제수단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추세다. 핀테크의 발전으로 신용



카드와 모바일결제 등이 현금을 대신하는 '캐시리스(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했다. …(중략)…

지난 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소비자의 현금결제 비중은 19.8%를 기록했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2019년 중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는 일 평균 600만 건으로 전년(380만 건) 대비 56.6% 늘어났다. 캐시리스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더욱 주목받는 분야가 핀테크다. 현금 사용이 이처럼 빠르게 사라지게 된 배경에는 핀테크의 발달이 한몫했기 때문이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금융당국도 올해 핀테크와 디지털금융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략)…

캐시리스 시대에 맞춰 이미 국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을 중심으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무현금, 무서류 기반 점포가 생겨나는가 하면 카카오페이를 통한 보험료 납부 등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 카드사에서는 실물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핀테크를 접목한 여러 가지 실험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출처: 뉴시스, 2020. 4. 24.]

- 핀테크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는가?
- 핀테크로 인해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SECTION
01

핀테크의 개념

1 핀테크의 개념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등장한 금융서비스 및 기술을 통칭한다. 물론 이전에도 인터넷과 컴퓨터기술을 기초로 한 금융산업 구조나 금융서비스의 발달은 지속되어 왔다. 예컨대 ATM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송금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하지만 이는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적 수단이었으며, 금융산업의 경쟁구도와 가치사슬(value chain)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정도는 아니었다. 반면, 최근의 핀테크 열풍은 소비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모바일로 채널이 변화된 데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까지 적용되면서 금융서비스와 금융중개기관의 가치사슬 및 경쟁구도, 규제체계 등 금융산업 구조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핀테크 분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간편 결제·송금, 크라우드펀딩, 웰스테크, 인슈어테크 등을 꼽을 수 있다.

과거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핀테크를 전통적 핀테크 또는 전자금융이라고 한다. 전자금융은 금융산업에 정보화기술이 도입된 후의 변화된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 판매, 금융서비스채널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영업 및 이에 부수된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도입된 기술이 유선인터넷 기술이었기 때문에 전자금융은 주로 유선인터넷 중심의 서비스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핀테크를 신흥 핀테크라고 한다. 이는 무선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루어진 서비스라는 점에서 기존의 유선인터넷 중심의 전자금융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신흥 핀테크는 뛰어난 접근성, 저렴한 비용, 빠른 확산 속도 등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을 금융회사의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산업을 이끄는 주체로 이동시키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대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해체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확대보기

핀테크의 단계적 성장

기술발달에 따라 핀테크도 더욱 다양해지면서 성장단계를 높여가고 있다. 전자금융(전통적 핀테크)과 구분되던 신흥 핀테크도 초기의 언번들링(Unbundling¹) 단계에서 서비스가 보다 고도화된 리번들링(Rebundling²) 단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KPMG의 '2020 한국 Fintech 동향 보고서'는 핀테크의 단계적 성장에 따라 전자금융(전통적 핀테크)을 핀테크1.0, 언번들링 핀테크를 핀테크2.0, 리번들링 핀테크를 핀테크3.0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핀테크1.0인 전자금융(전통적 핀테크)은 기존 금융서비스의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조성자로서 기존 금융회사의 인프라 지원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핀테크2.0 이후인 신흥 핀테크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관계없이 금융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파괴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핀테크2.0은 디지털과 모바일기기를 중심으로 한 개별 언번들링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이며, 핀테크3.0은 디지털과 모바일 플랫폼상에서 기술과 데이터를 융합하여 리번들링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단계인 핀테크3.0이 발전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첫째, 디지털과 모바일기술 및 충성도 있는 고객 확보를 통한 플랫폼의 형성, 둘째, 플랫폼에서 창출되는 고객 빅데이터와 기술의 융합을 통한 보다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능력을 들 수 있다.

핀테크의 단계적 성장

	FinTech 1.0	FinTech 2.0	FinTech 3.0
핵심 요소	컴퓨팅	스마트폰	스마트 디바이스
핵심 트렌드	효율성 증대	디지털화, 언번들링	리번들링
주요 플레이어	기존 금융 기관의 IT 벤더(Vendor)	핀테크 스타트업	핀테크 스타트업, 빅테크 기업

출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삼성KPMG, 2020 한국 Fintech 동향 보고서(2020)

2 핀테크의 성장배경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발전 배경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 공간, 산업 및 사람을 지능적으로 연결하고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등장이다. 2016년 1월에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의장은 앞으로 약 50년간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를

- 1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기능별 분해.
- 2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결합 · 재조합.

지배할 패러다임이라고 단언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갖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반면, 전통산업과 사회구조를 해체시킬 수 있으며, 1·2·3차 산업혁명에 비해 진행속도가 빠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한 산업의 기계화였다. 이후 전력의 사용 등 에너지 혁명으로도 불리는 2차 산업혁명, 인터넷 기반 지식·정보혁명인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등으로 대표되며 초지능, 초연결, 대융합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초지능(Hyper Intelligence)이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을 통해 풍부한 지식을 획득하여 특정 부문에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적 능력 발휘가 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2016년 바둑기사인 이세돌과의 대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AlphaGo)나 IBM의 Watson2 등이 그 사례이다. 초연결(Hyper Connection)이란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자동차나 각종 가전기기 등의 사물과 사람이 상호 연결되면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다. 대융합(Big Coverage)은 기술, 사물, 산업, 공간 등이 융합을 통해 기존 기술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KBS, 1~4차 산업혁명(2016)

이나 산업 등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융합된 O2O(Online to Offline)가 활성화되면서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형성되는 것 등을 사례로 볼 수 있다. 핀테크 분야에서도 결제 및 송금부터 신용분석, 대출, 자산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서비스가 나타나고,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융합 등으로 신용평가, 자산관리 및 운용 등의 모델이 정교해지는 등 새로운 금융모델이 창출되고 있다.

컴퓨터 연산능력의 향상

최근의 핀테크 성장은 대규모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연산능력 향상 등에도 기반한다. 즉,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 및 수집하는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기능이 결합된 컴퓨터의 연산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접근 가능한 데이터와 데이터 소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와 플랫폼도 출현하였다.

스마트폰 이용의 확산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금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산하 리서치기관인 GSMA Intelligence가 발표한 ‘2018년 소비자동향보고서’에 의하면 선진국 소비자의 90%가 스마트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가구당 평균 2.5대의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GSMA는 2018년 ‘모바일 산업 영향보고서’를 통해 모바일기기의 확산이 핀테크와 모바일머니 사용을 촉진하는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밀레니얼세대의 등장

밀레니얼세대는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한다. 밀레니얼세대는 학습, 커뮤니케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등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아날로그 중심의 기존 세대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가치관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의존한 금융서비스보다 모바일 방식의 금융을 선호하면서 핀테크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³에 의하면 전 세계 밀레니얼세대 인구는 2018년 기준 세계 총 인구의

3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밀레니얼 모멘트(millennial moment)의 도래(2018)

25% 수준인 18억 명에 달하며, 2030년경에는 세계 노동인구의 약 40%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밀레니얼세대의 86%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인구이며, 특히 중국의 밀레니얼 인구 수는 3.5억 명으로 미국 총인구인 3.3억 명보다도 많다. 우리나라 밀레니얼세대 인구는 2018년 기준 1,490만 명으로 국내 총인구의 29%를 차지하여 핵심 경제인구로 부상되고 있고, 2020~2025년 중에는 경제 측면에서도 핵심 주도세력이 될 전망이다.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대안금융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폭된 것도 핀테크가 등장하게 된 강력한 배경 중 하나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전례없는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상실하면서 새로운 비은행 경쟁자들이 금융서비스 분야에 진출하게 되었다. 디지털·모바일과 결합된 핀테크서비스가 낮은 비용과 편리한 서비스를 무기로 소비자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면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은행업무(뱅킹)이지 은행(뱅크)이 아니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말은 핀테크의 가치를 옹호하는 견해로 볼 수 있다.

SECTION 02

핀테크 관련 주요 기술

금융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첨단기술이 있는데 핀테크에서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심이 된다. 대표적인 기술로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꼽을 수 있는데, 각 기술 명칭의 제일 앞 글자를 따서 이를 ABCD기술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1 인공지능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즉, 딥러닝(Deep Learning, 심층학습)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인간과 유사한 학습, 지각, 판단 능력 등을 구현한 것이며, 데이터 분석기술과 컴퓨터 성능이 발달하며 점차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종류는 약한 인공지능(Weak AI), 강한 인공지능(Strong AI), 초인공지능(Super AI)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약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사고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컴퓨터 기반의 인공지능이다. 미리 정의된 규칙의 모음을 이용해 지능을 흉내내는 정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글 알파고 등과 같은 단순 인공지능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강한 인공지능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약한 인공지능의 발전된 형태를 말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인간의 사고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인간형 AI와 인간과 다른 형태의 지각과 사고 추론을 발전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비인간형 AI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초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이 진화한 형태로, 인간보다 1,000배 이상 뛰어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다. 이는 효율성, 창의성 등의 원초적 욕구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간다.

인공지능은 챗봇⁴을 기초로 금융회사의 고객 상담, 금융상품 추천 등 고객 응대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및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여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제공하거나, 여신심사 관련 금융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신용평가의 정밀도를 높이는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사기 또는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금융권에서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2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산원장기술이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⁴ 고객이 입력한 문자나 말한 음성내용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인식하고 고객의 응대에 자동적으로 답하는 기능.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를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이 원장을 집중·관리하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중앙집중형(centralized) 시스템을 활용하는 반면, 분산원장기술은 다수의 서비스 사용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보관(decentralized)하고 거래 발생 시마다 이를 검증하고 갱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정보를 블록(block) 단위로 기록하여 이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기존의 블록에 추가 연결하여 보관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에서 거래기록을 조작하려면 연결된 모든 개인용 컴퓨터의 블록을 신규 블록 생성 이전에 조작해야 하므로 조작과 해킹이 어려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통제시스템이 없으므로 거래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면 블록체인 구성원의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리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다.

블록체인은 본래 가상자산의 일종인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사용된 기술이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의미한다. 즉, 기존의 지폐나 동전과는 다르게 디지털파일 형태로 만들어진 거래수단이며, 다수의 참가자들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들고 관련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하며 관리한다. 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관리 및 주식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간소화된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보관앱 등이 있다.

 **확대보기**

가상자산과 디지털 화폐

가상자산 중 가장 잘 알려진 비트코인은 2008년에 발표된 나카모토 사토시의 논문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에 근거하여 2009년에 개발되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PC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든 일종의 거래수단으로 총 채굴량이 2,100만 비트코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본은 2017년 초부터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를 가진 지급결제 수단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2015년 10월에 통화 등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서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판결하였다. 그 이후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에이코인, 대시, 모네로 등 다양한 코인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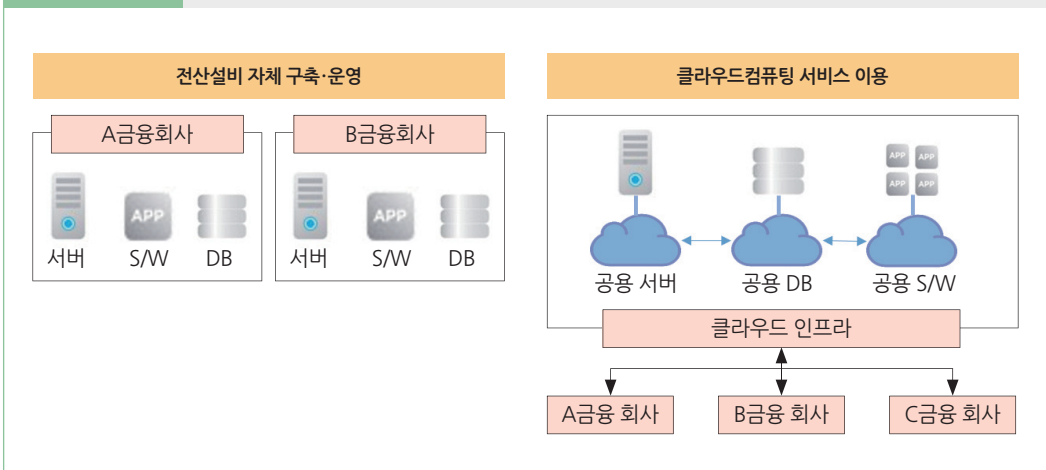
이와 별도로 최근 ‘현금없는 사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세계 곳곳에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떠오르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과 달리 직접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이며, 기존의 실물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3 클라우드

클라우드란 멀리서도 보이는 구름을 의미하는 영어단어(cloud)에서 유래하였으며, 전산 관련 자원을 직접 구축하여 소유하는 대신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를 필요한 만큼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방식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서비스 모델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저장장치 등의 전산 인프라, 데이터베이스 등의 플랫폼,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제공받는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가 전산 자원을 직접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실제 서비스 사용량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므로 매우 경제적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전산 기술, 일시적인 접속 폭주 등 불규칙한 전산 수요 등 다양한 시장의 변화에 맞춰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산 접속이 집중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장애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는 새로운 지능

그림 12-2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념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다양한 분야에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활발(보도자료, 2020. 7. 20.)

형 기술을 쉽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은 전문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금융권에서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금융회사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내부 경영 업무, 고객센터 등 주로 후선 업무에 클라우드를 활용해왔으나, 금융상품 데이터 분석, 인터넷·모바일 banking 관련 전자금융 등 각종 핵심 업무로 활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금융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해외의 글로벌 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국내 업체도 점차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4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람과 사물이 다양하게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21세기의 원유’라고 표현될 만큼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는 것은 바로 데이터이다. 이에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는 빅데이터 기술은 미래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금융 분야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비교적 높고 통신, 유통, 문화 등 타 산업과의 데이터 연계·결합 가능 범위가 넓어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분야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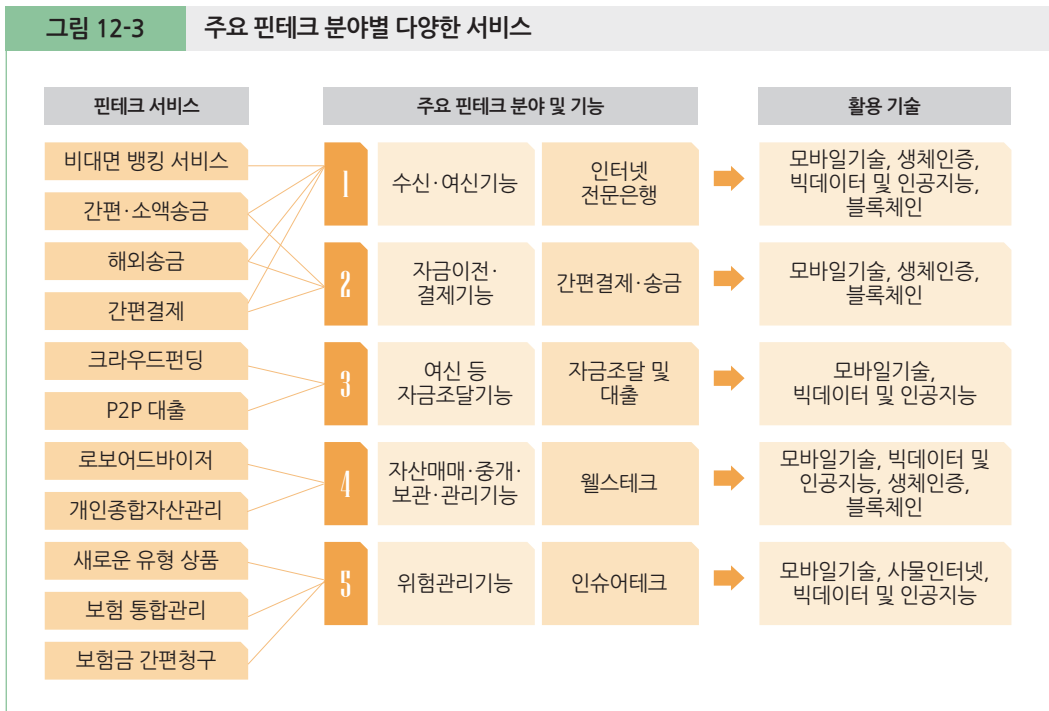
해외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고객의 다양한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분석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도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보험상품 개발, 보험사고 조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등을 수행한다.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하기도 하며, 데이터 거래소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 분야의 데이터가 거래되고 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데이터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중심으로 활용되었으나, 2020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바탕으로 관련 빅데이터 개발 및 빅데이터 자문(제공), 유통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SECTION
03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앞서 살펴본 여러 핵심기술의 발달에 따라 핀테크 서비스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주요 분야별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는 <그림 12-3>과 같다. 세부적으로는 비대면 종합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한 간편결제 및 송금, 자금조달 및 대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웰스테크,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슈어테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핀테크 서비스는 플랫폼의 활용, 기술과 데이터의 융합 등에 의해 새로운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출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삼정KPMG, 2020 한국 Fintech 동향 보고서(2020)에서 일부 발췌하여 구성

1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핵심적인 영업채널로 활용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이다. 199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모회사, 계열회사 등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이용 시와 비교할 때 금리 및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금융산업 차원에서는 차별화된 사업모델 출현에 따라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며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은행법에 따라 본인가를 취득하여 2017년부터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토스은행이 예비인가를 취득한 상태이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초기 대비 고객 수, 예금 및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영업 실적도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확대보기

인터넷은행, 출범 4년 만에 '키플레이어'로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이후 4년 여간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금융 메기'를 넘어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최근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잇달아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기업공개(IPO)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은행이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예대마진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규제 이슈도 향후 기업가치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략)…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7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글로벌 사모펀드인 TPG 캐피털이 2500억원을, 기존 주주들이 5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뱅크는 국내 4대 금융 지주에 버금가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TPG 캐피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를 8조 5800억원으로 본 것이다.

이를 현재 국내 금융 지주의 시가총액과 비교해보면 '리딩 금융'을 다투는 KB금융지주(17조원대), 신한금융지주(15조원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금융지주(9조원대), 우리금융지주(6조원대)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에 인정받은 기업가치가 유상증자 완료 전 기준인 데다 IPO 일정이 상당 기간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시가총액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뱅크도 지난 7월 영업재개 이후 빠른 보폭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케이뱅크는 영업재개 한 두 달여 만에 여신 잔액과 수신 잔액이 각 3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8월 말 케이뱅크의 여신 잔액은 1조 7800억원으로, 영업이 재개되기 전인 6월 말(1조 2600억 원)보다 41.3% 늘었다. 같은 기간 수신 잔액도 1조 8500억원에서 2조 4900억원으로 34.6% 증가했다. …(이하 생략)…

출처: 이코노믹리뷰, 2020. 11. 1.

2 간편결제·송금

간편결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플라스틱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대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결제방식이다. 지급 시 활용할 계좌 또는 카드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에 미리 등록하고, 거래 시 단말기 접촉, QR코드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본인인증절차 없이 간단한 거래비밀번호 또는 지문인식, 홍채인식, 얼굴인식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 등을 통해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업체는 크게 정보·통신 계열과 유통·제조 계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엘지전자의 엘지페이, NHN페이코의 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페이, 이베이코리아의 스마일페이, 쿠팡의 쿠팡이 서비스 등이 있다.

간편송금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선불금을 충전한 뒤, 수취인의 전화번호, SNS 등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송금하는 서비스이다. 간편송금서비스 제공업체는 크게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의 네이버페이, 케이뱅크의 킥 송금 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다.



확대보기

코로나19 영향에 '대세'로 떠오른 간편·전자결제

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올 상반기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규모도 20% 정도 커졌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상반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액은 하루 평균 3226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0.3% 늘었다. 이용 건수도 4.7% 많은 291만건으로 집계됐다. 카드 기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액(2139억원)과 건수(731만건)도 각 12.1%, 8.0% 증가했다.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는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규정이 폐지된 뒤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만으로 결제·송금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뜻한다. 한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를 통한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이 늘었다"며 "특히 간편송금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전자금융업자를 중심으로 송금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가 잦아지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시장도 성장했다. 상반기 PG 이용액과 건수는 각 6769억원, 1782만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15.3%, 32.0%씩 늘었다.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교통요금, 상거래 대금 등을 지급하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이용액(4306억원)도 26.9%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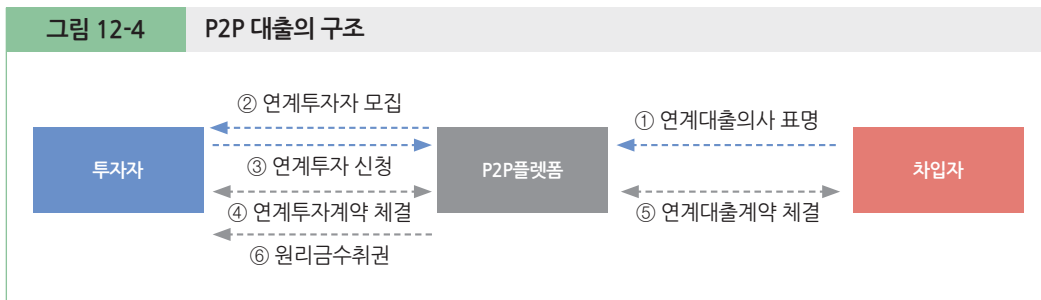
출처: 경향신문, 2020. 9. 14.

3 자금조달 및 대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단어로,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다수의 투자자는 각자의 투자 성향, 집단지성 등을 활용하여 투자 여부 및 투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 및 투자자에 대한 보상 방식에 따라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창업·벤처기업 등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창업·벤처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하여 초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벤처투자 등 다양한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로 불리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P2P업체가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차입자에 대출하고, 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 때 P2P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단순히 중개하는 업무만 수행하면서 투자자 및 차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대출 관련 이자손익은 투자자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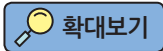
이 외에도 후원형,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이 활용되고 있는데 별도의 법률적 근거는 없다.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은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대중의 후원으로 이를 달성하면 금액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주로 문화, 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며, 향후 출시될 공연 티켓,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미리 구매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서 와디즈, 텀블벅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크라우드펀딩 방식은 자금을 조달하는 단

계에서부터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목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주로 비영리단체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모집할 때나 이자 없이 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표 12-1 유형별 크라우드펀딩의 비교

구분	자금모집 방식	보상형태	투자처	비고
증권형	주식·채권	투자수익 배분(배당금 등)	창업·벤처기업	수익형
대출형	대부	원리금 상환	개인·법인	
후원형	제품구매 등	비금전적 상환(리워드)	문화, 복지, 아이디어상품 등	비수익형
기부형	기부	무상		

출처: 금융감독원, 「핀테크 산업 동향」(2020)



내일부터 'P2P법' 시행... 달라지는 점은

오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P2P법)이 시행되면서, P2P(Peer-to-Peer·개인간) 금융도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 새로운 금융업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대부업법 이후 17년만이다.

지금까지 정식 금융업이 아니라 P2P 기업이 대부업체 계열사를 세우고,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만 감독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플랫폼 운영사인 P2P 업체를 감독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감독규정 의결을 마치고 27일부터 P2P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2P법은 P2P 금융 업체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 사항 등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다. 금융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에 따라 P2P 업체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5억·10억·30억원으로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P2P업체에 대해선 내년 8월 26일까지 등록경과기간을 부여한다.

또, P2P업체는 재무·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각 업체들은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연체를 15% 초과 사항, 부실채권 매각 등에 대한 중요 사건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이전엔 P2P협회 가입사들에 한해 월별로 누적대출액 등을 자율 공시가 이뤄졌다.

업체 수수료의 경우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최고금리인 현행 24%까지 가능하다. 이중 담보권 설정비용이나 신용조회 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이밖에도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 등이 금지된다.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구조화 상품이나 가상자산 등 위험성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은 취급이 제한된다.···(이하 생략)···

출처: 조선비즈, 2020. 8. 26.

4 웰스테크

웰스테크(WealthTech)는 부(wealth)와 기술(tech)의 합성어로, 자산관리를 위한 핀테크 서비스를 지칭한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금융투자 관련 로보어드바이저를 들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투자자문가(Advisor)의 합성어이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투자자의 리스크 관련 성향, 목표수익률, 자금의 성격 등을 진단한 뒤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투자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품 설계 시 인간의 판단과 개입을 최소화하므로, 수수료가 낮고 다양한 투자전략도 수립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해외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자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하고,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에 힘입어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각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자산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 현황을 종합하여 제공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개인의 각종 금융자산 현황과 더불어 지출관리,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신용관리 등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국내의 대표적인 서비스로뱅크샐러드(앱), 카카오페이, 브로콜리 등이 있다.



확대보기

로보어드바이저 돋보기

글로벌 금융사들의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으로 인한 인력 감축은 기존 금융 인력들에겐 충분한 위협요소다. RBS(Royal Bank of Scotland)는 로보어드바이저 도입을 통해 550명의 투자자문 인력을 감축했다. 골드만 삭스도 과거 600명에 이르던 트레이더가 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가 인수한 로보어드바이저 '켄쇼'는 5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전문 애널리스트가 40시간에 걸쳐 하는 작업을 몇 분 내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얘기가 다르다. 금융분석, 투자자문 등에서 제공하던 일부 전문지식이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스템화가 가능한 보편적인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고객 응대, 금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규칙 기반 투자활동 등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부유층만을 위한 전문화된 자문서비스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다수의 대중을 위한 보편화된 자문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구조가 폐쇄적이고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라이선스 산업에서 개방적이고 보편화된 서비스 산업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산관리에는 단순히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품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거래를 담당하는 트레이더,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고 상품을 추천하는 프라이빗 뱅커 등이 함께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선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자산관리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로보어드바이저가 사전적 의미처럼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고객관리, 상품분석, 펀드운용, 상품거래 등 자산관리 각 영역별로 전문화된 로보어드바이저가 출현하고 있다. 운용대상 상품도 주식, 채권, 펀드, 대체상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이하 생략)...

출처: 이데일리, 2018. 6. 18.

5 인슈어테크

인슈어테크(InsurTech)란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이며 상품개발, 계약 체결, 고객관리 등 보험업무의 다양한 분야에 신기술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인슈어테크는 간편결제·송금, 크라우드펀딩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늦게 시작하였지만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는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업의 특성과 더불어 사물인터넷⁵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환경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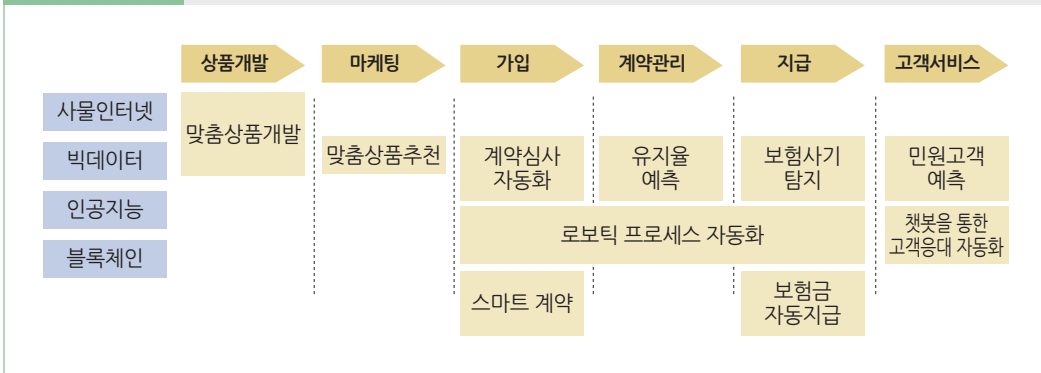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사물인터넷 기술 활용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보험회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운동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 할인 등을 지원하는 건강증진형 보험,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운전습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운전습관 연계 자동차보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거나 추가 고객을 예측하여 추출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으며, 계약 심사를 고도화하고 보험사기를 탐지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하여 고객상담 및 각종 단순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사용자의 모든 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 과부족 진단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험 통합관리 서비스(앱),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금 간편청구 서비스(앱) 등도 출시되어 활용되고 있다.

⁵ 전자 센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으로 연결된 물건, 기기, 이동수단 등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각각의 기기에서 정보가 수집되고 연결된 서버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림 12-5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적용분야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인슈어테크 활용현황(보도자료, 2019. 5. 22.)

확대보기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레모네이드'

“기존에 당신이 알던 보험은 잊어라(Forget Everything You Know About Insurance)”. 지난 7월 2일 미국 뉴욕증시거래소(NYSE)에 데뷔한 온라인 주택보험 스타트업 ‘레모네이드’(Lemonade, NASDAQ: LMND)의 홈페이지를 가면 볼 수 있는 야심찬 광고 문구다. …(중략)…”

2015년 4월 뉴욕에서 설립된 레모네이드는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을 접목한 ‘인슈어테크’ 회사로,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을 위한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내놓고 있다.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은 집을 사지 않는 이상 월세 거주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택보험을 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 기간 중 가구·가전 등이 파손됐을 경우, 주택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레모네이드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알고리즘, 머신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어떤 서류작업도 없는(zero paperwork) 즉석 보험 가입과 빠른 피해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여성형 인공지능(AI) 봇(bot) ‘마야’(Maya)가 상품 가입을 도와주고 남성형 봇 ‘짐’(Jim)이 피해 보상 절차를 안내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히 90초면 보험 가입이 완료되고, 피해 보상도 빠르면 3분 만에 이뤄진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보험 에이전트를 거치지 않으니 가격 거품도 빠졌다. 주택소유자 보험의 경우 최소 월 25달러, 세입자 보험은 월 5달러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가입 절차부터 피해보상까지 스마트폰 하나면 되니 레모네이드 고객의 약 70%가 35세 이하 청년이며, 다른 보험사 상품에서 변경한 것이 아닌 신규 보험 가입자가 90%에 이른다.

레모네이드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25%를 수수료로 받고, 남은 75%를 예상 지급보험금(손해율)과 재보험 비용 등으로 남기는데, 피해 보상금 지급 후 남은 보험금은 기부단체 등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점차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레모네이드의 사회친화적 사업 모델은 각광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비상장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일종의 사설 거래소 셰어즈포스트(Sharespost)는 레모네이드가 “보험을 필요악이 아닌 사회적 선으로 재창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하 생략)…”

출처: 뉴스핌, 2020. 7. 9.

SECTION
04

핀테크의 발전과 생활의 변화

핀테크는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 보안문제,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인한 고용 감소나 쏠림현상 등의 새로운 리스크도 출현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1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기대효과

금융소비자 측면

■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확대

전례 없는 디지털 금융의 성장세로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의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적절한 금융역량과 결합된 디지털금융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관련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고객편의를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디지털을 활용한 비용 절감(예: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하게 되고, 보다 효율적인 금융포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인프라가 확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혁신적인 핀테크 모델이 보다 신속하게 확산되며 금융포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융소외층도 접근이 용이한 기술과 금융기법 등이 개발되면 금융포용이 증진되고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후생도 증가할 수 있다.

■ 더욱 좋은 상품을 편리하게 이용

빅데이터 분석,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이용해 고객의 기대치에 근접한 맞춤형 금융상품, 디지털 경험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령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은 뛰어난 데이터 관리능력을 활용하여 고객요구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는 대면채널로 금융거래를 한정하지 않고,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초월하는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아가 기술 진보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예전보다 훨씬 싼 값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효익이 증가할 수 있다.

금융산업의 측면

■ 경쟁촉진을 통한 금융시장의 효율성 증진

중전 금융시장은 자본시장 등의 높은 진입규제로 인해 대형 금융회사 위주의 과점적 시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함에 따라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경쟁이 증가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있다. 가령 인터넷전문은행 영업개시 이후 기존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하나 고객서비스 개선 등을 적극 발표한다든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정이 발표되면서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맞춤형 상품경쟁을 하는 것 등이 그 사례이다.

■ 새로운 상품 개발 및 영업환경 개선

기존 금융서비스 및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거나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와 핀테크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고객에게는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유지 및 관리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도 있다. 또한 보다 다양해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신용평가체제도 향상되고 있는데, 가령 소셜미디어 등과의 제휴로 기존 금융회사가 가지지 못했던 고객의 비재무적 정보도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속도가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2 핀테크 발전에 따른 위험요소

금융소비자 측면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

간편결제 등 비대면거래 급증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핀테크 서비스의 장점을 악용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이 적절한 보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 정보나 데이터 탈취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인증수단인 생체정보는 일반 패스워드와 달리 자유로운 갱신,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시 지속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등 피해도 심각할 수 있다.

■ 신용리스크의 소비자 전가

P2P대출 플랫폼의 경우, 적절하게 감독되더라도 신용 등 관련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최종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상품이나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P2P대출의 경우 최종 투자자가 돈을 대출한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직접 부담함에 따라 차주의 상환불능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또한 주로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이 P2P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플랫폼이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금융산업의 측면

■ 기술진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진보로 금융회사는 효율화되지만, 금융산업 내의 일자리는 감소할 수 있다. 가령 금융기술의 진보에 따라 소매 은행업 부문에서 지점 및 고용 인원의 감소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banking 등의 발달로 텔러업무는 점점 자동화되고 있으며, 단순히 물리적 지점망이 많은 은행보다는 다양한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한 은행이 비교 우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미국 및 유럽은행의 소매 지점수와 고용 인원은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이 있다.

■ 운영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확산으로 서비스 제공 관련 제반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 운영 리스크의 관리 및 통제가 곤란하게 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아웃소싱을 늘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나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 외부 서비스제공업체 이용을 많이 할수록 운영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투명성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외부 서비스제공업체 이용이 증가하

면 데이터보안,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 사이버 범죄 및 고객보호와 관련된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IT시스템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변화에 맞추어 시스템을 개선하더라도 그 구현방법이 부적합할 가능성도 있으며, 기술의존도 증가로 인해 핀테크 기업 이외에 연관 금융회사까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합성어이며, 발전단계에 따라 전통적 핀테크와 신형 핀테크로 구분된다.
- 핀테크는 초지능, 초연결, 대응함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급속한 컴퓨터 연산능력 향상, 스마트폰 이용의 확산, 밀레니얼세대의 등장, 금융위기에 따른 대안금융의 부상 등을 배경으로 성장하였다.
- 핀테크에서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어하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심이 되며, 대표적인 기술로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꼽을 수 있다.
- 주요 핀테크 서비스 분야로 비대면 종합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한 간편결제 및 송금, 자금조달 및 대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웰스테크,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슈어테크 등이 있다.
- 핀테크는 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 개선, 관련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지리적 혹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소외되어 있던 금융소비자를 포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상품 및 서비스 공급환경을 개선하는 등 금융산업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 반면, 핀테크는 관련 기업이 적절한 보안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금융범죄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금융산업의 측면에서도 발전된 기술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으며, 복잡한 기술의 이용에 따른 운영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예시문제

🏆 서술형

01 핀테크의 개념과 발전단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02 핀테크 관련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해 서술하시오.

03 핀테크 발전이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긍정적 기대효과와 위험요인에 대해 정리해 보시오.

🏆 빈칸 채우기

01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발전 배경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 초연결, 대융합이다.

02 는 로봇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투자플랫폼이다.

03 은 온라인상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하며,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기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O·X 문항

01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에 해당한다.

02 초연결 사회에서 21세기의 원유로도 표현되는 데이터는 핵심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

03 핀테크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

예시문제 정답

1장	빈칸 채우기	1번 1.0%	2번 잠재성장률	3번 유통
	O·X 문항	1번 X	2번 O	3번 X

2장	빈칸 채우기	1번 손실	2번 직접금융	3번 시중은행
	O·X 문항	1번 O	2번 X	3번 O

3장	빈칸 채우기	1번 가처분소득	2번 72	3번 요구불예금	4번 예금자보호제도
	O·X 문항	1번 X	2번 O	3번 O	4번 X

4장	빈칸 채우기	1번 투자	2번 기본적 분석	3번 시장가	4번 신주인수권부사채
	O·X 문항	1번 X	2번 O	3번 O	4번 X

5장	빈칸 채우기	1번 보수	2번 상장지수펀드	3번 옵션계약	4번 주가연계증권
	O·X 문항	1번 O	2번 O	3번 X	4번 X

6장	빈칸 채우기	1번 상환이력정보	2번 개인회생제도	3번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	4번 연체정보
	O·X 문항	1번 X	2번 X	3번 X	4번 O

7장

빈칸 채우기	1번	2번	3번	4번
	시간선호	은행	기준금리	일시상환
O·X 문항	1번	2번	3번	4번
	O	X	O	X

8장

빈칸 채우기	1번	2번	3번	4번
	손실심도	상해보험	보험금	위험보험료
O·X 문항	1번	2번	3번	4번
	O	O	O	X

9장

빈칸 채우기	1번	2번	3번	4번
	기대	기초	사업장	기타
O·X 문항	1번	2번	3번	4번
	O	X	O	X

10장

빈칸 채우기	1번	2번	3번
	재무설계안의 실행	변동지출	순자산
O·X 문항	1번	2번	3번
	O	X	X

11장

빈칸 채우기	1번	2번	3번	4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적합성 원칙	금융분쟁조정	파인(FINE)
O·X 문항	1번	2번	3번	4번
	O	X	O	O

12장

빈칸 채우기	1번	2번	3번
	초지능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
O·X 문항	1번	2번	3번
	X	O	X

[단행본 및 보고서]

- Greenbaum, Thakor and Boot, Contemporary Financial Intermediation, 4th Edition, Academic Press, 2019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9
- 금융감독원,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2019
- 금융감독원, 「핀테크 산업동향」, 2020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2017
- 김창기, 「금융학원론」, 문우사, 2015
- 손성규, 이호영, 「IFRS 경영의사결정의 도구 회계원리」, 법문사, 2014
- 송충석, 송동섭, 성용운, 「IFRS 회계원리」, 세학사, 2011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2020
- 이재하, 한덕희, 「새내기를 위한 금융」, 박영사, 2018
- 이효익, 김한수, 이종은, 「New ISA 회계감사」, 신영사, 2018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KBS, 1~4차 산업혁명, 2016
- 주상룡, 정문경, 「금융학원론」, 신론사, 2016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밀레니얼 모멘트(millennial moment)의 도래, 2018
- 하이럼 W. 스미스, 「성공하는 시간관리와 인생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법칙」, 김영사, 1998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삼정KPMG, 2020 한국 Fintech 동향 보고서, 2020

[보도자료]

- 국민연금공단, 최소 생활비 월 117만원, 부부는 195만원(보도자료, 2020.12.29.)
- 금융감독원,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보도자료, 2020.9.15.)
- 금융감독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보도참고자료, 2019.11.26.)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다양한 분야에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활발(보도자료, 2020.7.20.)
- 금융감독원,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보도참고자료, 2020.7.6.)
- 금융감독원,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통해 가족 또는 친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보도자료, 2020.11.4.)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인슈어테크 활용현황(보도자료, 2019.5.22.)
- 금융감독원, 은행과 핀테크 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전면 시행됩니다.(보도자료, 2019.12.18.)

금융감독원·한국은행, 2020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보도자료, 2021.3.)
 통계청, 2019년 가계동향조사(연간 지출)결과(보도자료, 2020.5.7.)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보도자료, 2020.9.22.)
 통계청, 2019년 생명표(보도자료, 2020.12.1.)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보도자료, 2020.9.28.)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보도자료, 2020.11.19.)
 통계청,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보도자료, 2020.7.28.)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보도자료, 2019.3.28.)
 한국은행, 2020년 3/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보도자료, 2020.11.24.)

[기사]

KBS뉴스, 2008.11.11, 윤양균 기자(美 금융위기 후폭풍...실물경제 침체 확산)
 경향신문, 2020.9.14, 이윤주 기자(코로나19 영향에 '대세'로 떠오른 간편·전자결제)
 뉴스핌, 2020.7.9, 최원진 기자([뉴욕증시 IPO 유망주]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레모네이드')
 뉴시스, 2020.4.24, 최선윤, 이준호 기자([코로나 이후 신세계] '캐시리스' 급진전...금융사들 핀테크 전쟁)
 미주헤럴드경제, 2020.8.29, 박준규 기자('소비요정' 접어두자...30대 연금설계 팀)
 서울경제, 2019.12.5, 이태규·송중호 기자("DLF 판 은행, 최대 80% 배상하라")
 시사저널e, 2020.9.26, 김희진 기자(가로저축 vs 세로저축...나에게 맞는 저축방법은?)
 아주경제, 2020.10.31, 서대웅 기자(제로금리여도 저축률 5배 오른 유럽)
 이데일리, 2018.6.18, 정수영 기자([로보어드바이저 돋보기] ⑦ 자본시장 혁신의 트리거 될 것)
 이데일리, 2021.1.3, 김보겸 기자(새해벽두 비트코인 광풍...화려한 부활인가, 2년전 악몽 데자뷰인가)
 이코노믹리뷰, 2020.11.1, 박창민 기자([인터넷은행의 명암] ② 인터넷은행, 출범 4년 만에 '키 플레이어'로)
 조선비즈, 2020.8.2, 이상빈 기자(내일부터 'P2P법' 시행... 달라지는 점은)
 조선일보, 2020.10.27, 이기훈 기자(겉 없는 서학개미, 주식서 3.4조 벌었지만 파생상품서 외장창)
 중앙시사매거진, 2020.9.21, 배동주 기자([니즈의 다변화, 이색보험 쏟아진다] '꿔다 끄고, 달한 만큼 돈 내고' 진화하는 보험)
 중앙일보, 2019.12.4, 정종훈 기자(20대가 꼽은 행복 3요소 '돈·가족·취미' ... 절반은 "비혼 OK")
 한경 JOB&JOY, 2020.7.21, 이도희·이채연 기자("내 신용은 몇 등급?" 순간 방심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용등급관리법)

한국경제, 2020.11.30, 김익환 기자(한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6%…주요국 중 사실상 1위)

한국일보, 2019.6.23, 최진주 기자(5060세대 67% “노후에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생각 안 해”)

헤럴드경제, 2020.6.17, 한희라 기자(윤석현 원장 “소비자 위한 ‘보이는 손’ 필요”)

[홈페이지]

e-나라지표(www.index.go.kr)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

경찰청(<https://www.police.go.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www.payinfo.or.kr>)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https://www.fss.or.kr/edu>)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http://consumer.fss.or.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https://www.cardpoint.or.kr>)

예금보험공사(<http://www.kdic.or.kr>)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http://www.e-insmarket.or.kr>)

통계청(<http://kostat.go.kr>)

한국신용정보원 ‘내보험 다보여’(<http://ins.credit4u.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한국은행(<http://www.bok.or.kr>)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제3판]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발행일 2021년 2월

인쇄일 2021년 2월

저작권자 금융감독원

발행인 윤석헌

발행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www.fss.or.kr ☎ 02-3145-5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디자인·편집 (주)피와이메이트(www.pybook.co.kr ☎ 02-733-6771)

ISBN 979-11-6519-122-1 (03320)

* 이 책의 내용은 관련법규나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을 전재 또는 역재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contents

- Chapter01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 Chapter02 금융상품,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 Chapter03 저축의 이해
- Chapter04 금융투자의 이해
- Chapter05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 Chapter06 신용관리
- Chapter07 부채관리
- Chapter08 리스크관리와 보험
- Chapter09 노후와 연금
- Chapter10 재무설계의 기초
- Chapter11 금융소비자보호
- Chapter12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비매품/무료

ISBN 979-11-6519-122-1



9 791165 191221